

2022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2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아시아

일본	006
중국	040
대만	076
홍콩	108

미주 및 유럽

미국	130
유럽연합	170

신남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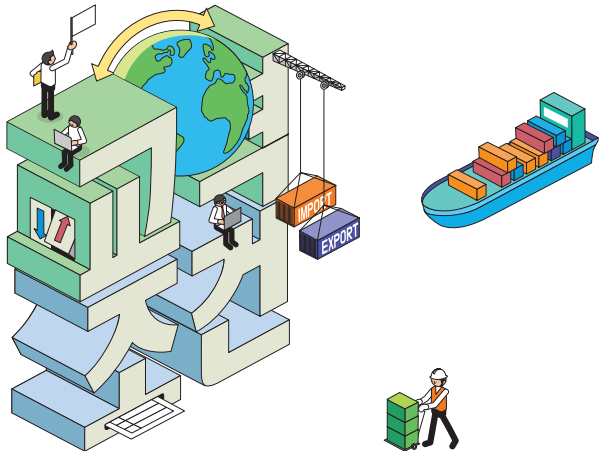
베트남	206
태국	234
인도네시아	268
필리핀	306
말레이시아	332
싱가포르	360

신북방

러시아	394
카자흐스탄	428
몽골	446
아랍에미리트	472

부록

부록 1. 수출교역조건 현황 요약	500
부록 2. 한눈에 보는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508



아시아

일본 JAPAN

2022년 한눈에 보이는
일본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008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018
03. 비관세 장벽 현황	020
04. 수출 애로사항	032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035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식품시장 규모는 6,278억 9,400만 달러(한화 약 851조 2,359억 원)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며 보합세
 -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1,902,800만 달러(한화 약 257조 6,210억 원)로 전체의 30.3%에 해당함
 - * 채소류 시장이 1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뒤이어 육류(8.7%), 낙농품(4.9%), 과일 및 견과류(4.5%) 순
 -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4,378억 6,600만 달러(한화 약 593조 6,149억 원)로 전체의 69.7% 차지
 - * 스낵류 시장은 전체의 40.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집계, 뒤이어 편의식품(10.5%),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8.4%), 영유아용 식품(6.8%) 순

식품 시장 규모(2017~2021)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581,249.0	588,283.0	591,685.0	610,817.0	627,894.0	100.0	2.8
신선식품	174,454.0	176,925.0	178,316.0	184,477.0	190,028.0	30.3	3.0
- 채소류	67,250.0	68,090.0	68,510.0	70,760.0	72,770.0	11.6	2.8
- 육류	49,930.0	50,740.0	51,230.0	53,100.0	54,790.0	8.7	3.2
- 낙농품	27,910.0	28,390.0	28,720.0	29,810.0	30,820.0	4.9	3.4
- 과일 및 견과류	26,060.0	26,350.0	26,470.0	27,300.0	28,030.0	4.5	2.7
- 유지류	3,304.0	3,355.0	3,386.0	3,507.0	3,618.0	0.6	3.2
가공식품	406,795.0	411,358.0	413,369.0	426,340.0	437,866.0	69.7	2.7
- 스낵류	231,900.0	234,900.0	236,400.0	244,100.0	251,000.0	40.0	2.8
- 편의식품	60,380.0	61,310.0	61,860.0	64,070.0	66,070.0	10.5	3.1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50,220.0	50,550.0	50,550.0	51,900.0	53,050.0	8.4	2.2
- 영유아용 식품	39,960.0	40,310.0	40,410.0	41,590.0	42,610.0	6.8	2.5
- 소스 및 향신료	20,040.0	20,200.0	20,240.0	20,820.0	21,320.0	3.4	2.4
- 스프레드 및 당류	4,295.0	4,088.0	3,909.0	3,860.0	3,816.0	0.6	△1.1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1) 환율 : 1달러=1,355.70원(2022년 11월 23일, 매매기준을 기준)

2) *22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Global Trade Atals 등)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인구 1억 2,6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0.3% 감소함(2020년 전체 인구수 약 1억 2,650만 명)
 - 55세 이상의 중장년층 인구가 5,160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약 40.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남녀비중은 균등한 편이며, 여성 인구수가 전체의 51.2%에 해당하는 6,452만 명, 남성 인구수 48.8%에 해당하는 6,153만 명으로 집계

- 2021년 가구수는 5,471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2만 1,500달러(한화 약 2,915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0년 대비 0.6% 증가함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소비 규모는 5,690달러(한화 약 772만 원)로 약 26.5%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0.4% 감소한 수치임

-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4,981달러(한화 약 675만 원)로 전년 대비(3.1%) 증가
 - 신선식품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1,507.60달러(한화 약 204만 원)로 전체 식품 부문 지출의 30.3% 차지
 - * 채소류 소비액은 577.3달러(한화 약 78만 원)로 가장 높은 수준, 뒤이어 육류 434달러(한화 약 59만 원), 낙농품 244달러(한화 약 33만 원), 과일 및 견과류 222.4달러(한화 약 30만 원) 순
 - 가공식품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3,473.37달러(한화 약 471만 원)로 전체 식품 부문 지출의 69.7% 차지
 - * 스낵류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1,991달러(한화 약 270만 원)로 최고 수준, 뒤이어 편의식품 524.1달러(한화 약 71만 원),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420.8달러(한화 약 57만 원), 영유아용 식품 338.1달러(한화 약 46만 원) 순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량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복합적으로 보임
 - * 낙농품(0.4%), 육류(1.2%)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채소류와 과일 및 견과류, 육류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임
 - 가공식품의 경우 소스 및 향신료(0.3%)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소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함

1인당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4,559.00	4,625.12	4,663.70	4,829.35	4,980.97	100.0	3.1
신선식품	1,368.21	1,390.88	1,405.59	1,458.53	1,507.60	30.3	3.4
- 채소류	527.40	535.30	540.00	559.50	577.30	11.6	3.2
- 육류	391.60	398.90	403.80	419.80	434.70	8.7	3.5
- 낙농품	218.90	223.20	226.40	235.70	244.50	4.9	3.7
- 과일 및 견과류	204.40	207.10	208.70	215.80	222.40	4.5	3.1
- 유지류	25.91	26.38	26.69	27.73	28.70	0.6	3.5
가공식품	3,190.79	3,234.24	3,258.11	3,370.82	3,473.37	69.7	3.0
- 스낵류	1,819.00	1,847.00	1,863.00	1,930.00	1,991.00	40.0	3.2
- 편의식품	473.60	482.00	487.60	506.60	524.10	10.5	3.5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393.90	397.40	398.50	410.30	420.80	8.4	2.6
- 영유아용 식품	313.40	316.90	318.60	328.80	338.10	6.8	2.8
- 소스 및 향신료	157.20	158.80	159.60	164.60	169.10	3.4	2.7
- 스프레드 및 당류	33.69	32.14	30.81	30.52	30.27	0.6	△0.8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1인당 식품 소비량(2017~2021)

(단위 : 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 식품	- 채소류	191.91	186.75	182.10	182.92	182.20	△0.4
	- 낙농품	79.38	78.18	77.13	78.19	78.51	0.4
	- 과일 및 견과류	33.73	32.44	31.28	31.05	30.88	△0.5
	- 육류	27.59	27.50	27.69	28.15	28.49	1.2
	- 유지류	5.41	5.28	5.16	5.22	5.22	0.0
가공 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09.48	107.04	104.74	105.71	105.54	△0.2
	- 스낵류	96.61	95.04	93.67	94.50	94.40	△0.1
	- 소스 및 향신료	59.69	58.87	58.16	58.92	59.10	0.3
	- 편의식품	27.85	27.16	26.54	26.80	26.77	△0.1
	- 영유아용 식품	19.65	18.77	17.99	17.91	17.65	△1.5
	- 스프레드 및 당류	7.67	7.08	6.63	6.39	6.13	△4.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농식품 수출액은 91억 1,886만 6,000달러(한화 약 12조 3,624억 원)로 전년 대비 15.8% 증가
 - 주요 수출국은 중국(14.7%), 홍콩(14.6%), 미국(14.0%)이며, 對한국 수출액은 5억 4,671만 5,000달러(한화 약 7,412억 원)로 6.0% 차지
 - * 對중국 수출액은 13억 4,339만 9,000달러(한화 약 1조 8,212억 원)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9.5% 성장
 - * 홍콩으로의 수출액은 13억 3,377만 8,000달러(한화 약 1조 8,082억 원)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1.1%로 집계
 - * 對미국 수출액은 12억 7,973만 6,000달러(한화 약 1조 7,349억 원)로 전년 대비 22.5%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5.8%의 성장률 기록
 - *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 대상국 중 6위 규모로, 전년 대비 22.1% 증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5,697,963	6,493,772	6,975,990	7,871,979	9,118,866	100.0	15.8	12.5
1 중국	658,622	730,277	932,377	1,162,959	1,343,399	14.7	15.5	19.5
2 홍콩	876,732	1,041,494	1,033,820	1,374,904	1,333,778	14.6	△3.0	11.1
3 미국	1,021,108	1,002,840	984,712	1,045,096	1,279,736	14.0	22.5	5.8
4 독일	168,854	339,219	589,225	788,360	921,783	10.1	16.9	52.9
5 대만	617,317	685,481	697,038	764,648	915,178	10.0	19.7	10.3
6 한국	547,029	656,956	518,940	447,722	546,715	6.0	22.1	0.0
7 베트남	182,201	231,361	245,359	289,085	323,649	3.5	12.0	15.4
8 싱가포르	198,179	210,031	233,576	233,120	312,168	3.4	33.9	12.0
9 태국	138,005	152,800	160,969	157,082	179,006	2.0	14.0	6.7
10 캄보디아	49,521	63,822	95,265	91,986	166,702	1.8	81.2	35.5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의 수출액이 14억 6,168만 4,000달러(한화 약 1조 9,816억 원)로 16.0% 차지, 다음으로 조제품 기타(13.1%), 소스 및 소스 제조용 조제품(4.8%) 순

* 주로 가공식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며, 신선식품 중 냉동 쇠고기(2.8%)가 2억 5,516만 8,000달러(한화 약 3,459억 원), 신선 쇠고기(2.5%)가 2억 3,093만 4,000달러(한화 약 3,131억 원)로 주로 수출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5,697,963	6,493,772	6,975,990	7,871,979	9,118,866	100.0	15.8	12.5
1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 혼합조제식품	853,653	950,064	1,201,366	1,403,990	1,461,684	16.0	4.1	14.4
2 조제품 기타	519,334	737,259	829,263	1,204,566	1,190,798	13.1	△1.1	23.1
3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293,733	326,448	343,714	378,954	435,871	4.8	15.0	10.4
4 위스키류 (스카치, 버본, 라이 이외 기타)	121,498	135,825	178,217	254,055	421,732	4.6	66.0	36.5
5 기타 베이커리 제품	295,062	310,930	308,315	320,066	398,503	4.4	24.5	7.8
6 기타 발효주 (과실 발효주, 곡물 발효주 이외 기타)	174,678	209,413	222,504	233,911	375,414	4.1	60.5	21.1
7 쇠고기 (냉동/백 없는 것)	85,143	101,658	143,502	135,612	255,168	2.8	88.2	31.6
8 쇠고기 (신선, 냉장/ 백 없는 것)	85,615	121,840	128,800	135,947	230,934	2.5	69.9	28.2
9 사과(신선)	96,904	125,686	132,868	100,966	147,323	1.6	45.9	11.0
10 설탕과자류 (죽임껌, 감초엑스, 캔디류 외 기타)	110,039	127,526	130,194	112,130	134,445	1.5	19.9	5.1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1년 농식품 수입액은 총 639억 1,749만 5,000달러(한화 약 86조 6,529억 원)로 전년 대비 7.2% 증가함
 - 주요 수입국은 미국(23.3%)이며, 뒤이어 중국(11.2%), 캐나다(6.9%), 호주(6.6%) 순
 - *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48억 8,139만 7,000달러(한화 약 20조 1,747억 원)로 전년 대비 15.8%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3.7% 기록
 - * 동중국 수입액은 71억 4,731만 달러(한화 약 9조 6,896억 원)로 전년 대비 6.4% 증가함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9억 7,969만 2,000달러(한화 약 2조 6,839억 원)로 전체 수입의 3.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4% 감소함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57,371,112	60,469,412	60,603,043	59,645,330	63,917,495	100.0	7.2	2.7
1 미국	12,869,974	14,055,574	13,131,673	12,853,119	14,881,397	23.3	15.8	3.7
2 중국	6,794,579	7,218,187	6,872,102	6,715,946	7,147,310	11.2	6.4	1.3
3 캐나다	3,474,742	3,662,005	3,809,407	3,839,062	4,396,671	6.9	14.5	6.1
4 호주	3,957,899	4,244,362	4,090,927	3,691,412	4,244,762	6.6	15.0	1.8
5 브라질	2,568,947	2,944,921	2,752,089	2,858,641	3,340,688	5.2	16.9	6.8
6 태국	3,329,828	3,417,522	3,414,498	3,306,452	3,325,956	5.2	0.6	0.0
7 이탈리아	2,727,971	2,411,932	3,425,346	3,448,223	3,179,261	5.0	△7.8	3.9
8 한국	1,755,909	1,873,289	2,064,076	2,069,801	1,979,692	3.1	△4.4	3.0
9 프랑스	1,900,232	1,974,168	2,044,712	1,772,230	1,930,735	3.0	8.9	0.4
10 뉴질랜드	1,245,490	1,334,700	1,446,419	1,431,370	1,502,533	2.4	5.0	4.8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옥수수(7.4%), 냉동 돼지고기(3.6%), 기타 조제 저장 처리한 닭고기(3.5%) 등 신선 농축산물 위주
 - * 기타 옥수수 수입액은 47억 1,011만 6,000달러(한화 약 6조 3,855억 원)로 전년 대비 43.6%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1.3% 증가함
 - * 냉동 돼지고기의 수입액은 23억 3,188만 3,000달러(한화 약 3조 1,613억 원)로 전년 대비 1.4% 감소, 2017년 이후 연평균 1.6% 감소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57,371,112	60,469,412	60,603,043	59,645,330	63,917,495	100.0	7.2	2.7
1 옥수수 (종자용, 사료용, 팥콘용 이외 기타)	3,074,783	3,355,953	3,508,610	3,280,674	4,710,116	7.4	43.6	11.3
2 돼지고기 (냉동/기타)	2,492,027	2,460,517	2,654,832	2,365,841	2,331,883	3.6	△1.4	△1.6
3 닭고기 (기타 조제저장)	2,249,055	2,414,513	2,419,553	2,229,371	2,246,276	3.5	0.8	0.0
4 쇠고기 (신선, 냉장/뼈 없는 것)	1,915,389	2,088,054	2,110,043	1,950,325	2,183,600	3.4	12.0	3.3
5 돼지고기 (신선, 냉장/기타/기타)	1,873,489	1,934,418	1,964,043	2,070,459	2,096,326	3.3	1.2	2.8
6 대두 기타 (기타)	1,547,628	1,543,000	1,534,071	1,489,711	2,068,021	3.2	38.8	7.5
7 메슬린 외 기타 (기타) *밀	1,461,831	1,574,326	1,415,010	1,451,256	1,698,934	2.7	17.1	3.8
8 저에루크산 유채씨 (기타) *채유종실	1,152,668	1,125,826	1,031,660	966,320	1,597,617	2.5	65.3	8.5
9 쇠고기 (냉동/뼈 없는 것)	1,184,214	1,361,074	1,394,674	1,374,903	1,496,928	2.3	8.9	6.0
10 커피 (볶지 않은/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1,319,468	1,146,921	1,138,597	1,051,442	1,180,296	1.8	12.3	△2.7

*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일본 농식품 수출현황

- 2021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4억 2,209만 6,700달러(한화 약 1조 9,279억 원)로 전년 대비 6.4% 증가
 - 농산물 비중은 94%로 총 13억 3,719만 9,200달러(한화 약 1조 8,128억 원) 수출
 - 임산물은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3,899만 3,200달러(한화 약 529억 원)로 전년 대비 17.0%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2%의 감소율 기록
 - 축산물 수출 규모는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4,590만 4,300달러(한화 약 622억 원)로 전년 대비 31.7%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9% 증가율 기록

한국의 對일본 수출 규모(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313,675.6	1,323,839.4	1,426,856.0	1,336,388.6	1,422,096.7	100.0	6.4	2.0
농산물	1,218,671.5	1,234,109.1	1,331,653.4	1,254,577.3	1,337,199.2	94.0	6.6	2.3
축산물	35,116.6	33,948.3	30,933.1	34,843.4	45,904.3	3.2	31.7	6.9
임산물	59,887.5	55,782	64,269.5	46,967.9	38,993.2	2.7	△17.0	△10.2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일본으로 수출되는 주요 한국산 농식품은 기타 조제품(7.5%), 단고추(5.8%), 김치(5.6%), 라면(4.6%), 설탕과자류(4.4%) 등

* 단고추 및 설탕과자류 2개 품목은 전년 대비 수출 규모 감소세로 나타남

* 설탕과자 감소율은 △6.7%이며 단고추 감소율은 △5.1%로 나타남

* 김치 수출액은 8,012만 4,300달러(한화 약 1,086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큰 폭(12.7%)으로 상승함

한국의 對일본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313,675.6	1,323,839.4	1,426,856.0	1,336,388.6	1,422,096.7	100.0	6.4	2.0
1 조제품 기타	110,334.0	108,663.5	94,908.6	97,918.2	107,355.5	7.5	9.6	△0.7
2 단고추 (벨타입)	89,236.9	91,821.2	91,244.3	86,211.2	81,794.8	5.8	△5.1	△2.2
3 김치	45,567.2	56,103.6	55,184.4	71,099.1	80,124.3	5.6	12.7	15.2
4 라면	25,413.5	31,676.0	33,744.8	54,545.0	65,276.5	4.6	19.7	26.6
5 설탕과자류	77,853.4	69,030.7	69,851.7	67,146.4	62,668.9	4.4	△6.7	△5.3

*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담배 등은 제외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 수입 신고함
 - 관세 관련 법령에는 주로 수출입절차에 관련된「관세법」「관세정률법」「관세 잠정조치법」이 있음
 - 수입신고는 필요사항을 기재한「수입(납세)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외에도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기본 서류로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도착안내서, 운임청구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음
 - * 필요시 원재료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설명서, 위생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
 -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사전신고서를 접수함
 - * 검사가 필요한 물건을 제외하고 화물 도착 전 또는 반입 후 즉시 신고필증 교부
 - * 화물 도착 전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는 품목은 '수입신고 시 위생관리설명서가 제출되었고, 최근 1년 동안 식품위생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없으며, 해당 화물의 수송 및 보관 방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가공식품 제외)'이나 고추냉이, 버섯, 토마토, 파프리카, 대두유 등 후생노동성대신이 지정한 식품에 한함
- 수입신고 내용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후 수입신고 제증명을 발행함
 - 일본에 수입되는 화물은 보세지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실시, 필요한 심사 및 검사를 받고, 수입이 허가된 후에 화물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음
 - 수입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유독·유해 물질 함유 여부, 식품위생법 규격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심사
 -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된 식물(과일 및 채소류 포함)의 수입검사 진행
 - *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화물은 폐기 처분함
 - 검사 확인 필요 화물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 식품위생법에 부합한 화물은 신고필증 발행
- 관세 납입 후 수입 물품을 반출함
 -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은 서류심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여 관세 등의 납부를 확인해 수입을 허가함.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관이라고 함. 통관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물품이 국내에서의 유통을 인정받게 됨
 - 수입방법에 따라 통관절차는 다르며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등의 관세법 제70조에서 말하는 「타법령」의 허가·승인 등이 필요함
 -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금이 부과됨
관세는(CIF가격+가산요소*)×관세율, 소비세는(과세가격+관세)×소비세율로 책정
 - * 가산요소 : 수입항에서의 운송 관련 비용, 라이선스료, 무상제공하는 부재비 등

- 관세율은 관세정률법에 의거하여 분류된 품목별로 정해져 있음
- 품목분류와 원산국에 따라 기본세율, 잠정세율(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기본세율을 수정한 세율), 특혜세율(개발도상국에서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율), 협정세율(WTO에서 정한 세율), EPA세율(경제제휴협정을 체결한 당사국 간 정해진 세율) 등 적용

검역제도

- 판매 등의 목적으로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우,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위생상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으며, 수입자는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채소·과실 등 식물계 식품은 농림수산성의 식물검역소에서, 육류, 육류제품, 유제품 등 축산물계 식품 및 수산동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수입자가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를 받음
 - 식물검역소와 동물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과 그 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후생노동성의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
 - 후생노동성 검역소는 수입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유독·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지, 식품위생법의 규격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함
 - 검역소는 필요한 경우 검사내용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함
 - 식품 검역 대상 물품은 판매용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포장용품 등이며, 신선 동물성·식물성 식품부터 가공식품, 기호식품, 건강식품, 알코올음료(주류) 등을 포함
 - * 수입신고 시 검역소는 서류심사, 물품검사 절차를 걸쳐 적합 여부를 판정함
 - * 적합 판정의 경우 검역소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하며, 수입자는 해당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
 -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용도를 바꾸어 다른 용도로 통관하거나, 재가공 등을 거쳐 다시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함. 또는 폐기 처분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함
- 식물검역은 병충해 방지를 위해 ①수입금지 품목 ②검사대상 품목 ③검사제외 품목으로 구분해 검역 진행하며,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검역이 의무화되어 있음
 - * 수출업자는 식물류 등을 수출하기 위해 수입검사 신청서와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물방역소에 제출해야 함
- 동물검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 전염병의 국내 침입 방지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중 검역대상 품목(지정검역물)을 지정함
 - 동물검역대상 품목은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의 검사를 받아 수입검역증을 취득하거나 농림수산성 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등 육류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열처리 사전 승인된 공장에 한해 수출 가능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 수출 가능 품목

협상타결 품목

- 농산물
 - 타결 품목 없음
- 축산물
 - 열처리 돈육, 삼계탕, 유제품, 증제피혁분, 열처리 가금육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 속, 카네이션, 튤립
 - * 수출불가 품목(화상병 기주식물, 자두곰보병 기주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수출 가능
- 축산물
 - 개·고양이 사료, 우지, 돼지 콜라겐, 젤라틴, 비식용 돈피, 오징어 분말, 단미사료(계란분말), 계육가공품(멸균)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재식용 식물, 과실류, 절화류, 화분 등(단, 종자는 수출 가능)
 - : Malus속(사과 등), Pyrus속(배 등), Aronia속(아로니아 등), 비파(Loquat), 퀴스(Quince), 서양모과(Medlar), 모과(Pseudocycdonia sinensis), Amelanchier속(채진목 속), Choenomeles속(명자나무 등), Cotoneaster속(섬개야광나무 등), Crataegomespilus속, Crataegus속(산사나무속), Dichotomanthes속, Docynia속, Heteromeles속, Osteomeles속, Peraphyllum속, Photinia속(홍가시나무속), Pyracantha속(피라칸사 속), Sorbus속(마가목 등), Stranvaesia속
 - * 우리나라의 화상병 발생으로 '15. 6. 1일부터 상기 품목은 수출 금지됨

- 재식용, 생식물 포함/과실 및 종자 제외
 - : Prunus 속(복숭아, 뽕나무 등), Euonymus europaeus(유럽뽕살나무), Lycium barbarum(영하구기자), Ligustrum(쥐똥나무)
 - * 상기 품목은 자두곰보병 기주식물로 수출이 금지됨

• 축산물

- 말고기, 가금육·우모분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히로바(일본)
업체 유형	식품 수입유통업체
담당자명	-

- 깻잎, 고추, 애호박이 꾸준히 인기가 많고 과일 품목은 제철 과일이 인기 많음(여름 : 참외, 수박/겨울 : 알타리무/ 봄 : 나물 등)
- 가공식품 중에는 삼계탕 제품들이나 육개장, 갈비탕 등 RTE(즉석섭취식품) 식품의 인기가 높고 여름엔 냉면 제품도 잘 나감
- 코로나 이전에는 건나물, 삼계탕 재료, 옥수수 차, 한약 재료 등을 많이 수입했으나, 최근 로스팅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옥수수 차의 통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수입 절차 진행 중 규정이 바뀔 때가 있어 채소나 과일 등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을 수입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함

1. SPS

주요 SPS 내용

- 일본 보건복지부는 2002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샘플링 검사 결과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잠재적인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식품, 식품첨가제, 조리기구, 용기와 포장의 생산과 판매, 특정 국가 및 지역 또는 공장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 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경우 2020년부터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도입되어 안전성을 평가한 물질만 사용 가능함
 - 식품 첨가제로 많이 쓰이는 이산화규소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함
- 일본의 경우 건강식품에 대한 분류가 엄격하여 오미자차, 인삼차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건강식품이 아닌 한방재료를 사용한 약품으로 분류하여 약사법의 규제를 받고 있음. 일본에서는 동 식품을 약사법에 의해 효능을 명시하여 약품으로 분류하므로 해당 식품은 약사법에 의해 제조·판매·수입 면허 및 허가·승인이 필요함
-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고추, 깻잎 등의 신선 채소류가 잔류농약 허용치 초과 문제로 통관거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021년 2월에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고추 등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재개정하였으며, 신선 고추에 적용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 바 있음
- 일본으로 특정 과일, 채소류의 공식 수입승인과 병해충위험평가 신청 시, 수출국은 2단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며, 1단계 절차에만 수년이 소요됨. 배 화상병 발생으로 인해 2015년 6월 2일부터 한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이 금지된 후 해제되지 않았으며, 복숭아의 수입도 제한됨
- 육류 및 가공육과 이들의 가공제품을 일본으로 수출 시, 한국 내 검역기관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검역증)를 일본 동물검역소 및 후생노동성 산하 식품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가공육의 경우, 120℃에서 4분 이상 가열하여 통조림과 동등상태의 멸균조건 충족 시 검역 통관 가능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잔류농약 규격기준	http://db.ffcr.or.jp/front/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https://www.ffcr.or.jp/tenka/list/post-17.html
미생물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 (품목별 미생물 기준 규정)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_kikaku/index.html
	위험 식품의 미생물 기준 규정 (후생노동성-식중독(Food Poisoning))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syokuchu/index.html

통보문 개정현황(2022년)

● 대일 육류 및 가공류 제품 수출 시 위생증명서 첨부 요건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일본으로 수출한 돼지고기 스팸 제품이 한국검역 당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상에 필수 표시 문구가 기재되지 않아 통관 거부된 사례가 발생 육류 및 가공류와 이들의 가공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 내 검역 기관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검역증)를 일본 동물검역소 및 후생노동성 산하 식품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증명서(검역증) 상에는 제품 및 거래 관련 정보와 함께 “해당 제품의 처리 또는 제조가 일본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위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식품위생법 제9조 제2항) 제품정보 : 고기의 종류, 수량과 중량, 수출자 및 수입자, 도축 전후 검사 기관 및 검사 시행직원, 도축 시설 명칭과 위치 위생증명서가 필요한 식품 : 가축(소, 말, 돼지, 양, 염소, 물소), 가공류(닭, 오리, 칠면조), 육류제품(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로스트 치킨, 훈제 쇠고기, 옥수수 쇠고기, 햄버거 스테이크, 미트볼 등), 우유 및 유제품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열처리한 돼지고기, 열처리한 가공육, 삼계탕과 유제품, 멸균한 닭고기 가공품을 수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일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수한 위생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통보일	-
시행예정일	-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TB0183782

• 가금류 제품 수출 가열조건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한국을 조류 독감 발생 국가로 분류,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가금류 제품(육류, 내장 포함)의 대한민국 수입을 불허하고 있으나 '한일 가금육 가열조건 협약'에 의해 일부 승인된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에 한해서는 수입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류 제품이더라도 삼계탕과 같이 120℃에서 4분 이상 가열하여 통조림과 동등상태의 멸균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기 조건과는 별개로 검역 통관이 가능함 • 가금육 가열조건 협약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일본 정부 농림수산성이 승인한 지정시설에서 가금육 및 가금육 제품 중심부의 온도를 70℃ 이상으로 1분 이상 열처리 방식으로 가열처리 - 사용되는 가금류는 도축 전 21일 이상 조류 인플루엔자(NAI) 등의 질병 발병이 확인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되어야 함 - 대한민국 공인 검시자가 허가된 도축 시설에서 실시한 생체검사 및 사체검사 결과 모두 가금류 감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해야 함 - 대일 수출용 가금육 및 가금육 제품을 도축할 때는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일본으로 수출할 가금육 및 가금육 제품의 전 처리(열처리 전 가공)는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함 - 대일 수출되는 가금육 및 가금육 제품에 대해서는 위생처리 공장 내용, 열처리 내용 등이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일본 농림수산성 승인된 공장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샘플 정도의 소량이라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이 있는 업체는 사전에 일본 정부의 열처리 공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시장접근이 어려운 상황
통보일	-
시행예정일	-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TB0183787

• 식품첨가제 이산화규소 검역 강화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식품첨가제로 많이 쓰이는 이산화규소(실리카)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화규소는 식품에 고결방지제로 사용되는 실리콘과 산소의 천연화합물질 혼합물로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음 - 국내에서 이산화규소를 식품 생산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일 수출에서 일본의 기준치를 정확히 파악, 위반을 사전 방지해야 함 •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용제로 사용하는 첨가물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로 평균 입경이 15μm보다 큰 경우를 말함
통보일	2022.02.03
시행예정일	-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TB0183792

2. TBT³⁾

주요 TBT 내용

-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정 성분 또는 물질을 함유한 식품의 라벨링 규정 개정
 - 개정된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제8조에 따라, 식품 라벨링 표준이 부분적으로 개정됨
 - * 버펄로 원유가 "우유" 범주에 추가됨에 따라 식품 라벨링 표기법 일부 개정
 - * 농산물 피클의 측정 방법 개정으로 식품 라벨링 표기법 일부 개정함
 - * 쌀 제품 중 오래된 세척일 또는 도정일이 표기된 미판매 쌀의 물류/판매 및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 라벨링 표준 부분 개정함
 - * 영양소와 에너지가 표준값과 동일할 때 '낮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 라벨링 표준 부분 개정함
 - * 유전자 조작 제품의 라벨링 및 알레르겐 라벨링과 관련하여 유전자 변형 카놀라가 '특정 GM 제품'에 추가되도록 하는 개정을 제안함
 - * 사계 제조공정 및 품질에 대한 표시 기준 제정에 따라 제조일자 표시를 필수 기재 정보에서 자발적 기재 정보로 변경함
- 폐기물 분리 규정이 표시된 특정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지정 제품의 필수 표시 마크 규정의 일부가 개정됨.
- 플라스틱, 코팅, 첨가제 등 식품접촉물질의 사용 가능 목록이 추가 및 수정됨
- 동물성 유기농 가공식품과 동식물성 유기농 가공식품에 관한 표준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2022년 일본 농업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5년 10월 1일부터 유기농 알코올음료의 라벨 표시 요건이 시행됨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일본 소비자청(CAA)	https://www.caa.go.jp/en/policy/food_labeling/
JAS인증 스마일케어 인증	일본 농림수산성(MAFF)	https://www.maff.go.jp/

3)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원산지 • 수입자 정보 • 원료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첨가물 • 순중량 • 유통기한 • 보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O 성분에 대한 표시 • 알레르기 정보 • 영양성분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일본어로 표기할 것 폰트의 최소 사이즈는 8포인트로 할 것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몇몇 성분의 경우 용도와 같이 기입할 것 일반명이 더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명칭으로 사용할 것 (e.g. 비타민 C - Sodium L-ascorbate) 중량이 많은 첨가물부터 내림차순으로 작성할 것	
	영양성분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에 대하여 작성할 것 산화 지방, 콜레스테롤, 당, 미네랄, 비타민과 같은 성분의 경우 작성자 임의로 추가 가능 함유량은 100g 또는 100ml 또는 1회분 또는 1포장 단위로 표기할 것	
	유통기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으로 표기할 것	
	원료정보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할 것 복합재료의 경우 괄호 표기 후, 원재료를 표기할 것	
	보관방법	보관에 적절한 보관방법에 대한 내용을 표기할 것 상온 보전 의의 유의 사항이 없을 시, 미표기 가능	
	수입자 및 제조자 정보	수입업체의 이름 및 주소,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 정보를 기재할 것	
	GMO 성분 표기	등록된 GMO 식품들인 대두, 옥수수, 감자, 유채, 목화, 알팔파, 사탕무, 파파야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원료를 함유하고 있음을 표기할 것	
	알레르기정보	새우, 계, 밀, 메밀, 달걀, 유제품, 땅콩 일본 소비자청은 다음 20개 항목에 대해서도 라벨에 표기하도록 권고 중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너트, 키위, 소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 복숭아, Yam(암), 사과, 젤라틴	
	순중량	단위는 g(또는 kg), l(또는 ml)로 기재할 것	
	원산지	일본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재료 별 원산지 정보 기재 의무 미적용	
	기타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JAS마크 표기 및 유기농 표기 가능 건강증진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담당 부처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한 후, 특정보건용 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마크의 표기와 적절한 기능성에 대한 홍보 문구 사용 가능	

* 자료 : 일본 소비자청(CAA),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USDA FAS), KATI농식품수출정보

• 커피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커피	
원재료명 (원료원산지명)/ 첨가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 인퓨전(브라질산 커피콩) - 덱스트린 - 커피콩 파우더 - 커피 오일 	
내용량	23g	
상미기한	제품 뒷면에 기재	
보존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AT 로지스틱스, 일본	
제조지(원산지)	일본	
유통기한	2022. 05	
출시일(발행일)	2021. 07. 28	
영양성분표시	에너지(칼로리)	6kcal
	단백질	0.1g
	지방	0.01g
	탄수화물	1.4g
	염화당량	0.01g

• 식물성 음료(대체 유제품)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유제품, 식물성 음료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두(캐나다 또는 미국) - 설탕 - 가용성 섬유소 - 겨기름 - 천일염 -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 점도제(셀룰로오스, 다당류 점도제) - 유화제 - 향료 												
내용량	200ml												
출시일(발행일)	2022. 03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키코만 톤요 인로(Kikkoman Tonyu Inryo)												
영양성분표시(100g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td> <td style="text-align: right;">114kcal</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백질</td> <td style="text-align: right;">3.9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td> <td style="text-align: right;">4.8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콜레스테롤</td> <td style="text-align: right;">0.0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염화당량</td> <td style="text-align: right;">0.38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칼륨</td> <td style="text-align: right;">199mg</td> </tr> </tbody> </table>	에너지	114kcal	단백질	3.9g	지방	4.8g	콜레스테롤	0.0g	염화당량	0.38g	칼륨	199mg
에너지	114kcal												
단백질	3.9g												
지방	4.8g												
콜레스테롤	0.0g												
염화당량	0.38g												
칼륨	199mg												
알레르겐 주의 성분	견과류, 대두												

인증

[선택 인증]


• JAS

- JAS인증은 일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 유통을 원활화하기 위한 인증으로, 유기식품(농축산물 및 가공식품)과 임산물, 특정 육가공품, 양식어류 등에 대한 세부 규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식품의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획득 가능함. 그러나 JAS 인증 미취득 시 ‘유기’, ‘오가닉’ 표시 및 이와 같은 의미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인증명	JAS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강제유무	권장(유기농 제품 필수)	
제출 서류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생산 일정 관리 담당자의 성명·약력 등	
비용	1,200~2,000만 원	
소요기간	8주 이상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 발급	


• HACCP

- HACCP 인증은 농축산물 및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제도임.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에서 해당 인증을 관리하고 있음. 현재 운영 중인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에서 HACCP 인증 취득여부를 등록신청업체 필수요건으로 한정하고 있음

인증명	HACCP(품질안전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일본 후생노동성 등록 인증기관	
강제유무	권장	
제출 서류	수산식품 가공시설 HACCP 인증 신청서 등 양식에 맞는 서류	
비용	기본 심사 수수료 약 106만 원, 품목, 일수마다 추가 요금 약 20만 원, 그 외 출장비	
소요기간	약 4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발급	



• JGAP

- JGAP 인증은 농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전형 농업과 연계하고자 하며 글로벌 GAP와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일본 내에서만 4,500개의 농장에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국제기준 Global GAP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됨. 인증마크를 부여받으면 안전성, 환경보전형 농업, 노동의 안전을 배려한 농장 또는 단체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인증명	JGAP 인증(Japan Good Agricultural Practice)	 登録番号 123456789
발행 및 검사기관	일본 JGAP 협회	
강제유무	권장	
제출 서류	생산자명단, 필지명단, 인증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	
비용	품목당 128,000엔 이상	
소요기간	약 4주(사전 준비기간 제외)	
절차	사전 준비 → 심사 신청 → 심사 진행(2~3일) → 판정(심사 후 4주 이내) → JGAP 인증서 발급(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

-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은 고품질 식품을 범위를 넓혀 씹거나 삼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 모두를 위한 식품 기준으로, 식감을 부드럽게 하거나 점도를 높인 식품은 유형과 정도에 따라 라벨을 구분함. 젤리, 푸딩, 죽 형태의 부드러운 식품이나 단백질 등 영양소를 보충하는 기능성 식품에 적용할 수 있음. 식품의 형태 및 용도에 따라 7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마크 색을 달리함

인증명	스마일케어(Smile Care)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일케어 인증신청서(회사명, 상품상태, 연간 생산예정량 등) 라벨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함 - 청색 라벨 : 자기 적합선언 및 상품 소개 URL - 황색 라벨 : 저지방식품에 대한 JAS 규격 인증서 사본 - 적색 라벨 : 특별용도식품 표시 허가서 사본 	
비용	없음(온라인 등록)	
소요기간	2개월 이내	
절차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신청 → 신청확인 및 서류 적부심사 → 인증마크 발급(유효기간 무기한)	

3. 통관거부사례 현황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비교

- 2022년 일본에서 확인된 한국산 식품 통관거부 사례는 총 35건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에서 확인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의 총건수는 98건으로 집계됨. 사유별로는 2022년 기준 위생 문제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남

2020~22년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사유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성분 부적합	9	4	8	21
위생	7	12	20	39
서류미비	0	0	0	0
잔류농약 검출	5	21	5	31
기타	0	5	2	7
합계	21	42	35	98

2022년 월별 통관거부 건수

- 2022년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는 한 개 문제사례에서 여러 가지 문제사유가 확인된 복합 문제사례를 포함하면 총 36건으로, 위생 21건, 성분 부적합 8건, 잔류농약 검출 5건, 기타 2건으로 집계되었음

2022년 월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건수

사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분 부적합	0	1	0	1	2	0	1	3	0	0	0	0	8
위생	5	3	0	4	0	1	1	0	0	2	4	1	21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잔류농약 검출	0	0	0	2	0	0	1	0	0	0	2	0	5
기타	0	1	0	0	1	0	0	0	0	0	0	0	2
합계	5	5	0	7	3	1	3	3	0	2	6	1	36

● 통관거부 세부 사유별 건수

사유	세부내용	건수
성분 부적합	이산화황 검출	3
	산가 부적합	1
	폴리에틸렌옥사이드 검출	1
	아세트산에틸 검출	1
	카민산알루미늄레이크 검출	1
	마비성 패독 검출	1
위생	대장균 양성	7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 검출	10
	발육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 양성	3
	장염 비브리오 검출	1
잔류농약 검출	헥사코나졸 검출	2
	테트라코나졸 검출	1
	에토펜프로스 검출	1
	테부펜피라드 검출	1
기타	성분규격 부적합 판정	2
합계		36

● 통관거부 품목

대분류	품목명	건수	비중(%)	주요 문제사유
농산물	음료	8	22.2	대장균 양성
	기타 조제 농산품	6	16.7	세균수 초과
	채소류	5	13.9	잔류농약 검출
	면류	3	8.3	미생물 검출 등
	과자류	3	8.3	이산화황 검출
	커피류	2	5.6	대장균 양성
	당류	1	2.8	성분규격 부적합
	식물성유지	1	2.8	미생물 양성
소 계		29	80.6	
수산물	연체동물	4	11.1	세균수 초과
	갑각류	2	5.6	세균수 초과
	어류	1	2.8	대장균 양성
소 계		7	19.5	
총 합계		36	100.0	

No.	제목	인삼 가공식품의 일본 수입 가능 여부 확인 어려움	해당국가	일본
			관련품목	인삼 가공식품
			유형*	수입통관
1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으로 수입되는 인삼가공제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수속이 필요하며, 사전검사제도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후생노동성에 "사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일본어로 작성하고, 성분비율표, 제조공정표, 시험성적서 등의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또한, 한국과 일본의 인삼 성분에 대한 농약기준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기 전 일본 검역소에서 인증한 한국 내 검사 기관에서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 수출용 기준에 맞추는 것이 좋음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삼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성분이나 수입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여러 루트를 거쳐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음 		
기타		<p>※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제도 활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수출국의 공적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제도 이 제도를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 일본 수입검역 단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함 (단, 수송 중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세균, 곰팡이 독소 관련 항목은 제외) <p>▶ 일본 후생노동성 지정_수출국 공적검사기관 목록</p> <p>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yunyu_kanshi/index_00019.html</p>		

No.	제목	일본어로 된 라벨 준비의 어려움	해당국가	일본
			관련품목	차류
			유형*	TBT
2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으로 수출 시,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일본어로 된 라벨을 준비해야 함 일본의 중요한 식품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기한 표시(상미 기한, 소비기한) - 영양성분 표시(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 포장된 가공식품에는 명칭,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 내용량, 기한 표시, 보관방법, 제조처, 영양성분 등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어로 된 라벨을 준비해야 하므로 통번역의 어려움과 라벨 제반 사항 준비에 애로를 겪음 		
기타		<p>※ 2022년 개정된 라벨링 규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4월, 식품표시에서 인공, 합성의 용어 사용이 전격 금지됨 - 2022년 10월, 일본 농림수산성은 채식주의자와 비건 대상 가공식품의 생산 및 표기 기준인 '채식주의자 및 비건에 적합한 가공식품'을 시행을 발표함 - 2022년 10월,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라벨링 기준을 규정한 '유기가공식품의 일본 농업 기준'이 시행됨 - 2022년 10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첨가물 및 농약 성분의 규격 기준 개정사항의 종합 공고를 발표함 		

No.			해당국가	일본
3	제목	유기농식품 라벨링 규정 준수	관련품목	유기농식품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될 《유기농식품의 일본 농업 기준》을 발표함 • 유기농식품은 식염 및 물을 제외한 원재료와 첨가물의 총량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이들의 가공품의 첨가 비율이 5% 이하인 것을 의미함 • 《유기농식품의 일본 농업 기준》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관리 요건 : 제품 내 비유기성분(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 포함) 함유량은 5%를 초과할 수 없음 - 라벨링 요건 : 명칭은 “유기농 xx” 또는 “xx(유기농)” 또는 “오가닉 xx” 또는 “xx(오가닉)”로 기재해야 함 - 전환 기간에 유기농산물 또는 이를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것은 명칭의 앞 또는 뒤에 ‘전환기간 중’으로 기재해야 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는 유기농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로, 유기농식품 관련 라벨링 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라벨링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 			
기타	<p>※ 《유기농식품의 일본 농업 기준》의 원문 규정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attach/pdf/kokujikaisei-257.pdf</p>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차 / 음료류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수입 시 검사항목, 공장 등록 사항 등
- 관세율 등 통관 검역 시 주의사항
- 성분적정성과 표기안

조사 결과

- 관세 분류 조사
 - 문의처 : 도쿄세관 및 오사카세관 각기 확인한 결과임
- 관세번호 및 관세율

부류	제품	식품규격기준	HS CODE	관세율	비고
				WTO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 음료	-	2202.99.200	16%	
				9.6%	
-	건조야채 - 무	-	0712.90.040	15%	
				9%	

- 한국은 WTO 가맹국임에 따라 WTO 협정세율이 우선 적용되며, 만약 WTO 협정세율보다 잠정관세율이 낮을 경우에는 잠정세율이 적용됨
- 세관에 상담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상정되는 관세율은 상기 표와 같음. 현재, 귀사가 수출을 예정하시는 제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세율 확정을 위해서는 수입업체 등을 통해 일본 세관에 정식 문서로 회신되는 사전교시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함

- 식품 규격 기준 분류

- 관련 검역소 등에 문의한 현재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자문 주신 귀사의 제품에 대한 식품 규격은 수국무차, 현미무차는 청량음료수로, 로스팅무차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됨

- 수입 시 식품 검사 항목

- 검역소에서는 사전 상담 시 검사항목을 알려주지 않으며, 실제 수입신고 시에 해당 성분표 및 가공 공정 등을 검토 후 검사항목을 지도하고 있어 사전에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일본에 처음 수입할 경우에는 자주검사라는 검사가 부과되어 반드시 하기 검사항목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받게 됨으로 사전에 한국 제조단계에서 검증해 보실 것을 권함
 - * 음용 시 사용되는 배수(倍數)의 물로 용해한 액이 '식품, 첨가물등의 규격기준' 중 '청량음료수의 성분규격' 개별 규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비소, 납 및 카드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됨. 또한 주석의 함유량은 150.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됨
 - * 유산균을 가하지 않은 청량음료수는 대장균군이 음성이고 세균수가 검체 1g 당 3,000 이하 이어야 함
 - * 검역소에서는 청량음료수 제품의 경우 통상 아래와 같은 검사항목을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 혼탁, 침전물, 비소, 납, 대장균군, 수크랄로스 등

- 수입 시 제출서류

- 인보이스, 패키리스트, 원재료 배합표 및 제조공정표 및 공인검사기관 검사성적서 등
- 공인검사기관 검사성적서(일본후생성이 인증한 한국검사기관 한정, 일본검사기관 판단하에 검사성적서상 검사항목 중 필수검사항목이 없을 경우 추가검사 진행, 대장균 등 세균류 검사항목은 일본에서 진행해야 함)
- 제품 유형으로 판단 시 일본 도착 후 검역소에서 아플라톡신 검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사전에 한국 내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통해 위반이 되지 않도록 제품관리 확인이 필요
- 제품에 따라 추가서류 및 서류의 원본이 필요할 경우가 있음
 - * 모든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함

• 리사이클 마크 표기

- 용기가 병인 경우 리사이클 마크는 불요하며, 뚜껑이 플라스틱인 경우 마크 표기가 필요함
- 플라스틱 마크의 한 변의 높이 및 종이 마크의 높이는 6m 이상이어야 함

	
<p>제품 포장 플라스틱 경우</p>	<p>제품 외장 종이일 경우</p>

• 검역 통관 시 주의사항

- 성분배합표 및 가공공정에 따라 일본 검역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첫 회 수입 시 및 년 1회 빈도로 식품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후에 통관이 가능하므로, 대량으로 수출하기 전 사전에 소량의 샘플 통관을 실시함으로 일본 통관 가능여부를 판정한 후 본 수출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 제품의 검사 실시 유무 및 검사 항목 등에 대한 확인은 일본수출 선적 일정이 결정된 후 도착항 관할 검역소에「사전심사제도」(화물도착 7일 전부터 신청 가능)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함
- 공장 사전 등록제 : 일본의 경우 공장 사전등록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어, 수입 시 검역에 의해 수입 가능 여부 판단

자문 결론

- 향후 수출이 결정되어 라벨링을 포함한 패키지디자인 제작이 필요하신 경우 대일 수출 제품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전문기관이 자문 예정
 - 현지 수입업체가 결정되시면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현지화 사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음. 식품검사 시 비용 지원, 패키지 포장디자인, 현지 마케팅 조사 등의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음. 단, 반드시 수입업체에서 신청해주셔야 하며 도쿄지사로 직접 문의토록 요청함
- ※ aT도쿄지사 현지화 사업 안내 사이트(<https://www.atcenter.or.jp/katis>)

2. 치킨 너겟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가금육의 일본 식품규격
- 가금육의 검역조건 및 방법
- 수출 시 검역·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수출제품 등록 및 수출 전반사항

자문결과

- 금번에 상담하신 닭고기 너겟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일 가열가금육 협약 조건에 의해 제조공장이 일본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사전에 위생검역 상태를 승인받아 일본 정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함
- 신청 승인 절차
 - 일본 정부에 제출할 공장 도면, 제조공정도 등의 기본 서류(일본어 또는 영문)를 구비하여 한국 검역 검사 본부에 신청해야 함
 - 검역 검사 본부에서는 기본 구비 서류 검토 후 일본 정부에 등록 요청
 - 일본 정부 농림수산성에서는 해당 서류 검토 후 검역관을 한국 공장에 파견하여 현장 확인 후 승인 여부 결정. 단, 코로나로 인해 파견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별도 방법으로 검토할 수도 있음
 - 승인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급적 신속히 서류 준비 등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함
- 통관 검역 시 검토 사항
 - 금번과 같은 축산제품의 경우 통관 시 일본 동물 검역소에 해당 식품의 동물검역대상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한국 축산검역당국에서 발행한 동물검역증이 필요함
 - 후생성 검역소에도 동물 검역소에 제출한 동물검역증(위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함
 - 포지티브리스트(PLS) 제도에 의해 식품 중에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 사료 첨가물 및 동물 의약품 등의 성분이 잔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착색료, 발색제(아초산염) 등의 식품 첨가물은 사용 불가함으로 주의 요망
 - 실제 수출이 확정되었을 경우 제품의 성분적정성 판단 및 수입자 표기 등에 대한 서비스를 무료 지원하는 제도의 aT 현지화 사업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람

아시아

중국 CHINA

2022년 한눈에 보이는
중국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042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052
03. 비관세 장벽 현황	055
04. 수출 애로사항	067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070



1. 시장개요

시장 규모

- 2021년 전체 식품시장 규모는 1조 1,005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492조 21억 원)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함
 -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4,319억 9,000만 달러(한화 약 585조 6,488억 원)로 전년 대비 12.0% 증가하였으며 전체 식품 시장의 39.3% 차지
 - * 낙농품 시장 규모가 1,295억 달러(한화 약 175조 6,320억 원)로 전체 시장의 11.8%를 차지하며, 신선식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6,685억 5,000만 달러(한화 약 906조 3,532억 원)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였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60.7% 차지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시장이 가장 높은 비중(19.6%) 차지하며, 전년 대비 11.5% 증가함. 뒤이어 편의식품(10.5%), 스낵류(10.4%), 스프레드 및 당류(10.3%) 순

식품 시장 규모(2017~2021)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693,420.0	797,210.0	856,890.0	981,540.0	1,100,540.0	100.0	12.1
신선식품	271,220.0	312,360.0	336,870.0	385,620.0	431,990.0	39.3	12.0
- 낙농품	83,030.0	94,980.0	102,100.0	116,200.0	129,500.0	11.8	11.4
- 채소류	81,190.0	93,430.0	100,400.0	114,700.0	128,200.0	11.6	11.8
- 과일 및 견과류	57,550.0	66,240.0	71,210.0	81,400.0	90,970.0	8.3	11.8
- 육류	36,960.0	43,410.0	47,860.0	55,920.0	63,970.0	5.8	14.4
- 유지류	12,490.0	14,300.0	15,300.0	17,400.0	19,350.0	1.8	11.2
가공식품	422,200.0	484,850.0	520,020.0	595,920.0	668,550.0	60.7	12.2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37,600.0	158,000.0	169,500.0	193,300.0	215,500.0	19.6	11.5
- 편의식품	70,740.0	82,100.0	88,970.0	102,500.0	115,500.0	10.5	12.7
- 스낵류	71,590.0	81,940.0	87,230.0	100,900.0	114,700.0	10.4	13.7
- 스프레드 및 당류	73,460.0	83,550.0	89,060.0	101,700.0	113,800.0	10.3	11.9
- 영유아용 식품	46,210.0	53,320.0	57,460.0	65,840.0	73,760.0	6.7	12.0
- 소스 및 향신료	22,600.0	25,940.0	27,800.0	31,680.0	35,290.0	3.2	11.4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14억 5,0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0.7% 증가함
 - 연령대별 인구수는 균등한 편으로,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도 전체 인구의 약 24% 수준임
- 2021년 가구 수는 4억 9천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5,020달러(한화 약 681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5.8% 증가함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890달러(한화 약 121만 원)로 약 17.7%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5.4% 증가한 수치임
- 2021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758.02달러(한화 약 102만 7,647원)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으며, 가공식품 소비액이 신선식품 대비 약 1.5배 수준임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297.60달러(한화 약 40만 3,456원)로, 전체 식품 부문 지출의 39.3% 차지함
 - * 신선식품 중에서는 채소류와 낙농품 소비액이 각각 89.23달러(한화 약 12만 969원)와 88.32달러(한화 약 11만 9,735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가공식품 소비액은 1인당 연간 460.42달러(한화 약 62억 4,191원) 규모로 식품 지출의 60.7% 차지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 148.40달러(한화 약 20만 1,186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뒤이어 편의식품 79.56달러(한화 약 10만 7,859원), 스낵류 78.98달러(한화 약 10만 7,073원) 수준

1인당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485.46	555.54	594.56	678.45	758.02	100.0	11.7
신선식품	189.89	217.67	233.75	266.55	297.60	39.3	11.6
- 채소류	58.13	66.19	70.83	80.30	89.23	11.8	11.1
- 낙농품	56.84	65.10	69.68	79.31	88.32	11.7	11.4
- 과일 및 견과류	40.29	46.16	49.41	56.26	62.66	8.3	11.4
- 육류	25.88	30.25	33.21	38.65	44.06	5.8	14.0
- 유지류	8.75	9.97	10.62	12.03	13.33	1.8	10.8
가공식품	295.57	337.87	360.81	411.90	460.42	60.7	11.8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96.32	110.10	117.60	133.60	148.40	19.6	11.1
- 편의식품	49.53	57.21	61.73	70.87	79.56	10.5	12.3
- 스낵류	50.12	57.10	60.52	69.76	78.98	10.4	13.2
- 스프레드 및 당류	51.43	58.23	61.80	70.27	78.36	10.3	11.5
- 영유아용 식품	32.35	37.16	39.87	45.51	50.81	6.7	11.6
- 소스 및 향신료	15.82	18.07	19.29	21.89	24.31	3.2	11.1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 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749억 9,042만 7,000달러(한화 약 11조 8,060억 원)로, 2017년 이후 연평균 4.6%의 증가세
 - 주요 수출국은 홍콩(11.6%), 일본(9.8%), 미국(9.5%)이며, 對미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3% 증가함
 - 對한국 수출액은 42억 9,989만 2,000달러(한화 약 5조 8,294억 원)로 전년 대비 16.6% 증가하였으며, 수출 비중은 5.7%를 차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62,570,355	65,544,375	66,540,883	66,297,113	74,990,427	100.0	13.1	4.6	
1	홍콩	8,410,506	8,327,873	8,171,667	7,440,182	8,708,414	11.6	17.0	0.9
2	일본	6,997,977	7,354,029	7,016,350	6,791,339	7,353,268	9.8	8.3	1.2
3	미국	5,766,699	6,280,992	5,214,408	5,921,942	7,122,542	9.5	20.3	5.4
4	베트남	4,493,064	5,080,509	5,167,305	4,987,166	4,903,914	6.5	△1.7	2.2
5	한국	3,634,119	3,905,037	3,682,982	3,688,600	4,299,892	5.7	16.6	4.3
6	태국	2,359,114	2,531,564	2,881,904	2,977,596	3,337,226	4.5	12.1	9.1
7	말레이시아	1,900,751	2,006,243	2,546,873	2,782,599	3,007,796	4.0	8.1	12.2
8	네덜란드	1,891,457	1,917,839	1,987,453	2,163,049	2,803,850	3.7	29.6	10.3
9	인도네시아	2,244,924	2,218,976	2,482,725	2,362,294	2,522,429	3.4	6.8	3.0
10	독일	1,963,321	1,949,713	1,928,225	1,930,813	2,271,601	3.0	17.6	3.7

* 출처: Global Trade Atlas

- 수출 상위품목은 핵산과 이들의 염(기타)(4.7%), 조제품 기타(3.1%), 마늘(기타)(2.7%),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2.5%) 순으로 집계됨
 - 핵산과 이들의 염(기타) 품목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1.5% 증가한 35억 2,053만 4,000달러(한화 약 4조 7,728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뒤이어 조제품 기타 품목의 수출액이 23억 5,195만 1,000달러(한화 약 3조 1,885억 원)로 전년 대비 19.7% 증가, 마늘(기타) 품목의 수출액이 20억 3,337만 2,000달러(한화 약 2조 7,566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1.5% 감소한 수치로 확인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62,570,355	65,544,375	66,540,883	66,297,113	74,990,427	100.0	13.1	4.6	
1	핵산과 이들의 염, 그 외 헤테로고리 화합물 (기타) *혼합조제식료품	1,948,754	2,225,462	2,269,322	2,676,550	3,520,534	4.7	31.5	15.9
2	조제품 기타	1,242,621	1,533,545	1,758,847	1,964,518	2,351,951	3.1	19.7	17.3
3	마늘 (기타)	2,187,729	1,411,283	1,991,170	2,063,591	2,033,372	2.7	△1.5	△1.8
4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925,176	1,039,286	1,122,192	1,396,045	1,866,805	2.5	33.7	19.2
5	채소류 조제품 (병동하지 않은 /조제 및 보존처리 /식초나 초산 처리한 것 외)	1,495,140	1,552,147	1,511,227	1,379,425	1,570,561	2.1	13.9	1.2
6	산소관능아미노 화합물 *혼합조제식료품	840,867	990,815	945,862	1,062,501	1,485,408	2.0	39.8	15.3
7	사과 (신선)	1,456,857	1,298,895	1,246,453	1,449,581	1,431,943	1.9	△1.2	△0.4
8	식물성액즙과 엑스 (기타)	798,868	912,306	963,951	1,039,531	1,404,829	1.9	35.1	15.2
9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기타) *기타 식물성 유지	258,565	394,842	521,071	751,878	1,307,520	1.7	73.9	50.0
10	구연산 *혼합조제식료품	776,238	706,672	603,883	570,274	1,082,895	1.4	89.9	8.7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식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1년 농식품 수입액은 1,936억 3,614만 7,000달러(한화 약 262조 5,125억 원)로 전년 대비 30.0%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6.0%로 집계됨

-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22.9%), 미국(18.3%), 태국(5.7%) 등

* 브라질산 농식품 수입액은 442억 9,241만 3,000달러(한화 약 60조 472억 원)로 전년 대비 28.9% 증가하였으며, 미국산 농식품의 수입액은 354억 5,632만 7,000달러(한화 약 48조 681억 원)로 전년 대비 72.4% 증가

* 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09억 9,413만 달러(한화 약 14조 9,047억 원)로 전년 대비 54.7%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7.4% 증가한 수치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06,797,862	113,638,327	124,000,230	148,958,119	193,636,147	100.0	30.0	16.0
1 브라질	24,175,025	32,811,909	28,727,089	34,359,443	44,292,413	22.9	28.9	16.3
2 미국	20,597,174	12,984,277	11,812,407	20,570,594	35,456,327	18.3	72.4	14.5
3 태국	4,175,598	5,155,522	6,236,061	7,108,065	10,994,130	5.7	54.7	27.4
4 뉴질랜드	5,199,175	6,230,435	7,981,495	8,122,968	10,303,751	5.3	26.8	18.6
5 인도네시아	4,286,700	4,574,142	5,118,689	5,045,770	8,656,728	4.5	71.6	19.2
6 캐나다	5,626,535	6,705,550	5,921,990	6,298,279	7,522,408	3.9	19.4	7.5
7 호주	5,534,996	6,083,421	7,342,570	7,160,456	6,712,095	3.5	△6.3	4.9
8 프랑스	3,498,266	3,761,108	3,850,359	4,589,614	6,355,263	3.3	38.5	16.1
9 아르헨티나	3,421,208	1,821,617	6,138,458	5,922,182	6,212,304	3.2	4.9	16.1
10 우크라이나	1,133,009	1,376,683	2,449,165	3,677,773	5,237,416	2.7	42.4	46.6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대두 기타(27.7%), 뼈 없는 냉동 소고기(5.5%), 옥수수(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외)(4.1%), 냉동 돼지고기(3.7%) 등
 - 대두 기타 품목의 수입액 전년 대비 35.5% 증가한 535억 9,178만 2,000달러(한화 약 72조 6,544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뼈 없는 냉동 소고기의 수입액이 106억 3,061만 3,000달러(한화 약 14조 4,119억 원)로 전년 대비 18.1% 증가한 반면, 냉동 돼지고기 수입액은 전년 대비 22.8% 감소한 72억 4,677만 6,000달러(한화 약 9조 8,245억 원)로 집계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06,797,862	113,638,327	124,000,230	148,958,119	193,636,147	100.0	30.0	16.0
1 대두 기타 (기타)	39,738,819	38,088,355	35,419,584	39,546,853	53,591,782	27.7	35.5	7.8
2 쇠고기 (냉동/뼈 없는것)	2,703,217	4,240,401	7,195,690	9,004,056	10,630,613	5.5	18.1	40.8
3 옥수수 (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이외 기타)	600,026	782,129	1,056,879	2,486,917	7,986,164	4.1	221.1	91.0
4 돼지고기 (냉동/기타/ 기타)	1,521,389	1,511,588	3,622,074	9,386,716	7,246,776	3.7	△22.8	47.7
5 팜유와 그 분획물 (조유, 팜 올레인, 팜 스테아린 외)	3,495,277	3,392,760	4,082,424	4,113,979	5,945,817	3.1	44.5	14.2
6 유아용 기타 조제품	4,072,941	4,888,510	5,330,787	5,204,051	4,453,701	2.3	△14.4	2.3
7 두리안 (산선)	552,124	1,095,122	1,603,799	2,301,769	4,120,826	2.1	79.0	65.3
8 조제품 기타	1,823,691	2,715,957	3,125,061	3,823,684	4,086,406	2.1	6.9	22.3
9 보리 기타 (기타)	1,816,291	1,690,391	1,561,311	1,879,891	3,551,417	1.8	88.9	18.3
10 닭 (기타 설육/냉동)	1,025,892	1,133,549	1,967,445	3,429,340	3,460,181	1.8	0.9	35.5

*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현황

- 2021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對중국 수출액 13억 3,960만 8,100달러(한화 약 1조 8,161억 원)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 85.9%로 가장 큰 비중 차지, 뒤이어 축산물 9.4%, 임산물 4.7% 순
 - * 농산물 수출액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억 5,085만 6,200달러(한화 약 1조 5,602억 원)로 2017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1.5%로 증가세
 - * 축산물 수출액 1억 2,608만 6,900달러(한화 약 1,709억 원)로 전년 대비 10.0% 증가, 임산물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으로 2021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6% 감소한 6,266만 5,000달러(한화 약 850억 원)로 집계

한국의 對중국 수출 규모(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986,373.2	1,110,888.1	1,105,983.1	1,138,097.1	1,339,608.1	100.0	17.7	8.0
농산물	743,951.3	823,285.5	878,927.8	953,329.1	1,150,856.2	85.9	20.7	11.5
축산물	132,633.1	147,439.6	141,271.7	114,643	126,086.9	9.4	10.0	△1.3
임산물	109,788.8	140,163	85,783.6	70,125	62,665	4.7	△10.6	△13.1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라면 수출액은 1억 4,989만 8,400달러(한화 약 2,032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11.2%) 차지, 뒤이어 조제품 기타(8.2%), 자당(6.4%), 기타 음료(5.5%), 조제분유(5.4%) 순
 - * 상위 5개 품목의 수출 규모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그중 조제품 기타(33.5%)와 기타 음료(37.2%)가 전년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임

한국의 對중국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986,373.2	1,110,888.1	1,105,983.1	1,138,097.1	1,339,608.1	100.0	17.7	8.0
1 라면	103,184.4	93,290.2	124,434.5	149,096.1	149,898.4	11.2	0.5	9.8
2 조제품 기타	35,999.5	55,073.5	39,738.1	82,309.5	109,898.5	8.2	33.5	32.2
3 자당	91,757.0	80,680.7	69,697.9	81,875.8	85,086.5	6.4	3.9	△1.9
4 기타 음료	33,037.9	37,006.7	50,202.9	53,511.4	73,391.1	5.5	37.2	22.1
5 조제분유	61,131.2	78,994.6	73,774.2	62,049.8	72,889.0	5.4	17.5	4.5

*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생산기업의 사전등록 필수임. 또한, 중국에는 부가가치세 개념의 증치세가 별도로 존재함. 중국은 식품의 통관 및 검역 과정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GB)을 꼼꼼하게 숙지해야 함
- 중국 국가표준, 검역 요구사항, 포장 및 라벨링 등 사전에 관련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함
 -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원재료,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는 중국 심의 기준에 부합함이 증명되어야 함
 - 주표시면, 전면 표기 내용, 과대광고 및 기능성광고 문구 기준 준수가 필요함
 - * 또한 수입 예포장식품 및 식품첨가제의 중문 라벨 필수, 중문 라벨이나 설명서가 없거나 규정 미준수 시 수입 불가
 - 수출입업체는 비안 등록시스템(AQSIA)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 중국 세관으로부터 통관요유부호 발급 필요, 위반 시 벌금 징수하므로 유의해야 함
 - * 영유아 조제분유, 유제품, 육류, 수산물, 제비집 등 품목은 한국 생산공장이 중국 인증인가 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수입신고 가능
-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신고가격에 따른 관세 및 증치세를 납부함
 - 수출화물의 확인 및 대리인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을 신청함
 - *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통관신고서, 선하증권, 검사검역신고서, 검사검역 신고 위탁서, 계약서, 화물상환서, 수입영수증, 패킹리스트, 수입식품의 중국어 라벨, 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 수입대리업자 승낙서, 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건강기능식품) 등이 있음
- 이후 화물검사 및 검역 절차를 진행하며, 위생증명서를 발급함
 - 해관에 수출입 화물 등록 시 해관 통관과 검역 자격을 동시에 취득 가능함
 - 세관은 수출입 화물과 제출한 서류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행위의 유무 등 합법성을 검토함
 - * 라벨 기재내용 확인하는 라벨 검역이나 대장균, 균락총수, 중금속, 농약잔류량, 식품첨가제 등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따라 무작위 진행하는 실험실 검역 등이 있음

- 검역 합격 후, 지방 해관에서 입경화물검역검역증명(이하 위생증)을 발급함
-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 식품위생법규정에 따라 수입 식품 등의 통관 수속 전에 중국수출입상품검사 기구에서 위생감독 및 검역(CIQ 검사)을 진행함. 합격 시 출입국검역검역위생증서를 발급하며, 세관은 이 증서를 근거로 수입을 허가함
 - * 적용 대상 품목 : 비알코올 음료(설탕·기타 감미료·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 포함)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과즙음료 및 인삼원료 음료로 비가열 방법으로 제조한 음료)로 녹차, 우롱차, 액상차 등을 포함

- 수입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관세가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되어 납부되면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

검역제도

- 식품 수출 전 반드시 증문 라벨을 신청해야 하며, 수출 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증문 라벨은 중국 국내에서 신청해야 하며, 증문 라벨에는 품명, 원산지, 성분, 생산 일자, 품질보증기간, 사용방법, 중국 국내 판매업체 정보를 기재해야 함
- 중국 지방해관 지정 검역창고에 화물이 입고되면 담당 검역관이 검역 실시
 - 국가표준에서 정한 항목 및 부정기 리스크 검사항목에 따라 진행, 실험실 검역률은 통상 5~10% 수준

구분	내용	비고
라벨검역	라벨 기재 내용 확인	인쇄상태, 글자 크기, 부착 위치 등
실험실 검역	대장균군, 균락총수, 중금속, 농약 잔류량, 식품첨가제 등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따라 진행 (무작위 진행)

-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물은 검역대상 물품에 해당되어 도착 후 식물검역이 요구됨
 -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용 물품의 경우 사전 수입허가가 요구되며, 한국산 식물의 경우 소나무의 묘목 및 접수의 중국 수입은 금지되어 있음
- 공식적으로 對중국 수출이 가능한 신선 농산물은 9개 품목 97종이며, 이 외 과실류·과채류·소나무묘(접수 포함) 등은 수출이 불가능함
 - 중국은 2003년 3월부터 시행된 수입위험분석 관리제도에 따라 국산 생과실, 과채류, 재식용 식물 등을 수입금지품으로 지정함. 따라서 국산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에 수입 허용 요청이 필요함
 - 수출 가능 품목 중에서도 일부 품목의 경우 양국 간 수출검역요건에 따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이 가능하므로 주의 필요

- 중국으로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은 검역대상 물품에 해당되어 도착 후 동물검역이 요구
 - 수입축산물 검역은 다음과 같음
 - 1) 선박 회사 및 항공사 또는 대리인은 수입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제출
 - 2) 선상, 기장에서 검사를 진행
 - 3) 검역시행장까지의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 후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운송
 - 4) 컨테이너 개봉 여부, 관능검사, 현물검사 등을 진행
 - 5) 검역신청 시 검역신청서, B/L, 상대국 검역 증명서 기타 참고서류(수입신고 대상은 축산물 수입신고서 작성 제출)를 제출
 - 6)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지역 경유 여부 확인 역학조사 시행
 - 7) 필요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데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및 잔류물질검사 실시
 - 8) 판정 합격 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판정 불합격 시 반송, 소각 또는 매몰

1. 수출 가능 품목

협상타결 품목

• 농산물

- 포도, 쌀, 파프리카

* 포도의 경우,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예찰 및 재배지검사 등 중국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쌀의 경우,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고시 제2016-1호)에 따라 가공공장 등록, 훈증 소독 등 중국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파프리카의 경우,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재배온실·선과장·저온창고 및 수출업체등록, GAP(농산물우수관리) 및 IPM(병해충종합관리) 이행 등 중국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축산물

- 삼계탕*, 유제품, 계란분말, 보조사료, 수생동물용 배합사료, 오리털

* 한국의 HPAI 발생지역산 삼계탕은 수입 금지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옥수수, 녹두, 콩, 커피

- 과실류 : 밤(* 꽃감 수출 불가)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양파, 생강, 브로콜리, 수삼

- 종자류 : 콩, 잠두콩, 가지, 갓, 고추, 근대, 꽃양배추, 당근, 들깨, 멜론, 무, 박, 배추, 백경채, 부추, 브로콜리, 삼엽채, 상추, 수박, 싹갓, 시금치, 아욱,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청경채, 치커리, 콜라비, 토마토, 파, 호박, 겨자, 담배

* 종자류의 경우 사전에 수입자가 중국 검역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서(Import permit)에 해당하는 '국(경) 외 도입 농업종묘 검역비준서' 발급받고 수출자는 수입허가서 사본을 수출검역 신청 시 첨부 제출 필요

* 토마토(Solanum spp.), 고추 속(Capsicum spp.) 종자는 중국 WTO/SPS통보문에 따라 해당 수입 요건에 충족해야 함(수출지원과-3938호('21.10.21.) 참조)

- 버섯류 : 팽이, 새송이(큰 느타리), Agaricus속

- 절화류 : 심비디움, 장미, 백합, 국화, 거베라, 글라디올러스, 금어초, 튤립, 갈라, 카네이션, 해바라기꽃, 스타치스, 아이리스, 장미, 안개초, 덴드로비움

- 화훼묘: 덴드로비움·심비디움·호접란(묘·분화), 선인장(접목선인장), 칼란 코에묘·삽수, 미모사묘, 맨드라미묘, 백합구근

* 심비디움묘의 경우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재배포장 등록, 중국 측의 우려병해충 무감염 증명 부기 등

- 묘목류: 동백나무, 단풍나무, 모과나무, 목백일홍, 소사나무, 석류나무, 신수유나무, 애기사과나무, 주목나무, 철쭉나무, 피라칸사나무, 향나무(진백) 춘란(*Cymbidium forrestii*) 등

* 재식용 묘목의 경우 사전에 중국에서 수입자가 아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국에서 수출검역신청 시 동 증명서 사본(번역본)을 제출해야 중국 측 검역요건에 적합한 수출식품 검역증명서 발급 가능

* 재배매체가 없는 경우 : 국가 농업(임업) 부 또는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농업(임업) 청(국)이 발급하는 '국(경) 외 도입 농업종묘 검역비준서(검역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 재배매체가 있는 경우 : 국경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해관총서(구, 질검총국) 지역해관에서 발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검역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 기타 : 쌀가루, 밀가루, 찹쌀가루, 대두분말, 단풍나무각재, 소나무각재

* 2022.2.1.일부터 소나무재선충발생국가산 소나무(원목, 제재목) 수입검역요구 시행함에 따라 해당 수입요건(소독처리기준 등)을 충족해야 함(수출지원과-19호(22.1.3.) 참조

● 축산물

- 사료첨가제(L-트립토판, L-아르기닌, 포도당), 어유 추출물, 오징어 간 분말, 헤파린, 소가죽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묘목류 : 소나무묘(*Pinus densiflora*), 곰솔묘(*Pinus thunbergii*)

- 기타 : 꽃감, 건곤드레, 건대추침, 냉동딸기, 건조감귤, 냉동홍시, 수수가루, 수수, 누룩, 단호박, 잣(식용), 대두, 보리, 맥아, 참깨, 메밀, 홍화씨, 달맞이꽃씨 등

- 단감, 감귤, 참외, 딸기, 토마토 품목은 중국에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 흙 부착된 단풍나무 등 조경수 수목

● 축산물

- 가금육, 열처리 가금육, 열처리 돈육, 반려동물사료, 젤라틴, 벌꿀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롱마트(중국)
업체 유형	도매업체
담당자명	Ms. Kim

- 가공식품(과자, 라면, 음료류, 커피, 주류, 우유, 냉동식품 등)이 인기 있으며, 한국 신선 농산물은 품질과 품목 종류가 중국에서 경쟁력이 크지 않고 가격이 높은 편임
- 중국 내에서 일부 수입업체만 채소 품목의 수입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과일에 대한 수입자격을 갖춘 기업은 거의 없어서, 한국 신선 품목에 대한 수입이 쉽지 않음
- 한국 인삼류에 대한 현지 수요가 높으나 수입량이 많지 않고 수입도 쉽지 않은 편이고, 작년에 한국 꽃감에 대한 수요도 있었는 데 수입량이 따라가지 못함
- 수입 냉동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으나 통관 금지 품목이라 정상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고 있음
- 중국으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증과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한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문량이 크지 않을 때 한국 기업 측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해주지 않을 때가 많고, 수입허가증은 농산물 수입 자격증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중국 내에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가 몇 되지 않아서 한국산 농산물 수입에 일부 어려움이 있음

03 비관세 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중국은 2010년 중국 위생부가 제정한 식품안전국가관리방법을 폐지하고 2019년부터 식품안전표준관리방법으로 개정함. 수입식품은 국가표준 미지정 상태이더라도 식품안전법 및 국무원 관련부처에서 제정한 관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중국은 2003년 2월 수입위험분석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별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함. 한국의 생과일과 채소류 품목 중 일부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단감, 감귤, 참외, 딸기, 토마토, 버섯 등의 품목은 한국 정부의 수출허용 요청에 따라 PRA가 진행 중임
 - 파프리카(피망)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수출이 시작됨
- 중국해관총서는 코로나-19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콜드체인 푸드에 대한 검역을 강화함
 - 2020년 9월 육류, 수산물, 유제품, 냉동과일 기업을 상대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음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식품과 접촉하는 용지와 판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 이에 부합하는 용지와 판지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2021년 7월, 종이, 판지, 플라스틱 및 수지 관련 19가지 식품 접촉 물질을 승인함
- 식품 가공용 기계와 식품에 직접 접촉되는 식품 포장용 기계와 관련한 안전과 위생에 대해 규정함
 - 식품 포장용 산화물계 투명 배리어 플라스틱 적층 필름 및 백 국가표준이 시행을 공고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SDT DATA (국가 농업 및 식품 표준 공공 서비스 플랫폼)	https://www.sdtdata.com/fx/fmoa/tsLibList
식품 첨가물 허용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http://www.nhc.gov.cn/sps/s3593/201412/d9a9f04bc35f42ecac0600e0360f8c89.shtml

통보문 개정현황(2022년)

- 개정사항 없음

2. TBT

주요 TBT 내용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선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통칙 개정안을 2021년 10월에 마련하여 의견수렴을 개시함. 개정안은 라벨링 표준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필수 라벨링 표시 내용 및 경고 문구를 추가함
 -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전 포장식품 영양 라벨에만 적용되며, 건강기능식품 및 사전 포장된 특수 식이용 식품의 영양 라벨 표시에는 미적용됨
- 중국은 음료 성분 및 라벨 표시 요건을 개정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음료》를 발표하고 2022년 12월부터 시행함
 - 금속 캔에 들어있는 주스류 및 음료의 아연, 구리, 철의 합계는 20mg/l 이하이어야 하며, 콩 또는 단백질이 함유된 음료는 우레아제 시험결과가 음성이어야 함
 - 수입 음료 제품의 라벨에는 중국 법규 및 표준에 적합한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함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공업정보화부는 공동으로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 규제' 국가표준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였음
 - 신규 표준은 식품 및 화장품의 포장 공간비율, 포장 횟수, 포장 원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제과, 주류, 차,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품목별로 포장 규제사항을 명시함

- 중국 해관총서는 2020년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의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품목 범위 확대, 수입식품에 대한 심사 및 평가 다양화, 수입 건강식품 및 특수군 식품에 대한 라벨 스티커 부착 불가 등의 강화된 규정이 포함됨
 - 기존의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수출입 벌꿀 검사검역 관리방법,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입 육류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식품 생산업체 준비관리규정은 통합 폐지됨 수출입 벌꿀, 수산물, 육류제품, 유제품의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이에 따라 정부관리 대상 식품 품목이 18개 품목으로 증가했으며 해당 품목은 수출 정부의 추천 등록을 통해 해외생산업체 등록이 가능함. 그 외 모든 수입식품은 민간관리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며 수출 기업 또는 대리인이 2021년 11월 1일부터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직접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 정부관리 대상 품목(18개 품목): 케이스,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유류,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 식품,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 및 탈수채소 및 마른 콩, 조미료, 견과류와 씨류, 건조과일, 로스팅하지 않은 콩과 코코아, 특수식이식품, 건강기능식품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http://www.nhc.gov.cn/wjw/aqzb/201106/53c53d99b71940c7a74830f86b46f8db.shtml
선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통치 (기준규정/ GB28050-2011)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http://www.nhc.gov.cn/wjw/aqzb/201306/17e7d74af39c4b279d8ef26c4a6a6a04.shtml
AQSIQ 인증	AQSIQ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https://www.aqsiq.net/application/food-register

주요 품목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필수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명칭 • 배합원료표 • 내용량 및 규격 •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체 또는 중개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생산일자 및 보존기한 • 저장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생산허가증 번호 • 제품 표준 코드 및 기타 표시가 필요한 사항
(권장항목)	로트번호	섭취 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표준 중국어(병음 표기 가능)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사용 시 해당 중국어와 대응관계가 있어야 함	
	식품명칭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 명칭을 사용하며, 없는 경우 식품의 속성을 반영하는 명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함	
		동식물을 원료로 생물의 개체, 기관, 조직 등 특정 형태를 모방한 경우 인조, 모방 등의 문자를 붙여야 함	
	배합원료표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함	
		첨가량을 내림차순으로 나열해야 함	
	내용량 및 규격	2% 이하 배합원료는 제외함	
		중국국가표준(GB)이 규정하는 식품첨가제 통용 명칭을 표시해야 함	
		제조 시 사용되는 공정수와 식용 가능한 포장재를 표시해야 함	
	날짜 표시	법적 계량 단위((밀리) 리터, (킬로) 그램)를 사용해야 함	
		내용량에 따른 글자 부호 최소 높이(2~6mm)를 준수해야 함	
별도의 스티커 라벨 부착은 금지함			
생산일자와 품질 보증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함			
글자 크기	알코올함량 10% 이상의 주류, 식초, 식염, 고체설탕은 표기 면제가 가능함		
	년, 월, 일 또는 국가표준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함		
날짜 표시	1.8mm 이상(35cm ² 이상 면적 기준)으로 표기해야 함		
	상표를 제외한 외국어는 한자보다 작아야 함		

* 자료 :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

• 차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차(클래식 밀크티향 음료)		
내용량	370g		
출시일(발행일)	2022년 1월 27일		
보존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바이 펜 르 푸드(Bai Fen Le Food)		
제조지(원산지)	중국		
알레르겐 주의	우유, 글루텐 함유 시리얼		
원재료명	식수, 백설탕, 탈지분유, 식물성 크리머, 연유, 귀리, 인스턴트 차 파우더, 식품 첨가제(지방산, 설탕지방산에스테르, 잔탄검, 사이클라민산나트륨, 수크랄로스), 인공 향료		
영양성분표	항목	100g당(g)	영양소 참고치%
	에너지	152J	2%
	단백질	0.60g	1%
	지방	1g	2%
	탄수화물	6g	2%
	나트륨	30mg	2%

• 육류 가공 스낵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육류 가공 스낵		
내용량	100g		
원재료	- 기름기가 적은 돼지고기 - 치킨 - 백설탕 - 트레할로오스 - 달걀 - 피시 소스 - 글루탐산나트륨 - 간 백후추 - 식품 첨가제 (글리세린, 젖산나트륨, 에칠말톨, 모나스쿠스붉은색색소, d-에리토브산나트륨)		
알레르기 주의 성분	달걀, 생선		
보관방법	상온 진열		
제조일자	2022. 06. 29		
제조사	진진 푸드(Jin Jin Food)		
제조지	중국		
영양성분표	항목	100g당	NRV%
	에너지	1578KJ	19%
	단백질	30.90g	52%
	지방	10g	18%
	탄수화물	38.40g	13%
	나트륨	1740mg	87%

인증

[필수 인증]

• SC 인증

- 식품생산허가증을 말하며, 생산설비 등 품질과 안전관리가 보증된 식품 업체에 한해 생산을 허가한다는 인증임. 중국 내에 식품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 적용됨. 지난 2018년 QS 인증에서 SC 인증으로 변경되었음

인증명	SC 인증(Sheng Chan)	
발행 및 검사기관	식품약품감독관리국, SAMR(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강제 유무	필수	
제출 서류	식품생산허가신청서, 사업등록증, 식품공장 시설 및 기능 설계도(비율 기재 必), 제조공정도, 시설 리스트	
비용	2,200위안(약 36만 원)	
소요기간	20일	
유효기간	5년	

• AQSIQ 인증


-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생산 및 수출 업체는 온라인 시스템에 회사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수입식품(주류, 설탕 및 감미료 포함), 유제품, 육류, 해산물 등 대부분 식품에 적용됨

인증명	AQSIQ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강제 유무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비용	업체당 350~1,020달러	
소요기간	일반식품 약 5일, 유제품 등 약 3~4주	
유효기간	일반식품 3년, 유제품 5년	

[선택 인증]


• 유기산제품인증(ORGANIC)

- 유기농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유기제품의 생산 및 가공에 대해 심사함. 유기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가공제품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여 '유기(Organic)'를 기재하거나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인증명	중국 유기제품인증(ORGANIC)	
발행 및 검사기관	중국품질인증센터(CQC) 중국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CNCA)	
강제 유무	권장	
제출 서류	신청서, 기본 농장조사, 비즈니스 자격 문서, 관리시스템 문서,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생산계획 등	
비용	품목당 2만 위안 이상	
소요기간	2~6개월	
유효기간	1년	

• 녹색 인증

- 오염이 없는 조건에서 재배 및 양식되며 유기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에 대한 인증임

인증명	녹색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中国绿色食品发展中心)	
강제 유무	선택	
제출 서류	녹색식품 마크사용 신청서, 기업 및 생산현황 조사표, 생산 작업 규범, 품질통제 체계, 제품표준, 영업허가증, 등록상표 서류 등	
비용	약 14,600 위안	
소요기간	농산품 3년, 가공식품 2 ~ 3개월	
유효기간	3년	

- Good Agricultural Practice(GAP)

- 생산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보호, 건강 및 안전 지향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식품에 대한 인증임

인증명	Good Agricultural Practice(GAP)	
발행 및 검사기관	각 지역 인증기관	
강제 유무	선택	
적용 품목	농작물, 야채, 과일, 육류 등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위생증 등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판정 → 인증발급	

- 신식품원료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식품 첨가물 또는 새로운 종류의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 보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판매될 수 있음

인증명	중국 신 원료 등록	-
발행 및 검사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FPC)	
강제 유무	선택	
적용 품목	동물, 식물 및 미생물; 동물,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분리된 성분; 기존 구조가 변경된 식품 성분; 그 밖에도 새롭게 개발된 식품재료	
제출 서류	신청서, 신 원료 연구개발 보고서,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	
절차	등록 신청 → 서류 심사 → 평가 통과 → 최종 결정	

• CHINA HACCP 인증

- 생산, 제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에 대한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임

인증명	CHINA HACCP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중국품질인증센터(CQC)	
강제 유무	선택	
적용 품목	식품 및 요식업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조허가증, HACCP 품질매뉴얼, HACCP PLAN, 조직구성도, 직책 설명서 등 • 성분 구성 정보(영문 작성, active, non-active 재료 구분 표기), 제조 공정, 제품 저장 정보 등 	
소요기간	약 3개월	
절차	인증 신청 및 서류심사 → 공장심사 및 제품 테스트 → 심사자료 평가 및 보완 → 인증서 제작 및 발급	

3. 통관거부사례 현황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비교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는 총 187건으로 집계됨. 2022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수는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으며, 사유별로는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성분 부적합으로 인한 문제사례 수가 가장 많음

2020~22년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사유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라벨링/포장	6	23	18	47
성분 부적합	13	30	19	62
위생	8	21	7	36
서류미비	4	17	14	35
잔류농약 검출	0	0	0	0
기타	0	5	2	7
합계	31	96	60	187

2022년 월별 통관거부 건수

- 2022년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는 총 60건으로 성분 부적합이 19건, 라벨링/포장 18건, 서류미비 14건, 위생 7건, 기타 2건이 집계되었음

2022년 월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건수

사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벨링/포장	0	0	6	3	0	0	0	0	1	0	0	8	18
성분 부적합	5	3	1	2	2	1	0	2	0	1	0	2	19
위생	3	0	0	1	0	0	1	0	0	1	1	0	7
서류미비	1	8	0	2	0	0	0	0	0	1	2	0	14
잔류농약 검출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1	1	0	0	0	0	0	0	2
합계	9	11	7	8	3	2	1	2	1	3	3	10	60

• 통관거부 세부 사유별 건수

사유	세부내용	건수
성분 부적합	무기비소 기준치 초과	3
	강화제 비타민C, 니코틴아미드, 비타민B6, 비타민D3, 비타민B1, 비타민B2, 엽산, 인산칼슘 사용량 초과	3
	영양강화제 인산칼슘, 푸마르산제일철 기준치 초과	4
	강화제 비타민B2 사용량 초과	1
	과산화물 기준치 초과	1
	식품첨가물 인산염 사용량 초과	1
	식품첨가물 젖산칼슘, 비타민D3 기준치 초과	1
	식품첨가물 아스타팜의 과다 사용	1
	화학물질의 불법사용	2
	검역 허가되지 않은 식물성 성분 검출	1
	비소 총 함량 기준치 초과	1
라벨링/포장	라벨 불합격	18
위생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6
	대장균 기준치 초과	1
서류미비	인증서류 미비	9
	상품증서 불합격	5
기타	관능검사 불합격	1
	유통기한 불합격	1
합계		60

• 통관거부 품목

대분류	품목명	건수	비중(%)	주요 문제사유
농산물	음료	11	18.3	라벨 불합격
	기타 조제 농산물	10	16.7	라벨 불합격
	과자류	9	15.0	영양강화제 기준치 초과
	차류	4	6.7	라벨 불합격
	면류	2	3.3	미허가 식물성 성분 검출 등
	소스류	2	3.3	무기비소 기준치 초과
	곡류	1	1.7	인증서류 미비
	유지 가공품	1	1.7	과산화물 기준치 초과
소계		40	66.7	
축산물	낙농품	1	1.7	유통기한 불합격
소계		1	1.7	
수산물	어류	9	15.0	상품증서 불합격
	해조류	9	15.0	인증서류 미비
	수생동물	1	1.7	관능검사 불합격
소계		19	31.7	
총합계		60	100.0	

No.	제목	식품 내·외 포장지에 해외제조업체 등록번호 필수 표기	해당국가	중국
			관련품목	식품전반
1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에 따르면, 식품 포장지에 해외제조업체 등록번호 표기와 관련하여, 일부 규정이 개정됨 기존에는 외포장에만 중국등록번호를 표기했으나, 2022년부터 수출식품의 내·외포장 모두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수출국 정부의 허가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라벨 교체 등으로 가능했으나,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과 특수선식용 식품*의 중문 라벨은 반드시 인쇄로만 가능하도록 변경됨 <p>* 특수선식용 식품 : 영유아 조제분유,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 영유아 통조림보조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p> <p>※ 근거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8호령 제15조) 등록이 된 업체가 對중국 식품 수출 시, 식품의 내·외 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허가받은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249호령 제30조) 수입보건식품 및 특수선식용 식품의 중문 라벨은 반드시 최소판매포장에 인쇄해야 하며, 스티커 부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포장지 내·외부에 해외제조업체 등록번호를 필수로 표기하도록 변경되어 포장지를 다시 준비해야 함 		
기타		<p>※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내 해당 공고문</p> <p>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72/index.html</p>		

No.			해당국가	중국
2	제목	중국 내 식용 근거가 없는 식물성식품 생산기업 등록의 어려움	관련품목	식물성식품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정부에 생산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업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 ②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③ 수입 식물성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신청표 1부 ④ 등록신청표 첨부서류 - 공정흐름도 사본 1부 -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 - 제품 사진 1부 - 유전자변형 증명서 또는 비유전자변형 증명서 사본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기타 관련 서류 • 중국 정부에 등록 가능한 식물성 식품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유지와 식용유원료,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제품,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채소 및 마른 콩, 견과류와 씨류, 조미료, 건조과일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식물성 식품 수출기업 등록 및 제품 등록을 못하고 있음 •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갯방풍, 부지깥이, 취나물, 곤드레는 중국에서 식용 근거가 없어, 식품 원재료로서 일반 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등록을 한다 해도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수가 없음 			
기타	<p>※(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신청 관련 제출 서류(식물성식품)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p> <p>https://www.mfds.go.kr/brd/m_613/view.do?seq=33215</p>			

No.	제목	해당국가	중국
3		스테비아 등 새로운 대체당의 통관이 정식허가 되지 않아 수출이 어려움	아이스크림
		유형*	SPS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비아(Stev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감미료 - 허용된 품목별 사용 범위 조제유 : 0.18g/kg, 과일 통조림 : 0.27g/kg, 잼 : 0.22g/kg, 잡곡 통조림 : 0.17g/kg, 시리얼/압축 귀리(플레이크) 포함 : 0.17g/kg, 조미 시럽 : 0.91g/kg, 칵테일 : 0.21g/kg * 허용 품목에 아이스크림이 포함되지 않음 • 에리스리톨(Erythrit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감미료 - 사용 기준 : 《식품안전 국가표준_식품첨가물 사용표준》의 부록 A 명시 규정에 따라 에리스리톨은 「표 A.2 식품별 생산과정 중 필요에 따라 적당량 사용이 가능한 식품 첨가물」 목록에 포함됨(별도 사용 기준 규정 X) * 단, 「표 A.3 생산과정 중 필요에 따라 식품 첨가물 적당량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식품 유형」에 「01.05.01」 크림이 포함되어 있음 • 알룰로스(Allulose) : 중국 식품 첨가물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임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크림에 함유된 알룰로오스,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의 대체당이 식품 안전성 검증 등의 사유로, 해당 대체당이 포함된 식품 통관이 정식허가되지 않음 		
기타	<p>※ 중국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원문 및 번역본</p> <p>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licationView.do?board_seq=92708&menu_dept2=45&menu_dept3=247&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2&srchWord=%EC%A4%91%EA%B5%AD%20%EC%8B%9D%ED%92%88%EC%B2%A8%EA%B0%80%EB%AC%BC&page=1&reportSearch=</p>		

1. 어린이 홍삼 음료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중국 수입 가능여부 검토

조사 결과

- 즉시 수입 가능 여부
: 불가
- 불가 사유
: 첨가 불가 성분 및 외포장 문구 수정 권고
- 중국 상표 등록 여부
: 등록 전
- 중국 온라인몰 입점 시 중국 상표등록증이 요구됨(T-mall, 징둥 등) 중문라벨에 상표가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되고, 해당 제품명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수입 면장을 함께 제출해야 최종 입점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음
* aT 현지화 지원사업 지적재산권 출원 사업 이용 가능
- 권고사항
- 본 제품은 중국 식품안전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 결과 첨가 불가 성분 및 외포장 문안으로 인하여 즉시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첨가 불가 성분 및 외포장 문구 수정 권고

● 성분 심의 기준

* (식품첨가제) 식품안전국가표준 GB 2760-2014

- 식품 유형 : 음료류(饮料类) -- 식물음료(植物饮料)

* (영양강화제) 식품안전국가표준 GB 14880-2012

- 식품 유형 : 음료류(饮料类) -- 식물음료(植物饮料)

* (기타 원료) 국가표준 및 일반식품 사용 관련 규정 참조

● 성분 검토 의견

- 첨가 불가 성분 있음 : 흑진생베리분말, 비타민 C, 비타민 D3,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A, 엽산, L-로이신, L-이소로이신, L-발린, L-아르기닌

● 포장 검토 심의 기준

* 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2011 예포장식품라벨통칙

* 식품안전국가표준 GB28050-2011 예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

* 기타 참고 기준

- 중국 식품안전법 및 기타 관련 규정

● 포장 검토 의견

- “無첨가” 홍보 문구 삭제 권고 : 특정 물질을 함유하지 않거나 첨가하지 않은 경우 ‘미첨가’, ‘0 첨가’, ‘미함유’ 혹은 이와 유사한 강조 문구 표시 불가

- 본 의견수렴 안은 시행 전 규정이나 식품안전 관련 중국의 정책 기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장기적으로 채택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수입식품 유통 시 참고 가능함

- “아동용 4세-8세” 홍보 문구 삭제 권고

- (라벨링 진행 시) 5년 근 인삼연근확인서 제공

“無첨가” 홍보 문구	“아동용 4세-8세” 홍보 문구
	

● 포장 검토 결과

- 본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외포장에 첨가 불가 성분 및 아동용 4세-8세” 선전 문구 삭제 권고
- “無첨가” 홍보 문구 삭제 권고 혹 증문라벨에 <본 제품의 외포장에 기재된 인증 관련 광고 문구는 해외에서 획득한 것으로 중국 시장 유통 시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내용은 증문라벨을 기준으로 함> 표기

● 증문 라벨 기재 항목

구분	내용
필수 기재 내용(공통) *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2011 예포장 식품라벨통칙	제품명, 제품유형, 성분표, 제품의 중량 및 규격,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수입자 혹은 유통상 정보, 영양성분표, 보관방법
추가 기재 내용 (공통)	[증문표기] 생산기업재화등록번호(CHINA REG.NO) 혹은 소재국가(지역) 등록번호 (OVERSEAS REG.NO)
추가 기재 내용 (영양성분표)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개정] <GB 28050-2011에 따른 표기항목> - 열량, 핵심 영양소(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영양소 참 고수치(NRV)의 % 비율 <GB 28050 의견 수렴 안*에 따른 표기항목> * 2021.9.26 발표된 개정 표준에 대한 의견 수렴 안 -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 지방(혹은 포화 지방산), 탄수화물, 당, 나트륨, 영양소 참고수치(NRV)의 % 비율 - 儿童青少年谨慎选择高盐、高脂、高糖食品。 * 아동청소년은 고염, 고지방, 고당식품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추가 기재 내용 (인삼 제품)	[증문표기] 섭취 제한량 3g/1일, 임산부 및 수유기 여성과 14세 이하 어린이 식용 부적합

자문 결론

- 본 보고서 작성 당시와 실 수출 시 규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수출 전 혹은 자문 완료 후 6개월이 초과될 경우 규정 변화 여부 확인을 위해 재문의를 권고함

2. 매실 음료 및 기타 음료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중국 수입가능여부 검토

조사 결과

- 즉시 수입 가능 여부
: 가능
- 중국 상표 등록 여부
: 등록 완료
- 품목 분류 및 관세
 - 2022년 기준 APTA 세율이 11%로 가장 낮으며 'APTA원산지 증명서' 제공 시 특혜 세율 적용 가능
 - 단, APTA원산지 발급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HS CODE	품목 해설	관세율			
		MFN	FTA	APTA	RCEP
21069090.90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90 - 기타	12%	18.4%	11%	20%

- 성분 심의 기준
 - * (식품첨가제) 식품안전국가표준 GB 2760-2014
 - 식품 유형 : 음료류(饮料)
 - * (영양강화제) 식품안전국가표준 GB 14880-2012
 - 식품 유형 : 음료류(饮料)
 - * (기타 원료) 국가표준 및 일반식품 사용 관련 규정 참조
 - 전 성분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성분명		함량(%)	성분 관련 규정	첨가 가/부
한글	중문			
매실	青梅	55	일반식품 원료	가능
설탕	白砂糖	45	일반식품 원료	가능

- 검토 의견

- 모든 성분 첨가 가능

- 포장 검토 심의 기준

- * 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2011 예포장식품라벨통칙

- * 식품안전국가표준 GB28050-2011 예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

- * 기타 참고 기준

- 중국 식품안전법 및 기타 관련 규정

- 포장 검토 결과

- (라벨링 진행 시) HACCP 증명 서류 제공

- 콜레스테롤 0g → 콜레스테롤 0mg로 수정 권고

자문 결론

- 본 보고서 작성 당시와 실 수출 시 규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수출 전 혹은 자문 완료 후 6개월이 초과될 경우 규정 변화 여부 확인을 위해 재 문의를 권고함

아시아

대만 TAIWAN

2022년 한눈에 보이는
대만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078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089
03. 비관세 장벽 현황	092
04. 수출 애로사항	104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06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전체 식품시장 규모는 481억 3,490만 달러(한화 약 65조 2,565억 원)로 전년 대비 8.9% 증가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184억 9,690만 달러(한화 약 25조 762억 원)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38.4% 차지
 - * 채소류 시장규모가 55억 9,900만 달러(한화 약 7조 5,906억 원)로 전체 시장의 11.6%를 차지하며, 신선식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296억 3,800만 달러(한화 약 40조 1,802억 원)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61.6% 차지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시장이 가장 높은 비중(19.8%) 차지하며, 전년 대비 8.8% 증가함. 뒤이어 스낵류(10.9%), 편의식품(10.6%), 스프레드 및 당류(10.6%) 순

식품 시장 규모(2017~2021)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40,040.4	41,411.6	41,160.5	44,214.2	48,134.9	100.0	8.9
신선식품	15,147.4	15,749.6	15,741.5	16,855.2	18,496.9	38.4	9.7
- 채소류	4,695.0	4,856.0	4,826.0	5,132.0	5,599.0	11.6	9.1
- 낙농품	4,486.0	4,657.0	4,648.0	4,970.0	5,448.0	11.3	9.6
- 과일 및 견과류	3,357.0	3,471.0	3,449.0	3,666.0	3,999.0	8.3	9.1
- 육류	1,888.0	2,023.0	2,084.0	2,310.0	2,607.0	5.4	12.9
- 유제품	721.4	742.6	734.5	777.2	843.9	1.8	8.6
가공식품	24,893.0	25,662.0	25,419.0	27,359.0	29,638.0	61.6	8.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8,106.0	8,358.0	8,281.0	8,777.0	9,546.0	19.8	8.8
- 스낵류	4,204.0	4,319.0	4,245.0	4,837.0	5,249.0	10.9	8.5
- 편의식품	4,168.0	4,344.0	4,349.0	4,658.0	5,119.0	10.6	9.9
- 스프레드 및 당류	4,408.0	4,494.0	4,420.0	4,682.0	5,105.0	10.6	9.0
- 영유아용 식품	2,687.0	2,786.0	2,776.0	2,976.0	3,066.0	6.4	3.0
- 소스 및 향신료	1,320.0	1,361.0	1,348.0	1,429.0	1,553.0	3.2	8.7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2,386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하며 성비가 균등함
 - 연령대 별 인구수는 55세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의 약 34.9% 비중으로 높으며, 24세 이하 인구 비중이 19%로 낮은 편임
 - 여성 인구수는 약 1,200만 명(약 50.5%), 남성 인구수는 약 1,180만 명(49.5%)으로 성비가 균등함
 - 2021년 전체 가구 수는 806만 가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2021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2,017.78달러(한화 약 273만 5,504원)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으며, 가공식품 소비액이 신선식품 대비 약 1.6배 수준임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775.37달러(한화 약 105만 1,169원)로, 전체 식품 부문 지출의 38.4% 차지함
 - * 신선식품 중에서는 채소류와 낙농품 소비액이 각각 234.70달러(한화 약 31만 8,183원)와 228.40달러(한화 약 30만 9,642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가공식품 소비액은 1인당 연간 1,242.41달러(한화 약 168만 4,335원) 규모로 식품 지출의 61.6% 차지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 400.20달러(한화 약 54만 2,551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뒤이어 스낵류 220달러(한화 약 29만 8,254원), 편의식품 214.60달러(한화 약 29만 933원) 수준임

1인당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1,691.39	1,745.44	1,731.27	1,856.39	2,017.78	100.0	8.7
신선식품	639.82	663.87	662.16	707.71	775.37	38.4	9.6
- 채소류	198.30	204.70	203.00	215.50	234.70	11.6	8.9
- 낙농품	189.50	196.30	195.50	208.70	228.40	11.3	9.4
- 과일 및 견과류	141.80	146.30	145.10	153.90	167.60	8.3	8.9
- 육류	79.75	85.27	87.67	96.98	109.30	5.4	12.7
- 유제품	30.47	31.30	30.89	32.63	35.37	1.8	8.4
가공식품	1,051.57	1,081.57	1,069.11	1,148.68	1,242.41	61.6	8.2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342.40	352.30	348.30	368.50	400.20	19.8	8.6
- 스낵류	177.60	182.00	178.50	203.10	220.00	10.9	8.3
- 편의식품	176.10	183.10	182.90	195.60	214.60	10.6	9.7
- 스프레드 및 당류	186.20	189.40	185.90	196.60	214.00	10.6	8.9
- 영유아용 식품	113.50	117.40	116.80	124.90	128.50	6.4	2.9
- 소스 및 향신료	55.77	57.37	56.71	59.98	65.11	3.2	8.6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팻푸드 시장 규모 제외)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량은 전 품목 모두 상승세를 보임
- 2021년 신선식품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낙농품, 채소류, 과일 및 견과류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 낙농품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12.67kg이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 육류가 12.9%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높은 성장을 한 것으로 집계됨
- 2021년 가공식품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스프레드 및 당류, 스낵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88.56kg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7.3% 증가함

1인당 식품 소비량(2017~2021)

(단위 : 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낙농품	93.76	95.46	95.11	102.20	112.67	10.3
	- 채소류	91.39	92.15	88.82	93.17	98.99	6.2
	- 과일 및 견과류	53.13	54.28	53.14	55.87	60.46	8.2
	- 육류	8.45	8.90	9.13	10.09	11.39	12.9
	- 유지류	5.94	6.07	5.98	6.31	6.83	8.3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69.79	171.65	166.27	175.70	188.56	7.3
	- 스프레드 및 당류	81.83	83.46	82.36	88.14	96.62	9.6
	- 스낵류	32.48	33.21	32.65	34.52	36.98	7.1
	- 편의식품	28.75	29.26	28.80	30.88	33.73	9.2
	- 소스 및 향신료	15.31	15.48	15.12	16.04	17.35	8.2
	- 영유아용 식품	12.55	12.71	12.46	13.30	14.46	8.7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농식품 수출 규모 40억 1,284만 3,000달러(한화 약 5조 4,402억 원)로 전년 대비 15.9%, 연평균 9.2%로 증가함
 -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크며(20.7%), 뒤이어 미국(18.6%), 일본(10.4%), 홍콩(8.4%)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고 한국은 수출 상위 6위국에 위치함
 - * 對중국 수출액 8억 2,898만 2,000달러(한화 약 1조 1,239억 원)로, 전년 대비 3.0% 감소함
 - * 對미국 수출액은 7억 4,628만 달러(한화 약 1조 117억 원), 對일본 수출액은 4억 1,932만 1,000달러(5,685억 원)이며 모두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함
 - * 對한국 수출 규모는 약 1억 8,731억 6,000달러(한화 약 2,539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4.7%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0.9% 증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2,818,408	3,336,494	3,564,192	3,462,583	4,012,843	100.0	15.9	9.2
1 중국	686,566	866,055	957,544	855,018	828,982	20.7	△3.0	4.8
2 미국	403,855	434,370	470,820	540,699	746,280	18.6	38.0	16.6
3 일본	321,049	365,010	433,598	368,130	419,321	10.4	13.9	6.9
4 홍콩	223,074	248,901	257,425	283,378	337,270	8.4	19.0	10.9
5 베트남	239,923	297,262	276,610	220,055	221,673	5.5	0.7	△2.0
6 한국	149,495	192,393	190,365	185,666	187,316	4.7	0.9	5.8
7 말레이시아	90,338	109,479	120,200	108,208	145,272	3.6	34.3	12.6
8 호주	57,812	71,251	76,351	87,035	116,469	2.9	33.8	19.1
9 싱가포르	65,933	78,974	85,762	95,367	108,171	2.7	13.4	13.2
10 캐나다	58,086	67,840	76,661	88,502	101,771	2.5	15.0	15.1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 품목 중 조제품 기타의 수출 비중이 20.3%로 가장 크며, 그 외 품목의 수출 비중은 크지 않은 편

* 기타 조제 식료품의 수출 규모가 8억 1,458만 9,000달러(한화 약 1조 1,043억 원)로, 전년 대비 23.1%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6.2%의 성장세를 보임

* 기타 조제 식료품 외 식품 품목 중에서는 기타 베이커리 제품(4.8%)과 기타 산식물(4.6%)의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기타 베이커리 제품의 경우 1억 9,085만 9,000달러(한화 약 2,587억 원), 기타 산식물의 수출액은 1억 8,370만 2,000달러(한화 약 2,490억 원)를 기록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2,818,408	3,336,494	3,564,192	3,462,583	4,012,843	100.0	15.9	9.2
1 조제품 기타	446,669	570,985	675,578	661,854	814,589	20.3	23.1	16.2
2 새털 (솜털 및 충전재용 깃털)	191,266	240,866	230,512	150,684	191,006	4.8	26.8	0.0
3 기타 베이커리 제품	147,952	152,297	156,191	160,931	190,859	4.8	18.6	6.6
4 기타 산식물	167,610	174,598	173,573	155,518	183,702	4.6	18.1	2.3
5 페놀 기능이 있지만 기타 산소 기능이 없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과산화산등 (기타) *혼합조제식료품	134,632	166,764	137,407	117,674	177,849	4.4	51.1	7.2
6 아세트산의 에스테르 (기타) *혼합조제 식료품	89,375	113,292	90,355	90,857	142,931	3.6	57.3	12.5
7 찹쌀	15,151	29,023	48,445	108,614	100,727	2.5	△7.3	60.6
8 타피오카 대용물 (전분으로 조제한 것)	33,870	53,732	127,272	81,017	99,973	2.5	23.4	31.1
9 파스타 (조제하지 않은 것, 속을 채운 것 이외 기타)	69,012	82,884	79,204	97,790	86,471	2.2	△11.6	5.8
10 옥탄올(OCTYL 알코올) 및 이성질체 *혼합조제식료품	16,467	49,961	31,134	63,719	85,509	2.1	34.2	51.0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농식품 수입 규모는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5.0%의 증가세를 보임
 - 2021년 농식품 수입 규모는 147억 34만 1,000달러(한화 약 19조 9,293억 원)로 전년 대비 18.6% 증가함
 - 미국산 농식품의 수입 비중이 25.7%로 가장 높으며, 한국은 2.4% 수입 비중으로 12위 수입국임
 - * 2021년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약 37억 8,444만 5,000달러(한화 약 5조 1,306억 원)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함
 - * 뒤이어 브라질(8.2%), 중국(7.1%), 일본(5.8%) 등이 수입 상위국임
 - * 2021년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약 3억 5,055만 달러(한화 약 4,752억 원)로 전년 대비 22.6%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8.1%의 성장률로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음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2,080,022	12,428,014	12,433,033	12,399,601	14,700,341	100.0	18.6	5.0
1 미국	3,337,793	3,977,615	3,553,350	3,324,066	3,784,445	25.7	13.8	3.2
2 브라질	805,623	365,012	923,187	999,840	1,210,385	8.2	21.1	10.7
3 중국	840,788	949,650	877,565	947,997	1,042,062	7.1	9.9	5.5
4 일본	627,453	676,378	671,281	731,433	854,192	5.8	16.8	8.0
5 뉴질랜드	720,004	758,779	718,070	758,099	831,743	5.7	9.7	3.7
6 호주	687,658	649,086	590,915	572,175	724,949	4.9	26.7	1.3
7 영국	473,317	504,368	588,658	492,025	568,532	3.9	15.5	4.7
8 태국	555,463	631,335	540,683	483,515	568,041	3.9	17.5	0.6
9 프랑스	489,228	481,436	488,757	419,835	469,614	3.2	11.9	△1.0
10 아르헨티나	68,576	58,089	150,358	213,340	404,179	2.7	89.5	55.8
12 한국	256,276	261,588	281,585	285,880	350,550	2.4	22.6	8.1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은 대두 기타(10.2%), 옥수수(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외)(9.0%), 조제품 기타 (5.3%) 순이며, 이의 쇠고기 및 주류 품목의 수입 비중이 높음

* 대두 기타의 수입액은 14억 9,555만 6,000달러(한화 약 2조 275억 원)이며, 전년 대비 44.0%로 크게 증가함

* 옥수수(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외)의 수입액은 약 13억 2,214만 6,000달러(한화 약 1조 7,924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49.0%의 큰 증가율을 보임

* 조제품 기타의 수입액은 약 7억 8,309만 8,000달러(한화 약 1조 616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16.1% 증가함

*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냉동/뼈 없는 것)(4.2%), 쇠고기(신선, 냉장/뼈 없는)(3.6%)의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2,080,022	12,428,014	12,433,033	12,399,601	14,700,341	100.0	18.6	5.0
1 대두 기타	1,072,656	1,070,067	1,027,740	1,038,404	1,495,556	10.2	44.0	8.7
2 옥수수 (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이외 기타)	847,928	852,470	978,850	887,223	1,322,146	9.0	49.0	11.7
3 조제품 기타	592,378	668,581	685,738	674,383	783,098	5.3	16.1	7.2
4 쇠고기 (냉동/뼈 없는 것)	526,215	560,904	608,190	608,760	619,702	4.2	1.8	4.2
5 위스키류 (스카치, 버본, 라이외 기타)	453,572	482,315	555,023	464,565	554,339	3.8	19.3	5.0
6 쇠고기 (신선, 냉장/ 뼈 없는)	310,499	385,824	372,210	423,382	533,516	3.6	26.0	14.5
7 두럼종 (기타)	350,837	317,122	311,573	348,943	376,222	2.6	7.8	1.8
8 사과 (신선)	266,666	242,938	250,056	226,699	273,990	1.9	20.9	0.7
9 팜유와 그 분획물 (조유, 팜 올레인, 팜 스테아린 외 기타)	159,691	155,807	130,858	156,724	240,588	1.6	53.5	10.8
10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 포도즙 (기타/붉은 포도주, 흰 포도주 제외/ 2리터 이하 용기)	168,146	189,560	182,349	185,252	228,687	1.6	23.4	8.0

*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대만 농식품 수출현황

- 2017년 이후 5년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對대만 수출 규모는 연평균 13.3%의 감소세를 보임
 - 2021년 농식품 수출량은 13만 9,133톤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함
 - * 농산물 수출량은 전년 대비 20.8% 증가하여 약 12만 7,595톤으로 전체 수출 비중의 91.7%를 차지함
 - * 축산물 수출량은 전년 대비 78.7% 증가한 3,871톤(2.8%), 임산물물은 7,667톤(5.5%)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44.6%의 감소세를 보임

한국의 對대만 수출 물량(2017~2021)

(단위 : 톤,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245,692	155,493	160,292	124,999	139,133	100.0	11.3	△13.3
농산물	162,853	101,171	147,845	105,652	127,595	91.7	20.8	△5.9
축산물	1,708	1,610	1,752	2,167	3,871	2.8	78.7	22.7
임산물	81,131	52,712	10,695	17,180	7,667	5.5	△55.4	△44.6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대만으로의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 배, 조제품 기타, 배추, 소스 및 소스 제조용 조제품 등으로 집계됨
 - * 2021년 對대만 라면 제품 수출액은 3,180만 900달러(한화 약 431억 원)로 전년 대비 34.9%의 증가율을 기록함
 - * 배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2,780만 5,600달러(한화 약 377억 원) 임

한국의 對대만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325,824.8	312,067.3	309,698.5	301,505.9	402,656.5	100.0	33.5	5.4	
1	라면	16,387.0	20,192.0	19,924.0	23,573.0	31,800.9	7.9	34.9	18.0
2	배	23,333.0	21,283.0	26,610.0	26,676.0	27,805.6	6.9	4.2	4.5
3	조제품 기타	30,410.0	26,611.0	25,716.0	23,307.0	23,707.2	5.9	1.7	△4.0
4	배추	11,802.0	11,293.0	16,046.5	14,487.0	15,427.1	3.8	6.5	6.5
5	소스 및 소스 제조용 조제품	2,952.6	3,311.9	3,923.3	6,406.2	10,916.2	2.7	70.4	38.7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통관 업무 담당 기관은 재정부(財政部, Ministry of Finance, R.O.C)이며, 관무서(關務署, Customs of Administration)에서 관세 제도를 담당하고 있음
 - 관무서는 수입품 관세 부과, 통관, 밀수 및 부정 수출입단속, 보세구역관리, 무역통계 등 업무 담당으로 타이베이(台北)·지룽(基隆)·타이중(台中)·가오슝(高雄) 등 4개의 세관을 관리하며, 각 세관 산하 10개 분국(分局)·지국(支局)으로 나뉘어 업무 담당함
 - 법률체계는 관세법(關稅法)을 따르며, 관세법은 1967년 8월 8일 58개 조항을 시작으로 현재 103개 조항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2018년 5월 9일 개정. 총 7장으로 구성
 - 수입통관을 위해 대만 관세청의 통관 절차를 준수해야 함
 - * (사전준비) 수입자는 사전에 기업정보를 대만 관세청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 물품이 재정부 관세국에서 규정하는 허가/규제/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 * (수입신고) 세관 및 관련 기관의 수출입 업무 전반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수입신고의 경우 대만 수입업체 및 관세사가 할 수 있으나 수하인이 수입허가증이 없으면 통관이 불가능함
 - * (관할 세관 심사 처 서류 심사실시) 관할 세관은 서류 제출 충족 여부와 자료의 무결성 여부, 수입신고 물품의 수입금지, 제한품목 확인 등을 심사함
 - * 신청인이 통관 시스템에 등록한 후 세관 시스템에 접속하고 대만 자동 선별시스템에 수입화물 분류 제품의 특징에 따라 검역 방법을 지정함
 - * C1 서면 심사 면제 및 화물 검역 면제, C2 화물 검역 면제/서면 심사 대상, C3 서면 심사 및 화물 검역 대상으로 분류됨

통관 시 제출서류

-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C/I)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위임서(서면 상 통관 대리인과 납세의무자인 공동 서명 날인)
- 제품 카탈로그, 설명서 및 검역 샘플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 수입식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중화민국해관수입세칙(中華民國海關進口稅則)」에 따라 처리함
 - 대만은 자체적으로 숫자 11자리의 CCC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 6자리는 HS Code와 동일함
 - 해관수입세칙에 의거해 수입자는 수입품에 대한 정확한 세칙과 세율을 적용해 신고서에 기입해야 함
 - * 수입상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관수입세칙의 구성, 분류원칙, 배열순서 및 각종 설명 및 수입 물품의 성분, 용도, 특성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
 -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대만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분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함
 - *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는 지룽항(基隆港), 타이베이항(臺北港), 타이중(臺中港), 가오슝항(高雄港)의 접수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품 카탈로그, 매뉴얼, 성분표, 샘플(심사 후 반환신청 가능), 청사진 등을 첨부해야 함

- 관세기준은 세계무역조직위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대만우혜국, 개발도상국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세율을 적용함
 - 제1란(Column I) 세율은 세계무역조직위원 또는 대만우혜국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세 기준을 적용함
 - * 해당 세율은 대한민국과 중국을 포함한 163개 WTO 회원국과 대만의 상호호혜국인 29개국에 적용함
 - 제2란(Column II) 세율은 특정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 기준을 적용함
 - * 파나마, 과테말라 등 대만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저개발국가에 제2란 세율을 적용함
 - 제3란(Column III) 세율은 제1란과 제2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수입품을 적용함

검역제도

- 수입품의 검사·검역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 및 「수입식품 및 관련제품 검사방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에 의거하여 식품약품관리서에 검사를 신청함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중앙위생기관에 의해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식품포장재 등을 수입식품 검사 대상으로 지정함
 - * 특히 안전 사건 사고로 인해 위험도가 높다고 추정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며 식품약품관리서가 주관하여 수입 화물의 내용, 규격, 식품표시 등을 포함한 검역 검사를 진행함

- (검사 신청) 검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입국 15일 전까지 입국항에 있는 검사 기관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품의 검사·검역 신청 시 필요서류는 검사신청서, 제품정보 보고서, 수입 신고서 사본,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등이 필요함

•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방법(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에 근거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방식을 진행함

- (배치(batch) 별 검사) 전체 화물의 현장 검증 및 샘플 추출 분석하여 검사함
- (표본 추출 검사) 검사 속도에 따라 무작위로 선택하고 현장 검증 및 샘플을 분석하여 검사를 실시함
- (배치(batch) 별 확인) 전체 화물의 현장 검사
- (증명서 검사) 대만의 보건 및 안전 관할 당국과 수출국사이 협약 또는 협정이 체결된 사업 분야의 경우 증명서 검사
- (검사 감독) 특정 상품의 경우 현장 검증 및 샘플 추출 분석을 통해 검사함

* 표본 추출 검사 시 검사받지 않은 제품은 현장 검사 및 샘플 추출 분석 등을 통해 추가 검사가 실시될 수 있음

수입검역 절차



• 대만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수출 전 사전 확인이 요구됨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 수출 가능 품목

협상타결 품목

• 농산물

- 과실류 : 사과, 배, 복숭아, 참다래

* 배 품목은 수출 농가 등록, 봉지 씌우기 재배(과실의 직경이 2.5cm 이하까지 원료), 복숭아심식나방 방제 및 방제 사항 기록, 선과장 등록, 대만 검역관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현지 조사, 수출검사 등을 거쳐야만 함

* 사과복숭아 품목은 수출 농가 등록, 6~10월까지 2주 간격으로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및 방제, 예찰 및 방제 사항 기록, 재배지 검사, 선과장 등록, 대만 검역관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현지 조사, 수출검사 등을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함

- 다육식물 : 에케베리아속, 에오니움속, 아드로미슈스속

* 상기 품목은 조건부 수출 가능 품목으로 일정 수출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축산물

- 계란 및 계란제품, 유제품, 반려동물사료, 식용 젤라틴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 농산물

- 곡 류 : 쌀, 보리, 밀, 수수, 대두, 팥, 녹두, 옥수수 등

-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유자, 밤 등

* 대만 축의 금지 병해충인 Satsuma dwarf virus와 관련하여 감귤 품목은 과실에 생경염 및 줄기가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됨

* 과실류는 수출 가능 품목이더라도 휴대 수출은 불가하며, 우편/특송 화물로 수출 가능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Cucurbita moschata),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마늘, 파슬리, 아스파라거스 등

* 채소류는 수출 가능 품목이라 하더라도 휴대 수출은 불가하고 우편/특송화물로는 수출 가능

- 특작류 : 인삼(수삼, 휴대는 6kg까지 허용하며 부기사항 기재된 검역증 첨부 필요), 건인삼(휴대는 6kg까지 허용, 검역증 불필요)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등
 - * 박과류 종자는 생육 중 재배지검사 및 위생증에 과실썩음병(*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증명을 해야 함
 - * 가지속(*Solanum* spp.), 고추속(*Capsicum* spp.) 종자는 수출 전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고, 바이러스(3종) 및 바이로이드(6종) 무감염 증명을 해야 함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중균포함),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아귀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화훼류 기타 : 철쭉 속, 선인장(접목선인장),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다육식물 일부(에케베리아속, 에오니움속, 아드로미수스속)
 - * 난과(Orchidaceae) 재식용(종자 제외) 식물체는 현장 검역 또는 수출 전 실험실 검사를 통해 Orchid fleck virus 미감염을 증명해야 함
- 묘목류 : 철쭉묘, 소나무묘(해송, 적송)
 - * 유리알락하늘소의 기주식물은 꽃·과실·종자, 직경 3cm 이하의 새싹·어린 가지 및 가장 큰 줄기의 직경이 3cm 이하인 묘목의 경우에만 수출 가능함(단풍나무속, 느릅나무속, 뽕나무속, 병나무속, 배나무속, 사과나무속, 오리나무속, 자작나무속, 장미속, 철쭉수속 등)
 - * 대만 검역당국은 자국으로 수입가능한 품목 목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게시(<http://www.baphiq.gov.tw>)

● 축산물

- 멸균 삼계탕, 오징어 간파우더, 오리털, 어분, 사료첨가제(동물유래물질 미포함)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조
- 과실류 : 대추, 매실, 살구, 아몬드, 자두, 블루베리 등
- 채소류 : 감자
- 묘목류 : 굴속·금규속·탱자나무속, 직경 3cm를 초과하는 유리알락 하늘소의 기주식물 등

● 축산물

- 가금육, 열처리 가금육(삼계탕 제외)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Weisfruit(대만)
업체 유형	현지 수입과일 유통업체
담당자명	정신이

- 현재 자사는 가공식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신선식품 중에서는 과일을 판매하고 있음
- 현지에서는 배, 샤인 머스켓, 딸기, 멜론, 감 등의 한국산 수입 과일이 인기가 많은 편이고, 명절 때 선물용으로 배 수요량이 많으며 2022년에는 특히 샤인 머스켓이 인기 있었음
-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여러 종류의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였으나, 현지 수요가 있어도 여전히 수입이 불가능한 과일 종류가 많은 편임
- 또한, 코로나와 최근 한국 물류 파업의 영향으로 선박 예약이 쉽지 않고 선박 일정 변동도 잦아져서 수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현지에서 수입 식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사례로는 미국 포도와 칠레 체리가 식품 잔류농약 함량 규정에 맞지 않아서 반품된 사례가 있었으나 한국 제품 수입 시에는 문제가 없었음

1. SPS

주요 SPS 내용

- 17개의 특정 CCC코드로 분류되는 식품 또는 식품 관련 용도 제품(예, 식기류, 식품 용기 또는 포장재, 식품 세척제 등)의 수입품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경우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 검역규정'을 따라야 하며, 수입업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청에 검역 신청을 해야 함
 - 대만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격리재배 대상 물품의 식물검역 규정을 개정하고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함
 - 대만은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의 검사 규정'의 적용대상 품목으로 버섯류 8개를 포함 총 13개 특정 식품을 지정한다고 2022년 2월 WTO에 통보함
 - 한국산 식품 기타 인삼뿌리 품목은 6개월간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불합격 사례가 3건이 발생되어, 해당 품목 수입 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공고함
- 대만 위생복지부는 2020년 4월 1일부터 대만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 화물 및 우편물에 식품 안전 및 위생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식품안전 및 위생 증명서 첨부이 요구되는 수입 식품의 경우, 증명서 사본을 허용함.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식물 지정검역품목 수입승인규정"을 마련하여 202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함. 지정검역품목 수입 시 식물검역당국의 수입허가증을 첨부해야 하며, 해당 식품 수입 신청 시 필요한 수입업체의 제출 서류가 개정됨
- 대만복지부는 식품위생표준 개정을 통해 영유아 식품에 포함되는 글리시딜 지방산에스터의 최고 한도를 조정함. 글리시딜 지방산에스터는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 처리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임
- 대만은 한국산 농산물 중 일부 품목을 수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새로운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협의와 대만 검역당국의 수입위험분석(PRA) 등을 거쳐 시장접근 승인을 받아야 함
- 대만은 알로에 사용 제한규정을 2020년에 마련하고 2021년에 개정함. 껍질을 완전히 벗겨낸 알로에 베라, 알로에 페로스만 식용 성분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알로인인 10PPM을 초과하면 식품첨가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대만 FDA (식품복리위생부 품약물관리국)	https://consumer.fda.gov.tw/Law/PesticideList.aspx?nodeID=520
식품 첨가물 허용치	대만 FDA (식품복리위생부 품약물관리국)	https://consumer.fda.gov.tw/Law/FoodAdditivesList.aspx?nodeID=521&rand=1331586775
미생물 규정	대만 FDA (식품복리위생부 품약물관리국)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776

통보문 개정현황(2022년)

• 버섯류 사전검사 의무화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류를 포함한 13개 품목, 수입 전 대만 식약서에 수입 검사 신청 필요 • 대만은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의 검사 규정'의 적용대상 품목으로 버섯류 8개를 포함 총 13개(CCC상품 분류 코드 기준) 특정 식품을 지정한다고 2022년 2월 WTO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C코드=대만 상품분류 코드 - 대만 '식품 안전 위생관리법(食品衛生管理法)' 제30조에 따라, 대만 위생복지부에서 공고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용기 및 포장재는 입국일 15일 전까지 수입업체가 수입항의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의 검사 규정'에 따라 수입 시 검사를 진행해야 함 - 해당 품목의 수입 검사 적용일은 결정되지 않았음 • 규정 시행 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이 공고에 따라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른 사슴 채찍 2. 버섯류(9종) : 말린 브라질 버섯, 주름버섯류의 기타 말린 버섯, 말린 차나무 버섯, 말린 노루궁둥이 버섯, 말린 흰망태버섯, 말린 그물버섯, 말린 큰느타리버섯, 말린 번데기, 동충하초, 기타 말린 버섯 및 말린 밀 버섯 3. 말린 장미(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의 여부 불문) 4. 기타 향신료용으로 건조된 식물과 식물의 일부(종자와 과일을 포함) 5. 기타 아로마 알코올 및 고리형 알코올(할로겐화, 향화, 질화, 니트로화 유도체)
통보일	2022.02.21
시행예정일	-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TB0183952

• 한국산 신선 인삼 안정성 검사 강화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6월 3일까지(수입일 기준) 한국에서 수입되는 '식용 기타 인삼뿌리'(신선 인삼) 품목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공고함 • 한국에서 수입된 「1211.20.90.00-0A(수입코드) 식용 기타 인삼뿌리」 품목은 6개월간 불합격 사례가 3건이 발생되어 해당 품목 수입 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건 모두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반품 또는 폐기되었음 - 검출성분은 메트코나졸, 파라클로스트로빈, 테부코나졸, 플로디옥소닐, 디페노코나졸 등임 •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7조 규정은 식품업자는 식품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품 판매 중단, 회수 및 지방 중앙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법령 47조에 의해 벌금이 부과됨 • 2022년 6월 이후에도 안정성 검사 강화가 지속되고 있음
통보일	-
시행예정일	-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TB0183960

2. TBT

주요 TBT 내용

- 식품 라벨링과 관련한 주요 규정 및 개정 사항(2022년)
 - 2022년 6월, 타이완, 평후, 킨먼 및 마추 개별관세영역은 “사전 포장 식품에 대한 영양 정보 라벨링 규정의 일부 조항 개정”을 공포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을 통보함
 - 2022년 3월 “식품 원료 알로에의 사용 제한 및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을 공포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을 통보함
- 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 및 개정사항(2022년)
 - 건강식품의 라벨링 규정이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통보함. 이에 따라, 건강식품은 건강 영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특정 성분이 포함된 건강식품의 필요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2022년 1월, “사전 포장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규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개정안은 영양 강조 표시의 정의, 아미노산 단위의 일관성, 칼로리 및 영양가를 ‘0’으로 표시하기 위한 조건, 열량 및 영양소의 실제 함량에 대한 표시, 데이터 표시 형식을 수정함
- “폴리염화비닐(PVC)이 함유된 판형 포장재, 재활용 지정 용기 및 비-판형 일회용 식품 용기의 생산,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제한”이 2022년 4월 29일 공포되었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됨을 통보함
- 2022년 9월, “식품 및 관련 제품 허가서류 심사, 등록 및 발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공포됨. 개정안은 온라인 신청 플랫폼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등록 및 검토 관행에 따른 요건 개정, 식품첨가물 등록에 대한 추가 요건을 수정함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대만 FDA (식품복리위생부 식품약물관리국)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297
SGS 인증	SGS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https://www.sgs.com/#nav-main-dropdown-2016

주요 품목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 제품명	• 영양성분	• 제조사 및 수입자 정보
	• 용량	• 제조일자	• 식품첨가물
	• 원산지	• 유통기한	• 알레르기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모든 필수정보는 중문으로 표기해야 함	
	제품명	식품 원료성분 · 원료품종 · 식용부위 · 속어 등을 이용해 명기해야 함	
	용량	미터법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 중량 · 용량 · 수량을 명기해야 함	
		액체가 고형물과 함께 든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고형량을 별도로 표기해야 하나, 표기가 어려울 경우 내용물의 중량만 표기해도 무방함	
	원산지	내용물이 두 종류 이상일 경우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작성해야 함	
		2개 국가 이상의 제품을 혼합해 포장했을 경우 제품의 함량이 많은 국가명 순으로 명기해야 함	
		수입산 원료이나 대만에서 재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만들 경우 원산지는 대만으로 명시해야 함	
	유통기한	식품 제조사 주소에 원산지를 명시했을 경우에는 원산지 표기를 생략해도 무방함	
		용기나 포장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년 · 월 · 일을 포함해 자유롭게 작성 가능	
	제조사 및 수입자 정보	수입 제품의 경우 대만의 민국(民國) 표기 표기와 양력(西元)을 구분해 표기해야 함	
		수입 신고 시 세관에 신고한 내용 및 서류를 바탕으로 정확히 명기해야 함	
	영양성분	수입식품의 경우 대만 내 수입 위탁기업의 정보를 명기해야 하며, 기업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해야 함	
식품의 영양성분표는 반드시 눈에 잘 띄는 포장 외부에 명기해야 하며, 중문(번체자)으로 표기해야 함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탄수화물, 당, 나트륨 순서대로 나타내야 함			
식품첨가물	이외에 업자가 표기하기 원하는 기타 영양소 함량 등을 포함해도 무방함		
	2가지 이상 원료를 혼합한 식품첨가물은 용도를 제시해야 하며 식품첨가물 명칭과 함께 표기해야 함		
알레르기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 강제 표시 규정에 의해 감각류(새우, 게 등), 망고, 땅콩, 우유, 알류, 견과류, 깨,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아황산염(이산화유황 잔류량이 10mg/kg 이상)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내용물을 전부 제품명에 명기해야 함		
	채즙이 10% 이상인 제품은 과실즙 또는 채소즙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함		
기타	2가지 과채즙이 혼합된 제품은 종합과(채) 즙 또는 혼합과(채) 즙으로 표기해도 됨		
	비건 식품의 경우, 제품에 첨가된 비건식의 종류를 표기해야 함		

* 자료 : 대만 식품의약품(TFDA), KATI 농식품수출정보

• 즉석 면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품명	파마산 & 체다치즈 떡볶이	
원재료명 (원료원산지명)/ 첨가물	<p>* 떡 : 쌀, 소금, 에틸알코올, 시트르산</p> <p>* 양념가루 : 치즈 소스(분말)(백설탕, 포도당, 유지방, 치즈 분말(분말)(우유, 소금, 유산균(식품산, 세균 배양), 레닛), 마가린(포도당 시럽, 팜 오일, 소이레시틴, 인산수소칼슘, 카세인산나트륨, 지방산 폴리글리세롤 에스테르), 지방산, 유청가루(분말), 양념가루(소고기 조미료(양념, 분말)(소금, 백설탕, 옥수수(파쇄), 간장가루(분말)(콩, 소금, 에틸알코올), 쇠고기추출물, 팜오일(팜오일유래), 캐러멜화당, 이산화규소, 속신산이나트륨, 흑후추출물), 글루탐산분말(분말), 마늘(분말), 흑후추, 양파가루(분말), 구아검, 밀가루, 옥수수전분, 칠리후추(분말), 닭고기가루(분말)(닭추출물, 백설탕, 글루탐산나트륨, 소금, 옥수수(분말), 간장가루(분말), 옥수수, 켈프(분말), 양파(분말), 마늘(분말), L-글리신, 시트르산(식품산), 화이트 페퍼(분말), 덱스트린(분말), 콩가루(분말), 이산화규소, 메틸셀룰로오스, 레드 페퍼(식품색상), 화이트 페퍼)</p> <p>* 파르메산 치즈 분말 : 옥수수 가루(옥수수, 분말 셀룰로오스(분말)), 파르메산 치즈 분말, 분말 셀룰로오스(분말), 석유 제품(파우더), 글루코산 시럽, 카세인산나트륨, 인산수소나트륨, 지방산 폴리글리세롤 에스테르(식품산, 지방), 스테아로일-2-락틸산나트륨, 이산화규소, 체다 치즈 분말(분말)(체다 치즈(우유, 소금, 유산균), 레닛), 인산나트륨(식품산), 유제품(치즈 제외)(혼합)(분말), 유당(분말)</p>	
내용량	368g	
보존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농업 공사(Agricultural Corporation)	
제조지(원산지)	한국	
출시일(발행일)	2022. 04. 25	
알레르겐 주의 성분	우유, 대두, 글루텐 함유 시리얼	
영양성분	- 1회 제공량 184g - 총 2회 제공	
	구분	1인당
	열량	491.10kcal
	단백질	8.6g
	지방	5.50g
	포화지방	2.90g
	트랜스지방	0g
	탄수화물	101.80g
	당류	13.60g
나트륨	756.10mg	

• 요리용 소스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타이완 슈거프리 블랙빈 소스	
원재료명	- 물 - 검은콩(대만산) - 소금 - 효모 추출물	
내용량	320ml	
출시일(발행일)	2021. 06	
보관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Sauceco Food	
제조지(원산지)	대만, 중국	
영양성분표시(100g당)	- 1회 제공량 10ml - 총 32회 제공	
	에너지	4cal
	단백질	0.9
	지방	0
	탄수화물	0.20g
	당류	0.0g
	나트륨	450mg
알레르겐 주의 성분	대두	

인증

[필수 인증]


● 식품의약품청인증

- 대만에 특정 식품(유전자 변형 식품, 건강식품) 수출 시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에서 요구하는 주요 규정을 준수해야 함

인증명	식품의약품청(TFDA)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대만 식품의약품청	
강제유무	필수(수입업체)	
제출 서류	신청서, 안전성평가 보고서, 기능성평가 보고서, 원료의 안전성 보고, 제조공정 요약, GMP 증거 서류, 제품위생 관련 사항 및 검사 보고서 등	
의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심사 시 80,000대만 달러(한화 약 313만 원), • 2차 심사 시 170,000대만 달러(한화 약 666만 원) 	
소요기간	약 240일	
절차	서류제출 → 예비 심사 → 샘플 제출 → 2차 심사 → 인증발급	

●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S.A.


- 대만 현지에 식품 유통 시 필수 인증임

인증명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S.A.	
발행 및 검사기관	SGS-CSTC 지사	
강제유무	필수(식품유통)	
제출 서류	신청서(RFI), 선적 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신청서, 신용장, 위생증, 검역성적표 등)	
비용	없음	
소요기간	검역 품목에 따라 다름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및 심사 → 판정 → 인증발급	

[선택 인증]

• 보건식품인증

- 해당 식품이 보건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제도임

인증명	보건식품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대만 위생복지부	
강제유무	권장	
제출 서류	신청서, 제품 원료 성분 규격 함량, 안전 평가 보고서, 보건기능 평가 보고서, 영양성분 분석 보고서 등	
의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심사(250,000대만 달러), • 규격표준심사(80,000대만 달러) 	
소요기간	개별심사(180일), 규격표준심사(12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발급	

• CAS

- 농산품 및 가공품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보장해 주는 인증임

인증명	CAS 인증(Chinese Agricultural Standard)	
발행 및 검사기관	대만 우량 농산품 발전 협회	
강제유무	권장	
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및 생산관리 증명서 등	
적용 품목	농산품 및 초급 농산가공품	
법규 의거	농산품생산 및 검역 관리법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및 심사 → 판정 → 인증발급	

• 야채과일 안전 인증

- 농작물(곡물, 야채, 과일)에 농약잔류가 없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임

인증명	야채과일 안전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대만 농업위원회	
적용품목	곡물, 야채, 과일	
제출 서류	신청서, 성분 검역 성적표 등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및 심사 → 판정 → 인증발급	

• TQF(Taiwan Quality Food Association) 상품인증제도

- 가공 식품이 안전한 제조 과정을 인증해 주는 제도임

인증명	TQF(Taiwan Quality Food Association) 상품인증제도	
발행 및 검사기관	TQF협회(대만 경제 발전부 산하 공업국 소속)	
적용품목	가공 식품	
소요 기간	약 75일(영업일 기준)	
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약품 생산 허가증 및 수출 시 외부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	
비용	1) 연회비 : 10,000대만 달러(검역 제품이 5개 이하), 50,000대만 달러(검역 제품이 6~10개), 60,000대만 달러(검역 제품이 11개 이상) 2) 현장 평가, 관리, 검역 비용 : 6,000대만 달러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및 심사 → 판정 → 인증발급	

3. 통관거부사례 현황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비교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만의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는 총 55건으로 집계됨. 사유별로는 3개년 모두 잔류농약 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남

2020~22년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사유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성분 부적합	2	3	8	13
위생	0	0	0	0
서류미비	0	0	0	0
잔류농약 검출	11	14	17	42
기타	0	0	0	0
합계	13	17	25	55

2022년 월별 통관거부 건수

- 2022년 대만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는 총 25건으로 잔류농약 검출 17건, 성분 부적합 8건으로 집계되었음

2022년 월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건수

사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분 부적합	1	0	0	0	0	3	0	0	2	1	0	1	8
위생	0	0	0	0	0	0	0	0	0	0	0	0	0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0
잔류농약 검출	4	2	1	0	2	1	1	2	0	0	2	2	17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5	2	1	0	2	4	1	2	2	1	2	3	25

● 통관거부 세부 사유별 건수

사유	세부내용	건수
성분 부적합	방부제 벤조산 검출	1
	방부제 에틸 파라-히드록시 벤조에이트 검출	4
	감미료 수크랄로스 검출	1
	감미료 사카린 검출	1
	4-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검출	1
잔류농약 검출	클로르메콧 클로라이드 검출	2
	보스칼리드, 플루오피콜라이드, 프로파모카브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플루아지남, 펜티오피라드, 터브코나졸 검출	1
	피라클로스트로빈, 사이퍼메트린 검출	1
	피리다벤 검출	1
	디니코나졸 검출	1
	파목사돈 검출	1
	에틸렌 옥사이드 검출	1
	산화에틸렌 검출	1
	카벤다짐, 디메토모르프 검출	1
	티플루자마이드, 톨클로포스메틸 검출	1
	티플루자마이드 피리벤가브 검출	1
	피리벤카브, 터브코나졸 검출	1
	메트코나졸, 피라클로스트로빈, 디페노코나졸, 피프로닐 대사물 검출	1
	메트코나졸, 피라클로스트로빈, 디페노코나졸, 터브코나졸, 피리벤카브 검출	1
	플루디옥시닐, 피라클로스트로빈 검출	1
	노발루론, 프로클로라츠 검출	1
합계		25

● 통관거부 품목

대분류	품목명	건수	비중(%)	주요 문제사유
농산물	인삼류	8	32.0	잔류농약 검출
	채소류	7	28.0	잔류농약 검출
	소스류	5	20.0	성분 부적합
	과실류	3	12.0	성분 부적합
	면류	2	8.0	잔류농약 검출
소 계		25	100.0	
총 합 계		25	100.0	

No.	제목	대만 영양 성분 표시에 관한 국가 규정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국가	대만
			관련품목	식품전반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 식품의 영양 성분 표시방법은 포장 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 내용은 포장 용기 외부 표면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반드시 중문(번체자)으로 표기해야 함 표시 항목 : '영양표기(營養標示)'문구, 열량, 단백질, 지방·포화지방(또는 포화지방산)·트랜스지방(또는 트랜스 지방산), 탄수화물·당, 나트륨, 기타 영양소 함량, 업자가 표기하기 원하는 기타 영양소 함량 포장식품의 영양 표시 형식 예시)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3">영 양 표 기</th> </tr> <tr> <th rowspan="2">매 1인분량 분 포장</th> <th>Og(또는ml) O인분 포장</th> <th></th> </tr> <tr> <th>매분량</th> <th>매 100g/ml 당</th> </tr> </thead> <tbody> <tr> <td>열량</td> <td>Kcal</td> <td>Kcal</td> </tr> <tr> <td>단백질</td> <td>g</td> <td>g</td> </tr> <tr> <td>지방</td> <td>g</td> <td>g</td> </tr> <tr> <td>포화지방</td> <td>g</td> <td>g</td> </tr> <tr> <td>불포화지방</td> <td>g</td> <td>g</td> </tr> <tr> <td>탄수화물</td> <td>g</td> <td>g</td> </tr> <tr> <td>당</td> <td>g</td> <td>g</td> </tr> <tr> <td>나트륨</td> <td>mg</td> <td>mg</td> </tr> <tr> <td>권장 영양소 함량</td> <td>g, mg, ug</td> <td>% 혹은 *</td> </tr> <tr> <td>권장 영양소 함량</td> <td>g, mg, ug</td> <td>% 혹은 *</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3">營養標示</th> </tr> <tr> <th>每一份量 本包裝盒</th> <th>公克(或毫升) 份</th> <th></th> </tr> <tr> <th></th> <th>每份</th> <th>每100公克 (每100毫升)</th> </tr> </thead> <tbody> <tr> <td>熱量</td> <td>大卡</td> <td>大卡</td> </tr> <tr> <td>蛋白質</td> <td>公克</td> <td>公克</td> </tr> <tr> <td>脂肪</td> <td>公克</td> <td>公克</td> </tr> <tr> <td>飽和脂肪</td> <td>公克</td> <td>公克</td> </tr> <tr> <td>反式脂肪</td> <td>公克</td> <td>公克</td> </tr> <tr> <td>碳水化合物</td> <td>公克</td> <td>公克</td> </tr> <tr> <td>糖</td> <td>公克</td> <td>公克</td> </tr> <tr> <td>鈉</td> <td>毫克</td> <td>毫克</td> </tr> <tr> <td>資料來源: 營養成分表</td> <td></td> <td></td> </tr> <tr> <td>其他營養成分</td> <td></td> <td></td> </tr> </tbody> </table>	영 양 표 기			매 1인분량 분 포장	Og(또는ml) O인분 포장		매분량	매 100g/ml 당	열량	Kcal	Kcal	단백질	g	g	지방	g	g	포화지방	g	g	불포화지방	g	g	탄수화물	g	g	당	g	g	나트륨	mg	mg	권장 영양소 함량	g, mg, ug	% 혹은 *	권장 영양소 함량	g, mg, ug	% 혹은 *	營養標示			每一份量 本包裝盒	公克(或毫升) 份			每份	每100公克 (每100毫升)	熱量	大卡	大卡	蛋白質	公克	公克	脂肪	公克	公克	飽和脂肪	公克	公克	反式脂肪	公克	公克	碳水化合物	公克	公克	糖	公克	公克	鈉	毫克	毫克	資料來源: 營養成分表			其他營養成分	
영 양 표 기																																																																													
매 1인분량 분 포장	Og(또는ml) O인분 포장																																																																												
	매분량	매 100g/ml 당																																																																											
열량	Kcal	Kcal																																																																											
단백질	g	g																																																																											
지방	g	g																																																																											
포화지방	g	g																																																																											
불포화지방	g	g																																																																											
탄수화물	g	g																																																																											
당	g	g																																																																											
나트륨	mg	mg																																																																											
권장 영양소 함량	g, mg, ug	% 혹은 *																																																																											
권장 영양소 함량	g, mg, ug	% 혹은 *																																																																											
營養標示																																																																													
每一份量 本包裝盒	公克(或毫升) 份																																																																												
	每份	每100公克 (每100毫升)																																																																											
熱量	大卡	大卡																																																																											
蛋白質	公克	公克																																																																											
脂肪	公克	公克																																																																											
飽和脂肪	公克	公克																																																																											
反式脂肪	公克	公克																																																																											
碳水化合物	公克	公克																																																																											
糖	公克	公克																																																																											
鈉	毫克	毫克																																																																											
資料來源: 營養成分表																																																																													
其他營養成分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어 라벨 준비 시, 대만 현지 영양 성분 표시에 관한 국가 규정을 알 수 없어 라벨 기재 시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FDA(식품보위생부 식품약품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포장식품의 영양표시 준수사항에 관한 총칙》확인 																																																																												

No.	제목	대만 해외공장등록 등 수출 준비 과정의 어려움	해당국가	22.919mm
2			관련품목	김 부각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수출통관을 위한 준비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 전 구비 서류 : Invoice,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필요시), 전락물자 자가판정서(필요시) 2) 수출신고 전 확인 사항 : 원산지증명서 발행 여부 검토, 환급 대상 여부, 수출 품목의 HS CODE 검토, 물품의 소재지 확인 3) 수출 신고 : 수출 화주로부터 전달받은 Invoice, Packing List를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및 관세청에 전자 접수 4) 세관 심사 : 수출 신고 결과에 따라 세관이 심사가 있을 경우 서류심사, 현품검사가 이루어짐 5) 선(기)적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함 			
애로·건의 사항	• 해외 공장 등록 등 수출 준비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움			
기타	※ 대만 관세청 홈페이지 참고(https://eweb.customs.gov.tw/)			

No.	제목	2-클로로에탄올 검출 기준 강화에 따른 라면 수출의 어려움	해당국가	대만								
3			관련품목	라면								
			유형*	SPS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 대만 식약서는 농심의 수출용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제품에서 에틸렌 옥사이드(EO)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1,000 상자 1,128kg을 반송 및 폐기 조치한 바 있음. 그러나 대만이 문제 삼은 EO가 실은 2-CE(2-클로로에탄올) 이었으며, 검출량이 미미해 인체에 위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 라면 수프에 대한 2-CE 허용 기준치 <table border="1" data-bbox="323 1209 1009 1310"> <thead> <tr> <th></th> <th>한국</th> <th>미국·캐나다</th> <th>대만</th> </tr> </thead> <tbody> <tr> <td>잔류 허용 기준치</td> <td>30ppm</td> <td>940ppm</td> <td>0.055ppm</td> </tr> </tbody> </table> 					한국	미국·캐나다	대만	잔류 허용 기준치	30ppm	940ppm	0.055ppm
	한국	미국·캐나다	대만									
잔류 허용 기준치	30ppm	940ppm	0.055ppm									
애로·건의 사항	• 2-CE(2-클로로에탄올) 기준 강화로 수프를 별도 생산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 후 납품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검사비 부담 및 강도 높은 규정에 의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타	-											

1. 누룩발효음료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대만 식품 위생법 사전 검토

자문 내용

- 관세 분류

부류	내용물 명칭	HS CODE	관세율	비고
			WTO	
음료	누룩발효음료	2202999000	-	-
			-	

자문 결론

- 해당 제품은 상온 보관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검사를 진행해야 함

검사항목		비용(USD)	검사 소요시간	검사 시 필요 샘플양
미생물	장내 세균과	84	7	200ml
	살모넬라균	63		

- 대만식품위생법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제품 통관 시 현지 세관에서 샘플 채취 가능성이 있음. 대만 법규에 부합하도록 수입 전에 제품 검사를 실시하여 수입할 것을 권고함

아시아

홍콩 HONG KONG

2022년 한눈에 보이는
홍콩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10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21
03. 비관세 장벽 현황	122
04. 수출 애로사항	128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식품시장 규모는 252억 7,460만 달러(한화 약 34조 2,648억 원)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가공식품보다 신선식품 시장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146억 6,760만 달러(한화 약 19조 8,849억 원)로 전체 시장의 58.0%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4% 증가함
 -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육류(26.1%)이며, 뒤이어 채소류(15.2%), 과일 및 견과류(8.6%), 낙농품(5.8%), 유지류(2.4%) 순으로 집계됨
 - 가공식품 시장 규모 전체 시장의 42.0%인 106억 700만 달러(한화 약 14조 3,799억 원)로 집계되며,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와 스낵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가 전체 시장의 13.8%로 가공식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스낵류(9.0%), 영유아용 식품(7.4%), 편의식품(7.1%) 순으로 나타남
 - * 전체 품목 모두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임

식품 시장 규모(2017~2021)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1,446.2	22,960.1	23,170.4	24,199.9	25,274.6	100.0	4.4
신선식품	12,478.3	13,348.0	13,464.0	14,054.7	14,667.6	58.0	4.4
- 육류	5,638.0	6,023.0	6,066.0	6,322.0	6,589.0	26.1	4.2
- 채소류	3,268.0	3,499.0	3,530.0	3,687.0	3,851.0	15.2	4.4
- 과일 및 견과류	1,833.0	1,964.0	1,983.0	2,073.0	2,167.0	8.6	4.5
- 낙농품	1,223.0	1,310.0	1,329.0	1,393.0	1,456.0	5.8	4.5
- 유지류	516.3	552.0	556.0	579.7	604.6	2.4	4.3
가공식품	8,967.9	9,612.1	9,706.4	10,145.2	10,607.0	42.0	4.6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3,020.0	3,216.0	3,227.0	3,352.0	3,482.0	13.8	3.9
- 스낵류	1,799.0	1,962.0	2,016.0	2,145.0	2,281.0	9.0	6.3
- 영유아용 식품	1,610.0	1,717.0	1,725.0	1,794.0	1,866.0	7.4	4.0
- 편의식품	1,551.0	1,656.0	1,666.0	1,734.0	1,806.0	7.1	4.2
- 소스 및 향신료	685.6	730.9	734.1	763.3	793.8	3.1	4.0
- 스프레드 및 당류	302.3	330.2	338.3	356.9	378.2	1.5	6.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755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0.7% 증가함
 - 연령대별 인구수는 균등한 편으로,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도 전체 인구의 약 35.0% 수준임
 - 여성 인구수는 410만 명(약 54.2%), 남성 인구수는 350만 명(45.8%)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음

- 2021년 가구수는 284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3만 4,740달러(한화 약 4,710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0년 대비 12.9% 증가함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4천 달러(한화 약 542만 원)로 약 11.5%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3.0% 증가한 수치임

- 2021년 1인당 식품 연간 소비액 3,346.52달러(한화 약 453만 원)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신선식품의 소비 비중이 가공식품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함
 - 2021년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942.05달러(한화 약 263만 원)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식품 소비액의 58.0% 차지함
 - * 육류의 비중이 26.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채소류(15.2%), 과일 및 견과류(8.6%) 순임
 - 2021년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1,404.47달러(한화 약 190만 원)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식품 소비액의 42.0%에 해당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비중이 13.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스낵류(9.0%), 영유아용 식품(7.4%) 순임
 - * 스낵류 및 스프레드 및 당류의 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량 중 채소류가 280.30kg으로 가장 높으며, 과일 및 견과류의 연간 소비량이 109.56kg으로 뒤를 이음
 - 가공식품 중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27.87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편의식품 소비량이 27.65kg으로 뒤를 이음

1인당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935.28	3114.63	3115.79	3227.73	3346.52	100.0	3.7
신선식품	1707.87	1810.88	1810.57	1874.52	1942.05	58.0	3.6
- 육류	771.60	817.10	815.70	843.20	872.50	26.1	3.5
- 채소류	447.30	474.70	474.70	491.70	509.90	15.2	3.7
- 과일 및 견과류	250.90	266.50	266.70	276.50	286.90	8.6	3.8
- 낙농품	167.40	177.70	178.70	185.80	192.70	5.8	3.7
- 유지류	70.67	74.88	74.77	77.32	80.05	2.4	3.5
가공식품	1227.41	1303.75	1305.22	1353.21	1404.47	42.0	3.8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413.30	436.20	433.90	447.10	461.00	13.8	3.1
- 스낵류	246.30	266.10	271.10	286.10	302.00	9.0	5.6
- 영유아용 식품	220.40	232.90	232.00	239.30	247.10	7.4	3.3
- 편의식품	212.20	224.60	224.00	231.30	239.20	7.1	3.4
- 소스 및 향신료	93.84	99.15	98.72	101.80	105.10	3.1	3.2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1인당 식품 소비량(2017~2021)

(단위 : 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288.75	293.17	277.62	277.90	280.30	0.9
	- 과일 및 견과류	115.30	116.19	108.75	109.19	109.56	0.3
	- 육류	90.85	96.65	95.88	99.30	103.05	3.8
	- 낙농품	50.62	51.76	49.69	50.77	51.61	1.7
	- 유지류	13.61	13.75	12.96	13.05	13.10	0.3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38.31	138.30	129.10	128.49	127.87	△0.5
	- 편의식품	29.37	29.50	27.66	27.66	27.65	0.0
	- 스낵류	26.40	27.02	25.83	26.39	26.89	1.9
	- 영유아용 식품	21.54	21.61	20.25	20.23	20.20	△0.1
	- 소스 및 향신료	17.57	17.66	16.57	16.56	16.54	△0.1
	- 스프레드 및 당류	10.38	10.66	10.17	10.29	10.45	1.6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기준 홍콩의 농식품 수출 규모는 약 88억 1,108만 3,000달러(한화 약 11조 9,452억 원)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함
 - 주요 수출국은 중국, 마카오,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등이 있으며, 상위 10개 수출국 중 베트남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64.4%로 크게 증가함
 -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이며, 한국은 수출 7위국에 해당
 - *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62억 6,838만 8,000달러(한화 약 8조 4,981억 원)로,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71.1% 차지
 - * 뒤이어 마카오(11.2%), 베트남(4.6%), 싱가포르(2.3%), 대만(2.0%) 순으로 확인되며, 對대만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45.2%) 감소함
 - * 對한국 수출 규모는 9,390만 8,000달러(한화 약 1,273억 원)로, 전년 대비 28.8% 감소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0,885,697	11,581,224	10,418,518	7,928,744	8,811,083	100.0	11.1	△5.1
1 중국	5,004,163	5,906,905	6,376,586	5,561,202	6,268,388	71.1	12.7	5.8
2 마카오	1,075,736	1,100,520	1,072,877	837,658	991,185	11.2	18.3	△2.0
3 베트남	1,259,683	1,885,821	1,071,973	247,306	406,618	4.6	64.4	△24.6
4 싱가포르	238,884	221,578	217,070	142,513	198,779	2.3	39.5	△4.5
5 대만	2,355,381	1,459,786	408,347	328,483	179,970	2.0	△45.2	△47.4
6 미국	137,321	146,766	138,880	130,201	145,358	1.6	11.6	1.4
7 한국	127,176	144,172	340,646	131,963	93,908	1.1	△28.8	△7.3
8 일본	62,216	68,664	85,823	61,858	78,770	0.9	27.3	6.1
9 필리핀	50,564	47,457	49,633	56,406	69,558	0.8	23.3	8.3
10 호주	67,872	60,848	74,149	52,681	48,773	0.6	△7.4	△7.9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 품목은 버찌 기타(신선), 조제품 기타 등임

- * 2021년 주요 수출 농식품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버찌 기타(신선)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7.1% 증가한 10억 7,578만 3,000달러(한화 약 9,659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12.2%를 차지함
- * 뒤이어 조제품 기타(10.4%), 경주용 말과 그 외 말(8.1%), 두리안(신선)(7.4%) 순이며, 조제품 기타는 전년 대비 22.8%, 연평균 18.8%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 그 외 기타 신선 과실류의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20.8%로 크게 증가했으며, 기타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 포도즙 품목의 수출 규모도 전년 대비 75.4%의 큰 증가율을 보임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0,885,697	11,581,224	10,418,518	7,928,744	8,811,083	100.0	11.1	△5.1	
1	버찌 기타 (신선)	302,102	649,103	764,848	846,427	1,075,783	12.2	27.1	37.4
2	조제품 기타	460,197	584,294	538,655	745,711	915,926	10.4	22.8	18.8
3	경주용 말과 그 외 말 *말(또유가축류)	298	144,776	568,007	567,399	717,659	8.1	26.5	(-)
4	두리안 (신선)	293,359	342,863	455,292	585,878	649,036	7.4	10.8	22.0
5	전지분유 외 기타 (농축/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초과)	729,228	992,167	944,721	489,563	435,406	4.9	△11.1	△12.1
6	포도 (신선)	363,878	369,044	395,666	376,385	334,494	3.8	△11.1	△2.1
7	기타 베이커리 제품	203,526	246,351	272,841	280,478	325,165	3.7	15.9	12.4
8	그 밖의 과실 (기타/신선한 것)	123,941	83,042	121,178	105,844	233,672	2.7	120.8	17.2
9	포도 증류주 (교탁 이외 기타)	262,182	287,567	227,294	173,254	221,080	2.5	27.6	△4.2
10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 포도즙 (기타/붉은 포도주, 흰 포도주 제외/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559,884	429,217	184,360	107,773	189,034	2.1	75.4	△23.8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1년 농식품 수입액은 약 234억 1,820만 7,000달러(한화 약 31조 7,481억 원)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2%의 감소 동향을 보임
 - 중국산 농식품이 가장 높은 수입 비중(23.0%)을 차지하며, 뒤이어 미국(8.1%), 칠레(8.1%) 순이고 한국산 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함
 - *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53억 7,528만 5,000달러(한화 약 5조 7,599억 원)로 전년 대비 6.5% 증가
 - *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 19억 418만 6,000달러(한화 약 2조 4,278억 원)로 전년 대비 10.5%, 최근 5년간 연평균 18.3% 감소
 -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3억 6,248만 1,000달러(한화 약 6,184억 원)로 집계, 전년 대비 2.1%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5% 증가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24,533,610	25,647,990	24,278,462	22,304,485	23,418,207	100.0	5.0	△1.2
1 중국	4,967,429	5,219,017	5,107,981	5,047,699	5,375,285	23.0	6.5	2.0
2 미국	4,278,694	4,178,891	3,306,305	2,127,583	1,904,186	8.1	△10.5	△18.3
3 칠레	677,430	1,178,179	1,415,736	1,271,032	1,885,681	8.1	48.4	29.2
4 호주	1,255,336	1,268,039	1,627,733	1,573,737	1,795,232	7.7	14.1	9.4
5 브라질	2,191,347	2,432,267	2,000,434	1,992,836	1,689,887	7.2	△15.2	△6.3
6 태국	963,286	1,047,251	1,176,940	1,506,414	1,540,605	6.6	2.3	12.5
7 일본	872,642	980,193	985,775	1,109,845	1,281,848	5.5	15.5	10.1
8 프랑스	1,407,453	1,513,856	1,155,322	976,899	1,182,419	5.0	21.0	△4.3
9 뉴질랜드	508,142	579,213	685,193	541,936	630,594	2.7	16.4	5.5
10 네덜란드	1,085,251	1,002,512	863,299	619,324	561,317	2.4	△9.4	△15.2
14 한국	342,043	379,845	334,519	355,187	362,481	1.5	2.1	1.5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은 버찌 기타(신선), 조제품 기타, 뼈 없는 쇠고기(냉동)로 나타남
 - * 2021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버찌 기타(신선)로, 수입액은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15억 8,954만 2,000달러(한화 약 2조 1,549억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83.9% 증가한 수치임
 - * 그 외 조제품 기타(5.5%), 뼈 없는 쇠고기(냉동)(5.5%), 기타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 포도즙(5.4%) 등이 주요 수입되며, 쇠고기(냉동) 품목과 전지분유 외 기타 제품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임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24,533,610	25,647,990	24,278,462	22,304,485	23,418,207	100.0	5.0	△1.2	
1	버찌 기타 (신선)	445,554	836,828	990,251	864,321	1,589,542	6.8	83.9	37.4
2	조제품 기타	904,249	1,143,234	999,232	1,006,924	1,284,236	5.5	27.5	9.2
3	쇠고기 (냉동/뼈 없는 것)	1,570,257	1,770,175	1,400,600	1,510,811	1,280,086	5.5	△15.3	△5.0
4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 포도즙 (기타/붉은 포도주, 흰 포도주 제외/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470,832	1,466,086	1,056,691	893,843	1,258,117	5.4	40.8	△3.8
5	소식용 설육 (기타/냉동)	982,149	1,132,813	1,011,260	949,555	951,046	4.1	0.2	△0.8
6	경주용 말과 그 외 말 *말(포유가축류)	129,194	259,651	672,783	699,720	854,562	3.6	22.1	60.4
7	두리안 (신선)	297,526	351,683	482,045	629,167	718,170	3.1	14.1	24.6
8	전지분유 외 기타 (농축/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1,205,880	1,428,360	1,443,519	824,059	695,789	3.0	△15.6	△12.8
9	물 (광천수, 탄산수, 얼음, 눈 이외 기타/설탕, 감미료, 향미 무첨가)	613,965	611,710	613,387	565,147	620,627	2.7	9.8	0.3
10	돼지고기 (냉동/기타)	830,761	552,229	447,991	556,814	596,086	2.5	7.1	△8.0

*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홍콩 농식품 수출현황

- 2017년 이후 한국의 對홍콩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증감을 반복함
 - 2021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수입액은 3억 9,929만 5,200달러(한화 약 5,413억 원)로 전년 대비 7.1% 증가함
 - * 농산물의 수출액은 3억 6,018만 6,300달러(한화 약 4,883억 원)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3.3%의 성장세를 보임
 - * 축산물(9.2%) 수출액은 3,665만 5,300달러(한화 약 497억 원)로 전년 대비 18.7% 감소하였으며, 임산물(0.6%)의 수출액은 245만 3,600달러(한화 약 33억 원)로 전년 대비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對홍콩 수출 규모(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340,242.5	371,381.3	352,909.2	372,706.0	399,295.2	100.0	7.1	4.1
농산물	316,863.9	349,193.2	326,218.2	324,835.0	360,186.3	90.2	10.9	3.3
축산물	19,551.4	18,888.9	23,899.8	45,072.5	36,655.3	9.2	△18.7	17.0
임산물	3,827.7	3,299.2	2,791.2	2,798.5	2,453.6	0.6	△12.3	△10.5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당(고체), 조제품 기타, 맥주임
 -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2개 품목은 향미제 및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고체의 자당(10.9%)과 조제품 기타(8.3%) 임
 - * 2021년 자당 수출액은 4,367만 8,100달러(한화 약 592억 원)로, 전년 대비 35.2%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3.0% 감소하였음
 - * 조제품 기타 수출액은 3,306만 6,600달러(한화 약 448억 원)로, 전년 대비 45.7%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5.7% 증가하였음
 - 그 뒤를 맥주(6.9%), 신선 초분류 딸기(5.4%), 라면(4.3%)이 따르며, 라면 수출량은 전년 대비 3.1% 감소함

한국의 對香港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340,242.5	371,381.3	352,909.2	372,706.0	399,295.2	100.0	7.1	4.1	
1	자당 (고체의 것 / 향미제 및 착색제 미첨가)	49,434.3	38,449.4	33,499.3	32,306.2	43,678.1	10.9	35.2	△3.0
2	조제품 기타	26,468.6	24,395.1	22,002.8	22,691.0	33,066.6	8.3	45.7	5.7
3	맥주	34,739.0	36,203.6	31,496.6	25,138.1	27,659.2	6.9	10.0	△5.5
4	초분류딸기 (신선)	17,347.1	17,437.3	17,276.0	17,353.1	21,670.7	5.4	24.9	5.7
5	라면	12,295.2	13,972.1	12,765.1	17,519.5	16,970.3	4.3	△3.1	8.4

-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제도

통관제도

- 홍콩은 일반 수출입화물이나 환적 화물의 세관절차가 없음
 - 일부 품목에 한해 수입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관 시 검사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홍콩세관의 지시사항을 따라 진행하거나, 관련 절차를 선사나 운송사, 관할 세관 등에 문의할 수 있음

- 홍콩의 통관 및 검역 관련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수출입 일반 : Import and Export(Registration) Regulations(Cap. 60)
 - 관세 일반 :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Cap. 109)
 - 식품검역 일반 :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

- 관련 기관 : 홍콩 관세청(HK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www.customs.gov.hk))
 - 주요 업무 : 수출입 통관, 소비자 보호, 관세부과 물품 확인, 라이선스 및 허가 신청, 수출입 신고, 지식 재산권 보호, 마약류 검사

- 홍콩은 거의 모든 식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로, 수입신고 후 3~7일 이내 수입 허가증이 자동 발급됨
 - 수출 물품이 항구에 도착한 후로부터 14일 내 적하목록을 제출
 - * 쌀, 냉동육, 가금류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도착일로부터 7일 내 수입허가증 발급 필요
 - 전자 세관 시스템 통해 세관신고서 및 수입 물품 관련 서류 전송
 - * 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수입허가증(필요시) 등을 제출
 - 일부 품목은 임의로 추출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반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도 낮은 품목은 신속 통관
 - 일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및 제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주류의 경우
 - * 30도 이상의 주류의 경우 세관에서 공시한 계자로 관세 납부
 - 통관절차 완료 후 화물 반출이 가능함
- 통관 시 통관신고서(Bill of Entry, 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 작성), 상업 송장(Invoice),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 P/O),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AWB), 원산지증명서(필요시), 화물 검사 증명서(필요시)가 요구됨
- 수출입 시 어떤 품목이든 홍콩 관세청(Customs and Excise)의 감독관에게 해당 품목의 수입 및 수출 후 14일 이내에 관련사항을 신고해야 함
 - 필요한 신고는 도착신고(Arrival declaration)와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로 14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됨

검역제도

- 식품과 관련된 기본법은 「공중보건법령 제5조(Part V of the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 및 「식품 안전 조례(Food Safety Ordinance(Cap. 612))」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자유무역국가인 홍콩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상 검사·검역 비율이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 홍콩세관은 수입화물에 대해 일부 물품을 임의로 추출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함
- 현장 검사 비율이 낮으므로 운송수단별로 화물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물이 홍콩으로 반입되기 전에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사전에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성이 낮은 화물은 신속히 통관하도록 하고 있음

- **홍콩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 제품은 위생 검역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 완료까지 2~3일 정도 소요됨**
 - 위생검역을 위해 샘플이 일부 차출될 경우 수입자는 **홍콩식품환경위생부**로부터 관련 통지서를 받게 됨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는 미생물 검사 등을 위해 입국 시 **식품 견본**을 채취함
 - 검역 완료 후, 수입자는 통지서와 인보이스를 **홍콩 식품 환경 위생부** 제출 시 샘플로 차출된 상품에 대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음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는 홍콩 식품 안전관리 정책 및 식품 관련 입법 시행을 담당함**
 - **홍콩으로 식품 수입 시 수출국에서 발급한 위생검역 관련 증서가 필요하며 품목별 검역절차가 상이함**

<p>냉동 당과제품 (Frozen Confec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체는 제조원 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 시 다음의 정보를 서면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 당과류 처리 공장의 이름과 주소 - 생산국의 법률, 라벨이 붙은 포장 또는 빈 용기 - 공장의 열처리 방법 - 처리 공장의 설비 - 급수 설비 등을 포함한 정보 - 생산국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위생 및 식품안전 인증서
<p>육류 및 가금류 (Game, Meat, Poult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환경위생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관할 기관의 증명서를 가진 육류와 가금류만 수입이 가능 ● 공인되지 않은 관할 기관의 국가 및 장소에서 수입할 시 해당 관할기관 혹은 정부가 식품환경위생부에서 서면으로 수입신청, 해당 국가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질병 상황 및 육류와 가금류의 위생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 - 육류와 가금류 처리 공장의 위치, 시설 및 처리 과정과 생산, 저장 및 운송 정보 - 공인된 수의과의 건강증명서 샘플 - 수의과의 건강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식 명칭
<p>우유 및 유제품 (Milk and Milk Beverag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도착 전 홍콩 식품환경위생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홍콩에 우유·유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 업체는 제품 수입 전 다음의 정보를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 우유·유제품 생산에 관한 생산국의 법률 - 라벨이 첨부된 우유 또는 유제품의 빈 용기 - 가공 공장의 생산 설비와 급수 시설, 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생산국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 우유·유제품의 살균, 가공, 포장, 열처리 방법에 관한 위생 및 품질보증서 - 제품의 유통기한을 증명하는 제조업체의 인증서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 수출가능 품목

협상타결 품목

- 축산물
 - 열처리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쇠고기, 가금육, 식용란, 양념쇠고기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 축산물
 - 반려동물 사료, 아이스크림, 식육추출가공품, 치즈, 오믈렛(제빵류), 멸균 돈육가공품(햄)

2. 수출 불가능 품목

- 주요 신선 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없음
 - * 신선 과채류 등 식용 농산물은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없이 휴대·화물 수출 가능
 - * 재식용인 경우에는 수출검역조건에 대해 상대국에 사전 확인 필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한인홍(홍콩)
업체 유형	식품 수입유통업체
담당자명	Mr. Jeson

- 현지에서 인기 있는 한국 신선식품은 복숭아, 딸기, 샤인머스켓 등 주로 과일 품목이며, 포도류가 인기가 많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신선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신선식품을 홍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 절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가공식품의 경우 간장게장과 김치의 인기가 높은 데, 간장게장은 날 것을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수입 시 위생증명서와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며 제조과정에서의 위생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많이 문제 삼고 있음
- 하프웰(생굴)의 경우 단기간 안에 섭취를 해도 보관상태에 따라 알레르기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품목임

1. SPS

주요 SPS 내용

- 홍콩 정부는 식품 규정상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 함량에 대한 개정안 (Cap.132AF)에 대해 2020년 12월부터 3개월간의 협의에 착수함. 개정안은 세 가지 종류의 미코톡신(mycotoxins) 사용을 더욱 엄격히 규제할 것으로, 식용 지방과 기름, 조미료와 조제식품, 유아용 식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식품 영역에서 건강에 해로운 물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것임. 이는 WHO의 트랜스지방 섭취율을 낮추기 위한 전 세계적인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8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임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식품안전센터(CFS)	https://www.cfs.gov.hk/english/whatsnew/whatsnew_fstr/whatsnew_fstr_21_Pesticide.html
식품 보존료 규정	식품안전센터(CFS) - 132BD	https://www.cfs.gov.hk/english/food_leg/food_leg.html
식품 착색료 규정	식품안전센터(CFS) - 132H	https://www.cfs.gov.hk/english/food_leg/food_leg.html
식품 감미료 규정	식품안전센터(CFS) - 132U	https://www.cfs.gov.hk/english/food_leg/food_leg.html
미생물 규정	식품안전센터(CFS)	https://www.cfs.gov.hk/english/food_leg/files/food_leg_Microbiological_Guidelines_for_Food_e.pdf

2. TBT

주요 TBT 내용

- 최근 홍콩에서 발표한 주요 TBT 규정 내용 없음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식품안전센터(CFS) - 132W	https://www.cfs.gov.hk/english/food_leg/food_leg_list.html#cl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원료 정보 • 유통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섭취방법 • 특정 보관 조건(필요시) • 제조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 • 양성분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영어 또는 중국어로 표기 가능하며, 2개 언어를 동시에 사용 가능함 라벨에 2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라벨의 내용을 2개의 언어로 병기할 것		
	제품명	제품명은 거짓된 정보를 담고 있거나 오해를 줄 수 있는 형태이지 않을 것 제품의 구매를 위해 식품의 원료와 타입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낼 것		
	원료정보	'Ingredient', 'Composition', 'Contents' 또는 이와 비슷한 의미의 용어를 사용할 것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원료의 중량 또는 용량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작성할 것 아래 원료를 포함하는 경우 원료명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 글루텐을 포함한 시리얼 (밀, 호밀, 보리, 귀리, 나맥 또는 변종된 제품 및 관련 품목의 제품)		
		- 감각류와 관련 품목의 제품 - 달걀과 관련 품목의 제품 - 어류와 관련 품목의 제품 - 땅콩, 대두와 관련 품목의 제품 - 우유와 유제품(락토스 포함) - 견과류와 관련 품목의 제품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경우 해당 식품 첨가물의 기능 분류와 정확한 명칭 또는 INS 번호를 표기할 것			
농도가 10ppm 이상인 아황산염이 사용된 경우, 기능 분류와 정확한 명칭을 기재할 것				
유통기한	유통기한(best before, 此日期前最佳) 단어 뒤에 날짜를 아라비아 숫자 또는 중국어, 영어로 표시해야 함			
권고사항	홍콩 식품환경위생과 및 식품안전센터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소금, 설탕이 함유된 포장 식품에 대해 라벨링을 권고하고 있으며 의무 사항은 아님			

* 자료 : 홍콩 식품안전센터(CFS),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USDA FA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과일 스낵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건망고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고 - 백설탕 - 포도당 - 시트르산 - 메타황산나트륨(보존제) 	
내용량	100g	
저장 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759 store	
유통기한	2022. 7. 26	
영양성분표시	에너지(칼로리)	377kcal
	단백질	1.30g
	지방	
	탄수화물	81.80g
	당류	71.70g
	나트륨	39mg

• 즉석 면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인스턴트 가래떡 떡볶이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 에틸알코올 - 소금 - 고과당 옥수수 시럽 - 고추장 - 토마토 케첩 - 사이다 식초 - 고춧가루 - 쇠고기 시즈닝(조미료) - 배즙 농축액 - 에틸알코올 - 겨자씨(파우더) 	
내용량	168ml	
출시일(발행일)	2022. 08. 04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Achim	
제조지(원산지)	한국	
영양성분표시(100g당)	- 1회 제공량 168g	
	- 총 1회 제공	
	에너지	300kcal
	단백질	6g
	지방	0g
	콜레스테롤	0mg
	탄수화물	67.80g
	당류	0.8g
나트륨	265mg	
알레르겐 주의 성분	밀, 대두, 글루텐 함유 시리얼	

인증


[필수 인증]

-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인증
 - 홍콩의 식품안전법에 따라 홍콩 보건당국에서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로, 홍콩 내 판매되는 수입식품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임. 포장 음료, 냉동 당과제품, 우유 및 우유제품, 커팅과일 제품, 허브차, 초밥 및 생선회, 신선 굴, 신선 육류, 활생선, 조개류, 자판기 판매식품 등의 품목에 적용되며 홍콩 내에서만 통용 가능함

인증명	식품환경위생부(FEHD)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콩 식품환경위생부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1. 국내 위생증명서 : 영업허가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필증, 검사성적서 2. FEHD인증 : 인증신청서, 국내 발급 위생증명서	
비용	별도 비용 없음	
소요기간	3일(국내 위생증명서)+18일(FEHD인증)	
절차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홍콩 식품환경위생부에 제출하여 FEHD인증을 발급	


[선택 인증]

- 홍콩 유기농 인증
 - 친환경 농축산물이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증

인증명	홍콩 유기농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홍콩유기농자원센터 및 홍콩유기농인증센터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성분 검역 성적표 등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및 심사 → 판정 → 인증발급	


-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S.A.

- 식품안전에 관한 인증

인증명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S.A.	
발행 및 검사기관	SGS-CSTC 지사	
강제유무	권장	
제출 서류	신청서(RFI), 선적 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신청서, 신용장, 위생증, 검역성적표 등)	
비용	없음	
소요기간	검역 품목에 따라 다름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및 심사 → 판정 → 인증발급	


- HACCP 인증

- 식품생산 과정에서의 위생에 관한 인증

인증명	HACCP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홍콩 품질 보증 기관 (Hong Kong Quality Assurance Agency)	
적용품목	모든 식품	
제출 서류	신청서, 성분 검역 성적표 등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및 심사 → 판정 → 인증발급	

- GMP 인증

- 식품의 생산 안전성과 생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인증

인증명	GMP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홍콩 SGS 지점 혹은 타 공인인증기관	
적용품목	농업, 식품 제조업	
유효 기간	3년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및 심사 → 판정 → 인증발급	

04

수출 애로사항

No.			해당국가	홍콩						
1	제목	한국산 가금류 수입 잠정 중단	관련품목	가금류						
			유형*	수입통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의 수입을 일시 제한하며, 수입 제한 고시를 홍콩 식품안전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함 • 한국의 경우, 2023년 1월, 총 11개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에 수입 잠정 중단조치가 취해짐 • 홍콩은 가금류 식품의 소비가 많은 국가로, 홍콩 식품안전센터의 관계자는 OIE와 관계 당국의 조류독감 발병 정보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지 발병 상황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에서 일부 한국산 가금류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가금류 제품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기타	<p>※2023년 1월 기준, 홍콩에서 수입 잠정 중단조치가 취해진 한국 지역</p> <table border="1" data-bbox="326 1165 1011 1437"> <thead> <tr> <th data-bbox="326 1165 612 1209">조치지역</th> <th data-bbox="612 1165 762 1209">내용</th> <th data-bbox="762 1165 1011 1209">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6 1209 612 1437"> 부산 충청남도-예산군 전라북도-남원시, 정읍시 경기도-김포시, 예천군, 고양시 경상남도-하동군, 김해시 경상북도-칠곡군, 성주군 </td> <td data-bbox="612 1209 762 143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H5N1) </td> <td data-bbox="762 1209 1011 1437"> (2022년 9월까지) 對한국 냉동가금육 수입량 : 10톤, 가금류 알 : 350만 개 </td> </tr> </tbody> </table>				조치지역	내용	비고	부산 충청남도-예산군 전라북도-남원시, 정읍시 경기도-김포시, 예천군, 고양시 경상남도-하동군, 김해시 경상북도-칠곡군, 성주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H5N1)	(2022년 9월까지) 對한국 냉동가금육 수입량 : 10톤, 가금류 알 : 350만 개
조치지역	내용	비고								
부산 충청남도-예산군 전라북도-남원시, 정읍시 경기도-김포시, 예천군, 고양시 경상남도-하동군, 김해시 경상북도-칠곡군, 성주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H5N1)	(2022년 9월까지) 對한국 냉동가금육 수입량 : 10톤, 가금류 알 : 350만 개								

No.			해당국가	홍콩
2	제목	식품 내 부분경화유 사용을 금지	관련품목	가공식품
			유형*	SPS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월, 홍콩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식품 내 트랜스지방산 제거 목표에 따라 《유해물질 규제》와 《식품 및 약물 규제》를 개정함 • 《유해물질 규제》개정안은 부분경화유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분경화유가 함유된 식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함 • 《식품 및 약물 규제》개정안은 경화유가 함유된 식품의 경우 성분표에 이를 표시하도록 개정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부터 가공식품 관련 식품 내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사 모든 제품의 경화유 원료를 비경화유 원료로 교체 중임. 또한, 제품에 경화유 관련 문구를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므로 제품 포장지 변경 및 비용 발생을 야기하고 있음 		
기타		-		

미주 및 유럽

미국 USA

2022년 한눈에 보이는
미국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32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44
03. 비관세 장벽 현황	147
04. 수출 애로사항	163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66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미국 식품 시장규모는 8,276억 7,700만 달러(한화 약 1,122조 817억 원)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신선식품보다 가공식품의 시장규모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4,036억 9,000만 달러(한화 약 547조 2,825억 원)로 전체 식품 시장의 48.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육류(17.8%)로, 2021년 시장규모가 1,477억 달러(한화 약 200조 2,369억 원)로 집계됨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전체 시장의 51.2%에 해당하는 4,239억 8,700만 달러(한화 약 574조 7,992억 원)로 집계되며, 스낵류,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비중이 높음
 - * 2021년 스낵류(33.0%) 시장규모는 2,729억 달러(한화 약 369조 9,705억 원)로 집계됨
 - * 그 뒤를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7.6%), 편의식품(5.4%), 소스 및 향신료(3.3%), 스프레드 및 당류(1.2%), 영유아용 식품(0.7%)이 이음

미국 식품시장 규모(2017~2021)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742,234.0	762,338.0	780,910.0	805,363.0	827,677.0	100.0	2.8
신선식품	359,310.0	369,750.0	379,420.0	392,110.0	403,690.0	48.8	3.0
- 육류	131,300.0	135,200.0	138,800.0	143,400.0	147,700.0	17.8	3.0
- 낙농품	77,390.0	79,570.0	81,590.0	84,460.0	86,880.0	10.5	2.9
- 채소류	69,510.0	71,540.0	73,430.0	75,860.0	78,130.0	9.4	3.0
- 과일 및 견과류	67,600.0	69,590.0	71,440.0	73,820.0	76,030.0	9.2	3.0
- 유지류	13,510.0	13,850.0	14,160.0	14,570.0	14,950.0	1.8	2.6
가공식품	382,924.0	392,588.0	401,490.0	413,253.0	423,987.0	51.2	2.6
- 스낵류	246,200.0	252,500.0	258,300.0	266,000.0	272,900.0	33.0	2.6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57,580.0	58,850.0	60,000.0	61,560.0	62,970.0	7.6	2.3
- 편의식품	40,200.0	41,340.0	42,410.0	43,780.0	45,060.0	5.4	2.9
- 소스 및 향신료	24,130.0	24,790.0	25,410.0	26,210.0	26,950.0	3.3	2.8
- 스프레드 및 당류	9,089.0	9,290.0	9,473.0	9,689.0	9,994.0	1.2	3.1
- 영유아용 식품	5,725.0	5,818.0	5,897.0	6,014.0	6,113.0	0.7	1.6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3억 3,2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0.6% 증가함
 - 연령대별 인구수는 균등한 편으로,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도 전체 인구의 약 29.7% 수준임
 - 여성 인구수는 1억 6,820만 명(약 50.5%), 남성 인구수는 1억 6,470만 명(49.5%)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지만 성비가 균등한 편임
- 2021년 가구수는 1억 3,39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4만 7,160달러(한화 약 6,394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0년 대비 11.12% 증가함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3,250달러(한화 약 441만 원)로 약 6.89%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6.21% 증가한 수치임
- 2021년 1인당 식품 연간 소비액은 총 2,486.13달러(한화 337만 446원)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가공식품이 신선식품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전체 품목 중 스낵류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으며, 스낵류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819.70달러(한화 약 111만 1,267원)로 전체의 33.0%를 차지함
 - * 스낵류(33.0%), 육류(17.8%), 낙농품(10.5%), 채소류(9.4%), 과일 및 견과류(9.2%) 순으로 나타남
 - 신선식품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1,212.71달러(한화 약 164만 4,071원), 가공식품의 연간 소비액은 1,273.42달러(한화 약 172만 6,375원)로 집계됨
 - * 전 품목 모두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임

미국 품목별 1인당 연간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283.24	2330.52	2373.26	2433.05	2486.13	100.0	2.2
신선식품	1105.46	1130.34	1153.14	1184.63	1212.71	48.8	2.4
- 육류	404.00	413.30	421.80	433.20	443.70	17.8	2.4
- 낙농품	238.10	243.30	248.00	255.20	261.00	10.5	2.3
- 채소류	213.80	218.70	223.20	229.20	234.70	9.4	2.4
- 과일 및 견과류	208.00	212.70	217.10	223.00	228.40	9.2	2.4
- 유지류	41.56	42.34	43.04	44.03	44.91	1.8	2.0
가공식품	1177.78	1200.18	1220.12	1248.42	1273.42	51.2	2.0
- 스낵류	757.30	771.90	785.00	803.50	819.70	33.0	2.0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77.10	179.90	182.30	186.00	189.10	7.6	1.7
- 편의식품	123.60	126.40	128.90	132.30	135.30	5.4	2.3
- 소스 및 향신료	74.21	75.79	77.21	79.18	80.94	3.3	2.2
- 스프레드 및 당류	27.96	28.40	28.79	29.27	30.02	1.2	2.6
- 영유아용 식품	17.61	17.79	17.92	18.17	18.36	0.7	1.0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 2021년 신선식품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낙농품, 채소류, 과일 및 견과류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 낙농품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23.67kg이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확인
 - * 신선식품 중 전년 대비 소비량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육류(0.6%)로, 이외 품목은 감소세를 보임
- 2021년 가공식품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스낵류,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편의식품 순으로 비중이 높음
 - * 스낵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87.46kg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0.9% 감소
 - * 스프레드 및 당류가 2.2%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높은 성장을 한 것으로 집계됨
- 2021년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육류(0.6%), 스프레드 및 당류(2.2%)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1인당 식품 소비량(2017~2021)

(단위 : 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낙농품	123.19	122.73	122.67	124.07	123.67	△0.3
	- 채소류	77.62	75.79	74.27	73.85	73.08	△1.0
	- 과일 및 견과류	56.45	54.51	52.85	52.59	51.77	△1.6
	- 육류	47.63	48.04	48.72	49.42	49.70	0.6
	- 유지류	12.43	12.30	12.22	12.30	12.22	△0.7
가공식품	- 스낵류	89.75	88.74	88.07	88.28	87.46	△0.9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52.09	51.53	51.17	51.40	50.99	△0.8
	- 편의식품	18.27	18.00	17.81	17.87	17.72	△0.8
	- 소스 및 향신료	14.31	14.11	13.96	14.04	13.93	△0.7
	- 스프레드 및 당류	9.12	9.25	9.43	9.64	9.86	2.2
	- 영유아용 식품	1.90	1.85	1.81	1.79	1.76	△2.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농식품 수출규모는 1,736억 7,094만 1,000달러(한화 약 235조 4,457억 원)로 전년 대비 18.7% 증가함
 -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17.7%로 가장 크며,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5.2%로 전체 수출 대상국 중 5위에 해당함
 - * 2021년 對중국 수출금액은 307억 1,143만 5,000달러(한화 약 41조 6,355억 원)로 전년 대비 28%가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15.0%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
 - * 뒤이어 캐나다(16.2%), 멕시코(14.4%), 일본(8.0%), 한국(5.2%) 순으로, 對캐나다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3.9%, 對멕시코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37.0%가 증가함
 - * 對한국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21.7% 증가한 90억 5,500만 9,000달러(한화 약 12조 2,759억 원)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7%의 성장률을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39,657,597	141,552,022	137,810,698	146,274,945	173,670,941	100.0	18.7	5.6
1 중국	17,570,098	7,634,175	12,607,055	23,991,601	30,711,435	17.7	28.0	15.0
2 캐나다	24,730,760	25,252,578	24,974,456	24,763,744	28,194,413	16.2	13.9	3.3
3 멕시코	18,549,911	19,092,046	19,256,119	18,307,866	25,086,602	14.4	37.0	7.8
4 일본	12,133,440	13,142,364	12,034,220	11,555,027	13,977,627	8.0	21.0	3.6
5 한국	6,481,872	8,065,999	7,457,286	7,441,176	9,055,009	5.2	21.7	8.7
6 대만	3,124,977	3,738,361	3,378,154	3,141,189	3,704,259	2.1	17.9	4.3
7 필리핀	2,636,325	3,042,873	2,962,101	3,162,368	3,531,382	2.0	11.7	7.6
8 콜롬비아	2,547,601	2,938,444	2,734,164	2,826,469	3,368,678	1.9	19.2	7.2
9 네덜란드	3,108,541	3,647,086	2,678,423	2,893,963	2,641,388	1.5	△8.7	△4.0
10 인도네시아	2,355,178	2,461,976	2,395,667	2,509,786	2,641,307	1.5	5.2	2.9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 품목은 대두 기타, 옥수수, 메슬린 외 기타 등 곡류가 주를 이룸

- * 2021년 주요 수출 농식품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품목은 대두 기타(15.8%)이며, 274억 362만 6,000달러(한화 약 37조 1,511억 원) 규모가 수출되었고 전년 대비 7.4%의 증가율을 보임
- * 뒤이어 옥수수 기타 품목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87억 4,981만 4,000달러(한화 약 25조 4,191억 원)가 수출되었으며, 연평균 19.3%의 성장률을 보임
- * 메슬린 외 기타 품목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71억 3,305만 2,000달러(한화 약 9조 6,703억 원)가 수출되었으며,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임
- * 그 외 기타 조제품, 대두유 추출 시 발생하는 오일 케이크와 유박, 신선 또는 냉동 상태의 뼈 없는 쇠고기 품목이 주로 수출되었으며, 상위 10개 수출 품목 중 탈각한 아몬드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39,657,597	141,552,022	137,810,698	146,274,945	173,670,941	100.0	18.7	5.6
1 대두 기타	21,465,095	17,058,506	18,693,793	25,519,247	27,403,626	15.8	7.4	6.3
2 옥수수 (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이외 기타)	9,250,666	12,582,849	7,773,589	9,339,551	18,749,814	10.8	100.8	19.3
3 메슬린 외 기타	5,973,274	5,311,615	6,053,479	6,076,095	7,133,052	4.1	17.4	4.5
4 조제품 기타	4,835,636	5,136,574	5,428,855	5,350,149	6,225,450	3.6	16.4	6.5
5 대두유 추출 시 발생하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유박	3,117,169	3,987,529	3,387,509	3,635,425	4,443,157	2.6	22.2	9.3
6 쇠고기 (신선, 냉장/뼈 없는 것)	3,157,537	3,434,807	3,299,768	3,371,849	4,403,481	2.5	30.6	8.7
7 쇠고기 (냉동/뼈 없는 것)	2,118,008	2,755,789	2,605,655	2,367,384	3,693,422	2.1	56.0	14.9
8 닭 (기타 설육/냉동)	2,566,601	2,639,436	2,656,057	2,783,712	3,384,697	1.9	21.6	7.2
9 아몬드 (탈각한 것/신선, 건조)	3,266,450	3,375,650	3,687,769	3,424,909	3,370,080	1.9	△1.6	0.8
10 양조 또는 증류 시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1,851,377	2,456,004	2,227,849	2,327,378	2,984,979	1.7	28.3	12.7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1년 농식품 수입액은 1,731억 2,992만 7,000달러(한화 약 234조 7,122억 원)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함
 - 對멕시코 수입 비중(21.8%)이 가장 높으며, 캐나다(17.9%), 프랑스(4.4%) 순임
 - * 2021년 멕시코 농식품의 수입액은 378억 2,160만 6,000달러(한화 약 51조 2,748억 원)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함
 - * 캐나다 농식품의 수입액은 309억 5,728만 달러(한화 약 41조 9,688억 원)로 나타나며, 전년 대비 23.2% 증가함
 - 한국산 농식품의 수입액은 10억 9,863만 4,000달러(한화 약 1조 4,894억 원)로, 전년 대비 6.0%, 연평균 14.1%의 증가세를 보이나 수입 규모는 0.6%에 불과함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30,973,980	138,937,959	142,753,810	150,399,316	173,129,927	100.0	15.1	7.2%	
1	멕시코	25,896,907	27,529,049	30,232,305	32,850,250	37,821,606	21.8	15.1	9.9%
2	캐나다	22,772,696	23,596,873	24,218,216	25,132,787	30,957,280	17.9	23.2	8.0%
3	프랑스	5,633,234	6,252,253	6,510,374	5,912,038	7,625,745	4.4	29.0	7.9%
4	이탈리아	4,939,939	5,333,698	5,475,767	5,621,712	6,603,810	3.8	17.5	7.5%
5	중국	5,819,373	6,377,885	4,934,452	5,275,650	5,926,556	3.4	12.3	0.5%
6	아일랜드	2,758,934	2,815,020	3,785,133	6,460,435	5,182,732	3.0	△19.8	17.1%
7	브라질	3,567,696	3,642,240	3,775,515	3,734,892	4,363,592	2.5	16.8	5.2%
8	싱가포르	1,034,431	3,638,149	3,468,074	3,351,286	3,721,915	2.1	11.1	37.7%
9	인도	2,773,264	2,860,305	2,903,866	2,972,351	3,575,793	2.1	20.3	6.6%
10	호주	3,141,900	3,124,516	3,473,353	3,309,236	3,459,114	2.0	4.5	2.4%
34	한국	647,894	680,081	778,926	1,036,657	1,098,634	0.6	6.0	14.1%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수입 상위 품목은 핵산과 이들의 염, 조제품 기타, 맥주 등

- * 핵산과 이들의 염 품목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4.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3.7% 감소한 73억 4,045만 3,000달러(한화 약 9조 9,515억 원)의 수입액을 기록함
- * 조제품 기타 품목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70억 220만 8,000달러(한화 약 9조 4,929억 원)이며, 연평균 33.1%의 성장률을 보임
- *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기타 주류 품목으로, 전년 대비 41.6% 증가한 38억 9,867만 8,000달러(한화 5조 2,854억 원)가 수입됨
- * 그 외 수입 상위 품목에는 맥주, 기타 베이커리 제품, 커피, 포도주, 소고기, 주류, 아보카도, 토마토 등이 있으며, 토마토를 제외한 품목의 수입액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임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30,973,980	138,937,959	142,753,810	150,399,316	173,129,927	100.0	15.1	7.2%	
1	핵산과 이들의 염, 그 외 헤테로고리 화합물 (기타) *혼합 조제 식료품	4,607,703	4,018,405	4,902,661	8,509,952	7,340,453	4.2	△13.7	12.3%
2	조제품 기타	2,229,896	5,174,314	5,741,675	6,287,782	7,002,208	4.0	11.4	33.1%
3	맥주	5,086,982	5,339,981	5,611,784	5,747,418	6,378,853	3.7	11.0	5.8%
4	기타 베이커리 제품	3,085,320	3,490,111	3,804,128	4,062,621	4,912,457	2.8	20.9	12.3%
5	커피 (볶지 않은 것/ 카페인 미제거)	4,803,457	4,310,413	4,269,891	4,102,540	4,819,774	2.8	17.5	0.1%
6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 포도즙 (기타/붉은 포도주, 흰 포도주 외/2리터 이하 용기에 넣은 것)	4,379,783	4,576,633	4,504,545	4,010,711	4,789,791	2.8	19.4	2.3%
7	쇠고기 (산선, 냉장/ 뼈 없는 것)	2,229,374	2,439,452	2,811,890	2,972,549	3,923,401	2.3	32.0	15.2%
8	주류 (기타/증류주· 리큐르 및 그 외 주정음료/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알코올 80% 미만))	1,370,632	1,627,622	1,948,116	2,752,698	3,898,678	2.3	41.6	29.9%
9	아보카도 (산선, 건조)	2,639,559	2,347,650	2,761,190	2,443,148	3,032,237	1.8	24.1	3.5%
10	토마토 (기타, 산선, 냉장)	2,177,334	2,380,487	2,290,468	2,805,811	2,802,179	1.6	△0.1	6.5%

* 주1: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미국 농식품 수출현황

- 2017년 이후 한국 농림 축산 식품의 對미국 수출액은 연평균 14.1%로 성장함
 - 2021년 한국 농림 축산 식품은 12억 6,348만 5,800달러(한화 약 1조 7,129억 원)가 수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규모임
 - * 농산물의 비중이 85.5%로 가장 높으며, 수출액은 10억 8,010만 7,600달러(한화 약 1조 4,643억 원)로 전년 대비 4.2%, 연평균 14.0%의 성장률을 보임
 - * 축산물(9.0%) 수출액은 전년 대비 71.3% 증가한 1억 1,309만 1,100달러(한화 약 1,533억 원), 임산물(5.6%)은 전년 대비 32.0% 감소한 7,028만 7,100달러(한화 약 953억 원) 임

한국의 對미국 수출규모(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745,653.3	801,981.7	874,216.8	1,206,182.9	1,263,485.8	100.0	4.8	14.1
농산물	640,507.9	673,839.4	739,117.7	1,036,833.6	1,080,107.6	85.5	4.2	14.0
축산물	37,118.1	42,242.2	57,948.6	66,037.7	113,091.1	9.0	71.3	32.1
임산물	68,027.3	85,900.1	77,150.5	103,311.6	70,287.1	5.6	△32.0	0.8

* 출처: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소스 및 소스 제조용 조제품, 조제품 기타, 베이커리 제품임
 -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라면(6.4%)이며, 라면의 對미국 수출액은 8,122만 6,100달러(한화 약 1,101억 원)로 전년 대비 1.3% 감소함

한국의 對미국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745,653.3	801,981.7	874,216.8	1,206,182.9	1,263,485.8	100.0	4.8	14.1
1 라면	41,084.1	50,350.6	53,542.6	82,265.1	81,226.1	6.4	△1.3	18.6
2 기타 알코올 미함유 음료 (과채주스 외)	60,865.2	66,588.2	69,255.5	72,744.6	71,133.9	5.6	△2.2	4.0
3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마요네즈, 인스턴트카레, 혼합조미료, 맥주 이외 기타)	20,298.9	24,388.7	28,425.2	39,427.0	44,871.8	3.6	13.8	21.9
4 조제품 기타	22,749.9	24,293.7	31,510.9	34,180.4	42,215.6	3.3	23.5	16.7
5 베이커리 제품 (빵, 간병,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18,798.2	21,145.3	23,010.7	31,490.7	36,761.6	2.9	16.7	18.3

* 주1: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통관을 담당하며, 주무기관은 미국 관세청(USCS)에서 담당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세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함
- 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식품의약청(FDA)에 의무적으로 식품 시설을 등록해야 하며,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식품을 취급하는 국내의 모든 시설이 등록 대상임
-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미국 도착 이전에 수입식품 사전신고(Prior Notice)를 해야 함
 - 사전신고를 미국 세관의 Automated Broker Interface of the Automated Commercial System(ABI/ACS)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화물의 도착일로부터 30일 이전부터, 또는 사전 신고를 FDA의 Prior Notice System Interface(PNSI)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화물 도착일로부터 15일 이전부터 사전 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
 - 사전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최소 기한 :
 - * 육로로 도착하기 2시간 전까지
 - * 철로로 도착하기 4시간 전까지
 - * 항공으로 도착하기 4시간 전까지
 - * 해상으로 도착하기 8시간 전까지
- 도착 전 전자적 방법(AMS;적하목록 사전제출)을 활용하여 화물에 대한 정보, 송하인과 수하인의 인적 정보, 운송수단과 항해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출해야 함
 - (화물에 대한 정보) 품명, 상세설명, 국제적 위험품 코드, 선하증권 번호 등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인적 정보)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부여된 ID 등
 - (운송수단과 항해에 대한 정보) 선적항, 도착항, 예정도착일, 항해번호, 선명 등
-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선박 혹은 항공을 통해 미국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도착 후 15일 이후 이내의 기간에 수입물품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함
 - 통관 자동화 시스템(AMS) 또는 관세사 전용 인터페이스(ABI)를 통하여 진행됨
 - * 수입신고 세관양식 CBP Form 3461, 적하목록, 물품신고서, 통관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제출 불가능한 경우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이 필요

- 수입신고를 통해수입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수입 서류와 관세국정보호청(CBP)의 검토내용이 FDA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며, 이를 통해 FDA가 세부 검사 여부를 결정함
 - 일정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는 화물 또는 기타 법에 의해 검사가 요구되는 화물을 선별한 뒤 실물검사 또는 서류 검사가 진행됨

- 물품검사가 끝나게 되면, 수입자는 관세, 조세 등 각종 비용을 지불
 - FDA의 수입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별도의 검사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즉각 수입이 허가되며, 검사가 요구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FDA 샘플조사를 거친 후 합격 판정을 받을 시 수입이 허가됨

- 납세 신고서가 처리되고, 관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물품을 반출
 - 지정된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된 지 10일 이내로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예정 납세액을 납부함

- 완료된 통관 물품에 대해 통관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반출된 화물에 대한 사후심사가 진행
 - 이후 먼저 납부한 예상 관세액과 비교하여 초과된 납부액은 환급하고, 부족한 납부액은 추가 징수하며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진행됨

통관 시 제출서류

- 적하목록(CBP form 7533)
- 물품신고서(CBP form 3461)
- 통관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 상업송장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L)
-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미국 관세 관련 제도는 미국 관세청(USCS)에서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 낮은 관세(평균 약 4.2%)를 부과함
 - * 단, 취약 산업인 섬유·의류·가죽제품 등은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적용함
 - * 동일한 물품이라도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함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경우, FTA 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 한국은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관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추가 제출이 필요
 - *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검역제도

- 농산물, 축산물, 유제품의 검사 및 검역은 미국 농무성(USDA) 산하의 동식물검역소(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에서 관할함
 - 미국의 수입업자는 농산물의 수입에 앞서 미국 동식물검역소(APHIS)로부터 수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축산물 수입업자 역시 수입에 앞서 미국 동식물검역소(APHIS)의 수입 허가증이 필요하며, 육류가공식품의 경우 생산업체 측에서 미국 식약처(FDA)에 생산기지 등록을 진행하여야 함
 -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의 종류에 따라 수입 허용 기준이 상이함
 - 유제품 수입 시에도 동물검역소(APHIS)의 허가가 요구됨
- 육류 및 가공류 제품의 안전에 관한 관리와 규제는 USDA 산하의 식품위생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에서 담당하고 있음
 - FSIS에 등록된 국가 및 시설에서 생산된 육류 및 가공류만 미국에 수입이 가능함

- 가공식품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검역을 담당하며, 서류 대조 및 샘플 검사를 통해 수입 허가 여부를 결정함
 - 통조림과 같은 저산성식품¹⁾ 및 산성식품²⁾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미국 FDA에 제조시설을 등록하고 제조공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함
- 미국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수출 전 사전확인이 요구됨
 - 미국으로 수출 불가능한 품목 역시 지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요구됨

수입검역 절차

단계	내용		비고
검사·검역 신청	수입허가 요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FDA에 수입허가 결정 요청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시 즉시 수입허가검사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시 즉시 수입허가
	서류검사	FDA가 CBP에서 전달받은 서류 검토, 검사 여부 결정	
수입검사 진행	샘플조사	FDA에서 샘플을 채취 및 검사	
수입허가	수입허가 증명서 발부		

1) 열가공 후 밀봉용기에 포장된 pH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인 식품
 2) 저산성식품에 산을 첨가하여 pH농도를 4.6 이하로 조절한 식품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 수출 가능 품목

협상타결 품목

- 농산물
 - 배, 딸기, 사과, 참다래, 감귤, 한라봉·천혜향, 포도, 감, 박과류(참외·오이·호박·수박), 밤, 당근, 두릅, 양파, 파프리카, 미나리, 토마토, 뿌리냉이, 심비디움·호접란(승인 재배매체 사용), 미니식물 26종(*Ceropegia woodii*, *Senecio rowleyanus*, *Senecio radicans*, *Echinus maximilianus*, *Crassula rupestris*, *Haworthia cooperi* var. *trunca*, *Adromischus clavifolius*, *Opuntia monacantha* f. *monstr.*, *Opuntia monacantha* f. *monstr.*, *Austrocylindropuntia subulata*, *Rebutia minuscule* k. sch., *Notocactus pseudoherteri*, *Gymnocalycium baldianum*, *Notocactus ottonis*, *Astrophytum myriostigma*, *Sedum burrito*, *Sedum rubroinctum*, *Sedum adolphii* Raym.-Hamet, *Pachyphytum compactum* rose, *Echeveria deresina*, *Anacampseros rufescens* H. sweet, *Portulaca grandiflora*, *Kalanchoe 'Houghton's hybrid'*, *Kalanchoe daigremontiana*, *Orostachys*, *Euphorbia submamillaris japonicus* A. Berger)

* 딸기의 경우 수출 가능 시기가 정해져 있어 9월 15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만 수출이 허가됨

* 미나리는 뿌리가 없는 상태의 미나리 잎과 줄기를 상업화물로 수출하여야 함

- 축산물
 - 삼계탕, 열처리 가금육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대두
 - 과일류 : 감(단감), 감귤, 배, 사과, 참다래, 포도, 밤, 복숭아, 넥타린, 살구, 자두, 양벚, 비파(Loquat)

- 채소류 : 가지, 감자, 고구마, 고들빼기, 고추, 근대, 냉이, 당근, 대황(Rhubarb), 딸기(수출가능시기 : 9.15~5.31), 땅콩, 더덕, 도라지, 두릅, 들깻잎, 마늘, 마쉬멜로우잎, 무, 미나리, 배추, 상추, 샬롯, 셀러리, 수박, 쑥, 생강, 시금치, 순무, 아티초크(Artichoke), Yam(양), 양갓냉이, 양배추, 양파, 연근, 엽교(Allium chinense), 완두, 오이, 오크라, 우엉, 참깨잎, 참외, 취나물, 콩 (Bean), 가공된 파속식물(Allium spp.), 파슬리, 파프리카, 호박, 호박잎, 토마토

* 마늘 : 껍질 벗긴 마늘(peeled clove) 또는 dry bulb만 수출 가능

* 샬롯, 양파, 엽교 : dry bulb만 수출 가능

* 대부분의 과일 및 채소류는 수입허가서 필요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배추, 브로콜리,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호접란, 튜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국화
- 묘목, 구근류(재배매체 제거) : 선인장, 호접란, 심비디움

● 축산물

- 우유가 포함된 음료
- Beef Extract가 포함된 식품
- 계란이 포함된 제품(알가공품)
- 아이스크림 믹스류, 다시다류
- 라면류의 유청분말 성분, 라면류의 계란 성분, 라면류의 우골 추출물 성분, 라면류의 우육 성분
- 과자류의 유당 성분, 과자류의 유청분말 성분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팥, 녹두, 옥수수
- 채소류 : 토란, 박과작물 중 Ivy gourd(Coccinia grandis)는 수출 불가

● 축산물

- 열처리 돈육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H-Mart(미국)
업체 유형	한국식품 수입유통업체, 도매업체
담당자명	Mr. Kang

- 현지에서 인기 높은 한국 가공식품은 라면, 국수, 김치볶음밥, 비빔밥, 두부 김치찌개, 떡볶이, 미역국, 즉석밥 등의 인스턴트식품과 flavored 우유(바나나/딸기/멜론 등), 녹차, 커피 등의 음료가 있으며, 신선식품 중에서는 사과, 포도, 감, 딸기 등 과일의 인기가 높음
- 이외에도 된장, 소스류, 카레 소스, 간장, 고추장, 김 등이 인기가 있는 편임
- 채소 같은 경우 채소 신선도 문제와 높은 가격 문제로 수입량이 적은 편임
- 신선 인삼의 수입은 규제되고 있으며 주로 수입하는 인삼 관련 품목으로는 인삼 캡슐, 분말 및 추출물 등이 있음
- 한국에서 미국으로 농산물 수입 시 애로사항으로는 USA FDA 및 기타 식품 당국의 높은 규제 기준을 꼽을 수 있으며, 한국 농식품 수입 시 문서나 필수 인증이 미흡할 경우, 포장(라벨)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허위 광고로 판단되는 경우 수입 과정에서 물품이 묶여 있을 수 있음
- 현재 미국 정부는 시민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1)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박테리아에 의한 식품 매개 질병 2) 식품 발암물질 3) 실충제/농약 잔류물, 식품첨가제 분야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음

03 비관세 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은 한국산 신선 배(Pyrus pyrifolia var. culta)의 미국 수입을 위한 병해충 위험 평가를 완료하고, 현지 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한국산 신선 배 과실도 모든 미국 항만으로 수입이 되도록 허용함
- 식품의 유통추적을 위해 기록보관 의무를 도입할 예정임. 제안된 규정안은 FDA에서 Food Traceability List로 지정한 식품에만 적용이 되며, Food Traceability List로 지정한 식품을 제조, 처리, 포장 또는 보관하는 이에게 공급망 내에서 추적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 식품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시행하여 미국 내 및 수입 식품에 사전 예방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국내 농산물 및 식품 생산업체는 FDA 실사, 안전성 검증 등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
 - 미국은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해 2022년 7월 1일부터 전국 수입 경보를 발령하여 수입 규제를 강화함. 미국은 수입 버섯과 연계된 리스테리아균 발병을 예방하고자 「수입특산버섯 예방전략」을 세워 관리하고 있음
- 한국업체가 미국의 수입 미허가 품목인 메기 매운탕을 조리하는 밀키트 제품을 통관하려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자, 미국 식품안전검사국은 2022년 6월 한국산 메기목 어류 제품에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하여 수입을 제한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잔류농약 규격 기준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a3b649316ccb17c31211db2edd81f789&mc=true&node=pt40.24.180&rgn=div5
식품첨가물 허용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CFRPart=182
미생물 규정 (신선과일 및 채소)	식품별 규격 기준 (품목별 미생물 기준 규정)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guidance-industry-guide-minimize-microbial-food-safety-hazards-fresh-fruits-and-vegetables

통보문 개정현황(2022년)

• 한국산 팡이버섯에 수입 경보 조치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한국산 팡이버섯에 대해 2022년 7월 1일부터 전국 수입 경보 (country-wide import alert)(*)를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팡이버섯에 대한 수입 경보 조치는 한국의 팡이버섯 수출업체(S사, G사) 2곳을 대상으로 시행되다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조치로 확대 - 2021년 FDA의 검사 결과, 한국산 팡이버섯 중 43%가 리스테리아균(Listeria monocytogenes)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FDA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인체 감염에 연관될 수 있는 팡이버섯의 수입과 미국 시장 내 유통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됨 - 한국에서 수입되는 팡이버섯 제품은 물리적 검사 없이 역류 • 한국산 팡이버섯의 리스테리아균 검출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팡이버섯 섭취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은 팡이버섯을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지만 미국은 샐러드 등 생식 형태로 팡이버섯을 섭취하기 때문에 버섯에 남은 리스테리아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FDA는 2020년부터 수입 특산 버섯과 연계된 리스테리아균 발병 사태를 예방하고자 「수입 특산 버섯 예방 전략(Imported Specialty Mushroom Prevention Strategy)」을 세워 관리를 강화한 바 있으며, 이번 전국 수입 경보 조치로 한국산 팡이버섯의 수입 규제는 더욱 강화됨 •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팡이버섯의 수출 규모는 2020년 약 918만 달러, 2021년 약 652만 달러 규모로 향후 버섯류 제품 수출에 리스테리아균 검사에 유의하고 팡이버섯 수출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함
통보일	2022.07.01
시행예정일	2022.07.01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TB0183815

메기 매운탕(밀키트) 수입제한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태국, 중국, 베트남 등에 대해 메기목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나 한국산은 불허 • 한국업체가 미국의 수입 미허가 품목인 메기매운탕을 조리하는 밀키트 제품을 통관하려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자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2022년 6월 한국산 메기목 어류 제품에 공중보건 경보(Public Health Alert)를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메기목 어류(Siluriformes)의 미국 수입이 허용된 국가가 아니며, 해당 제품에는 메기목 어류 제품의 라벨 요건인 시설등록 번호(establishment number)가 포함된 USDA 검사 인증마크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 • 해당 문제 제품은 수입 제품에 대한 FSIS의 일반 감시 활동 중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해당 제품을 소비하여 발생한 부작용은 확인된 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FSIS는 리콜(시장 회수) 조치가 아닌 공중보건 경보 조치를 취하고 식품의 잠재적인 보건 위험성을 대중에게 공고, 해당 제품을 소비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이미 소비한 제품은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함 • 어류가 포함된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함유된 어류 품목의 수출 가능 여부와 연계 수출 검역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통보일	2022.06.24
시행예정일	2022.06.24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TB0183817

2. TBT

주요 TBT 내용

- 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식품시설을 등록하여야 하며, 최초 1회 등록 후 2년마다 등록 갱신이 필요함. 등록은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이 해당되며, 산성화 및 저산성식품은 기본 시설등록 이외에 별도의 산성화 및 저산성식품 제조시설등록 및 공정등록이 필요함
- 2021년 식품 포장재에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참깨가 추가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참깨 함유 제품에는 “참깨 포함”이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함. 또한, 식품 라벨에 ‘진강’이라는 용어 사용 시 영양소 함량과 관련된 요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함
- 2021년 9월, 미국 식품안전검사국은 배양 동물 세포로 구성되거나 포함하는 육류 또는 가금류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규칙제정안 사전고시를 발행함. 2022년 10월에는 1파운드 또는 1파인트 이상 4파운드 또는 1갤런 미만의 육류 또는 가금류의 제품 라벨에 두 가지 측정 단위로 순중량 또는 순함량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폐지됨
- 식품의약국(FDA)은 요구르트 기준을 현대화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요구르트 식별 기준을 개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행함
- 미국은 식품안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 조치를 시행함. 미네소타 주는 식품 포장에서 PFAS의 사용 규제 조치를 시행하며, 해당 금지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또한, ‘발의안 65 제6조 식품 내 아크릴아미드 경고’를 통해 새로운 세이프 하버 경고를 채택하는 선택을 추가함
- 2008년 식품, 보존 및 에너지법은 레이시법을 개정하여, 수입자가 특정 식물 및 식물성 제품에 대해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시행 일정의 6단계 시행일은 2021년 10월 1일부터임
- 미국 유기농표준위원회(NOSB)는 미국 농무부(USDA) 유기농 규제의 허용 및 금지 물질 국가 목록을 개정함. 개정사항으로는 식품첨가물 저아실 젤란검을 유기농 제품 성분으로 허용하고, 유기농 작물 생산을 위한 종이 기반 작물 심기 보조제를 허용하며, “목재 수지”를 “목재 로진”이라는 용어로 대체함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미국 식품의약국(FDA)	https://www.fda.gov/files/food/published/Food-Labeling-Guide-%28PDF%29.pdf
주요 인증 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ANCA 인증 Non-GMO 인증 미국 농무부 산하 마케팅지원청 (USDA Organic 인증) 	https://www.ifanca.org/ https://www.nongmoproject.org/ https://www.ams.usda.gov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명 용량 원산지/원료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레르기 정보 성분정보 1회 제공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주의 문구 (건강 유의 사항에 관한 문구 등) 제조업체정보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외국어 표기도 가능하나 모든 필수정보는 동시에 영어로도 표기되어야 함		
	그림	그림의 경우 정보를 가리거나, 소비자가 잘 못 이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용량	용량의 단위는 미리(ml) 단위와 파운드(pound) 단위를 병기해야 함		
		순중량 정보는 패키지 내부의 식품 용량, 중량, 숫자 형태로 표기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고체, 점성, 응고 제품의 경우 중량으로 표기되어야 함		
	용량은 순중량으로만 나타내야 함			
	제품명	제품의 전면에 표기되어야 하며, 최소한 가장 큰 라벨 면에서 1/2만큼을 차지하도록 표기되어야 함		
		바닥과 평행하게 작성되어야 함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이름이어야 함		
	일반적 식품의 모방(대제품)인 경우 '모방' 제품이라는 표시를 제품의 이름과 동일한 크기로 작성해야 함			
	원료 정보	원료의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함		
		양이 많은 것부터 적은 순으로 기입해야 함		
원료 정보는 제조사, 유통사 정보와 같은 면에 기입되어야 함				
최소한 1/16인치(inch)로 표기하여야 함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원산지	눈에 잘 띄도록 작성되어야 함
		유통업체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와 같이 위치해야 함
	성분정보	성분정보는 원료 정보와 같은 페이지에 기입되어야 함
		반드시 박스 형태로 표기해야 함
		칼로리, 용기 당 제공량 또는 1회 제공량의 표기 글자 크기를 키우고 진하게 하여 강조해야 함
		비타민 D, 칼슘, 철분 및 칼륨의 1일 제공량 비율과 실제 중량을 표시해야 함. 단, 기타 비타민 및 미네랄의 중량도 자발적 표시가 가능함
		각주에 '1일 제공량 비율(%)은 1일 제공량 대비 해당 영양소의 비율임.
		1일 제공량은 하루 2,000 칼로리를 기준으로 함.'이라고 명시해야 함
		설탕의 양(g)과 비율(%)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총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지방'의 표시는 필수이지만 지방의 칼로리 표시는 요구되지 않음
	제품이 1회분 이상인 경우, 칼로리와 영양소의 양을 '1회분'과 '1포장분' 으로 이중 표기해야 함	
	알레르기 정보	주요 알레르기원 - 우유 - 달걀 - 생선 - 갑각류 - 조개 - 땅콩 - 대두 - 밀 - 견과류 - 참깨
		유기농 표기 유의사항
유기농 원료의 함량이 70%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음 - 소금과 물을 제외한 70% 이하의 원료가 유기농 원료인 경우, 유기농 마크를 표기할 수 없으며 원료 표기 시 해당 원료가 유기농이라는 점만 표기 가능함 (e.g. Ingredients : Organic green tea, Organic lemon, ...)		

• 소스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한국식 고추 소스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 고추장 페이스트 - 소금 - 밀 - 콩가루 - 에틸알코올 - 백설탕 - 토마토 페이스트 - 식초 - 소금 - 할라피노 뿌레 - 마늘 - 옥수수 녹말 - 잔탄검 - 파프리카 올레오레진 	
내용량	303.35g	
출시일(발행일)	2021. 12. 13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CJ 비비고	
제조지(원산지)	한국	
영양성분표시	- 1회 제공량 5g	
	- 총 제공량 61	
	에너지	5kcal
	단백질	0g
	지방	0g
	나트륨	1g
	탄수화물	1g
당류	1g	
알레르겐 주의 성분	밀, 대두, 글루텐 함유 시리얼	

• 가금류 가공식품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닭튀김(Chicken Tots)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가슴살(뼈 없는) - 밀가루 - 물 - 폴리플라워 - 병아리콩 - 양배추 - 감자 플레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수수 전분 - 양파가루 - 후추 - 향신료 - 효모추출물 - 해바라기씨유 - 콩기름 - 구아검
영양성분표시	- 1회 제공량 90g	- 총 제공량 7
	에너지	220kcal
	지방	10g
	포화지방	2g
	트랜스지방	0g
	콜레스테롤	25g
	나트륨	460mg
	탄수화물	22g
	식이섬유	1g
	당류	3g
	단백질	9g
	비타민 D	0g
	철분	1mg
	칼슘	19mg
칼륨	209.90mg	
알레르겐 주의 성분	밀, 글루텐 함유 시리얼	
내용량	623.7g	
출시일(발행일)	2022. 06. 14	
저장방법	냉동 보관	

[필수 인증]

• 미국 FDA 등록


- 식품 또는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국내의 시설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FDA에 FFR(식품시설등록)을 진행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2020년 10월 1일부터 FFR 신청 시 '국제 사업자 등록 번호'로 통용되는 DUNS number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외 식품시설은 반드시 미국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함. 단, FFR은 시설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FDA의 로고 또는 FDA 승인, 허가, 인증의 문구를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산성화 식품(AF)과 저산성 식품(LACF)의 경우,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별도로 FDA에 FCE(식품제조공장등록)과 SID(공정등록)을 해야 함

인증명	미국 FDA 등록	
발행 및 검사기관	미국 식품의약국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강제유무	필수	-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제품 상세정보, 원재료 세부 목록, 위생 관련 정보, 기타 인증 취득정보 등 • 현장실 사용 별도 제출 서류 : 회사소개서 및 제품 홍보자료, 제품별 공정흐름도, 품질 관련 인증서 사본, 제조 관련 기록물, 공급원 목록 및 공급내역,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명칭 및 수량 정보 등 	
비용	없음	
유효기간	2년(최초 1회 등록 후 2년마다 갱신 필요)	
절차	시스템 로그인 및 시설등록 페이지 접속 → 식품시설정보 기재 → 미국 대리인 검증 → 등록 정보 검증 → 등록 확인 및 등록번호 발급	

[선택 인증]


• IFANCA 할랄 인증


- 할랄 식품 소비자에게 허용되는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할랄 표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인증을 통해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함. IFANCA(미국 이슬람 식품영양협의회,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인증은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할랄 인증으로, IFANCA는 국제적으로 주요 할랄 인증기관 중 하나이며 65개국에서 통용됨. IFANCA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이슬람 식품 기준 부합, 모든 서류요건 충족, 할랄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할랄 식재료만 사용, 식재료 준비나 생산가공, 포장, 보관, 저장, 운반 등의 모든 단계에서 하람 식품 제외, 이슬람 방식의 청결 및 위생 절차 준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인증명	IFANCA 할랄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미국 이슬람식품영양협의회 (IFANCA,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제품 상세정보, 원재료 세부 목록, 위생 관련 정보, 기타 인증 취득정보 등 • 현장실사용 별도 제출 서류 : 회사소개서 및 제품 홍보자료, 제품별 공정흐름도, 품질 관련 인증서 사본, 제조 관련 기록물, 공급원 목록 및 공급내역,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명칭 및 수량 정보 등 	
비용	약 3,500달러	
소요기간	3개월~6개월	
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및 비용 산정 → 현장 실사 → 평가서 작성 → 할랄인증서 발부	

• 코셔(Kosher) 인증


- 유대교의 율법에 기반을 둔 식품과 그 생산, 유통 등에 관한 인증이며,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 제품, 설비 등 전 제조공정에 대해 인증을 부여함. 코셔 인증기관 중 세계적 인지도를 지닌 OU의 인증의 경우 세계 104개국 9,011개 공장에서 생산된 80만 개 이상의 제품을 인증함. 코셔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원료, 제조공정, 제품, 포장 등 전 과정에서 코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코셔 인증 제품은 유대인을 위한 인증으로써 기능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코셔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인증명	코셔(Kosher)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OU(Orthodox Union)	
강제유무	선택(민간 인증)	
제출 서류	회사정보, 공장정보, 공장 원재료 목록, 제품허가요청서	
비용	품목당 약 400~1,000만 원	
소요기간	3개월~6개월	
절차	신청서 제출 → 담당 랍비 배정 → 시설 심사 → 서류 및 시설심사 보고서 검토 → 계약서 검토 및 서명 → 라벨링 송부 및 최종승인	

인증명	코셔(Kosher)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Star-K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업체명, 주소, 연락처, 코셔 인증 여부 등)	
비용	취득비	400만~1,000만 원
	대행비	1,000만 원 이상
	컨설팅비	약 3,000~5,000 달러
소요기간	3개월~6개월	
절차	신청서 제출 → 추가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비용 산정 → 시설 심사 → 계약 → 인증서 발급	

• USDA Organic 인증

- 미국 유기농인증(USDA Organic)은 유기농 규정에 따라 생산 및 유통되는 농산물, 유제품, 축산물, 수산물 등에 발급되는 인증임. 유기농 제품은 최소 95% 이상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기농 원료 함유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디자인에 차이가 있음. 2014년 7월 발효된 「한·미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 별도 획득 없이도 '유기(Organic)'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음

인증명	USDA Organic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미국 농무부(USDA)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인 정보, 제품 정보, 이전에 신청한 모든 유기인증제 정보, 최근 3년 간 재배 등에 사용한 화학물질 이력, 유기농 생산 또는 시스템 계획서	
비용	최초 신청 시 품목당 800달러(현장실사비용 별도)	
소요기간	약 6~10주	
절차	USDA 공인인증기관 검색 → 인증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서류심사 → 현장실사 실시 → 조사결과 종합 및 인증서 발급	


• 공정무역 인증

- 공정무역 인증을 부여하는 국제공정무역기구(FLO)는 각 국가의 공정무역기관들을 통솔하며 산하에 독립적인 인증담당기관(FLOCERT)을 두어 공정무역 규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함. 공정무역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사용에서부터 공정무역기준을 준수해야 함

인증명	공정무역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영문), 신청비 송금영수증, 계약서 사인본 스캔	
비용	신청비 : 550유로 연회비 : 2,870유로	
소요기간	약 2주	
절차	신청 → 1차 검토(온라인 신청서) → 신청서 제출 → 검토 → 연회비 납부 → 승인	


• 글루텐프리 인증

- 서유럽·북미·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셀리악(Celiac disease, 밀가루 알레르기) 환자 비중이 높아지며 글루텐프리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글루텐프리 식품 라벨링 최종 규칙을 발효하였으나 제조업체의 자발적 준수 규정이며, GFCO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인증명	글루텐프리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Gluten-Free Certification Organization(GFCO)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현재 제품 및 성분 목록, 조직도, 직업 세부설명, 구매 문서, 승인된 공급업체 목록, 글루텐에 대한 공급업체 명세서, 교육자료(직원 교육 기록), 검사 확인 문서, 글루텐 위험 분석, 포장/라벨 점검 문서, 전년 시정 조치 보고서	
비용	품목당 약 180만 원	
소요기간	약 6~18주	
절차	제조공장 등록 → 인증기관 확인 → 인증 신청 → 신청서 검토 후 견적 → 견적승인 및 수수료 납부 → 공장실사 실시 → 감사보고서 수령 → 부적합 사항 시정 → 인증 결정	

• NON-GMO 인증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전자 변형식품(GMO)을 회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Non-GMO 라벨링이 중요한 마케팅요인 중 하나임. 유전자변형 식품은 유전자변형 정도에 따라 추적관찰 위험군, 저위험군, 고위험군의 3단계 위험 수준으로 구분됨. Non-GMO 인증은 완제품의 0.9~5% 수준까지 유전자변형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인증명	NON-GMO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Non-GMO Project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송장, 구매 증명서, 시설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 및 재료와 시설의 수, 라이선스 계약서, 원료 리스트, 생산 설비 정보, 검사결과 등, 재료 분석 증명서	
비용	제품당 약 200만~500만 원	
소요기간	3개월~6개월	
절차	기술관리기관(TA) 선택 →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사전평가 및 견적 → 현장심사 → 라이선스 계약 체결 → 인증마크 부여	

3. 통관거부사례 현황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비교

- 2022년 미국에서 확인된 한국산 식품 통관거부 사례는 총 98건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확인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의 총건수는 409건으로 집계됨. 사유별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라벨링/포장으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남

2020~22년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사유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라벨링/포장	99	76	33	208
성분 부적합	17	8	25	50
위생	37	40	23	100
서류미비	3	5	4	12
잔류농약 검출	10	4	4	18
기타	3	9	9	21
합계	169	142	98	409

2022년 월별 통관거부 건수

-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는 한 개 문제사례에서 여러 가지 문제사유가 확인된 복합 문제사례를 포함하면 총 251건이며, 라벨링/포장(126건), 성분 부적합(46건)으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 수치가 특히 높게 나타남

2022년 월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건수

사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벨링/포장	4	8	1	3	3	4	11	86	2	2	2	0	126
성분 부적합	0	6	3	2	1	2	1	22	2	1	3	3	46
위생	1	2	12	0	0	0	1	0	2	6	0	1	25
서류미비	0	0	0	0	0	2	1	20	0	0	0	0	23
잔류농약 검출	0	0	0	0	0	1	0	3	0	0	0	0	4
기타	0	0	0	3	0	0	4	20	0	0	0	0	27
합계	5	16	16	8	4	9	18	151	6	9	5	4	251

• 통관거부 세부 사유별 건수

사유	세부내용	건수
라벨링/포장	성분, 중량 미표기	1
	각 성분의 통칭 또는 관용명 미표기	26
	내용물의 정확한 수량 정보가 기재되지 않음	24
	라벨 정보가 눈에 띄지 않아 소비자가 읽고 이해하기 어려움	25
	라벨링 정보 오기 또는 허위 표기	20
	수출업자 주소지 및 연락처 미표기	1
	‘식이보조제’ 문구 제외로 제품 종류를 확인할 수 없음	1
	영양소 정보 미기재	3
	인공 색소 성분 미표기	4
	제품 총비율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움	2
	제품라벨에 필수기재사항인 영양소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7
	주요 알레르겐 미표기	1
	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지 않음	11
위생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또는 보관됨	2
	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생산 및 포장됨	1
	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가공 및 포장됨	1
	독성물질 리스테리아균 검출	20
	독성물질 살모넬라균 검출	1
성분 부적합	독성물질 검출	18
	승인받지 못한 신약 포함	2
	위험한 물질로 규정한 식품첨가물 검출	20
	유해색소 함유	5
	유해 첨가물 멜라닌 또는 멜라닌 아날로그 검출	1
잔류농약 검출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4
서류미비	규정 준수 인증서 미제출	2
	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21
기타	제조업체의 제품이 저산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님	21
	외국인 공급자 증명 프로그램 관련 조항 위반	5
	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1
합계		251

• 통관거부 품목

대분류	품목명	건수	비중(%)	주요 문제사유
농산물	사료	139	55.4	라벨 부적합
	버섯류(농산물)	33	13.1	리스테리아균 검출
	과자류	18	7.2	라벨 부적합
	기타 조제 농산품	17	6.8	라벨 부적합
	인삼류	8	3.2	라벨 부적합
	음료	6	2.4	라벨 부적합
	소스류	6	2.4	라벨 부적합
	채소류	3	1.2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기타 농산부산물	2	0.8	라벨 부적합
	과실류	2	0.8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기타 곡실류	1	0.4	라벨 부적합
소 계		235	93.7	
수산물	어류	5	2.0	라벨 부적합 및 인증서 미제출
	해조류	4	1.6	독성물질 검출
	연체동물	2	0.8	살모넬라균 검출
	수산부산물	1	0.4	리스테리아균 검출
소 계		12	4.8	
임산물	버섯류(임산물)	4	1.6	외국인 공급자 프로그램 조항 위반
소 계		4	1.6	
총 합 계		251	100.0	

No.	제목	식품 이력 추적 요건 구체화로 인한 수출 관리 강화	해당국가	미국
1			관련품목	전체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FDA는 《특정 식품 품목에 추가적인 추적 기록 작성 및 보관 요구사항》 법규 최종 개정안을 2022년 11월 발표함 • 규정 개정에 따라, 식품 공급망과 관련된 모든 담당자(제조, 가공, 포장, 보관 담당자)는 식품의 재배, 제조, 운송, 수취 과정상의 변형과 관련된 '식품 추적 필요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는 의무가 부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적용 대상 식품 : 「식품 추적 목록」에 명시된 품목 및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으로 치즈, 달걀, 오이, 허브류, 녹황색 채소류, 멜론, 고추, 토마토, 열대과수, 절개된 신선과일 등 - 중요 추적 사건 : ①수확, ②냉각(최초 포장 전), ③어선에서 입수한 식품 이외 미가공 농산물의 최초 포장, ④어선으로부터 획득한 식품의 1차 육상 수령, ⑤배송, ⑥전수, ⑦식품의 변형 * 중요 추적 사건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식품 추적 필요 정보는 https://www.fda.gov/media/163132/downloa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식품 추적 필요 정보(KDE)와 추적성 로트 코드(TLC)의 기록 및 보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은 반드시 원본이나 실제 사본 또는 전자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모두 읽을 수 있고 열화 또는 손실을 방지하며 보관되어야 함 - FDA에서 제출을 요구할 시, 기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함께 24시간 (또는 FDA가 동의한 적정 시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1월부터 미국 FDA가 일부 식품에 대해 이력 추적 가능성 요건 구체화를 요구하면서 수출 관리가 강화되어 어려움을 겪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특정식품 제조·처리·포장·보관하는 모든 업체에 추가적인 추적기록 보관 및 관리 의무 부여 <p>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6524&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EB%AF%B8%EA%B5%AD&page=2&srchGubun=75</p>			

No.	제목	식품, 포장재 등에 함유된 화학물질, 라벨에 경고 표기	해당국가	미국
			관련품목	식품, 식품포장재
2			유형*	SPS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암, 선천적 결함 또는 기타 생식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 위험성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경고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대상 화학물질 : 식품, 의약품, 살충제, 일반 가정용품 등에 포함되는 광범위한 자연 발생 및 합성 화학물질이 포함됨 - 동 규제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된 경우 제품 라벨에 경고가 표시되어야 함 (단, 암, 선천적 결함 또는 기타 생식 장애 유발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경고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 - Proposition 65 물질 목록: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 표기 기준 : 70년 동안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1/100,000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라벨에 경고를 표기할 필요 없음 - 위반 시 조치사항 : 경고 문구 미작성 시 하루에 건당 최대 2,500 달러의 벌금 부과 <p>[라벨 경고 표기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문구 예시 : “경고 : 이 제품은 캘리포니아 주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이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65Warnings.ca.gov를 참조하십시오. (Consum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food.)” (기업은 이 문구를 똑같이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하면 됨) - 2018년 8월 이후에 제조된 제품 중 우려되는 화학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경우, 라벨에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하나 모든 항목을 나열할 필요는 없음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 문구 표기를 위해 포장지 동반 수정이 필요함 • 동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당사 첨가물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경고 문구 표시 방법에 대해 혼동됨 		
기타		<p>※ 미국 캘리포니아주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 제공 요구(Proposition 65) https://oehha.ca.gov/proposition-65/about-proposition-65</p>		

No.			해당국가	미국
3	제목	한국산 팡이버섯 수입 경보 조치	관련품목	팡이버섯
			유형*	SPS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팡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성분이 검출되어 '물리적 검사 없이 역류(DWPE)' 조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 팡이버섯, 얇게 썰거나 잘게 썰린 팡이버섯, 대한민국 및 중국 수입산 팡이버섯이 적용 대상임 - 저산성 통조림 식품(LACF)으로 가공하거나, 산성화 하거나, 최종 포장 과정에서 열처리되는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님 - 한국산 팡이버섯을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소유자, 수취인 및/ 또는 기타 책임 당사자는 팡이버섯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 해당 수입 경보 조치는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팡이버섯 제품이 역류 대상이 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팡이버섯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성분 검출 문제로 리콜 또는 통관거부 조치가 지속되어 수출이 감소함 • 한국산 팡이버섯에 대한 수입경보 강화조치 시행으로 수출 감소 동향이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음 		
기타		<p>※ 한국산 및 중국산 팡이버섯에 대해 수입 경고 발령 https://www.accessdata.fda.gov/cms_ia/importalert_1177.htm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FDA 검사에서 발견된 총 36건의 리스테리아증 감염 사례는 대한민국 팡이버섯과 관련되었으며, 그중 31건의 입원과 4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음 - 이로 인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된 팡이버섯 샘플링 검사 결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해당 기간 한국에서 수출된 91건의 팡이버섯 중 24건이 리콜된 바 있음 		

1. 닭고기 육포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미국 수출 가능 여부

자문 내용

• 수입 유의사항

- 미국으로 수입하는 식용 육류, 가금류 및 계란류 제품은 USDA FSIA(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에서 관할함. 수입하는 식용 육류, 가금류 및 계란류 제품은 FSIS에서 수입이 허가된 국가의, 수입이 허가된 제조시설에서 제조 및 가공된, 수입이 허가된 품목이어야 함. 즉, 미국 정부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출처여야 수입이 가능함
-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허가되어 있는 품목은 닭고기 및 오리고기를 열처리 멸균하여 가공한 품목이며, 허가된(인증을 받은) 한국 내 제조시설에서 제조 및 가공처리 된 것이어야 함

• 결과

- 본 제품은, 현재 미국으로 수출을 허가받은 제품이 아니며, 인증을 받은 제조시설에서 제조 및 가공처리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 및 등록 없이는 미국 수출이 어려움

• 검토 의견

- 해당 제품과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대해서 '동등성 인정'을 받아야 함. 미국 내 법규 및 규정과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는 국내 시설에서 제조된 것임을 인정받아야 함
- 동등성 인정과 시설등록은 한국 정부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음. 수출 작업장 지정 및 등록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 권고

2. 사과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SPS, TBT, 수출 사과 검역에 관련된 내용의 검토 및 자문 의뢰

자문 내용

- Fuji 사과에만 적용되는 조건
 - 미국의 모든 항구에서 수입 가능
 - 미국 내 수입자는 수입허가서(Import Permit)를 사전에 미국 동식물검역소(USDA APHIS)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 수입항구에서 검역대상이 됨
 - 상업용 수출품만 수입이 허가됨
 - 저온처리와 훈증소독 절차를 거쳐야 함
 - Mandatory Preclearance Program; 한국 현지검역에서 합격한 수출용 사과 제품에 대해서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소의 검역관은 PPQ Form 203(Foreign Site Certificate of Inspection And/Or Treatment; 해외현지검사증명서)를 발급함
 - 모든 수출용 사과는 해당 수출품이 검역을 거쳤으며 검역 해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기타 품목 관련 검역 사항 : USDA APHIS
 - 한국산 신선 배 Fresh Sand Pears(*Pyrus pyrifolia* var. *culta*)의 미국 수입 요건을 개정하고 2022년 9월 27일부터 미국 수입을 허가함
 - 상업용 수입화물만 미국 수입을 허가함
 - 한국 정부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한국의 농식물검역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재배지 및 포장지에서 재배 및 포장되어야 함
 - 재배지, 생산지는 반드시 검역 해충과 질병의 증상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해충과 질병이 발견되면 적절한 완화조치를 시행해야 함
 - 배는 과실의 지름이 2.5에서 3.5 센티미터 사이일 때 봉지에 씌워야 하며, 모든 과일은 6월 30일까지 봉지 씌우기 작업이 완료되어야 함. 절지동물 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봉지 씌우기가 필요함
 - 한국산 단풍 3 종(*Acer buergerianum*, *A. palmatum*, and *A. pseudosieboldianum*)
 - 왜성식물(dwarf plants)의 미국 수입을 위한 허가 절차 진행 중

●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기타 품목 관련 검역 사항 : USDA FSIS

-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 가능한 육류 목록은 하기와 같으며 2022년 2월 28일 최종 업데이트된 것임

프로세스 카테고리	제품 카테고리	적격 제품
열처리 - 상업적 멸균	열처리 - 상업적 멸균	닭과 오리 - 모든 제품 적용 가능
완전 조리 - 냉장 또는 냉동	Ready to Eat - 완전 조리된 가금류	닭과 오리 - 모든 제품 적용 가능
완전 조리 - 냉장 또는 냉동	Ready to Eat - 환경에 노출되는 후속조치 없이 완전 조리된 가금류	닭과 오리 - 모든 제품 적용 가능

- 현재 동등성 평가를 진행 중인 한국산 제품 목록과 그 진행 현황은 하기와 같음
- Processed Pork Products - 한국산 가공처리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한국의 농림축산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FSIS에 서면으로 미국 수입을 위한 허가서 및 제반 자료를 제출하였고, 양 기관에 관련하여 추가 자료 제출, 취합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
- Egg Products - 한국산 달걀 제품에 대해서 한국의 농림축산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FSIS에 서면으로 미국 수입을 위한 허가서를 제출하고 제반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

미주 및 유럽

유럽연합 EU

2022년 한눈에 보이는
유럽연합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72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81
03. 비관세 장벽 현황	183
04. 수출 애로사항	201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203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EU(유럽연합) 회원국의 농축산식품 시장 규모는 1조 6,419억 3,500만 달러(한화 약 2,225조 9,713억 원)로, 2017년 이후 연평균 9.0% 성장률을 보임¹⁾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육류(22.3%)로 3,661억 달러이며, 다음으로 스낵류(16.4%), 낙농품(15.0%) 순임
 - 2021년 기준, 유럽연합 회원국 중 식품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독일(12.7%), 프랑스(11.0%), 이탈리아(10.3%)로 전체 식품시장의 약 34%를 차지함
- 주요 3개국의 2021년 식품시장 규모는 약 5,604억 1,850만 달러(한화 759조 7,593억 원)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음
 - 식품시장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독일로, 2,098억 8,920만 달러(한화 284조 5,468억 원)이며, 다음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순임
 - 주요 3개국의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3,666억 5,200만 달러(한화 497조 701억 원)로 전체 식품 시장의 65.4% 차지
 - * 독일의 신선식품 시장이 1,402억 6,900만 달러(한화 약 190조 1,627억 원)로 독일 식품시장의 66.8%를 차지하며, 주요 신선식품 품목은 육류(23.2%), 낙농품(17.2%), 채소류(12.8%) 순임
 - * 프랑스의 신선식품 시장은 1,117억 3,800만 달러(한화 약 151조 4,832억 원)로 자국 식품시장의 61.6%를 차지하며, 주요 신선식품 품목은 육류(27.4%), 베이커리 및 시리얼(15.4%), 낙농품(14.2%) 순임
 - * 이탈리아의 신선식품 시장은 1,146억 4,500만 달러(한화 약 155조 4,242억 원)로 자국 식품시장의 67.8%를 차지하며, 주요 신선식품 품목은 육류(24.2%), 채소류(15.4%), 스낵류(15.4%) 순임

1) 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를 제외한 EU 27개국의 식품 시장 규모임(출처 : STATISTA)

- 주요 3개국의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937억 6,650만 달러(한화 약 262조 6,892억 원)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으며, 전체 식품 시장의 34.6% 차지

* 독일의 가공식품 시장은 696억 2,020만 달러(한화 약 94조 3,841억 원)로 독일 식품시장의 33.2%를 차지하며, 주요 가공식품 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4.8%), 스낵류(9.5%), 편의식품(4.6%) 순임

* 프랑스의 가공식품 시장은 696억 2,230만 달러(한화 약 94조 3,870억 원)로 자국 식품시장의 38.4%를 차지하며, 주요 가공식품 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5.4%), 스낵류(13.1%), 편의식품(4.8%) 순임

* 이탈리아의 가공식품 시장은 542억 2,400만 달러(한화 약 73조 9,182억 원)로 자국 식품시장의 32.2%를 차지하며, 주요 가공식품 품목은 스낵류(15.2%),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2.1%), 편의식품(3.4%) 순임

주요 3개국 시장 규모(2017~2021)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471,218.9	507,362.8	490,657.5	511,705.1	560,418.5	100.0	15.0
신선식품	307,881.0	331,649.0	320,794.0	334,688.0	366,652.0	65.4	12.4
가공식품	163,337.9	175,713.8	169,863.5	177,017.1	193,766.5	34.6	19.8
프랑스	155,521.5	164,879.2	159,242.0	166,183.2	181,360.3	100.0	16.2
- 신선식품	95,844	101,604	98,127	102,396	111,738	61.6	13.4
- 가공식품	59,677.5	63,275.2	61,115	63,787.2	69,622.3	38.4	20.8
독일	167,368.8	185,342.9	180,757.3	189,727.8	209,889.2	100.0	13.0
- 신선식품	111,514.0	123,555.0	120,572.0	126,710.0	140,269	66.8	11.4
- 가공식품	55,854.8	61,787.9	60,185.3	63,017.8	69,620.2	33.2	16.2
이탈리아	148,328.6	157,140.7	150,658.2	155,794.1	169,169.0	100.0	16.0
- 신선식품	10,0523	106,490	102,095	105,582	114,645	67.8	12.7
- 가공식품	47,805.6	50,650.7	48,563.2	50,212.1	54,524	32.2	23.1

* 출처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4억 4,510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함
 - 연령대 별 인구 비중은 0~14세(10.0%), 15~24세(10.5%), 25~34세(12.0%), 35~44세(13.5%), 45~54세(14.3%), 55세 이상(39.7%) 임
 - 여성 인구수는 약 2억 2,760만 명(51.1%), 남성 인구수는 약 2억 1,740만 명(48.8%)으로, 여성 인구의 비중이 남성 인구보다 조금 높음
- 2021년 가구수는 총 1억 9,18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2만 190달러(한화 약 2,737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4,340달러(한화 약 588만 원)로 약 21.5%의 비중이며, 전년 대비 14.0% 증가함
- 주요 3개국의 2021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8,076.1달러(한화 약 1,094만 원)로 전년 대비 9.3% 증가함
 - 1인당 식품 소비액이 가장 큰 국가는 이탈리아로 2,802.4달러(한화 약 380만 원)이며, 프랑스가 2,772.2달러(한화 약 376만 원), 독일이 2,501.6달러(한화 약 339만 원) 순임
 - 주요 3개국 중 독일의 1인당 식품 소비액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10.5%), 뒤이어 프랑스(8.9%), 이탈리아(8.7%) 순임

1인당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6,868.0	7,358.7	7,097.4	7,387.4	8,076.1	100.0	9.3
신선식품	4,483.9	4,806.3	4,636.3	4,827.2	5,279.0	65.4	9.4
가공식품	2,384.1	2,552.4	2,461.1	2,560.2	2,797.2	34.6	9.3
프랑스	2,398.4	2,537.0	2,444.8	2,546.0	2,772.2	100.0	8.9
- 신선식품	1,478.1	1,563.3	1,506.5	1,568.7	1,708.0	61.6	8.9
- 가공식품	920.3	973.7	938.3	977.3	1,064.2	38.4	8.9
독일	2,024.7	2,229.8	2,164.3	2,264.5	2,501.6	100.0	10.5
- 신선식품	1,348.9	1,486.4	1,443.6	1,512.2	1,671.8	66.8	10.6
- 가공식품	675.8	743.3	720.7	752.3	829.8	33.2	10.3
이탈리아	2,444.9	2,592.0	2,488.3	2,576.9	2,802.4	100.0	8.7
- 신선식품	1,656.9	1,756.6	1,686.2	1,746.3	1,899.2	67.8	8.8
- 가공식품	788.0	835.4	802.2	830.6	903.2	32.2	8.7

* 출처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 주요 3개국 모두 신선식품의 소비 비중이 높으며, 주요 신선식품 품목은 육류임
 - (이탈리아) 신선식품 1인당 소비액이 가장 큰 국가는 이탈리아로 1,899.2달러(한화 약 257만원)이며, 품목별로는 육류(24.2%), 채소류(15.4%), 낙농품(14.0%) 순으로 소비 비중이 큼
 - (프랑스) 신선식품의 프랑스 1인당 소비액은 1,708달러(한화 약 232만 원)이며, 소비 품목의 비중은 육류(27.4%), 낙농품(14.2%), 채소류(10.1%) 순임
 - (독일) 신선식품의 독일 1인당 소비액은 1,671달러(한화 약 227만 원)이며, 소비 품목의 비중은 육류(23.2%), 낙농품(17.2%), 채소류(12.8%) 순임
- 주요 3개국의 가공식품 소비 비중은 34.6%이며, 주로 스낵류,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를 소비함
 - (프랑스) 가공식품의 1인당 소비액이 가장 큰 국가로 1,064.2달러(한화 약 144만 원) 규모이며, 품목별로는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5.4%), 스낵류(13.1%), 편의식품(4.8%) 순임
 - (독일) 독일 1인당 가공식품 소비액은 829.81달러(한화 약 112만 원)이며, 소비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4.8%), 스낵류(9.5%), 편의식품(4.6%) 순으로 집계됨
 - (이탈리아) 가공식품의 이탈리아 1인당 소비액은 903.18달러(한화 약 122만 원)이며, 소비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5.2%), 스낵류(12.1%), 편의식품(3.4%) 순임

주요 3개국의 품목별 1인당 식품 소비액(2021)

(단위 : 달러, %)

국가명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1인당 소비액	비중	1인당 소비액	비중	1인당 소비액	비중
전체	2,772.2	100.0	2,501.6	100.0	2,802.4	100.0
신선식품	1,708.0	61.6	1,671.8	66.8	1,899.2	67.8
- 육류	758.3	27.4	579.7	23.2	678.7	24.2
- 낙농품	394.6	14.2	430.9	17.2	391.8	14.0
- 채소류	279.7	10.1	321.4	12.8	431.7	15.4
- 과일 및 견과류	203.7	7.3	262.7	10.5	293.4	10.5
- 유제품	71.7	2.6	77.1	3.1	103.6	3.7
가공식품	1,064.2	38.4	829.81	33.2	903.18	32.2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425.6	15.4	370.8	14.8	424.7	15.2
- 스낵류	363.5	13.1	238.3	9.5	339.6	12.1
- 편의식품	132.2	4.8	114.3	4.6	94.1	3.4
- 소스 및 향신료	67.2	2.4	70.0	2.8	24.2	0.9
- 스프레드 및 당류	60.8	2.2	28.7	1.1	10.5	0.4
- 영유아용 식품	14.9	0.5	7.7	0.3	10.0	0.4

* 출처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한국의 對EU 농식품 수출 현황

- 2021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의 EU 회원국 수출액은 약 4억 5,599만 6,000달러(한화 약 6,182억 원)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함
 - 그중 농산물의 수출 비중이 92.3%에 달해 총 4억 2,100만 3,000달러(한화 약 5,708억 원) 수출함
 - * 2021년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8%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8.4%의 증가율을 집계
 - 축산물 수출액은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1,855만 3,000달러(한화 약 252억 원)로,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37.1% 감소함
 -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38.3% 증가한 1,644만 달러(한화 약 223억 원)로 전체의 3.6% 차지, 최근 3년간 연평균 13.3%의 증가 동향을 보임

한국의 對EU 농수산물 수출 현황 2019년~2021년

(단위 : 톤, 천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21)	전년비 (*20/21)	연평균 (*19~21)
	종량	금액	종량	금액	종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농림축산식품	219,136	385,076	192,837	381,450	206,028	455,996	100.0	19.5	8.8
농산물	208,194	358,133	157,770	340,073	190,957	421,003	92.3	23.8	8.4
축산물	4,026	14,133	27,426	29,491	6,849	18,553	4.1	△37.1	14.6
임산물	6,916	12,810	7,641	11,886	8,221	16,440	3.6	38.3	13.3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KATI)

- 2021년 한국산 농식품의 EU 수출액 중 신선식품은 12.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0.7%의 증가율을 보임
 - 신선식품의 EU 수출액은 총 5,641만 4,000달러(한화 약 765억 원)이며, 최근 3개년 기준 연평균 10.6%의 증가율을 보임
 - * 품목별로는 김치가 전체 수출액의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뒤이어 버섯류(2.9%), 과실류(2.4%)를 주로 수출
 - * 신선식품 품목 중 가금육류가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18500.0%)을 보였으며, 뒤이어 산림부산물(61.4%), 곡류(57.4%), 김치(24.9%)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

- 2021년 한국 가공식품의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87.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9.4% 증가함
 - 2021년 가공식품의 EU 수출 규모는 3억 9,958만 2,000달러(한화 약 5,417억 원)이며, 최근 3개년 기준 연평균 8.6%의 증가율을 보임
 - * 가공식품 품목 중 면류의 수출 비중이 21.2%로 가장 높으며, 뒤이어 음료(9.4%), 소스류(4.0%) 순임
 - * 주류가 전년 대비 57.7%의 성장률로 수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뒤이어 소스류가 52.2%로 가공식품 품목 중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임

한국의 對EU 농림축산식품 수출 품목별 현황 2019년~2021년

(단위: 톤, 천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21)	전년비 (20/21)	연평균 (19~21)
	총량	금액	총량	금액	총량	금액			
농림축산식품	219,137	385,076	192,837	381,450	206,028	455,996	100.0	19.5	8.8
신선식품	12,428	46,108	12,462	46,745	14,096	56,414	12.4	20.7	10.6
- 김치	2,189	8,503	2,791	11,778	3,379	14,709	3.2	24.9	31.5
- 버섯류	3,783	13,602	3,257	12,521	2,843	13,352	2.9	6.6	△0.9
- 과실류	5,321	9,888	5,186	9,191	6,293	10,853	2.4	18.1	4.8
- 채소류	611	5,513	706	5,386	697	6,392	1.4	18.7	7.7
- 인삼류	35	2,789	45	2,968	53	3,346	0.7	12.7	9.5
- 곡류	213	548	261	631	507	993	0.2	57.4	34.6
- 화훼류	53	739	38	561	35	584	0.1	4.1	△11.1
- 가금육류	2	9	0	1	41	186	0.0	18,500.0	354.6
- 돼지고기	0	0	0	0	1	15	0.0	-	-
- 산림부산물	220	4,518	178	3,708	247	5,983	1.3	61.4	15.1
가공식품	206,709	338,968	180,375	334,705	191,932	399,582	87.6	19.4	8.6
- 면류	20,602	57,736	25,962	76,912	31,527	96,836	21.2	25.9	29.5
- 음료	52,835	37,421	51,765	37,563	55,964	43,071	9.4	14.7	7.3
- 소스류	4,420	9,943	4,678	11,907	6,827	18,123	4.0	52.2	35.0
- 과자류	4,609	13,536	4,057	13,255	5,739	17,865	3.9	34.8	14.9
- 목재류	6,696	8,292	7,463	8,178	7,974	10,457	2.3	27.9	12.3
- 주류	2,269	3,911	2,150	3,540	3,249	5,583	1.2	57.7	19.5
- 연초류	136	2,198	258	939	38	360	0.1	△61.7	△59.5
- 유제품	0	0	1	22	2	6	0.0	△72.7	-
- 기타	115,141	205,931	84,040	182,388	80,612	207,280	45.5	13.6	0.3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KATI)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도착 전 세관에 적하목록(ENS, Entry Summary Declaration)을 제출
 - 화물 상세정보 제출(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Code, 컨테이너 번호, 위험품목 코드 등), 화물 운송인,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운송 항로 및 운항 정보 등 기재
 - * 장거리 컨테이너 해상화물은 출발지 선적 24시간 전, 장거리 벌크화물은 EU국가 최초항 도착 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며, 철도/운하운송 화물은 EU국가 세관 도착 2시간 전에 통보해야 함
 - 수출입업자는 공인경제운영인(AEO) 중 1개를 선택하여 취득하여야 함
 - * 2005년 무역공급망의 안전성 및 무역원활화를 목표로 EU 세관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함
 - * AEO신청 절차는 공인신청 → 결격사유 조회 → 공인심사 → 공인통보 순서이며, Form-117을 이용하여 이메일 및 팩스로만 신청이 가능함
 -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제운영인이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품목 분류정보(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 제도를 등록해야 함
 - EU 공동체 내에 있는 세관에 물품을 신고할 때, 물품은 일반적으로 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분류하는데 해당 수출입물품이 속한 품목분류의 소호를 신고해야 함
- 상품의 수입, 수출에 관련된 모든 주체는 EORI(통관고유부호) 번호가 필요함
 -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등록번호인 E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음
 - EU위원회 사이트(ec.europa.eu)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EORI 번호가 유효한지 사전에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함
- 수입물품의 대리인은 서면 혹은 세관의 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를 완료
 -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수입물품의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신고서를 서면 혹은 세관의 통관시스템 전송방식으로 제출
 - * EU 수입신고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를 동봉해야 함
-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및 검역을 실시
 - 육안검사를 실시할 경우 수출입업체 및 대리인 참석 하에 물품선별검사를 실시하며, 별도의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 역내 운송허가 통지함

- 보세구역 반출 전 관세를 납부
 - 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前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음
 - *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이 되어야 하며 6,000유로(한화 약 793만 7,340원) 이하의 수출 시에는 인증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
 - * 6,000유로 이상의 수출 시에는 반드시 인증 수출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
- 관세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인도지시서(D/O)를 통해 물품반출이 가능
 - 선하증권 원본 및 관세영수증 발행 후 반출 가능하며, 유럽국가 간 관세 철폐로 유럽 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세 납부할 필요 없음

통관 시 제출서류

- 적하목록(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 화물상세정보(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Code, 컨테이너 번호 등)
- 화물 운송인,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 운송 항로 및 운항 정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 상업송장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L)
-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검역제도

- 농식품 검역 시 EU의 동식물검역지침을 준수해야 함
- 식물의 위생 상태, 식품의 위생,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잔류농약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짐
 - 살아있는 동물 및 육류의 수출 시 EU의 동물 검역제도에 따라 사전 검역을 거쳐야 함
 - 식물(화훼류 포함) 수출 시 경우에 따라 위생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 수입이 허가됨
 - 병충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식물에 한해 식물위생검역증 발급이 면제됨

- 감귤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²⁾에 따라 우려병해충을 관리 및 소독 처리한 후 수출되어야 함
 - 유럽연합에서 감귤류 생과실에 대해 지정한 검역병해충에는 ▲*Xanthomonas campestris*(All strains pathogenic to Citrus) ▲*Cercospora angolensis* ▲*Guignardia citricarpa*(All strains pathogenic to Citrus) 등이 있음
 -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되어야 하며 재배지 검역을 통과해야 함
 - 수출식품검역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IV.A.I. points 16.1, 16.2. option(c), 16.3. option(a), 16.4. option(c) and 16.5. option(a) of EC Plant Health Directive 2000/29/EC”
(동 과실은 EC Plant Health Directive 2000/29/EC ANNEX IV, PART A Section I : 16.1, 16.2(c), 16.3(a), 16.4(c) 및 16.5(a)에 부합함)

- 토마토 또한 다음 내용이 수출식품검역증명서에 부기되어야 함

- 1) EU-Regulation 2020/1191/EC, Article 9.1 :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ToBRFV) 관련
 - 관련된 토마토 종자의 모주는 ToBRFV를 발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수행한 공적 검역에 기반해서 동 병원균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 관련된 토마토 종자 또는 그 모주는 ToBRFV에 대한 공식적인 시료 채취와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검사에 따라 동 병원균에 무감염 되었음
 - 등록된 생산지역명
- 2) EU-Regulation 2019/2072/EC, 부록 5에 기재된 미생물 관련
 -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병해충 무감염 사항을 부기

- 살아있는 동물, 육류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Veterinary Checks)에 따라 사전 검역과정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함
 - 동물 및 축산물의 경우 검역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제출 필요
 - 동물성 가공식품은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 식품 목록의 변경으로 인해서 검사 면제 대상이었던 식품들도 조건을 만족 필요
 - 변경된 목록에는 육류를 함유한 제품, 충전된 젤라틴 캡슐,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기타 식품 보충제/첨가제, 알코올성 음료, 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키토산 및 유사성분을 함유한 소매용 식품보충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제품들의 수의학적 검사 필요
 - * 복합식품은 식물재료와 결합된 동물성 가공농산품을 함유한 인체 섭취용 식품으로 가공육, 가공 유제품(냉동), 저장이 안정적일 경우 50% 이상의 유제품, 50% 이상의 가공 수산물 및 난제품을 함유할 경우 위생증명서가 요구됨
 - EU 동물 검역제도에 따라 허가국 외 제3국으로부터 육류 및 유제품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한국은 유제품 수입 허가국 리스트에 제외되어 있음

2)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 수출가능 품목

협상타결 품목

- 농산물
 - 분재류 : 소나무속, 편백나무속, 향나무속
 - * 수출허용기간 만료('20.12.)되어 기한연장에 대한 요청 진행 중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사과, 배, 감, 단감, 포도, 참다래, 밤, 감귤,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가지, 파, 양파, 상추, 토마토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장미, 카네이션, 난초, 국화
 - 화훼류 :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난초, 백합, 글라디올러스, 철쭉속, 장미, 카네이션, 국화, 튤립

2. 수출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감자, 여주, 감귤 묘목

- EU가 지정한 고위험식물류는 2019년 12월 14일부터 EU 내 수입이 금지됨
 - 제3국산 종자, 분재, in vitro 형태를 제외한 다음의 재식용 식물(34속 1종)

Acacia Mill.	Nerium L.	Crataegus L.	Albizia Durazz.
Alnus Mill.	Prunus L.	Ficus carica L.	Bauhinia L.
Berberis L.	Salix L.	Jasminum L.	Caesalpinia L.
Cassia L.	Tilia L.	Lonicera L.	Cornus L.
Corylus L.	Acer L.	Persea Mill.	Diospyros L.
Fagus L.	Annona L.	Quercus L.	Fraxinus L.
Hamamelis L.	Betula L.	Sorbus L.	Juglans L.
Ligustrum L.	Castanea Mill.	Ulmus L.	Malus Mill.
Populus L.	Robinia L.	Taxus L.	

- 축산물
 - 열처리 가금육(삼계탕), 가금육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ACEMARTmall PARIS(프랑스)
업체 유형	식품유통업체
담당자명	Ms. Park

- 자사는 한국과 일본에서 식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프랑스 현지에서는 한국 식품 중 라면, 김치, 두부, 떡볶이, 만두, 어묵, 김, 한국산 소스, 주류, 막걸리, 인삼 제품 등 주로 가공식품이 인기가 많음
- 자사는 신선식품을 정기적으로 수입하지 않지만 시즌에 맞춰 배를 수입하고 있으며, 사과, 배 등의 한국 과일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지역에서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 채소 등의 신선식품은 프랑스 내 한국 교민 사이에서 수요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통관 및 유통 진행 시 시간이 걸리고 가격이 높아 직접 수입하지는 않음
-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에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프랑스로 식품 수출 시 특별한 무역 장벽은 없지만, 모든 수출기업은 EU 규정의 살충제 사용 제한 및 식물 위생 규정 등의 필수 검역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특히, 신선 농산물에 대해 EU는 높은 수입 검역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농약 사용, 클로르피리포스, 절단된 과일에 대한 미생물학적 기준치, 식물 건강 및 식물 위생 규정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03 비관세 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EU 식품안전청은 내분비 교란 물질(환경호르몬)을 규제하는 Import Tolerance 제도를 도입하여 잔류 농약 최대 허용치와 함께 수입 식품 검역 기준으로 적용함.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확인된 물질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지 않을 경우, 식물 보호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식품 유해성분인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의 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감 조치를 시행하며 해당 조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 농도를 규정함
 - 수출 가능한 한국산 품목의 카드뮴 잔류 한도 기준치가 낮아짐
- EU 회원국은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공통 규제(EC) No. 1935/2004를 적용함. 식품 포장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는 2개이며, 그 외 일반 물질은 허용 한도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됨
- 2021년 4월부터 EU로 수입되는 복합식품의 수입규정이 강화되어, EU 잔류물질 승인목록에 명시된 한국산 동물성제품 중 수출이 가능 품목은 수산물 뿐임. 축산물, 50% 이상의 우유 및 난제품이 함유된 한국산 복합식품은 사실 인증서가 요구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해성분이 확인된 식품의 수입을 규제함
 - 2021년 3월, 알로에 추출물 관련 높은 유전적 독성 및 발암성이 확인된 알로에-에모딘, 에모딘, 단트론 및 알로에 제제 성분을 규정(EC) No 1925/2006의 부속서 III - Part A (금지 물질)에 추가함
 - 2022년 초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 속 리스테리아균에 의한 식중독 사망 발생 이후, 유럽의 대형 바이어들은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Global GAP 인증을 요구함
 - 2022년 7월, 인스턴트 라면의 야채·버섯 수프가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이프로디온 검출 문제로 통관거부 되면서 라면 수프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강화됨
- EU는 한국산 삼계탕에 대해 EU 시장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주지 않고 있음. 이는 SPS 협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우리 정부는 SPS 위원회를 통해 EU의 신속한 수입승인 절차 진행을 촉구함

- EU는 식품에 니아신 공급원으로서 염화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시드 첨가를 승인하기 위해 (EC) No 1925/2006 부록 II의 개정 초안을 공고함. 그중,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 대체 식품 및 특수 의료 목적의 식품에 해당 물질 첨가를 승인하기 위해서(EU) No 609/2013 부록의 개정 초안도 공고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food/plant/pesticides/eu-pesticides-db_en
식품 첨가물 허용치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food/safety/food_improvement_agents_en
미생물 규정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food/safety/biosafety/food_hygiene/microbiological_criteria_en
EU에서 승인한 제3국의 제조시설 목록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food/safety/international_affairs/trade/non-eu-countries_en

통보문 개정현황(2022년)

- 한국산 삼계탕 수입승인 지연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는 한국산 치킨 수프인 삼계탕에 대한 수입승인을 지연시키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는 우리나라의 수입승인 요청에 따라 삼계탕을 수입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현장 조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보고서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요구한 바 있음 - EU는 삼계탕의 시장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주지 않고 있음 • EU의 이 같은 상황은 SPS협정 위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정부는 SPS위원회를 통해 EU의 신속한 수입승인 절차 진행을 촉구하고 있음
통보일	-
시행예정일	-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TB0183680

● 한국산 버섯에 대한 식품안전 인증요구 강화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초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을 생식하고 리스테리아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례가 나오면서 유럽의 대형 바이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산 신선 농산물에 Global Good Agricultural Product(Global GAP) 인증을 기본으로 요구하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S(International Features Standards) 인증은 2003년 독일과 프랑스 식품유통기업 연합체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 식품 규격 - BRCGS 식품 안전 표준은 영국 소매 컨소시엄(BRITISH RETAIL CONSORTIUM)에서 주관하는 식품 안전 관련 국제 표준(Global Standard) 인증 - SMETA(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는 바이어와 납품업체 간의 책임·윤리 경영을 돕기 위해 조직된 영국의 비영리단체 Sedex(Supplier Ethical Data Exchange)사에서 주관하는 윤리경영 감사제도 • IFS와 BRCGS는 유럽 주관기관에서 검사관이 와서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인증 취득이 어려운 상황 •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을 대표로 하는 한국산 신선버섯의 유럽 내 인지도가 날로 높아지고 현지 일반 슈퍼마켓 체인이나 대형유통업체의 관심도 증가해 왔으나 미국과 유럽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잇달아 검출됨에 따라 추후 현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벤더)에 유럽 수준의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를 보장하는 제품 요구가 강화될 전망
통보일	-
시행예정일	-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TB0183694

• EU 라면 수프 안정성 검사 강화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지역에 대한 인스턴트 라면 수출에서 그간 에틸렌옥사이드(EO) MRL 초과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빈번히 있었으나 2022년 7월 이프로디온이 검출돼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채·버섯 수프에서 잔류허용 기준치(MRL)가 0.01 mg/kg-ppm인 이프로디온(iprodione) 성분 0.25 mg/kg-ppm가 검출되어 폐기 처리됨 • 이프로디온(Iprodione)은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포장 관련 EU 위원회 규정 ((EC) No 1272/2008)에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규정은 물질(substance)이나 혼합물(mixture)로부터 인류의 보건, 환경 보호의 목적과 해당 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유럽 역내에서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규정 - 이에 따라 물질 제조자, 수입업체, 이용자(산업적으로나 전문적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는 유럽 역내 시장에 제품을 납품하기 전 물질과 혼합물에 대하여 분류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는 해당 물질을 포장하고 라벨링 할 의무가 있음. 또한, 물질 제조업자, 수입업체는 분류 및 라벨링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도 발생 • 살균제의 한 종류인 이프로디온은 규정상 유해물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물질은 인체 암 유발 가능성 유해물질 2번째 카테고리 분류되어 있고, 해양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보기 때문 - 농약, 중금속 등과 같은 인체 유해물질의 MRL를 정해놓은 EU 위원회 규정(EC) No 396/2005의 부속서 V에도 마찬가지로 이프로디온의 MRL이 정해져 있으며, 그 수치는 품목에 따라 0.01mg/kg - 0.05mg/kg임
통보일	-
시행예정일	-
개정현황	-
출처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021&board=ntbView&boardid=NTB0183702

● 식품에 첨가되는 염화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에 관한 규정 개정 초안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 초안은 식품에 니아신 공급원으로서 염화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 첨가를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물질을 식품에 첨가하려면 비타민과 미네랄 및 기타 특정 물질을 식품에 첨가하는 것에 관한 규정인(EC) No 1925/2006 부록 II의 개정이 필요함 •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 대체 식품 및 특수 의료 목적의 식품에 니아신 공급원으로서 염화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 첨가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영유아용 식품, 특수 의료용 식품 및 체중 조절을 위한 대체식에 대한 규정인(EU) 제609/2013호 부록의 개정이 요구됨
통보일	-
시행예정일	-
개정현황	-
출처	<p>https://epingalert.org/en/Search?domainIds=1&countryIds=U918&freeText=931&viewData=G%2FTBT%2FN%2FEU%2F931</p> <p>https://epingalert.org/en/Search?domainIds=1&countryIds=U918&freeText=922&viewData=G%2FTBT%2FN%2FEU%2F922</p>

2. TBT

주요 TBT 내용

- 유럽권 국가에 식품 수출 시 유럽 식품안전청(EFSA)의 식품안전관리제도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EU 회원국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EU 식품안전기준법에 따라 위생 기준, 라벨링 규정, 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도 사용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하나 이상의 식품을 혼합한 증류주의 라벨링에 관한 EU 규정을 수정함. 증류주의 정의, 상품제시, 라벨링 및 기타 식품류의 상품제시 및 라벨링에서 증류주 명칭 사용,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규정을 상정함
 - 반려동물 식품이 라벨링에 유기농으로 표기되고 유럽연합 유기농 생산 로고가 표시되려면, 중량을 기준으로 농업 성분의 최소 95%가 유기농이어야 함.
 - 유기천일염 및 기타 소금에 관하여 작업자에 관한 상세 요건, 금지 행위 목록, 공정 및 처리 기술, 유기염에 대한 라벨링 규칙의 개정안이 통보됨

- 유기농 생산 및 라벨링 관한 규정(EU) 2018/848의 개정 조치 사항
 - 규정(EU) 2018/848의 시행 예정일이 2022년 1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전환 기간 중 소급 인정을 위해 필요한 문서, 제품 생산 및 회원국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한 특별 시행규정 (EU) 2020/464의 발효일도 연기됨
 - 무허가 제품과 물질로 인해 부적합하다고 의심되는 제품의 예방 조치와 조사, 라벨링, 운영자 그룹의 공식 통제와 최소 추가 통제, 국가 조치 카탈로그 및 유기농 기관과 당국 간의 정보 교환에 대해 규칙을 규정함
- EU는 시리얼식품, 영양식품, 어린이 성장 및 건강 유기농식품 등에 대한 건강강조 표시 승인을 엄격히 제한함. 질병 위험의 감소와 어린이의 성장 및 건강 효능과 관련된 건강강조표시는 개별 신청을 통한 승인 절차가 필요함
-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최종 플라스틱 재료 및 물품의 재활용 내용물이 식품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식품의 품질 또는 관능적 특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칙이 제정됨
 - 이탈리아는 식품 접촉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규정 초안을 채택할 예정임
 - 미네랄오일 화합물이 재활용된 종이 및 판지 포장재에서 식품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에 근거하여 방향성 탄화수소 및 포화 탄화수소를 금지 물질로 정의하는 명령 안이 발령됨. 이 명령 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강화됨
- EU는 시장에 공급된 소비자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 관보에 언급된 관련 유럽 표준을 준수하거나 표준이 없는 경우 관련 국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소비자 제품은 안전 추정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EU) 1025/2012를 개정함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유럽의회 식품안전 페이지	https://ec.europa.eu/food/safety/labelling_nutrition_en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성분 • 알레르기 유발 성분표기 필수 • 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섭취기한(best before) 또는 최소보존일(use by) • 보관조건 및/또는 사용조건 • 제조업체명과 주소 또는 • EU 내 수입업체명과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 사용방법 • 알코올 도수 • 영양성분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현지 언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여러 언어의 병기도 가능함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 가능함	
	글자 크기	글자크기는 최소 1.2mm이어야 할 것 단, 제품 면적이 80cm ² 미만의 경우 글자 크기는 최소 0.9mm이상이어야 할 것	
	제품명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되 필요시 식품의 속성을 설명하는 명칭 (descriptive name)을 사용할 것	
	용량	리터(l), 센티리터(cl), 밀리리터(ml), 킬로그램(kg), 그램(g)을 포함하여 적절한 단위와 함께 표기할 것 음료는 순중량으로 표기할 것	
	원료명	완제품의 5% 이상의 원료에 한해 순중량 순으로 기재할 것 2% 넘지 않는 성분은 뒤쪽에 표기할 것 백분율로 표기할 것	
	유통기한	섭취기한 : Best before, Best before end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 기재할 것 최소보존일 : Use by와 같은 문구와 함께 ‘일, 월, 연도’ 기재할 것	
	원산지	원산지 국가명 또는 지역명 표기할 것 육류의 경우, 가축의 사육지와 도축장소 표기할 것	
	기타 표시	사용방법, 알코올도수(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 필요에 따라 표기할 것 (알코올도수의 경우 1.2% 이상의 알코올 음료에 해당) 사용방법은 제품 사용이 어려울 경우 기재할 것	
	유기농 로고	유럽연합 유기인증 통합로고와 회원국 별로 독자적인 유기인증 로고를 함께 사용 가능함 통합 로고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인증기관의 코드번호와 원재료의 원산지를 함께 기재할 것 사전 미포장 또는 제3국 수입 유기식품은 유기인증 로고 사용은 선택적으로 가능함	
	성분표	열량, 지방, 탄수화물, 설탕, 단백질, 소금 등 매 100그램(g)/100밀리리터(ml) 기준으로 표기할 것 중량의 내림차순으로 기재할 것	
	알러지 유발 성분	글루텐 함유 곡류, 갑각류, 계란, 어류, 두류, 유제품, 견과류, 셀러리류, 겨자, 참깨,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 제품, 루핀, 연체동물(해당 성분 하위품목 중 예외 있음)	

*자료 : EU법령포털(EUR-LEX)

• 소스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불고기 소스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설탕 - 간장 - 과일 푸레 - 사과 푸레 - 말산 - 양파 -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늘 - 옥수수전분 - 소금 - 참깨(녹말) - 시트르산 - 옥수수 가루 - 효모 추출물
내용량	225ml	
출시일(발행일)	2021. 07. 08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Bjorg et Compagine	
제조지(원산지)	한국	
영양성분표시	- 1회 제공량 100ml 당	
	열량(KJ)	867kJ
	열량(Kcal)	204kcal
	지방	<0.5g
	탄수화물	47g
	당류	42g
	식이섬유	0.9g
	단백질	3.6g
소금	5.5g	
알레르겐 주의 성분	밀, 대두, 글루텐 함유 시리얼, 참깨	

• 육류 대용 가공식품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베지 살라미(Veggie Salami)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 유채유 - 밀 단백질 - 건조 달걀흰자 - 글리세롤 - 밀가루 - 향신료 - 감자 전분 - 완두콩 단백질 - 백설탕 - 호모 추출물 - 향미료 - 캐러멜 설탕 - 포도당 	
내용량	25g * 3개입(총 75g)	
출시일(발행일)	2022. 08. 23	
저장방법	냉장 보관	
제조사	BiFi Snacks	
알레르겐 주의 성분	달걀, 밀, 글루텐 함유 시리얼	
영양성분 정보	- 제공량 100g당	
	열량(KJ)	1626kJ
	열량(Kcal)	392kcal
	지방	30g
	포화 지방산	2.2g
	탄수화물	15g
	당류	5.2g
	단백질	15%
	소금	2.7g

인증

[필수 인증]

-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EU의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 위생 기준, 라벨링 규정, 오염물질 허용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제도로, 가공, 부분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았거나 인간이 섭취하도록 의도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물질과 제품에 적용됨.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이 가능하며, 수출 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인증사항임


인증명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발행 및 검사기관	유럽 식품안전청(ESFA)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비용	없음	
소요기간	없음	
절차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나 불시검사를 통해 EU 식품 관련 규칙 위반 시 수입거부 및 반송, 폐기될 수 있음	

- 유럽 노블푸드(신식품) 등록
 - 노블푸드는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에서 인간이 상당한 수준으로 소비하지 않은 식품, 새롭게 개발된 혁신적인 식품, 새로운 기술과 생산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그리고 전통적으로 EU 이외의 지역에서 먹거나 먹어온 식품 또는 성분을 의미하며, 시장 출시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함

인증명	유럽 노블푸드 등록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발행 및 검사기관	유럽 식품안전청(ESFA)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협약요청서, 커버 레터, 기술 문서, 증빙 서류 등	
비용	없음	
소요기간	약 10개월	
절차	EU 내 소비 이력 확인 → 노블푸드 규정 적용 여부 확인 → Union List 확인 → Regulation(EU) 2018/456절차에 따라 등록	

• EU 유기농 인증

- EU 내에서 생산된 모든 유기농 농산물 인증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으로 올바르게 표시된 로고를 사용해야 함. 유럽에서 생산된 미포장 유기농 식품 또는 제3국에서 수입된 유기농 제품들은 자발적으로 이 새로운 로고를 부착할 수 있음. 2015년 유럽연합과 한국은 유기농식품에 관한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함

인증명	EU 유기농 인증(Euro-leaf)	
발행 및 검사기관	농관원 지정 인증기관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신청서,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 경영 관련 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등 	
비용	최소 75만 원	
소요기간	약 50일	
절차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결과통보 → 사후관리	

• Global Gap(우수 농산물 기준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Global Gap는 AF(농업 및 어업), CB(작물), FV(과일 및 채소) 3가지로 구성되며 농화학과의약품 투입의 최소화추진 및 농장보증체계 채택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유효인증기간은 1년이며 따로 인증마크는 없음. 26개 대분류, 233개 세부 항목으로 가장 방대한 인증 기준을 보유함

인증명	Global Gap (우수 농산물 기준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발행 및 검사기관	FoodPLUS	
강제유무	권장	
제출 서류	인증신청서	
비용	인증수수료 : 개별농가 250만 원, 단체 400~500만 원 인증비 : 80~400만 원	
소요기간	없음	
절차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결과통보	

• BRC(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Food Standard

- BRC 인증은 Global Food Standard, Storage and Distribution, Packaging 등 여러 가지 인증 체계를 운영 중임. BRC Food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제조업체의 안정성, 품질, 운영 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됨. 해당 인증은 유통망 내 가공 및 유통되는 모든 업체들의 제품을 이해하고, 식품 안전 위험을 식별하여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음

인증명	BRC(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Food Standard	
발행 및 검사기관	BRC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인증신청서	
비용	900~1,000만 원	
소요기간	없음	
절차	인증의뢰 → 현장심사 → 부적합 사항 시정 조치 → 인증 발급 → 사후심사	

• FSSC22000(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22000, 식품안전체계인증)

- FSSC22000 인증은 ISO22000를 기반으로 한 인증으로 더 빠르게 보급되었음. 위해요소분석적 중점관리기준(HACCP)도 포함돼 있어,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국내 심사원 심사로 인한 비용 절감, 갱신 주기에 따른 차후 비용 절감 등 다른 인증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많아 식품업계의 선호도가 높음

인증명	FSSC22000	
발행 및 검사기관	GFSI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비용	갱신 : 500~600만 원, 사후 : 250만 원	
소요기간	6~9개월	
절차	인증신청 → 1차 심사 → 2차 심사 →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 인증발급	

• Halal Certification Europe(HCE)

- HCE는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에 사용되는 인증이며 할랄 제품들을 관리할 수 있음. 인증이 발급되면 제품에 할랄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이 허락했다는 종교적 의미와 제품의 유통과 보관과정 중에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는 안심 마크 기능을 가지고 있어 비 무슬림 사이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유럽에 5천만 명의 할랄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장성을 높일 수 있음. 유효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엔 재발행할 수 있음

인증명	Halal Certification Europe(HCE)	
발행 및 검사기관	GAC(GCC Accreditation Center)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기타 관련 자료	
비용	별도 비용 없음	
소요기간	없음	
절차	인증신청 → 원재료 및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인증발급	


• The Crossed Grain Trademark(CGT)

- AOECs의 글루텐 프리 기준으로 설정된 인증으로 HACCP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의 만성소화장애증(Celiac Disease)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기준임. 이 글루텐 프리 인증은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에서 등록 및 보호받고 있음. 식품뿐 아니라 포장, 원재료 등에도 인증이 사용되며 AOECs 감시하에 12,000여 개의 제품이 관리되고 있음

인증명	The Crossed Grain Trademark(CGT)	
발행 및 검사기관	AOECs(Association of European Coeliac Societies)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비용	신청자에 따라 상이함	
소요기간	시험자에 따라 상이함	
절차	인증신청 → 현장심사 → 인증발급 → 연간검사	

• EURO LEAF 인증

-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유기농 제품 생산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기 위함.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 유기농인증을 부여함. 생산 및 가공 시 첨가물 및 화학물질 사용 제한, 방사선조사 및 유전자변형성분 사용 금지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인증명	EURO LEAF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유럽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회사 행정 정보, 유기농 규정 준수와 관련된 기록 문서, 유기농 생산 및 관리 계획 등	
비용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함	
소요기간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함	
절차	인증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최종검토 → 인증서 발급	

• Vegan Society 인증

-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품에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기준으로 부여함. 소비자들이 세부 원재료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쉽게 비건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원료 선택부터 제품의 제조 및 또는 전체 생산단계에 걸쳐 그 어떠한 동물성 원료 및 생산품, 부산품, 부산물 혹은 파생물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증명함

인증명	Vegan Society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영국 비건 협회(The Vegan Society)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기본정보, 제품유형, 제품수, 회사규모 등이 작성된 사전 질문지 • 비건 증명서류, 동물 실험 및 교차 오염 확인서 	
비용	신청자에 따라 상이함	
소요기간	평균 6개월	
절차	상담/문의 → 견적제공 → 인증신청 → 비용입금 → 서류확인 → 라이선스 계약서 서명 → 인증서 발급	

• EVE VEGAN 인증

- 윤리적 및 환경적 문제를 우려하는 소비자의 증가에 따라 VEGAN 제품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해짐. EVE VEGAN은 VEGAN FRANCE 협회가 2016년 설립한 EXPERTISE VEGANE EUROPE S.A.S.의 서비스 인증브랜드임

인증명	EVE VEGAN 인증	* EVE와 계약(인증)을 맺은 회사만 로고 사용 가능
발행 및 검사기관	EXPERTISE VEGANE EUROPE S.A.S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시트,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로고, 인증 계약서, 회사 소개서 파일 • 형태 또는 레시피(기술 시트), 완제품 라벨링, 완제품 사진, 포자 시트, 브랜드 로고, 완제품에 살아있는 동물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서, 기타 제품 인증서 • 원료 세부사항, 원료는 살아있는 동물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서 • 하청 업체 신고서 	
비용	신청자에 따라 상이함	
소요기간	평균 6개월	
절차	상담/문의 → 견적제공 → 인증신청 → 비용입금 → 서류확인 → 라이선스 계약서 서명 → 인증서 발급	

3. 통관거부사례 현황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비교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EU에서 확인된 한국산 식품 통관거부 사례는 총 27건으로 집계됨. 2022년 EU에서 확인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의 총건수는 13건이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성분 부적합 문제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2020~22년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사유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라벨링/포장	2	0	1	3
성분 부적합	2	8	8	18
위생	1	0	1	2
서류미비	0	0	1	1
잔류농약 검출	0	0	1	1
기타	1	0	1	2
합계	6	8	13	27

2022년 월별 통관거부 건수

- 2022년 EU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는 총 13건으로, 성분 부적합 문제 8건, 그 외 라벨링/포장과 위생, 서류미비, 잔류농약 검출, 기타 문제는 각 1건으로 확인되었음

2022년 월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건수

사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벨링/포장	0	0	0	0	1	0	0	0	0	0	0	0	1
성분 부적합	0	2	2	2	0	1	0	0	0	1	0	0	8
위생	0	0	0	0	0	0	0	0	0	0	1	0	1
서류미비	0	0	1	0	0	0	0	0	0	0	0	0	1
잔류농약 검출	0	0	0	0	0	0	1	0	0	0	0	0	1
기타	0	1	0	0	0	0	0	0	0	0	0	0	1
합계	0	3	3	2	1	1	1	0	0	1	1	0	13

● 통관거부 세부 사유별 건수

사유	세부내용	건수
위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검출	1
성분 부적합	미허가 물질 2-클로로에탄올 검출	2
	미허가 물질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4
	요오드 과다 검출	2
잔류농약	이프로디온 검출	1
라벨링/포장	땅콩 및 호두 미표기	1
서류미비	불충분한 서류	1
기타	온도관리 불량	1
합계		13

● 통관거부 품목

대분류	품목명	건수	비중(%)	주요 문제사유
농산물	면류	6	46.2	미허가 물질 (에틸렌옥사이드 등) 검출
	기타 조제 농산품	3	23.1	서류 미비, 라벨에 성분 미표기 등
소 계		9	69.3	
수산물	어류	2	15.4	온도 관리 불량, 리스테리아 검출
	해조류	2	15.4	요오드 과다 검출
소 계		4	30.8	
총 합 계		13	100.0	

No.			해당국가	EU
1	제목	프랑스 세관으로부터 EORI 번호 발급	관련품목	건강기능식품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는 경제사업자 등록 및 식별번호로 직접 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 및 개인은 모든 세관 절차에서 식별번호로 EORI 번호를 사용해야 함 • 한 EU 회원국 세관 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 없음 • EORI 번호 발급 방법 : 프랑스 관세청 사이트(douane.gouv.fr)에서 계정생성 후 SOPRINO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프랑스 세관에 등록된 사업체의 경우, 관세청 사이트 내 'SOPRINO 온라인 서비스'에서 발급 ② 프랑스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관세청 사이트 내 'SOPRINO-Simplified Access'에서 발급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비 EU 회원국이므로 프랑스 세관 당국에 EORI 번호 할당을 요청해야 함 			
기타		-		

No.	제목	EU 라벨링 규정 준수의 어려움	해당국가	EU
			관련품목	건강기능식품
2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식료품 라벨링 표시사항은 포장 위나, 포장에 매달린 라벨에 명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발견하고 읽을 수 있는 위치에 표기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순수량, 알코올 도수는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명시해야 함 - 의무적 기재사항의 경우, 글씨 크기는 1.2mm 이상이 되어야 함 - 포장 또는 용기의 최고 면적이 80cm² 이하일 경우, 글꼴 크기는 최소 0.9mm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 표시사항은 단어 및 숫자로 표기되어야 하며, 그림 기호나 상징 부호를 사용할 수 있음 • 라벨 필수 표기사항 : 제품명, 원산지, 원재료 목록, 성분 또는 성분 범주 함량, 식품 내용량, 유통기한 및 품질 유지 기한, 알코올 도수, 제조업체 명칭 및 주소 또는 유럽 연합 수입/판매업체, 제조번호, 사용방법, 보관방법,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총 13가지 항목 		
애로·건의 사항		• 라벨링 의무 표시 사항의 글자크기 및 포장 규격을 준수하기 어려움		
기타		-		

No.	제목	EU, 에틸렌옥사이드 규제 강화로 수출 시 검사 절차 까다로움	해당국가	EU
			관련품목	식품전반
3			유형*	SPS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발표된 유럽연합 시행 규정(EU) 2021/2246에 따라 한국은 에틸렌옥사이드 위험에 주의가 필요한 국가로, 한국에서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되는 면류와 식품 보조제는 에틸렌옥사이드의 유럽연합의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EU) No 231/2012 식품첨가물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규정 변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틸렌옥사이드는 식품첨가물에 살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규정(EC) No 1333/2008의 부록 1과 2에 명시된 식품첨가물과 식품첨가물의 혼합물의 경우, 출처에 관계없이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의 잔류물의 합이 0.1mg/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애로·건의 사항		•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에 대한 규제 강화로 한국 라면과 식물성 식이보충제 수출 시 시험성적서 발급이 필수가 되어 수출 시마다 검사 절차가 까다로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식품 첨가물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의 잔류물 기준 강화 <p>https://m.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5895&menu_dept2=35&menu_dept3=75</p>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발효홍삼 함유 유산균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의 검역 여부

제품 사전검토 결과

- 통관 사전검토
 - 노벨푸드는 EU의 식품 규정으로, EU회원국 27개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됨. 스위스의 경우는 자체 식품규정을 운영 중으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홍삼이 인삼에 비해 특이할만한 성분변화가 없어 노벨푸드 등록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법적 확신을 위해서는 유통 전 반드시 유통국 담당기관의 확인을 거칠 것을 권고함. 더불어, EU 현지에서 현재 “발효홍삼” 제품들이 유통 중이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EU 회원국 내의 노벨식품 신고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함. 노벨식품 판단의 사실 전문기관이 아닌 각 유통국 담당기관에 사전 신고 혹은 승인을 권고함
-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여부
 - 식물 성분을 포함하는 건강보조식품 중 CN코드 1302, 2106에 해당하는 경우는 에틸렌옥사이드 일시검역강화 규정 적용 대상임. 따라서, CN코드 2106으로 신고되었으나,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경우는 에틸렌옥사이드 일시검역강화 대상이 아님

2. 발효홍삼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발효홍삼의 노벨푸드 등록 필요 여부
- 제품 분류(의약품/건기식/일반식품) 및 통관절차, 필수 사항
- HS코드 분류

제품 사전검토 결과

- 발효홍삼 노벨푸드 등록
 - 현재 EU에서는 인삼-홍삼에 대한 구분 없이, 홍삼 및 발효홍삼 모두 Panax ginseng으로 인정하고 있음. Panax ginseng은 이미 노벨푸드로 등록이 되어 있어, 발효홍삼에 대한 별도의 노벨푸드 등록은 필요하지 않음
- 건강보조식품의 EU 수입 및 유통
 - 유산균이라는 특정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보조식품(Food supplement)에 해당함. 건강보조식품은 수입자가 각 유통국의 담당 관청에 사전신고 필요
- HS코드 : 2106 * 현재 일시 검역강화 규정 적용 대상
 - 건강보조식품은 보통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인 2106 코드로 신고함. 다만 현재 한국에서 들어오는 "식물 성분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검역강화 규정이 적용 중임. 이에 따라, 각 생산 LOT 당 EU 기준에 준하는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식약청의 공식증명서를 화물에 첨부해야 함

3. 복합식품

수출업체 조사 의의사항

- 반찬류의 EU 수출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

제품 사전검토 결과

- 제품 주재료(깻잎, 우엉, 고들빼기)의 통관 가능성
 - 깻잎과 우엉은 유럽 현지의 아시아 식품점 및 식당에서 유통되고 있는 채소로 통관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고들빼기(학명:Crepidiastrum sonchifolium)는 EU에서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식물로 통관 시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동물 유래재료
 - 액젓, 멸치육수의 멸치와 같이 동물에서 유래한 재료는 원칙적으로 EU 승인국의 승인시설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이어야 함. 한국은 현재 수산물에 대한 EU승인국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액젓 생산업체와 멸치 가공업체가 EU 승인시설인지를 확인 필요
- 그 외 재료
 - 효소처리스테비아의 경우, 한국과 EU의 규격 기준이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함

EU 통관 시 유의사항

- EU로 수입되는 한국의 밑반찬류는 수입업체가 어떻게 수입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구비서류 및 통관여부가 상이할 수 있음. 프랑스를 포함한 EU의 경우, 수입업체가 제품에 대한 전적인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귀사 제품과 같이 수산물(생선)을 함유하면서, 비상온(냉동/냉장) 유통 및 보관이 필요한 복합식품(식물성 재료와 동물성 재료를 함께 사용한 식품)은 원칙적으로 한국 식약처가 발부하는 식품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공식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그러나 유럽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 품목이 전부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복합식품의 공식증명서 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에서 담당함. 따라서 수입(예정) 업체와 첨부된 전 성분 리스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신남방

베트남 VIETNAM

2022년 한눈에 보이는
베트남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208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219
03. 비관세 장벽 현황	221
04. 수출 애로사항	230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232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식품 시장 규모는 749억 600만 달러(한화 약 101조 5,501억 원)로 전년 대비 6.9% 증가
 -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323억 6,300만 달러(한화 약 43조 8,745억 원)로 전체 시장의 43.2% 차지함
 - * 신선식품 중 채소류가 93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2조 6,894억 원)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육류(11.0%), 과일 및 견과류(8.9%), 낙농품(8.9%), 유지류(1.9%) 순임
 - 가공식품 시장은 전체 시장의 56.8%에 달하는 425억 4,300만 달러(한화 약 57조 6,755억 원)로 전년 대비 6.9% 증가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가 139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8조 8,849억 원)로 가공식품 중 가장 비중이 높으며, 스낵류 121억 달러(한화 약 16조 4,040억 원), 영유아용 식품 50억 4,900만 달러(한화 약 6조 8,449억 원) 순임

식품 시장 규모(2017~2021)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54,717.0	59,174.0	64,247.0	70,084.0	74,906.0	100.0	6.9
신선식품	23,700.0	25,613.0	27,793.0	30,300.0	32,363.0	43.2	6.8
- 채소류	6,868.0	7,420.0	8,047.0	8,767.0	9,360.0	12.5	6.8
- 육류	5,998.0	6,499.0	7,068.0	7,723.0	8,270.0	11.0	7.1
- 과일 및 견과류	4,904.0	5,295.0	5,745.0	6,264.0	6,685.0	8.9	6.7
- 낙농품	4,892.0	5,283.0	5,728.0	6,239.0	6,659.0	8.9	6.7
- 유지류	1,038.0	1,116.0	1,205.0	1,307.0	1,389.0	1.9	6.3
가공식품	31,017.0	33,561.0	36,454.0	39,784.0	42,543.0	56.8	6.9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0,320.0	11,120.0	12,030.0	13,080.0	13,930.0	18.6	6.5
- 스낵류	8,247.0	9,065.0	10,030.0	11,150.0	12,100.0	16.2	8.5
- 영유아용 식품	3,638.0	3,949.0	4,302.0	4,708.0	5,049.0	6.7	7.2
- 편의식품	3,619.0	3,912.0	4,244.0	4,626.0	4,941.0	6.6	6.8
- 스프레드 및 당류	3,511.0	3,705.0	3,892.0	4,097.0	4,266.0	5.7	4.1
- 소스 및 향신료	1,682.0	1,810.0	1,956.0	2,123.0	2,257.0	3.0	6.3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9,747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함
 - 연령대 별 인구 비중은 0~14세(14.9%), 15~24세(14.2%), 25~34세(16.5%), 35~44세(15.6%), 45~54세(12.5%), 55세 이상(26.4%)으로 비슷함
 - 여성 인구수는 약 4,930만 명(약 50.6%), 남성 인구수는 약 4,810만 명(49.4%)으로, 여성 인구의 비중이 남성 인구보다 조금 높음

- 2021년 가구수는 총 2,14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2,020달러(한화 약 274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820달러(한화 약 111만 원)로 약 40.6%의 비중이며, 전년 대비 5.5% 증가함

- 2021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762.96달러(한화 약 103만 원)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으며, 주로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스낵류, 채소류, 육류를 소비함
 - 신선식품 소비액은 연간 1인당 329.66달러(한화 약 44만 원)로 채소류(12.5%)와 육류(11.5%)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
 - * 연간 채소류 구매에 95.34달러(한화 약 13만 원), 육류 구매에 84.24달러(한화 약 11만 원) 소비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433.30달러(한화 약 59만 원)이며 그중 베이커리류 및 시리얼류 소비액이 141.90달러(한화 약 19만 원)로 가장 큰 비중(18.6%)을 차지함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578.40	619.35	666.05	719.91	762.96	100.0	6.0
신선식품	250.52	268.08	288.13	311.31	329.66	43.2	5.9
- 채소류	72.60	77.66	83.42	90.07	95.34	12.5	5.9
- 육류	63.40	68.02	73.28	79.35	84.24	11.0	6.2
- 과일 및 견과류	51.84	55.42	59.56	64.36	68.10	8.9	5.8
- 낙농품	51.71	55.30	59.38	64.10	67.83	8.9	5.8
- 유지류	10.97	11.68	12.49	13.43	14.15	1.9	5.4
가공식품	327.88	351.27	377.92	408.60	433.30	56.8	6.0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09.10	116.40	124.70	134.30	141.90	18.6	5.7
- 스낵류	87.18	94.88	104.00	114.50	123.20	16.1	7.6
- 편의식품	38.46	41.33	44.60	48.37	51.43	6.7	6.3
- 영유아용 식품	38.25	40.94	44.00	47.53	50.33	6.6	5.9
- 스프레드 및 당류	37.11	38.77	40.35	42.09	43.45	5.7	3.2
- 소스 및 향신료	17.78	18.95	20.27	21.81	22.99	3.0	5.4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패스트 시장 규모 제외)

- 가장 소비량이 많은 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로 1인당 연간 103.22kg 소비
 - 뒤이어 채소류 73.03kg, 낙농품 29.57kg, 과일 및 견과류 28.46kg 순이므로, 신선식품 소비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육류 소비량은 연간 13.49kg으로 소비액 대비 소비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를 제외한 가공식품 중 스낵류의 소비량 18.71kg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스프레드 및 당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소비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 스프레드 및 당류 소비량 14.92kg로 당류 소비가 비교적 높은 편

1인당 식품 소비량(2017~2021)

(단위 : 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65.32	66.73	68.68	70.31	73.03	3.9
	- 낙농품	26.13	26.75	27.63	28.60	29.57	3.4
	- 과일 및 견과류	25.65	26.11	26.78	27.58	28.46	3.2
	- 육류	10.79	11.42	12.18	12.81	13.49	5.3
	- 유지류	2.22	2.23	2.26	2.31	2.35	1.9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97.71	98.58	100.27	101.57	103.22	1.6
	- 스낵류	16.21	16.71	17.40	18.06	18.71	3.6
	- 스프레드 및 당류	15.44	15.27	15.10	14.95	14.92	△0.2
	- 편의식품	8.73	8.84	9.02	9.17	9.34	1.9
	- 영유아용 식품	6.58	6.70	6.88	7.02	7.19	2.4
	- 소스 및 향신료	6.09	6.14	6.25	6.37	6.50	2.1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농식품 수출액 139억 2,374만 1,000달러(한화 약 18조 8,764억 원)로 전년 대비 10.1%의 증가 동향을 보임
 - 주요 수출국은 중국(15.3%), 미국(14.5%), 필리핀(11.2%)이며, 한국은 수출 비중 7.3% 차지
 - * 對중국 수출액은 21억 2,673만 3,000달러(한화 약 2조 8,832억 원)로 전년 대비 8.1% 증가함.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0억 2,001만 1,000달러(한화 약 2조 7,385억 원)로 전년 대비 18.2% 증가
 - * 對필리핀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8% 증가, 15억 5,312만 9,000달러(한화 약 2조 1,056억 원)로 집계
 - * 對한국 수출액은 10억 1,060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3,701억 원)로 전년 대비 12.7% 증가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1,163,141	11,333,553	11,459,931	12,641,133	13,923,741	100.0	10.1	5.7
1 중국	2,233,916	1,974,934	1,675,149	1,966,914	2,126,733	15.3	8.1	△1.2
2 미국	1,142,600	1,195,360	1,274,696	1,709,544	2,020,011	14.5	18.2	15.3
3 필리핀	407,205	665,644	1,092,029	1,254,729	1,553,129	11.2	23.8	39.7
4 일본	1,256,954	1,207,010	1,317,837	1,292,361	1,258,467	9.0	△2.6	0.0
5 한국	875,730	1,027,608	895,344	896,987	1,010,605	7.3	12.7	3.6
6 캄보디아	246,160	290,258	349,543	405,624	497,327	3.6	22.6	19.2
7 가나	205,587	219,647	216,606	288,038	404,207	2.9	40.3	18.4
8 태국	270,782	262,573	282,401	343,784	372,650	2.7	8.4	8.3
9 말레이시아	347,400	375,994	374,187	415,767	358,082	2.6	△13.9	0.8
10 호주	193,319	206,483	239,436	299,205	356,807	2.6	19.3	16.6

* 출처 : ITC TradeMap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쌀, 견과류 조제품, 조제품 기타 등이 있으며, 참쌀의 수출액이 26억 6,078만 2,000달러로 단일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19.1%)을 차지함
 - 참쌀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7% 증가하였으며, 2017년 이후 연평균 2.2%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 새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1% 감소한 3억 1,069만 3,000달러(한화 약 4,212억 원) 임
 - 뒤이어 견과류 조제품(땅콩, 밤, 코코넛 이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39.1% 증가한 6억 8,852만 7,000달러(한화 약 9,334억 원)로 집계
 - 다음으로 조제품 기타 품목의 수출액이 3억 3,205만 8,000달러(한화 약 4,502억 원)로 전체 수출 품목 중 2.4%를 차지하며, 연평균 20.8%의 성장률로 수출 규모가 증가하는 동향을 보임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1,163,141	11,333,553	11,459,931	12,641,133	13,923,741	100.0	10.1	5.7	
1	참쌀	2,443,631	2,461,880	2,163,697	2,360,612	2,660,782	19.1	12.7	2.2
2	건과류 조제품 (땅콩, 밤, 코코넛 이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	187,542	264,993	424,664	495,077	688,527	4.9	39.1	38.4
3	조제품 기타	155,953	153,942	201,438	252,598	332,058	2.4	31.5	20.8
4	쇄미	148,656	72,357	227,029	384,059	310,693	2.2	△19.1	20.2
5	기타 베이커리 제품	169,934	188,621	197,634	193,019	231,057	1.7	19.7	8.0
6	파스타 (조제하지 않은 것, 속을 채운 것 이외 기타)	124,366	140,244	161,116	210,806	196,980	1.4	△6.6	12.2
7	대두박 *박류	40,419	36,976	30,631	39,617	187,664	1.3	373.7	46.8
8	밀기울, 쌀겨 및 기타 곡류의 잔류물	30,987	43,082	44,759	64,368	182,612	1.3	183.7	55.8
9	조제식료품 (기타)	15,606	85,012	139,239	164,962	168,845	1.2	2.4	81.4
10	채소주스	74,624	71,319	131,410	141,859	168,295	1.2	18.6	22.5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

- 2021년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26.1% 증가한 125억 787만 3,000달러(한화 약 16조 9,569억 원)로 연평균 12.3%의 성장률을 기록함

- 주요 수입국으로는 아르헨티나(13.5%)와 미국(12.3%), 인도네시아(11.6%) 등이 있음

*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되는 농식품은 16억 8,824만 1,000달러(한화 2조 2,887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5.5% 증가

*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식품은 15억 3,432만 9,000달러(한화 약 2조 801억 원)로 전년 대비 43.9%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25.7%로 높은 편임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농식품은 14억 5,282만 8,000달러(한화 약 1조 9,696억 원)로 전년 대비 67.0%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30.4%로 매우 높음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¹⁷⁻²¹)
전체	7,863,727	8,973,370	9,141,219	9,920,168	12,507,873	100.0	26.1	12.3
1 아르헨티나	1,533,459	1,309,036	1,541,539	1,599,964	1,688,241	13.5	5.5	2.4
2 미국	614,867	1,102,293	1,167,191	1,066,260	1,534,329	12.3	43.9	25.7
3 인도네시아	502,050	685,654	637,399	869,756	1,452,828	11.6	67.0	30.4
4 인도	526,281	570,473	381,225	420,964	910,414	7.3	116.3	14.7
5 말레이시아	687,967	544,322	612,022	598,984	843,444	6.7	40.8	5.2
6 태국	389,759	499,346	542,561	1,015,317	760,792	6.1	△25.1	18.2
7 중국	496,495	743,619	716,538	617,067	726,293	5.8	17.7	10.0
8 브라질	152,660	483,296	219,994	410,490	681,414	5.4	66.0	45.4
9 싱가포르	481,690	598,449	660,685	631,597	674,711	5.4	6.8	8.8
10 호주	166,565	165,259	243,829	220,956	391,689	3.1	77.3	23.8
30 한국	150,610	203,527	248,454	263,349	308,160	2.5	17.0	19.6

* 출처 : ITC TradeMap

- 주요 수입 품목 중 대두박(20.2%), 팜유와 그 분획물(8.3%), 조제품 기타(7.5%)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대두박 품목의 수입액은 25억 2,544만 8,000달러(한화 약 3조 4,237억 원)로 전년 대비 31.1% 증가
 - 팜유와 그 분획물 품목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억 4,339만 2,000달러(한화 약 1조 4,145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50.2%, 연평균 16.4%의 성장률 기록
 - 이 외에도 조제품 기타, 자당(고체의 것/향미제 및 착색제 미첨가) 등의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7,863,727	8,973,370	9,141,219	9,920,168	12,507,873	100.0	26.1	12.3
1 대두박 *박류	1,728,209	2,054,226	1,845,242	1,925,724	2,525,448	20.2	31.1	9.9
2 팜유와 그 분획물 (조유, 팜 올레인, 팜 스테아린 외 기타)	568,737	541,439	530,770	694,470	1,043,392	8.3	50.2	16.4
3 조제품 기타	526,542	586,243	798,919	795,842	942,112	7.5	18.4	15.7
4 자당 (고체의 것/항미제 및 착색제 미첨가)	34,258	29,717	25,459	432,628	544,011	4.3	25.7	99.6
5 육이나 설육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펠릿과 수지박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축산물 부산물	242,169	328,544	349,234	379,548	508,265	4.1	33.9	20
6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박류	142,919	234,197	303,727	270,206	418,551	3.3	54.9	30.8
7 유아용 기타 조제품	290,454	230,119	271,836	286,014	328,789	2.6	15.0	3.1
8 탈지분유 외 기타 (농축/설탕 및 감미료 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192,210	172,339	247,289	266,160	316,978	2.5	19.1	13.3
9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방향성 물질 및 그 혼합물 *향료	195,641	213,164	213,523	214,758	239,354	1.9	11.5	5.2
10 기타 사탕수수당 (편광도수 98.5도를 초과하는 것)	44,831	45,359	86,504	205,012	201,163	1.6	△1.9	45.5

*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종자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

한국의 베트남 농식품 수출현황

- 2021년 한국산 농식품 베트남 수출액은 5억 7,551만 2,900달러(한화 약 7,802억 원)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함
 - 농산물 수출 비중이 70.1%로 가장 높고, 축산물(18.3%)과 임산물(11.6%) 순
 - * 농산물 수출액은 4억 366만 1,300달러(한화 약 5,472억 원)로 전년 대비 14.7% 증가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9% 성장세
 - * 축산물의 수출액은 1억 525만 8,300달러(한화 약 1,427억 원)로 전년 대비 4.9% 감소,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72.2% 증가한 6,659만 3,300달러(한화 약 903억 원)로 집계

한국의 베트남 수출 규모(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374,666.7	447,437.6	513,983.2	501,221.8	575,512.9	100.0	14.8	11.3
농산물	298,300.0	308,105.9	358,318.2	351919.3	403,661.3	70.1	14.7	7.9
축산물	36,848.3	77,860.4	111,915.5	110641.3	105,258.3	18.3	△4.9	30.0
임산물	39,518.4	61,471.3	43,749.5	38661.5	66,593.3	11.6	72.2	13.9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주요 수출 품목으로 조제품 기타, 기타 음료, 닭고기(냉동)가 있음
 - 조제품 기타는 전년 대비 31.9% 증가한 4,618만 400달러(한화 약 626억 원), 기타 음료 수출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3,442만 6,600달러(한화 약 467억 원), 닭고기(냉동)는 2,784만 2,800달러(한화 약 377억 원)로 전년 대비 21.9% 감소

한국의 베트남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374,666.7	447,437.6	513,983.2	501,222.1	575,512.9	100	14.8	11.3
1 조제품기타	11,148.5	15,426.1	25,311.2	35,021.7	46,180.4	8.0	31.9	42.7
2 기타 음료	19,078.4	26,736	31,868.1	31,474.7	34,426.6	6.0	9.4	15.9
3 닭고기 (기타/미절단/ 냉동)	2,789.5	15,096.9	29,006.6	35,666.7	27,842.8	4.8	△21.9	77.7
4 조제분유 (유아용/소매용)	7,652.3	8,554.3	14,163.7	18,779.0	19,541.4	3.4	4.1	26.5
5 라면	13,697.2	14,870.9	19,159.9	16,854.3	17,068.2	3.0	1.3	5.7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베트남 농식품 수입 통관 절차는 ①수입신고 → ②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 ③관세납부 → ④물품반출 순서로 진행됨

- 수입신고의 경우 전자 통관 시스템으로 국경 관문 도착 전 또는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기본적으로 베트남 관세총국은 베트남 전역에서 전자 통관 시스템인 '베트남 자동 화물 및 항구 통합 시스템(VANCCS, Vietnam Automated Cargo and Post Consolidated System)'을 시행함

*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 | |
|----------------|--------------------------------------|
| • 세관수입신고서 | • 포장명세서 |
| •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 • 원산지증명서 |
| • 선하증권 | • 식품안전증명서류(Export Certification) |
| • 상업송장 | •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

- 물품 위험도에 따라 Green Channel(저위험), Yellow Channel(중위험), Red Channel(고위험)로 분류하여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진행

* Green Channel : 전자신고만으로 신고 수리(세관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면제)

* Yellow Channel : 세관에 전자/종이 서류 제출

* Red Channel : 세관에 종이 서류 제출, 세관에서 물품검사(전수, 무작위 10% 또는 5% 검사)

* 물품 검사비는 소매가격의 0.1% 또는 30만 동(한화 약 1만 4,700원) 중 높은 가격으로 책정

- 수입관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담배와 주류에는 특별소비세 부과

* 수입관세 : [수입물품가격(CIF)+하역비용] * 관세율

*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 부가가치세율 0~10% 범위, 일반적으로 10%

* 특별소비세 : 담배 CIF 가격 * 75% / 주류 CIF 가격 * 25-50%

* 담배 특별소비세율 기준 65%에서 75%로 인상

- 신고서류 제출일로부터 물품 반출까지 통상 3~5일 소요됨

단계	내용
수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신고 국경 관문 도착 전 또는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제출서류 : 세관수입신고서,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식품안전증명서류(Export Certification),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위험도에 따라 Green Channel(저위험), Yellow Channel(중위험), Red Channel(고위험)로 분류하여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Channel : 전자신고만으로 신고 수리(세관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면제) - Yellow Channel : 세관에 전자/종이 서류 제출 - Red Channel : 세관에 종이 서류 제출, 세관에서 물품검사(전수, 무작위 10% 또는 5% 검사) 물품 검사비는 소매가격의 0.1% 또는 30만 동(한화 약 1만 4,700원) 중 높은 가격으로 책정
세금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관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담배와 주류에는 특별소비세 부과 수입관세 : [수입물품가격(CIF)+하역비용] * 관세율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 부가가치세율 0~10% 범위, 일반적으로 10% 특별소비세 : 담배 CIF 가격 * 75% / 주류 CIF 가격 * 2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 특별소비세율 기존 65%에서 75%로 인상
물품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류 제출일로부터 3~5일 소요

검역제도

- 축산물(낙농제품 포함), 식물(신선농산물)은 위생검역을 거쳐야 통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축산물의 검역 신청을 위해서는 수출국 검역본부(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한 수출계약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함
 - * 수출 전 베트남 수의국에 검역 수속을 등록하고,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검역증명서를 제출하면 베트남 수의국에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권고 및 세계 유행병 상황 검토 후 5일 이내 수입검역허가증 발급
 - * 베트남에 화물 도착 후 국경 수의센터에 검역 신청하고, 검역증명서 발급 후 통관
 - * 검역 등록 시 ①검역등록신청서 ②축산제품을 생산한 시설의 HACCP 인증서(혹은 그와 동등한 것) ③공증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처음 등록 시에 한함) ④기타 관련 문서(요청 시에 한함)를 제출해야 함
 - * 신선농산물은 검역대상에 해당되며, 신선과일(배, 딸기, 사과, 포도) 및 구근류는 수입 전 병충해 위험성 분석을 위한 검역을 받아야 함
 - * 검역등록 시 ①식물검역신청서 ②수출국 관할 식물검역기관에 의한 식물검역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신청인이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수입, 국경 통과 및 내륙운송 식물에 대한 검역증명서가 발급되기 전 원본을 제출해야 함) ③수입식물 검역허가증 원본 또는 사본 ④검역검사등록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되는 가공식품 중 13개 품목은 통관 시 검역이 필요하며, 상품 도착 5일 전까지 검역 등록을 해야 함

- 검역 및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13개 품목은 하기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기 및 어류의 조제품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우유 및 각종 유제품 • 설탕 및 각종 설탕과자 • 카카오, 카카오 성분을 포함한 각종 조제품 • 곡물/곡분/전분/우유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 차, 후추 • 채소 및 과일로 만든 조제품 • 조미료 • 음료, 알코올음료, 식초 • 식품포장재 • 기능성식품, 건강보호식품 • 식품첨가물
---	---

- 베트남 보건부나 공공의료위생원에 하기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검사기관은 서류 심사 후 검사예정방법을 확인하고 검사 일정을 통지함

* 이후 수입 제품의 종류, 규격, 포장, 라벨, 수량, 상태 등의 검사 실시, 샘플 분석 후 기초기준과 베트남 국가기준(TCVN)을 비교 후 결과를 통지함

- 베트남 국가기준(TCVN)은 식품별로 상세히 설정되어 있으며, 베트남 품질측량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

* 검역 등록 시 ①검역검사등록서 ②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③품질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한 검사보고서 ④기타 검사의 간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동물성 식품은 하기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함

* 식품위생 및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베트남 당국이 등록된 제조자에 의해 제조된 것

* 식품위생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출국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취득한 것

* 통관 시 베트남 당국이 검사한 물품일 것

- 알코올, 맥주, 청량음료수, 유제품, 식물성 기름, 밀가루 제품, 전분 제품, 과자·빵·잼 및 이 제품들의 포장재를 포함한 수입식품 및 화물은 식품안전검사 품목에 해당

* 식품안전검사 신청을 위해서는 ①수입식품 검사신청서 ②보건부 또는 보건부 위탁기관이 발행한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적합의 수리서 또는 규정적합 인증서의 공증 첨부 사본 ③화물수입계약서 및 포장명세서의 공증첨부 사본 ④수입자에 의한 증명이 첨부된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 사본을 제출해야 함

1. 수출 가능 품목

협상타결 품목

● 농산물

- 사과, 배, 포도,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 딸기 :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베트남 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토마토 :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베트남 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파프리카 :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베트남 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축산물

- 가금육(닭고기)

협상 없이 수출가능한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밀, 옥수수, 콩

- 과실류 : 사과, 배, 포도, 감(단감)

* 감(단감) :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베트남 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채소류 : 딸기, 토마토, 당근, 배추, 무, 양파, 마늘, 양배추, 파프리카, 들깨잎

- 견과류 : 밤(미탈각)

- 특작류 : 인삼

- 서류 : 감자(씨감자)

- 종자류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대파, 당근, 콜라비, 박, 시금치, 청경채, 양상추

- 버섯류 : 느타리,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팽이

- 버섯종균

* '07.4월 도입된 베트남 측의 PRA규정에 따라 '07년 이전 상업적 수출 실적이 있는 위의 종자류, 채소류, 견과류, 특작류, 서류 품목에 대해서는 PRA 원료 전까지도 수출 가능함

● 축산물

- 유제품, 반려동물 사료, 젤라틴, 오징어간 분말, 어유, 가죽, 계육분, 우모류, 배합사료(포유자돈 대용유), 산업동물 사료(양어), 오리털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과실류 : 감귤, 복숭아, 대추, 망고
 - 채소류 : 멜론(참외), 호박, 오이, 고구마, 애호박
 - 종자류 : 인삼, 벼, 콩, 잔디
 - 묘목류 : 소나무, 주목
 - 화훼류 기타 : 심비디움묘, 딸기묘, 팔레놉시스묘, 백합구근, 칼라구근, 장미묘목, 호접란(팔레놉시스)묘 등
- 축산물
 - 돈육, 열처리 돈육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K-Good Mart(베트남)
업체 유형	한국식품 수입, 소매업체
담당자명	Yui

- 한국 가공식품은 현지인의 입맛에 잘 맞고, 품질이 좋고 기타 수입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좋아 인기가 높으며, 소고기 통조림 제품, 참치 통조림 제품, 소금에 절인 해조류, 떡볶이, 닭갈비 제품 등의 현지 수요가 높음
- 한국산 농산물은 현지산 제품에 비해 종류가 많지 않아 현지 수요가 높지 않지만, 고품질 과일인 샤인머스켓, 사과, 배, 딸기 등은 수입하고 있음
- 한국산 제품 수입 시 큰 장벽은 없는 편이나 베트남에 입국하기 전 농산물 수입 및 검역을 위한 세관 절차가 까다로운 편임. 특히 세관 절차 완료에 필요한 수출국의 식물위생증명서는 수출 국가에서 구비해야 함
- 베트남 내에서는 현재 출처를 알 수 없는 식품이나 다양한 방부제, 인공색소 등 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위생 문제가 가장 큰 식품 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03 비관세 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보건부 관리 범위 내의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가공보조제, 향료, 포장재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에 대한 이력추적 규칙, 이력추적 상황, 그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공포됨. 2019년 10월 16일부로 시행되며, 식품 가공업체에서는 전 가공공정과 후 가공공정에 대한 이력추적 데이터시스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정부 시행령에 따라 제조 일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인 제품부터 수입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입자격 요건을 추가함. 2019년 6월 30일까지 제조된 상품은 '식품공포서류 등록접수증' 또는 '식품안전규정 부합 공포확인증'을 구비한 경우 유통기한 내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며, 해당 규정에 영향을 받는 수입 제품은 식품 수입 전 GMP 인증서류의 추가 신고가 필요함
- 베트남은 2007년 4월부터 생과일, 과채류, 재식용 식물에 대해 PRA(Pest Risk Analysis, 해충위험분석) 규정을 도입함. 품목별로 우리나라 정부가 PRA를 제출한 뒤 시장접근 승인 과정을 거쳐야 수출이 가능함
- 2021년 8월 베트남의 면제품에서 유해물질(에틸렌옥사이드(EO))이 검출되어 리콜 조치 된 바 있음. 이에 베트남은 식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함량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잔류농약 규격기준	http://www.spsvietnam.gov.vn/en/notification-of-viet-nam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http://www.spsvietnam.gov.vn/en/gspsnvnm101
미생물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 (품목별 미생물 기준 규정)	http://www.spsvietnam.gov.vn/en/notification-of-viet-nam

통보문 개정 현황(2022년)

- 개정사항 없음

2. TBT

주요 TBT 내용

- 감미료에 관한 국가 기술규정안(2020년 1월 6일 공고)
 - 본 기술규정안은 10개 감미료(시클라메이트 칼슘, 시클라메이트 나트륨, 사카린 칼슘, 사카린 칼륨, 사카린 나트륨, 수크랄로스, 알리탐, 아스파탐-아세실탐, 폴리글리시톨 시럽, 소르비톨 시럽)의 품질, 위생, 그리고 안전에 대한 기술 요건과 관리항목을 다루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생산, 거래, 수입하는 경우 적용됨
- 베트남 보건부는 다음과 같은 식품안전에 관한 다수의 법률 문서를 수정, 보안 및 폐지하는 고시 초안을 발표함
 - 식품첨가물의 관리 및 사용 규제
 - 식품 내 오염 및 화학물질의 최대한도 규제
 - 식이보충제 생산 및 거래에서 모범 제조 관행(GMP) 안내
 - 기능성 식품 관리 규제
 - 보건부 관리하에 식품 생산 및 무역에 있어 식품안전 검사 활동 규정
 - 보건부장관이 공포하거나 공동으로 공포한 일부 입법문서의 개정 및 폐지
 - 식품 품질, 위생 및 안전의 검사 및 조사를 위한 샘플 채취 지침
 - 식품 내 멜라민 교차 오염의 최대한도규정 공표
 - 보건부 관리하에 식품 생산 및 무역에 관한 식품안전검사 활동 규제
- 건강 보조 식품에 포함된 최대 수준의 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기술규정 초안
 - 본 기술규정안은 건강보조식품, 식이보조식품에 대한 분류 및 정의, 오염물질의 제한, 식품 샘플링 및 검사방법, 건강보조식품을 생산 및 거래하는 조직, 개인의 요구사항 및 책임 관리에 관해 규정함
- 베트남 정부는 수입·유통되는 건강보조식품, 식료품, 주류 품목의 라벨링 규정의 개정본을 공표함(효력발생일 : 2022년 2월 15일)
 - 베트남 내 유통되는 식품 라벨에는 베트남어로 표기되어야 함
 - 수입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필수 정보를 라벨에 기재해야 함
 - 생산국가 지역명을 “~에서 생산”, “~에서 가공”, “~원산지”, “~로부터 생산”, “~의 상품”과 함께 표기되어야 함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식품 라벨링 규정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111-2021-ND-CP-sua-doi-Nghi-dinh-43-2017-ND-CP-497099.aspx
포장 규정	식품 포장에 관한 규정	http://food.fda.moph.go.th/law/TH/pages/package.html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 제품명 • 제품을 책임지는 업체의 명칭 및 주소 • 원산지	• 제품 용량 • 제조일/유통기한 • 성분 및 성분 함량 또는 영양정보	• 허용 사용량 및 주의 정보 • 바코드, 인증 마크, 등록 마크 등 추가 정보 • 보관 방법 및 사용 방법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베트남어로 표기할 것 베트남어로 표기되어 있고, 규정이 정하고 있는 필수 라벨 내용을 담고 있는 부착물도 인정함 베트남 명칭이 없거나 번역이 불가능한 화학물질, 약품, 성분 등 법률이 정하는 명칭은 제외함 글자의 크기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1.2mm 이상(80cm ² 이하인 경우 0.9mm 이상))	
	제품명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할 것 필수 기재사항 중 가장 큰 크기로 표기할 것	
	제품 용량	숫자 혹은 개수로 표기할 것 표기 단위 및 표기 방법은 규정을 참조할 것 제품명에 포함된 색상, 향에 관한 첨가물 또는 추출물과 농축물은 해당 원료의 함유량을 표기할 것	
	원산지	원산지 국가명 또는 지역명으로 표기할 것 약어로 표기하지 말 것	
	유통기한	'일, 월, 년' 순으로 작성할 것 '·', '/', '-'를 이용하여 구분할 것 '제조일'은 'NSX', '만료일'은 'HSD' 또는 'HD'의 약어로 표시할 수 있음	
	성분 및 성분 함량 또는 영양 정보	알코올을 함량이 10% 이상인 음료 제품의 경우 제조일 및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음 성분, 식품첨가물을 표시할 때 중량 대비 성분의 비율 또는 중량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해야 함 홍보를 위해 특정 성분이 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한 용량은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함 식품첨가물의 명칭은 국제 코드 또는 성분명으로 작성해야 함 2개 이상의 식품첨가물을 표기하는 경우 중량 대비 비중 순으로 나열함 식품첨가물 이름 아래에 'Dùng cho thực phẩm(식품을 위해 사용됨)'의 문장을 최소 2mm 이상의 굵은 글씨체로 표기해야 함	
	보관방법	아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추가적인 표기 필요함 -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는 곡물 또는 식품(e.g. 밀, 호밀, 귀리 등과 이를 활용한 전분 등), 갑각류, 달걀과 달걀 제품, 어류와 어류 제품, 땅콩, 대두와 관련 제품, 우유와 유제품(락토스, 셀룰, 우유 포함), 견과류와 관련 제품, 10mg 또는 그 이상의 농도인 아황산염	
	사용방법	보관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과 함께 보관 가능 기간을 표기해야 함 제품 라벨이 10cm 미만인 제품의 경우, 사용방법을 보충 라벨 또는 설명서의 형태로 제품에 첨부해야 함	
	GMO 식품	제품에 'Thực phẩm biến đổi gen(genetically engineered food)' 표기해야 함	

* 자료 :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USDA FAS)

• 샌드위치/랩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매운 소스에 버무려진 다진 해산물 빵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빵 - 어묵 - 베트남 고수 - 새우 사테이 - 칠리소스 - 백설탕 - 피시 소스 및 주스
출시일(발행일)	2022. 06. 01
저장방법	냉장 보관
제조사	GN Foods
알레르겐 주의 성분	해산물, 갑각류

• 요리용 소스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한국식 양념 치킨 소스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설탕 - 엿당 - 양파 - 증점제 - 식물성 오일 - 소금 - 파인애플 추출물 - 치즈 분말 - 건조 계란 노른자(분말) - 향미 증진제 - 후추 - 인공 치즈맛 - 천연 감미료 - 방부제 	
내용량	120g	
출시일(발행일)	2022. 01. 07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Miwon Company	
제조지(원산지)	한국	
영양성분 정보	- 제공량 100g당	
	열량(Kcal)	183.2kcal
	탄수화물	33.4g
	단백질	1.4g
	지방	5.1g

인증

[필수 인증]

• VFA 적합성 인증

- 식품안전시행법 세부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과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도입됨. 수입식품을 포함한 베트남 내 유통되는 식품에 해당하며, 가공식품, 소비재로써의 일반 음료, 건강보조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포장재료,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도구 등에 대해서 적용됨. 베트남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신청하며, 현지 시험(검사) 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사전 준비 시 주의가 필요함. 특히 서류에 대한 과도한 수정 요구나 서류 형식상의 문제 제기가 많이 발생함

인증명	VFA 적합성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VFA)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판정 신청서, 제품 상세정보, 제품 시험결과서, 품질관리계획, 제품 샘플, HACCP / ISO22000 / GMP 혹은 기타 동등한 인증서, 식품안전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설에 대한 인증서 또는 증명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인증서	
비용	품목당 650,000~1,650,000동(시험비 제외)	
소요기간	약 15~3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및 감정평가 결정 → 적합성 평가 →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선언문 발표 →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판정 신고 → 신고 접수 확인 및 공개 통보	


[선택 인증]

• GMP

- 건강기능식품을 베트남에 수출할 시 GMP 인증은 필수로 획득해야 함. HACCP의 경우 선택적으로 획득 가능함

인증명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식품·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발행 및 검사기관	베트남 보건부(MOH/VFA) 지정 검사기관	
강제유무	선택(건강기능식품에 한해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소요기간	약 4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발급	

• HACCP

인증명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발행 및 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베트남 보건부(MOH/VFA)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등	
비용	약 20만 원	
소요기간	4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및 심사 → 판정 → 인증발급	

• HVNCLC

- 1996년부터 시작된 인증으로 사회경제적 효율성, 창조적 혁신, 포장 라벨링, 기준 및 품질 안전성과 같은 4가지 요소에 근거해 인증을 평가함

인증명	hang viet nam chất lượng cao(고품질 인증마크)	
발행 및 검사기관	HCMC FFA(Food and Foodstuff Association), Saigon Times 그룹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소비재 전반(FMGC, 식품, 화장품)	
비용	없음	
소요기간	없음	
절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로 선정	


• VietGap


- 2008년부터 시작된 인증으로 EUEREGAP, GlobalGAP 인증을 계승하여 만들어진 인증임. 베트남 소비자들은 해당 인증으로 유기식품의 여부를 구분하기 때문에 유기식품 시장 진출 시 상기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함


인증명	VietGap(Vietnamese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베트남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도)	
발행 및 검사기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제품 상세정보, 사용 원료 및 위생 관련 정보 등	
비용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3년 미만	
절차	인증 신청 → 신청 내용 검토 → 비용 견적 → 현장 감사 → 승인 여부	


• 기타 식품 안전 인증

- 기타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인증으로는 ISO 22000, IFS, BRC Food Safety, FSSC 22000 등이 있음

인증명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발행 및 검사기관	정부 지정 인증기관 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기관	
강제 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비용	인증기관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인증기관에 따라 상이	
절차	서류 제출 → 인증 계약 → 계획 통보 → 서류 및 현장 심사 → 시정 조치 → 인증 심의 → 인증 → 사후관리심사 → 갱신 심사	

인증명	IFS	
발행 및 검사기관	IFS 지정 인증기관	
강제 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비용	약 24주	
소요기간	약 900 ~ 1,000만 원	
절차	인증 신청 → 사전 심사 → 현장 심사 → 부적합 사항 시정 조치 → 인증 발급	

인증명	BRC Food Safety	
발행 및 검사기관	BRC 지정 인증기관	
강제 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식품안전 및 품질에 관한 매뉴얼 등	
비용	인증기관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약 900 ~ 1,000만 원	
절차	인증 신청 → 사전 심사 → 현장 심사 → 부적합 사항 시정 조치 → 인증 발급	

인증명	FSSC 22000	
발행 및 검사기관	FSSC 지정 인증기관	
강제 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회사정보, 기취득 인증 등	
비용	인증기관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약 500 ~ 600만 원	
절차	서류 제출 → 1차 현장 평가 → 2차 현장 평가 → 인증 → 사후관리 심사	

No.	제목	수출신고필증 영문서류 발급 등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의 어려움	해당국가	베트남
			관련품목	조제김
			유형*	수입통관
1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통관절차는 크게 수출신고 → 물품검사 → 수출신고수리 순서로 진행됨 수출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 명의로 진행 국외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별로, 수출 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게 신고 (구비서류)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해당하는 경우),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기타 필요 서류 물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적재 전에 검사하는 것이 원칙 <p>수출신고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수출신고필증을 교부.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하여 교부 가능 (수출물품 선적이행 관리) 수출자는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물품 적재 필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승인신청 필요 <p>(*) 수출신고 및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음. 수출신고필증 영문서류도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함</p>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어가 수출신고필증을 영문으로 요구함 수출신고필증 발급 등 전반적인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이 어려움 		
	기타	<p>※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p> <p>※ 2022년 베트남 수출입 통관절차(KATI '2022년 베트남 국가 심층조사')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licationView.do?board_seq=95737&menu_dept2=49&menu_dept3=367&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2&srchWord=%EB%B2%A0%ED%8A%B8%EB%82%A8&page=2&reportSearch=</p>		

No.	제목	건강기능식품 등록의 어려움	해당국가	베트남
2			관련품목	건강기능식품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식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HACCP, ISO22000, GMP와 같은 식품안전인증서를 획득해야 하며, HACCP은 베트남 현지 수입자 등록 시 필수서류이므로 사전 획득을 권장함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보건부(MOH)에서 수입 식품 등록을 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 수입을 위해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약청(VFA)에 식품의 적합성을 공표하여 등록해야 함. 공표 방식은 자체 공표 방식과 상품공표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음. 건강보조식품은 상품공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수출업체는 현지 수입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등록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등록 신청서 - 자유판매증서(CFS) : 식품 안전처 발급 - ISO 기준총족 식품안전 서류 - GMP증명서 		
애로·건의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베트남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짐		
기타		※ 보건부 승인 대상 품목 : 건강기능 식품, 36개월 이하 유아 대상 영양식품, 미등록 식품첨가제		

1. 닭가슴살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수출입 준비서류
- 수입통관절차

수출입 준비서류

- 수출자 준비서류
 - 원산지증명서
 - 자유판매허가서
 - HACCP
 - 축산물 검역증명서
- 수입자 준비서류
 - 베트남 보건부 발행 판매허가서
 - 제품 상세 정보
- 수입통관절차
 - 수출자서류 준비(C/O, HACCP, CFS, Health Certificate, etc)
 - 수입통관 신고 전 검역기관에 사전 검역 신청
 - 제품 관련 서류 일체 및 실물 샘플제출
 - 검사결과 수령 후 판매허가서 등록(Web)
 - 수입통관신고(수입통관 시 판매허가서 번호 등록)
 - 품질검사 및 검역
 - 수입통관 완료
 - 라벨 부착 후 판매
- 제품 샘플 필요 : 검역 / 품질검사 / 판매허가서 발행을 위해 필요
- 개별 원료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검역 및 품질검사 시 식품안전을 위해 오염물질, 중금속 등의 검사를 할 수 있음

2. 홍삼음료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수출입 준비서류
- 수입통관절차

수출입 준비서류

- 수출자 준비서류
 - 원산지증명서
 - 제품 상세 정보
- 수입자 준비서류
 - Cong Bo
 - 제품 상세 정보
- 수입통관절차
 - 수출자서류 준비(원산지증명서 및 제품 상세 자료)
 - 수입통관 신고 전 검역기관에 사전 검역 신청
 - 제품 관련 서류 일체 및 실물 샘플제출
 - 검사결과 수령 후 판매허가서 등록(Web)
 - 수입통관신고(수입통관 시 판매허가서 번호 등록)
 - 품질검사 및 검역
 - 수입통관 완료
 - 라벨 부착 후 판매
- 제품 샘플 필요 : 검역 / 품질검사 / 판매허가서 발행을 위해 필요
- 개별 원료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검역 및 품질검사 시 식품안전을 위해 오염물질, 중금속 등의 검사를 할 수 있음
- 식품유형 : 홍삼음료에 따라 일반식품으로 구분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GMP, HACCP, ISO, CFS 추가 구비 필요

신남방

태국 THAILAND

2022년 한눈에 보이는
태국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236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248
03. 비관세 장벽 현황	250
04. 수출 애로사항	260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263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식품시장 규모는 542억 9,200만 달러(한화 약 73조 6,037억 원)로, 전년 대비 7.2% 증가함
 - 신선식품 시장은 259억 3,600만 달러(한화 약 35조 1,614억 원)로 전체 47.8% 차지
 - * 육류 시장이 80억 3,800만 달러(한화 약 10조 8,971억 원)로 신선식품 중 가장 큰 규모(14.8%)를 차지하며, 뒤이어 채소류(12.6%), 낙농품(9.6%) 순
 -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283억 5,600만 달러(한화 약 38조 4,422억 원)로 집계
 - * 가공식품 중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가 가장 큰 비중(18.1%)을 차지하며, 시장 규모는 98억 3,500만 달러(한화 약 13조 3,333억 원)로 집계됨
 - * 뒤이어 스낵류 시장은 72억 2,200만 달러(한화 약 9조 7,909억 원)로 13.3% 비중, 영유아용 식품 시장은 39억 3,100만 달러(한화 약 5조 3,293억 원)로 7.2% 비중 차지

식품시장 규모(2017~2021)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42,906.0	47,278.9	51,640.8	50,648.4	54,292.0	100.0	7.2
신선식품	20,593.0	22,661.9	24,721.8	24,223.4	25,936.0	47.8	7.1
- 육류	6,447.0	7,077.0	7,702.0	7,527.0	8,038.0	14.8	6.8
- 채소류	5,411.0	5,961.0	6,509.0	6,381.0	6,837.0	12.6	7.1
- 낙농품	4,071.0	4,491.0	4,911.0	4,832.0	5,190.0	9.6	7.4
- 과일 및 견과류	3,848.0	4,238.0	4,627.0	4,534.0	4,858.0	8.9	7.1
- 유제품	816.0	894.9	972.8	949.4	1,013.0	1.9	6.7
가공식품	22,313.0	24,617.0	26,919.0	26,425.0	28,356.0	52.2	7.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7,882.0	8,656.0	9,423.0	9,207.0	9,835.0	18.1	6.8
- 스낵류	5,405.0	6,039.0	6,687.0	6,646.0	7,222.0	13.3	8.7
- 영유아용 식품	3,061.0	3,386.0	3,712.0	3,654.0	3,931.0	7.2	7.6
- 편의식품	2,896.0	3,177.0	3,454.0	3,371.0	3,597.0	6.6	6.7
- 스프레드 및 당류	1,716.0	1,874.0	2,028.0	1,970.0	2,088.0	3.8	6.0
- 소스 및 향신료	1,353.0	1,485.0	1,615.0	1,577.0	1,683.0	3.1	6.7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6,9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0.2% 증가함
 - 연령대 별 인구수는 균등한 편으로,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도 전체 인구의 약 27.3% 수준임
 - 여성 인구수는 3,590만 명(약 51.4%), 남성 인구수는 3,400만 명(48.6%)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음

- 2021년 가구수는 626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3,480달러(한화 약 472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0년 대비 8.7% 감소함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920달러(한화 약 125만 원)로 약 26.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약 11.5% 감소

-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2021년 기준 776.08달러(한화 약 105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함
 - 신선식품 소비액은 370.75달러(한화 약 50만 2천 원)로 집계되며, 가공식품 소비액은 405.33달러(한화 약 54만 9천 원)로 신선식품 소비액보다 다소 높음
 - * 신선식품 중 육류 소비액이 114.90달러(한화 약 16만 원)로 가장 높으며, 가공식품 중에는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소비액이 140.60달러(한화 약 19만 원)로 가장 높음

1인당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619.97	680.96	741.63	725.58	776.08	100.0	7.0
신선식품	297.54	326.36	355.04	347.00	370.75	47.8	6.8
- 육류	93.15	101.90	110.60	107.80	114.90	14.8	6.6
- 채소류	78.18	85.85	93.49	91.41	97.74	12.6	6.9
- 낙농품	58.82	64.68	70.53	69.23	74.19	9.6	7.2
- 과일 및 견과류	55.60	61.04	66.45	64.96	69.44	8.9	6.9
- 유지류	11.79	12.89	13.97	13.60	14.48	1.9	6.5
가공식품	322.43	354.60	386.59	378.58	405.33	52.2	7.1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13.90	124.70	135.30	131.90	140.60	18.1	6.6
- 스낵류	78.10	86.98	96.04	95.22	103.20	13.3	8.4
- 영유아용 식품	44.23	48.77	53.32	52.35	56.20	7.2	7.4
- 편의식품	41.85	45.76	49.61	48.30	51.42	6.6	6.5
- 스프레드 및 당류	24.80	27.00	29.13	28.22	29.85	3.8	5.8
- 소스 및 향신료	19.55	21.39	23.19	22.59	24.06	3.1	6.5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 신선식품 중에서는 채소류의 1인당 소비량이 53.5kg으로 가장 큰 편

* 이어서 낙농품 소비량 33.4kg, 과일 및 견과류 소비량 23.3kg, 육류 소비량 19.2kg으로 집계되었으며, 1인당 연간 유지류 소비량은 2.8kg 수준

- 가공식품 소비량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스낵류, 스프레드 및 당류 순

* 1인당 연간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량은 86.1kg으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로 확인됨

* 1인당 스낵류 소비량은 18.5kg, 스프레드 및 당류 소비량은 14.3kg으로 각각 집계되었고, 편의식품 소비량이 12.6kg, 소스 및 향신료 11.4kg, 영유아용 식품 10.1kg 수준으로 나타남

1인당 식품 소비량(2017~2021)

(단위 : 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51.89	52.85	54.03	52.92	53.50	1.1
	- 낙농품	28.49	30.11	31.95	32.28	33.43	3.6
	- 과일 및 견과류	22.36	22.79	23.32	23.04	23.30	1.1
	- 육류	16.22	17.34	18.74	18.61	19.22	3.3
	- 유지류	2.76	2.80	2.85	2.80	2.81	0.5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78.56	81.37	84.56	84.44	86.15	2.0
	- 스낵류	15.98	16.81	17.70	17.92	18.55	3.5
	- 스프레드 및 당류	14.65	14.75	14.90	14.48	14.38	△0.6
	- 편의식품	11.88	12.20	12.58	12.46	12.62	1.3
	- 소스 및 향신료	10.12	10.59	11.13	11.15	11.44	2.5
	- 영유아용 식품	9.24	9.57	9.95	9.94	10.15	2.1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전체 농식품 수출액 321억 9,086만 6,000달러(한화 약 43조 6,412억 원)로 전년 대비 15.4% 증가
 - 수출 상위국가는 중국(28.5%), 일본(9.9%), 미국(9.5%)이며, 뒤이어 말레이시아(4.1%), 미얀마(3.3%), 캄보디아(3.2%) 등 주로 아시아 국가로 수출
 - *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91억 7,065만 8,000달러(한화 약 12조 4,327억 원)로 전년 대비 56.7% 증가
 - *對일본 수출액은 31억 8,671만 4,000달러(한화 약 4조 3,202억 원)로 전년 대비 0.3% 감소, 對미국 수출액은 30억 7,088만 6,000달러(한화 4조 1,632억 원)로 전년 대비 6.5% 증가
 - *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6% 증가한 13억 676만 3,000달러(한화 약 1조 7,716억 원), 미얀마 수출액은 10억 4,904만 7,000달러(한화 약 1조 4,222억 원)로 24.6% 증가
 -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5억 9,993만 8,000달러(한화 약 8,133억 원)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1%의 높은 성장률 기록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26,551,165	29,014,092	28,757,056	27,891,444	32,190,866	100.0	15.4	4.9
1 중국	3,585,737	4,125,126	4,933,600	5,850,833	9,170,658	28.5	56.7	26.5
2 일본	3,226,207	3,289,529	3,312,022	3,197,282	3,186,714	9.9	△0.3	△0.3
3 미국	2,188,757	2,455,848	2,589,883	2,884,632	3,070,886	9.5	6.5	8.8
4 말레이시아	913,509	1,101,583	1,079,516	891,276	1,306,763	4.1	46.6	9.4
5 미얀마	1,029,549	1,119,286	890,830	841,768	1,049,047	3.3	24.6	0.5
6 캄보디아	763,327	808,433	950,197	1,082,642	1,015,840	3.2	△6.2	7.4
7 베트남	1,569,858	1,553,866	1,446,724	1,428,202	1,014,238	3.2	△29.0	△10.3
8 인도네시아	1,277,792	1,853,632	1,540,760	1,035,828	880,302	2.7	△15.0	△8.9
9 홍콩	649,081	755,813	842,785	1,010,078	861,233	2.7	△14.7	7.3
10 인도	312,313	347,252	348,318	306,558	846,807	2.6	176.2	28.3
17 한국	438,570	630,529	744,329	534,771	599,938	1.9	12.2	8.1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두리안(신선)(10.7%), 참쌀(9.3%), 기타 닭고기 육류 조제품(7.2%) 등이 있음

* 두리안(신선)의 수출액은 34억 2,877만 5,000달러(한화 약 4조 6,484억 원)로 전년 대비 66.5% 증가함

* 참쌀의 수출액은 30억 509만 6,000달러(한화 약 4조 740억 원)로 전년 대비 8.6% 감소하였으며, 기타 닭고기 육류 조제품의 수출액은 23억 898만 2,000달러(한화 약 3조 1,303억 원)로 전년 대비 4.4% 감소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26,551,165	29,014,092	28,757,056	27,891,444	32,190,866	100.0	15.4	4.9	
1	두리안 (신선)	648,935	936,009	1,454,776	2,059,501	3,428,775	10.7	66.5	51.6
2	참쌀	4,501,627	5,042,485	3,736,240	3,287,336	3,005,096	9.3	△8.6	△9.6
3	닭고기 (기타 조제저장)	2,247,552	2,411,967	2,588,332	2,414,914	2,308,982	7.2	△4.4	0.7
4	타피오카 전분 (식품용 외 기타)	1,007,619	1,337,062	1,217,239	1,131,937	1,632,288	5.1	44.2	12.8
5	조제품 기타	1,256,778	1,272,827	1,422,731	1,334,337	1,342,323	4.2	0.6	1.7
6	타피오카 (냉동)	1,069,727	889,578	522,548	686,276	1,295,257	4.0	88.7	4.9
7	닭 (기타 설육/냉동)	576,380	654,142	773,356	871,039	879,639	2.7	1.0	11.1
8	자당 (고체의 것/향미제 및 착색제 미첨가)	1,506,509	1,445,744	1,372,851	872,694	876,535	2.7	0.4	△12.7
9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615,714	690,004	736,525	795,635	873,463	2.7	9.8	9.1
10	그 밖의 과실 (기타/신선한 것)	708,782	640,606	787,086	638,075	831,911	2.6	30.4	4.1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1년 전체 농식품 수입액은 151억 6,767만 9,000달러(한화 약 20조 5,628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9% 성장
 -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19.4%), 중국(14.2%), 미국(10.5%)이며, 브라질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29조 4,632만 8,000달러(한화 약 3조 9,943억 원)
 - * 중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1억 6,123만 3,000달러(한화 약 2조 9,300억 원)
 - * 미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5억 8,953만 9,000달러(한화 약 2조 1,549억 원)로 집계
 - 한국산 수입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9.5%로 지속적인 성장세, 2021년 수입액 2억 8,659만 3,000달러(한화 약 3,885억 원)로 집계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21)	증감률	
							전년비('20/'21)	연평균('17-'21)
전체	11,202,458	11,730,489	12,485,662	13,134,476	15,167,679	100.0	15.5	7.9
1 브라질	1,531,946	1,467,585	1,504,283	1,961,238	2,946,328	19.4	50.2	17.8
2 중국	1,610,696	1,801,019	1,988,117	1,957,894	2,161,233	14.2	10.4	7.6
3 미국	1,437,847	1,850,505	1,721,358	1,547,739	1,589,539	10.5	2.7	2.5
4 호주	487,501	499,945	557,443	653,887	976,943	6.4	49.4	19.0
5 인도네시아	582,066	492,424	472,329	589,964	713,828	4.7	21.0	5.2
6 미얀마	132,743	134,265	273,296	384,083	566,027	3.7	47.4	43.7
7 뉴질랜드	443,520	435,324	477,683	493,232	550,542	3.6	11.6	5.6
8 인도	312,804	362,357	411,370	407,974	524,591	3.5	28.6	13.8
9 베트남	412,899	403,447	404,803	523,724	510,833	3.4	△2.5	5.5
10 싱가포르	379,302	402,737	429,564	484,761	499,387	3.3	3.0	7.1
14 한국	199,153	218,699	218,633	250,257	286,593	1.9	14.5	9.5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대두 기타(14.9%), 대두박(9.1%), 조제품 기타(5.7%) 등이 있음

- * 대두 기타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40.3% 증가한 22억 6,314만 2,000달러(한화 약 3조 681억 원)로 집계
- * 대두박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6.4% 증가한 13억 7,887만 1,000달러(한화 약 1조 8,693억 원)로 집계
- * 조제품 기타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8억 6,837만 3,000달러(한화 약 1조 1,773억 원)로 집계
- * 뒤이어 메슬린 외 기타(5.1%), 타피오카(냉동)(2.9%), 옥수수(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이외 기타)(2.7%) 순으로 나타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1,202,458	11,730,489	12,485,662	13,134,476	15,167,679	100.0	15.5	7.9
1 대두 기타 (기타)	1,171,421	1,157,537	1,270,363	1,613,550	2,263,142	14.9	40.3	17.9
2 대두박 *박류	1,170,448	1,257,538	1,250,851	1,011,130	1,378,871	9.1	36.4	4.2
3 조제품 기타	589,769	609,573	679,508	806,469	868,373	5.7	7.7	10.2
4 메슬린 외 기타 (기타) *밀	591,470	707,442	767,215	755,756	774,605	5.1	2.5	7.0
5 타피오카 (냉동)	369,697	273,600	265,664	420,746	432,999	2.9	2.9	4.0
6 옥수수 (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이외 기타)	21,464	32,065	158,177	278,128	412,549	2.7	48.3	109.4
7 사과 (신선)	215,766	266,649	309,678	266,885	282,380	1.9	5.8	7.0
8 조제식료품 (기타)	201,927	190,572	212,516	260,264	265,414	1.7	2.0	7.1
9 전지분유 외 기타 (농축/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238,773	214,251	208,336	249,192	225,995	1.5	△9.3	△1.4
10 탈지분유 외 기타 (농축/설탕 및 감미료 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153,368	136,354	162,469	182,102	212,058	1.4	16.4	8.4

*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태국 농식품 수출현황

- 2021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태국 수출액 전년 대비 17.9% 증가한 2억 6,035만 6,200달러 (한화 약 3,530억 원)로, 연평균 9.1%의 수출 성장세 기록
 - 농산물 수출액이 2억 3,981만 3,700달러(한화 약 3,251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92.1%를 차지하며, 축산물과 임산물 수출액 비중은 각각 4.4%, 3.4% 차지
 - 주요 수출 품목에는 라면(11.4%), 조제품 기타(4.3%), 딸기(3.4%), 기타 소스제품(3.0%), 커피엑스, 엑세스와 농축물(2.2%) 등이 있음
 - * 라면은 2,961만 2,800달러(한화 약 401억 원)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고, 조제품 기타 수출액은 또한 전년 대비 39.9% 증가한 1,122만 5,800달러(한화 약 152억 원)로 집계
 - * 딸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888만 6,600달러(한화 약 120억 원), 기타 소스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한 784만 6,700달러(한화 약 106억 원)로 집계
 - * 커피엑스, 엑세스와 농축물 수출액은 561만 2,100달러(한화 약 64억 원)로 전년 대비 20% 증가

한국의 對태국 수출 규모(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83,609.00	183,514.20	197,033.80	220,838.40	260,356.2	100.0	17.9	9.1
농산물	174,772.30	172,252.40	187,123.20	208,876.30	239,813.7	92.1	14.8	8.2
축산물	4,045.50	5,804.30	4,088.80	4,554.80	11,571.3	4.4	154.0	30.0
임산물	4,791.20	5,457.50	5,821.90	7,407.30	8,971.2	3.4	21.1	17.0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한국의 對태국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83,609.0	183,514.2	197,033.8	220,838.4	260,356.2	100.0	17.9	9.1
1 라면	18,947.9	19,265.3	19,017.1	26,823.3	29,612.8	11.4	10.4	11.8
2 조제품 기타	6,132.6	4,885.1	4,821.0	8,022.8	11,225.8	4.3	39.9	16.3
3 딸기	5,902.8	5,824.2	6,727.2	7,727.4	8,886.6	3.4	15.0	10.8
4 기타소스제품	2,188.4	3,341.1	3,780.0	6,782.2	7,846.7	3.0	15.7	37.6
5 커피엑세스	1,384.9	4,002.6	5,252.6	4,676.7	5,612.1	2.2	20.0	41.9

*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담배, 섬유판 등은 제외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태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기 전 태국 식약청에 식품을 등록해야 함
 - 수입식품은 ▲특별통제식품 ▲표준식품 ▲표준라벨부착식품 ▲일반 식품으로 분류
- 태국 농식품 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식통관과 정식통관으로 구분함
 - (운송비 제외) 상품 가치 및 금액(Invoice value)이 약 100달러(한화 약 11만 3,500원) 이하인 경우 약식통관을 거치며, 품목에 따라 정식통관을 거치는 경우도 있음
- 수입신고는 전자세관 시스템(e-Customs System)을 통해 세관신고서를 전송함
 - 세관신고서 전송 시 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수입허가서(수입 통제품목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물품과 관련한 서류 동봉
- 태국 식약청(FDA)은 2020년 1월부터 신선 과채류 수입 시 잔류농약 성분 분석표를 첨부할 것을 공지하였으며, 2020년 8월 잔류농약 감시조치 가이드라인 개정 공지를 적용함
 - 관련 규정은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No.386, 387」에 추가적으로 신선 과채류 수입 시 생산국가의 담당 정부 관리기관 또는 ISO/IEC 17025 인증받은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COA (잔류농약 성분 분석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 품목에 따라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 품목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샘플 검사 진행 예정임
 - (1) 고위험군 품목(Very High Risk) : 고위험군 리스트에 등재된 해당 수출업체/품목 문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서만 검사하며, 해당 품목 FDA 샘플 채취 후 수입사에 전달해 태국 정부 실험실,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해 샘플검사 진행함. 해당 비용은 수입업체에서 부담함. 샘플검사를 원하지 않을 시,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 지정기관,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문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COA 제출해야 하며 COA 미제출 시 FDA 샘플검사 결과 해당 잔류농약 성분 허용기준 미만일 경우 통관 진행, 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수입금지 및 압수, 폐기처리,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 가능
 - 고위험군 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통관을 위한 COA 제출이나 샘플 검사와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함.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

* 리스트 삭제 요청을 하지 않고 진행한 샘플검사는 통관을 위한 절차로 간주됨

- (2) 위험군 품목(High Risk) : 하단 10개 품목 대상 검사 빈도를 높은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태국 FDA 검사비용 부담)하며, 샘플검사 원치 않을 시 품목별 지정 성분에 한해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 지정기관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COA 제출. COA 미제출 시, FDA 샘플 수집 후 수입물량은 정상 통관되나 정부 지정 실험실을 통한 샘플검사 결과 품목별 잔류농약 성분 초과 검출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하며 수입물품 회수 및 폐기처리,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 가능

* 채소류 : 완두콩, 셀러리, 고수, 차이니즈 케일, 시금치

* 과일류 : 체리, 감귤류(오렌지 등), 딸기, 포도, 용과

- '21.10월 FDA 잔류농약 감시조치 가이드라인 개정 공문 발표 예정으로 위험군 품목 중 포도, 딸기, 감귤은 저위험군으로 변경(완화)되며 석류, 리치는 위험군으로 신규 추가될 예정임

- (3) 저위험군 품목(Low Risk) : 고위험군, 위험군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으로 수입 물량은 정상 통관되나 COA 미제출 시 무작위 샘플 검사 실시(GT-Pesticide Test kit 및 GPO-TM/2 Kit 활용 기본검사 실시), 검사키트 양성 반응 시 정부 실험실에서 정밀검사 실시하며 정밀검사 양성 판정 시 고위험군 품목으로 관리

● 물품 통관 전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전자세관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면 관세 등 납부를 위한 일련번호가 발급됨

-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직접 지불 또는 전자지불 시스템(e-Bill System) 이용

● 전자세관 시스템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화물검사 방식이 결정됨

- 녹색 라인(검사 제외), 적색 라인(화물 개봉), 황색 라인(관세 면제)으로 구분되며, 녹색 라인의 경우 수입신고서 및 관세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반출허가가 이루어짐

- 적색 라인의 경우 화물의 물리적 검사를 마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가능

- 태국 식약청은 식품의 위험도를 4가지로 분류하며 특별통제식품은 사전에 식약청 등록이 필요

특별통제식품 (Specifically-controlled fo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도 가장 높음 • 식약청 등록 후 식품일련번호 발급 필요 • 영유아용 식품, 식이보충제 등 체중조절용 식품, 식품첨가물 등
표준식품 (Standardized fo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통제식품보다는 위험도가 낮지만 식약청 규정 준수 여부 및 품질 표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 • 커피, 소금, 크림, 전해질 음료, 초콜릿, 차 등
표준라벨부착식품 (Foods with standardized labe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통제식품이나 표준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 품질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된 라벨링 부착 • 빵, 현미가루, 소스류, 육류 제품, 향신료, 즉석식품 등
일반식품 (General fo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가 가장 낮으며 식약청 식품 등록 불필요 • 동물성 제품, 식물성 제품, 밀가루 및 밀가루 제품, 설탕 등

* 출처 : 태국 식약청(FDA)

검역제도

- 태국의 식품 검역 과정은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편
 - 태국 식품검역법에 따라 수입 식품 검역 시 금지, 제한, 비규제 품목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원산지국별로도 관리하는 품목이 상이

금지품목 (Prohibited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 및 연구용에 한해서만 수입 허용 • 방콕 국제공항, 방콕 항, 방콕식물검역소 등을 통해서만 수입 가능 • 벼속 식물,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감귤속 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질비료, 식물병해충, 면화속 식물, 수생양치류, 이끼
제한품목 (Restricted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위생증명서 동봉 필요 • 금지 지역산이 아닌 벼속 식물, 생벼풀, 벼삭,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감귤속 식물 및 코코넛 • Saccharum속 식물, 커피속 식물, 고구마, 면화속 식물, 담배, 옥수수, 카카오, 바나나속 식물, 감자, 땅콩, 파인애플, 차나무속 식물, 오일팜, 토마토, 파파야, Aleurites속 식물, 타로, 소맥, 대두, mung bean, 수수 및 난과 식물
비규제 품목 (Unprohibited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 및 제한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이 해당하며 별도의 수입 허가 및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검사를 위해 수입 시 검역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됨 • 병해충 검출 시 검역처리 또는 폐기 처분될 수 있음

* 출처 : 태국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No.2) B.E. 2542)

- 태국으로 수출 가능한 신선농산물로는 7개 품목 60여 개 종이 있음
 -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 7개 품목의 수출 가능 여부 파악 및 요건 충족 후 수출 가능함
 - 태국 측은 '07. 7월부터 병해충위험분석(PRA)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여 사과실, 과채류, 재식용 식물을 수입금지품으로 지정함
 - 이 중 검역 협상을 통해 사과, 배, 딸기, 포도, 감, 복숭아, 감귤, 참외(멜론)가 조건부 수출 가능 품목에 포함되었으며 하기의 요건 충족 시 수출이 가능함

대상품목	사과, 배, 딸기, 포도, 감, 복숭아, 감귤, 참외(멜론)
주요 수출요건 및 식물위생증(PC) 부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서 구비 • 농림축산검역본부 통해 수출과수원(온실) 및 선과장 등록(선과장은 SOP 구비) • 포장상자 외부에 하기 5가지 항목 및 'Export to Thailand'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duct or produce of Korea(한국산 상품 또는 농산물) - Name of exporting company(수출 업체명) - Name of fruit(과실명) - Packinghouse code(PHC)(선과장 등록 번호) - Production unit code(PHU)(참여농가 등록 번호) • 감귤의 경우 재배지검역(오렌지더밍이병 조사) 필요,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SOPP 또는 과산화초산으로 세척, 태국 측 국외 생산지조사 실시 등 • 참외, 멜론의 경우 호박과실파리 모니터링(착과기~수확기) 필요, 태국 측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 품목별 수출검역요령 고시 참고하여 태국 측이 요구하는 부기사항 기재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1. 수출 가능 품목

협상타결 품목

• 농산물

-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 복숭아, 포도, 사과, 배,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태국 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특히, 감귤은 태국 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참외(멜론)는 태국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이 필요함
(수출 시즌 전 검역본부와 사전 협의 필요)

• 축산물

- 멸균 식육가공품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강낭콩

- 과일류 :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밤, 블루베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딸기, 고구마, 수삼, 콜라비, 비트, 마늘쫑, 적양배추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파, 양파,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난초, 국화, 튤립, 백합, 글라디올러스

- 화훼류 기타 : 선인장

• 축산물

- 젤라틴(캡슐), 아이스크림, 어유, 오징어간 분말, 계육분, 반려동물 사료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과일류 : 참다래, 자두, 살구

- 채소류 :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감자

* 태국 측은 '07. 7월부터 병해충위험분석(PRA)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여 생과실, 과채류, 재식용 식물을 수입금지품으로 지정하였음

• 축산물

- 가금육, 열처리 가금육, 열처리 돈육가공품, 쇠고기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K-Good Mart(태국)
업체 유형	현지 수입과일 유통업체
담당자명	Yui

- 태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영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음식도 덩달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현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한국 식품 품목은 김, 김치, 인삼, 딸기, 포도, 즉석 카레, 즉석 간편 짜개, 닭볶음탕, 불닭 소스, 치즈 떡볶이, 모차렐라 치즈볼, 냉동 생선 스낵 등이 있음
- 농산물 중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인 딸기는 현지인은 직접 수입할 수 없고 한국인이 수입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한 희소성 때문에 인기가 많음
- 이외에도 한국산 배가 식감도 좋고 품질이 좋아 인기 있으며, 한국산 감의 경우 수요는 많은 편이나 조건부 수출 가능한 품목에 해당하여 수입 통관 진행 시 어려움이 있는 편임
-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입 시 세관 신고서류 준비가 까다로운 편이며, 증명서 발급 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주의해야 함
- 최근 태국 내에서는 방부제, 오염 및 법이 정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인공색소, 곰팡이 기피제, 표백제 등 금지물질이 식품에서 발견되거나 돼지고기 신선도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음

1. SPS

주요 SPS 내용

- 태국 보건부는 대마초 또는 대마의 일부를 함유한 식품에 대한 보건부 공고 안을 채택하였으며, 2021년 8월 27일 해당 공고를 “칸나비디올 추출물이 함유된 식품”에 대한 보건부 공고 안으로 채택하여 고시함
 -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올의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0.2%를 초과하지 않고 마약물질위원회가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마초 및 대마에서 유래한 칸나비디올 추출물은 마약물질법 부속서 5에 명시된 마약물질 분류에 대한 보건부 고지에서 면제되며, 신식품으로 인정되어 식품 사용이 허용됨
- 태국은 돼지열병이 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6월 5일부터 한국으로부터 산 돼지와 멧돼지,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함
- 태국 보건부는 2020년 5월 8일 신선과채류 수입 시 태국 공증보건부 고시(No. 386, 387호)에 의거하여 잔류농약 성분 분석표(COA)를 제출하도록 고시함. 수출국 담당 정부 관리기관, ISO/IEC 17025 인증 획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잔류농약 성분 분석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샘플 검사를 진행함
- 2020년 태국 보건부는 살충제 성분 중 5가지를 위험 물질로 추가하고, 최대허용량(MRL)을 없애는 대신 Zero-Tolerance 방식(불검출 원칙)의 규제를 적용함. 불검출 원칙 적용 시 위험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 한도보다 작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제품은 수입, 유통, 판매, 구매가 금지됨
- 수정된 천연 광천수 표준(CODEX STAN 108-1981)에서 규정하는 특정 오염물질 최고 농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천연 광천수에 관한 보건부 공고를 수정함. 본 공고에서는 천연 광천수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의하며, 포장된 천연 광천수에 포함된 증급속 및 미생물 허용치가 규정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잔류농약 규격기준	http://food.fda.moph.go.th/law/TH/pages/danger.html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http://food.fda.moph.go.th/law/index.php
미생물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 (품목별 미생물 기준 규정)	http://food.fda.moph.go.th/law/TH/pages/danger.html

통보문 개정 현황(2022년)

• 천연 광천수에 관한 규정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된 천연 광천수 표준(CODEX STAN 108-1981)에서 규정하는 특정 오염물질 최고 농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B.E. 2543(2000)년 보건부 공고(제199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천수”라는 제목으로 B.E. 2522년 식품법에 따라 발행된 MOPH 공고 제199호(BE. 2543)는 폐지되고 본 MOPH 공고안으로 대체된다. 본 공고에서 “천연 광천수”는 수원의 특정한 성질에 기인하는 특정 광물염 및 기타 조성의 함량에 따라 일반 음용수와 명확히 구별되는 물이다. 이 물은 자연적인 지하수 수원에서 얻어야 한다. 천연 광천수는 다음과 같이 5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천연 광천수는 수원 발생지와 가깝게 포장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처리가 허용된다. 패키지로 포장된 천연 광천수에 포함된 물질 또는 미생물의 양은 아래의 값보다 낮아야 한다. 천연 광천수는 병입 과정에서 유해 미생물 교차 오염의 성장을 억제하는 소독제(예, 자외선) 처리가 필요한 경우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에 관한 MOPH 공고에 따라 생산 및 관리되어야 한다. 천연 광천수는 물의 변질 또는 오염 가능성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밀폐된 소매 용기에 포장해야 한다.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링에 관한 MOPH 공고에 따른 일반 라벨링 요구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통보일	2022. 10. 17
시행예정일	관보 공표일로부터 180일 후
개정현황	-
출처	https://epingalert.org/en/Search?domainIds=1&countryIds=C764&freeText=682&viewData=G%2FTBT%2FN%2FTHA%2F682

2. TBT

주요 TBT 내용

- 태국 식품의약품국은 2021년 6월 거짓 정보를 활용한 식품 광고를 방지하고, 사실적이며 일관성 있는 식품 광고를 감독하기 위해 식품 광고 규칙 B.E.2021을 발표함. 해당 규칙은 식품 섭취 경고 문구 표시, 품목별 경고 문구를 정확하게 명시함
- 식품용 용기 및 조리기구에 대한 규제
 - “식품용 플라스틱 기구에 관한 부처 규정안”을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함
 -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한 규정안”을 제정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함
 - “식품용 비닐봉지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고, 전자레인지 재가열용 비닐봉지에 대한 표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함
 - 태국 산업표준연구소가 제안한 TIS 1136-2559(2016)이 식품 포장용 신축성 랩으로 채택됨
 - 식품과 접촉하는 불소 중합체가 코팅된 조리기구에 관한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규정은 2024년 4월 2일부터 시행됨
 - 태국 산업표준원은 일반 식품과 뜨거운 식품용 무색 종이 및 보드 용기에 적용되는 특정 화학물질, 농도를 제안하는 규정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 스테인리스 강이 사용된 모든 식품 조리기구가 안전 요건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장관령 초안을 통보함
- B.E. 2522년 식품법에 따라 발행된 라벨링에 관한 보건부 공고 안
 - 식품라벨에서 “프리미엄”이라는 용어의 사용 조건에 관한 2019년 3월 19일에 통보된 규정안이 철회됨
 - 태국 보건부는 영양소 라벨링에 관한 공고의 개정을 제안함. 개정안은 영양소 라벨링을 부착해야 하는 식품목록, 그 목록의 정의, 라벨 및 영양소 표시의 형식 및 조건, 적용 제외 대상 등을 포함함
 - 태국 보건부는 식품의 건강 강조 표시에 관한 규정을 제안함. 이 제안은 영양소 기능 강조 표시, 기타 기능 강조 표시, 질병 위험 감소 강조 표시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기준과 조건을 제시함
 - 태국 보건부는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에 관한 공고의 개정을 제안함. 개정안은 판매용으로 제조, 수입된 사전포장식품은 라벨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품라벨에 표기되어야 하는 항목과 기준을 규정함
 - 태국에서 제조, 판매, 소유되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위험 및 경고 문구는 소형포장용 제품라벨 요소 목록에 추가됨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태국 식품의약청(FDA)	http://food.fda.moph.go.th/law/TH/pages/foodlabel.html
식품 첨가물 허용치	태국 식품의약청(FDA)	http://food.fda.moph.go.th/law/TH/pages/foodlabel.html
포장 규정	태국 식품의약청(FDA)	http://food.fda.moph.go.th/law/TH/pages/package.html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중량 • 유통기한 • 영양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 인공조미료 • 업체정보 •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트 번호 • 경고문 • 보관방법 • 사용(섭취) 방법 • 알레르기 정보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라벨 내용은 태국어로 표기할 것 태국어로 표기한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것	
	제품명	제품명은 구체적이고 식품의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을 사용할 것	
		식품 기준상 특정 식품을 지칭하는 제품명 또는 이름이 존재하는 경우, 그중 하나를 사용할 것	
		식품의 성격과 상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단어나 문구를 표시할 것(예 : 건조, 농축, 훈제 등)	
	중량	눈에 잘 띄는 곳에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미터법(Metric system)과 같은 국제적 단위로 기재할 것	
		액상 식품의 경우, 부피 기준으로 표기할 것 고체 식품의 경우, 무게로 표시할 것	
	유통기한	반고체 또는 점성 식품의 경우, 무게 또는 부피 중 하나를 선택할 것	
		‘Best before’ 혹은 ‘Best before end’와 함께 유통기한을 표시할 것 날짜와 연도는 숫자로, 월은 문자로 표기할 것	
	영양성분	영양 성분표시는 식품이 가진 특정한 영양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함유량 등을 포함할 것 본래 영양소가 없는 식품의 경우, ‘free’ 또는 ‘low’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원료	제품에 사용된 원료는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표기할 것	
	업체정보	제조업체, 포장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표기할 것	
	원산지	제2국에서 가공되어 식품의 본질이 변경된 경우, 제2국을 라벨 상의 원산지국으로 간주할 것	
	로트 번호	제품 포장 용기에 양각으로 새기거나 영구적으로 표기할 것	
	경고문	경고 문구는 5mm 이상의 어둡고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고, 배경색과 반대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눈에 쉽게 띄게 표시할 것	
	보관조건	실온보관 이외 조건이 필요한 제품은 보관조건을 분명하고 눈에 띄게 표기할 것	
사용(섭취) 방법	식품의 적절한 활용 또는 섭취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것		
식품 알레르기 정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성분정보를 표기할 것		

* 자료 : 태국 식품의약청(FDA)

• 샌드위치/랩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닭가슴살 버섯 크림소스 치즈 번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빵가루 - 마가린 - 버터 - 버섯크림소스 - 닭고기 - 모차렐라 치즈 - 파르메산 치즈 - 향미 증진제 - 식품 첨가물 - 방부제 	
내용량	95g	
출시일(발행일)	2022. 08. 01	
저장방법	냉장 보관	
제조사	Alfredo Enterprise	
알레르겐 주의 성분	우유, 달걀, 밀, 대두, 글루텐 함유 시리얼, 이산화황/아황산염	
영양성분 정보	- 제공량 95g당	
	열량(Kcal)	260kcal
	지방	11g
	포화 지방산	0g
	콜레스테롤	35g
	단백질	12g
	탄수화물	18g
	당류	6g
	나트륨	410mg

• 발효음료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오리지널 콤부차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콤부차(우롱차) - 설탕 및 기타 탄수화물 감미료 - 과당 - 시트르산 - 수크랄로스(감미료) -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내용량	355mL	
출시일(발행일)	2022. 02. 07	
저장방법	냉장 보관	
제조사	Betagen	
영양성분 정보	- 제공량 355ml당	
	열량(Kcal)	80kcal
	지방	0g
	단백질	0g
	탄수화물	19g
	당류	19g
	나트륨	55mg

인증

[필수 인증]

• 태국 식약청(FDA) 허가

- 태국 식약청(FDA) 허가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수출 시 필수로 취득하여야 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각각 발급받아야 하며, 대규모 제조업체는 제조허가서, 소규모 제조업체는 제조번호를 부여받음

인증명	태국 식약청(FDA) 허가	
발행 및 검사기관	태국 식약청(FDA)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제품등록서 2부, 수입허가증 또는 제조허가증 사본, GMP 증명서 및 수입품 사본	
비용	200~5,000 바트	
소요기간	3일(특별통제식품은 35~9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허가 승인여부 결정 → 식품일련번호 발급 → 승인된 서류 회신	

• GMP

- 태국 공중보건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생산 안전에 관한 인증인 GMP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수입 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GMP에 상응하는 HACCP, ISO 등의 인증을 받아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인증명	GMP	
발행 및 검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식품 안전관리 계획서, 인증 신청서 등	
비용	5만 원	
소요기간	14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심사 → 현장 확인 및 평가 → 판정 → 인증발급	


• HACCP

- HACCP 인증은 농축산물 및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제도임.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GMP, HACCP, ISO 22000 인증 중 1개 이상 취득이 필수임

인증명	HACCP	
발행 및 검사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계획서 등	
비용	20만 원	
소요기간	약 4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발급	

• ISO 22000

- ISO 22000 인증은 식품의 가공업체, 유통업체 모두에 적용되는 최종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표준임. 해당 표준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인증명	ISO 22000	
발행 및 검사기관	ISO 등록 시험 기관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심사 신청서	
비용	투입 심사관의 노동량 기준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심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	
절차	서류제출 → 인증계약 → 계획통보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시정조치 → 인증심의 → 인증취득 → 사후관리심사 → 갱신심사	

[선택 인증]

• CICOT(태국 할랄 인증)

- CICOT 인증은 태국 이슬람 중앙회에서 발급하는 할랄 인증임. 2015년 기준 태국에서 생산하는 전체 식품의 25%가 할랄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음. 본 인증은 취득 후 1년간 유효하며 만료 60일 전 갱신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음

인증명	CICOT(태국 할랄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CICOT(The Central Islamic Council of Thailand)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할랄 매뉴얼, 원재료 목록, 제품 라벨 샘플 등	
비용	약 11,500 ~ 21,500 바트	
소요기간	약 60일	
절차	서류제출 →(신규사업자) 할랄 교육 → 서류 승인 → 현장실사 및 원재료 검사 → 적합 판정 → 인증발급	

04 수출 애로사항

No.	제목	유기농 인증 취득의 어려움	해당국가	태국
1			관련품목	유기농 가공식품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농산물 및 식품표준국은 유기농 제품을 태국으로 수출 시, 제품라벨에 유기농 원료 비중을 표기하도록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및 식품표준국 규정 1편(생산, 가공, 라벨링, 마케팅)에 따르면 최종 생산물 중량의 최소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을 경우 제품라벨에 '유기농'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함 - 제품원료의 70~95%가 유기농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본 제품은 유기농 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문구 삽입이 가능하고, 유기농 제품의 경우 제품라벨에 유기농 원료의 비중을 표기해야 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으로 식품 수출 시 유기농 인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데, 유기농 허가가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오래 소요되어 수출에 제한을 겪고 있음 		
기타		<p>※ 태국 유기농 제품 취급 관련 사이트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DB : http://organic.dit.go.th/default.aspx - 태국 유기농 농업인증 : https://actorganic-cert.or.th/ - 농산물 및 식품표준국 : https://www.acfs.go.th/#/ - 태국 유기농 농업협회 : http://www.thaiorganictrade.com/ 		

No.	제목	태국 신식품으로 분류되는 한국 식물성 제품 수출 절차의 복잡성	해당국가	태국
			관련품목	기능성식품
2			유형*	SPS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은 신식품(Novel Food)을 ‘과학적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근거하여 15년 미만 동안 인간의 소비에 유의적으로 사용된 식품 또는 식품 성분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질; 또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제조공정을 적용한 식품 또는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 신식품 안전성 평가 등록 : 이 단계에서 신청자는 FDA에서 승인한 4개의 안전성 평가 기관 중 하나에 안전성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예상 기간은 조직에 따라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 보건부 식품 품질 안전국 - 영업일 기준 95일 - 식품연구원, 산업부 - 93 영업일 - 태국 위험 평가 센터(TRAC), Mahidol University - 영업일 기준 90일 - 국립 유전 공학 및 생명 공학 센터(BIOTEC) - 7-12개월 <p>* 유전자 변형 유기체(GMO)에서 파생된 성분을 포함하는 새로운 식품은 BIOTEC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p>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유통되는 식물성 제품들은 태국에서 대개 Thai Novel Food로 분류되며, 해당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함. 특히 해당 절차 내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에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됨 		
기타		-		

No.	제목	태국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수출 시 적용되는 원료 사용 기준의 제한	해당국가	태국
3			관련품목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보건복지부 고시 《식품 내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 사용》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 사용 식품은 태국 식품의약품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고시안에 명시된 미생물을 사용해야 함 • 또한,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의 함량은 유통기한까지 106 CFU/g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해당 고시에서 정한 것 이외의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을 사용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신청해야 함 <p>※ 태국 식품의약품청에서 허가를 받은 식품 내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 23종</p> <table border="1"> <tr><td>Bacillus coagulans</td><td>Lactobacillus crispatus</td></tr> <tr><td>Bifidobacterium adolescentis</td><td>Lactobacillus gasseri</td></tr> <tr><td>Bifidobacterium animalis</td><td>Lactobacillus johnsonii</td></tr> <tr><td>Bifidobacterium bifidum</td><td>Lactobacillus paracasei</td></tr> <tr><td>Bifidobacterium breve</td><td>Lactobacillus reuteri</td></tr> <tr><td>Bifidobacterium infantis</td><td>Lactobacillus rhamnosus</td></tr> <tr><td>Bifidobacterium lactis</td><td>Lactobacillus salivarius</td></tr> <tr><td>Bifidobacterium longum</td><td>Lactobacillus zeae</td></tr> <tr><td>Bifidobacterium pseudolongum</td><td>Propionibacterium arabinosum</td></tr> <tr><td>Enterococcus durans</td><td>Staphylococcus sciuri</td></tr> <tr><td>Enterococcus faecium</td><td>Saccharomyces cerevisiae subsp. Boulardii</td></tr> <tr><td>Lactobacillus acidophilus</td><td></td></tr> </table>	Bacillus coagulans	Lactobacillus crispatus	Bifidobacterium adolescentis	Lactobacillus gasseri	Bifidobacterium animalis	Lactobacillus johnsonii	Bifidobacterium bifidum	Lactobacillus paracasei	Bifidobacterium breve	Lactobacillus reuteri	Bifidobacterium infantis	Lactobacillus rhamnosus	Bifidobacterium lactis	Lactobacillus salivarius	Bifidobacterium longum	Lactobacillus zeae	Bifidobacterium pseudolongum	Propionibacterium arabinosum	Enterococcus durans	Staphylococcus sciuri	Enterococcus faecium	Saccharomyces cerevisiae subsp. Boulardii	Lactobacillus acidophilus	
	Bacillus coagulans	Lactobacillus crispatus																							
Bifidobacterium adolescentis	Lactobacillus gasseri																								
Bifidobacterium animalis	Lactobacillus johnsonii																								
Bifidobacterium bifidum	Lactobacillus paracasei																								
Bifidobacterium breve	Lactobacillus reuteri																								
Bifidobacterium infantis	Lactobacillus rhamnosus																								
Bifidobacterium lactis	Lactobacillus salivarius																								
Bifidobacterium longum	Lactobacillus zeae																								
Bifidobacterium pseudolongum	Propionibacterium arabinosum																								
Enterococcus durans	Staphylococcus sciuri																								
Enterococcus faecium	Saccharomyces cerevisiae subsp. Boulardii																								
Lactobacillus acidophilus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와 한국 식약처가 고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원료가 다름. 따라서 태국으로 제품 수출 시, 고시하는 균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 제품에 사용된 균주는 안전성 평가를 받거나 태국에서 고시하는 균주만 사용하여 태국 수출용 제품을 별도 생산해야 함 																								
기타	-																								

1. 신선과일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한국 복숭아의 태국 수입통관 시 잔류농약 허용 기준
- 복숭아의 태국 관세율 및 수입량

검토 답변

- 한국산 사과실의 태국 수입검역 개요
 - 한-태 양국은 2018년 12월 14일 자로 배, 사과 등 국산과일 8종에 대한 수출검역요건에 대한 협상 타결에 따른 농림축산 검역본부 고시(한국산 배 등 사과실 태국수출 검역 요령)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 태국은 2006년 병해충 위험분석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한국산 수입 사과실 배, 사과, 복숭아, 포도, 감(단감), 참외(멜론), 감귤, 딸기 8종이 해당됨
 - 한국산 사과실을 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에 수출과수원, 선과장을 사전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태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 방제 후선과 작업과 수출검역을 진행함
 - 감귤은 오픈지더태이병을 막기 위한 표면 세척이 필요하고 참외과수원은 호박과실파리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첫 3년 이내에 태국 검역관이 수출 생산지검역 절차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침. 복숭아의 경우 수출 생산지 검역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태국 수입 검역 시 잔류농약 검사 허용 기준
 -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387호 Food containing Pesticide Residues(Pesticide Residues in Food) -별첨 영문 및 한글 번역문 참조.
 - 태국 공중보건부에서 지정한 오염 잔류물 목록은 Annex 1(총 82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은 Annex 2에서 식품의 종류별로 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숭아는 특별히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에서 수입되는 사과, 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최대 잔류 허용 기준(Maximum Residue Limit : MRL)은 밀리그램 단위로 표시하며 검출된 농약이 있는 과실의 성분검사에서 검출되는 오염 잔류물의 허용 기준을 식품의 종류별로 관리함

- **복숭아의 태국 관세율 및 수입량**

- 복숭아의 태국 수입 시 HS CODE는 0810.70.00으로 아세안 회원국 간의 품목 분류코드인 8 자리 숫자로 구성된 HS CODE를 사용함

- 복숭아의 태국 수입 시 기본 관세율은 종가세 - CIF Value 기준 40% 또는 종량세 - Kg당 33.5 바트 중 높은 값을 부과하나 태국은 한국과 한-아세안 FTA 및 RCEP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복숭아는 양허품목에 포함되어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통관 시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수입 시 부가세율은 7%이며 관세면제와 상관없이 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함

- 태국 복숭아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2020년 수입액 152.5만 불 중 한국에서 수입된 것은 15만 불이었으며 2021년 수입액 151.1만 불 중 한국에서 수입된 것은 2.1만 불로 급감하였음

- 복숭아의 소매가는 300 ~ 500 바트(2개입 플라스틱 팩 포장)에 형성되어 있으며 미국산 349바트, 일본산 390바트에 비해 한국산 499바트로 한국산이 소매가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음

2. 건강기능식품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태국 라벨링 규정

검토 결과

- 법/규정 관련 근거
 - 태국 공중보건부/태국 FDA “식품보조제(No.293/No.309)”
 - 태국 공중보건부/태국 FDA “영양성분라벨(No.182)”
 - 태국 공중보건부/태국 FDA “GDA영양표시(No. 373)”
- 식품의 분류
 -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은 태국 식품법의 식품분류상 표준식품/식품보조제로 분류됨
 - “식품보조제란 일반적으로 하는 식사 외에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식품성분이나 다른 성분이 구성성분이 되어 일반적인 식품의 형태(conventional foods)가 아닌 정제, 캡슐, 분말, 부스리기조각, 액체 또는 기타 형태로 건강에 유익하길 바라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을 의미한다.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No.293 2항)”
 - “식품보조제를 표준식품으로 정하며 라벨 사용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전 라벨 허가받을 시 다음과 같이 행한다.(고시 No.293 4항)”
 -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자문 검토 제품은 태국에 수출하기 이전에 태국 FDA에 식품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착 라벨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식품보조제 라벨 표기
 -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한 식품보조제 라벨 표기는 태국어로 된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다른 언어와 함께 기입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시 No.293 10항)
 - (1) 식품 이름 “식품보조제”라는 단어를 식품 이름의 일부나 식품이름과 함께 첨부해야 함
 - (2) 식품일련번호
 - (3) 아래와 같은 상황에 따른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이름 및 소재지
 - (3.1)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경우 판매를 위한 제조자 혹은 포장자의 이름 및 소재지를 표기해야 함. 이때, 제조자 혹은 포장자의 본사의 이름과 소재지를 대신하여 표기할 수 있음
 - (3.2) 수입하는 식품일 경우, 수입업자의 이름 및 소재지와 생산국가를 표기함

- (4) 아래와 같은 상황에 따른 포장된 식품보조제의 양.
- (4.1) 정제나 캡슐의 형태인 식품보조제는 동봉한 수량을 표기함
 - (4.2) 액체 형태인 식품보조제는 순량을 표기함
 - (4.3) 딱딱하거나 그 외의 형태인 식품보조제는 순중량을 표기함
- (5) 식품보조제의 주 성분 및 효능 유익이 있다는 성분의 이름 및 수량을 식품보조제의 라벨에 표기함
- (6) 방부제를 사용했을 경우 '방부제'라고 표기함
- (7) 해당사항에 따라 사용 시 "천연색 첨가" 또는 "합성색소 첨가"라고 표기함
- (8) 해당사항에 따라 사용 시 "천연으로 향을 냄", "천연식 향 첨가", "합성 향 첨가" 천연으로 맛을 냄", 혹은 "천연식 맛을 첨가"로 표기함
- (9) "정기적으로 알맞은 비율로 모든 5가지 군의 다양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분명한 내용과 테두리 바탕색과 반대된 색의 굵은 글씨체로 "예방하거나 병을 고치는 효능은 없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10) 사용법
- (11) 보관 방법(해당하는 경우)
- (12) 9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는 식품보조제의 섭취기한의 일월년 혹은 식품의 품질 기준이 아직 좋은 일/월/년 과 90일이 넘게 보관 가능한 식품보조제의 제조 월년과 섭취기한의 월/년 혹은 식품의 품질기준이 아직 좋은 월/년을 "제조" 혹은 유통기한 혹은 "이전에 섭취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로 해당사항에 따라 첨부하고 일/월/년 순으로 표기한다.(12)에 따른 문구 표기는 용기 밑부분에 하고 위의 내용이 기입된 위치의 라벨에 문구가 있어야 한다.(12)에 따른 문구 표기는 용기 밑부분에 하고 위의 내용이 기입된 위치의 라벨에 문구가 있어야 함
- (13) 식품보조제 섭취에 대한 경고사항은 건강상의 정보(Health claim)와 식품 섭취의 경고사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름

자문 결론

- 태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위생품질인증(GMP, HACCAP, ISO22000 중 최소 1개)이 필수이나 검토 제품 중 일부는 제조사가 인증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태국 식품등록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조사의 수출요건, 수입업체의 해당 식품의 수입허가증 확보 등의 수출/수입 가능 요건을 확보한 이후 태국 FDA 식품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신남방

인도네시아 INDONESIA

2022년 한눈에 보이는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270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283
03. 비관세 장벽 현황	285
04. 수출 애로사항	294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296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식품시장 규모는 2,320억 9,800만 달러(한화 약 314조 6,553억 원)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모든 식품 품목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1,037억 7,700만 달러(한화 약 140조 6,905억 원)로 집계됨
 - * 육류 시장이 29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39조 8,305억 원)로 신선식품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크며(12.7%), 채소류(12.2%), 낙농품(9.3%) 순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283억 2,100만 달러(한화 약 173조 9,648억 원)로 집계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시장 규모가 448억 9,000만 달러(한화 약 60조 8,574억 원)로 가장 규모가 크며, 스낵류 시장이 327억 7,000만 달러(한화 약 44조 4,263억 원), 영유아용 식품 시장이 173억 7,000만 달러(한화 약 23조 5,485억 원) 순으로 집계됨

식품시장 규모(2017~2021)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184,389.0	187,509.0	203,755.0	209,669.0	232,098.0	100.0	10.7
신선식품	82,256.0	83,699.0	91,002.0	93,705.0	103,777.0	44.7	10.7
- 육류	23,090.0	23,550.0	25,660.0	26,480.0	29,380.0	12.7	11.0
- 채소류	22,560.0	22,950.0	24,940.0	25,670.0	28,430.0	12.2	10.8
- 낙농품	17,130.0	17,410.0	18,910.0	19,450.0	21,520.0	9.3	10.6
- 과일 및 견과류	16,060.0	16,330.0	17,750.0	18,270.0	20,220.0	8.7	10.7
- 유지류	3,416.0	3,459.0	3,742.0	3,835.0	4,227.0	1.8	10.2
가공식품	102,133.0	103,810.0	112,753.0	115,964.0	128,321.0	55.3	10.7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36,010.0	36,530.0	39,600.0	40,650.0	44,890.0	19.3	10.4
- 스낵류	23,970.0	25,020.0	27,800.0	29,150.0	32,770.0	14.1	12.4
- 영유아용 식품	13,350.0	13,690.0	15,000.0	15,560.0	17,370.0	7.5	11.6
- 편의식품	12,250.0	12,400.0	13,410.0	13,730.0	15,130.0	6.5	10.2
- 스프레드 및 당류	10,820.0	10,360.0	10,650.0	10,420.0	11,040.0	4.8	6.0
- 소스 및 향신료	5,733.0	5,810.0	6,293.0	6,454.0	7,121.0	3.1	10.3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2억 7,380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함
 - 연령대 별 인구수는 균등한 편으로,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도 전체 인구의 약 24.3% 수준임
 - 여성 인구수는 1억 3,590만 명(약 49.6%), 남성 인구수는 1억 3,790만 명(50.4%)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음

- 2021년 가구수는 5,73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2,530달러(한화 약 342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0년 대비 9.6% 증가함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950달러(한화 약 129만 원)로 약 37.8%의 비중이며, 전년 대비 6.4% 증가함

-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839.84달러(한화 약 113만 8,571원)로 집계됨
 -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375.55달러(한화 약 50만 9,133원) 수준으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44.7% 차지하며, 전년 대비 9.6% 증가함
 - 가공식품 소비액은 총 464.29달러(한화 약 62만 9,438원)이며,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가 162.40달러(한화 약 22만 166원)로 가장 큰 비중(19.3%)을 차지함

1인당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696.80	700.52	752.83	766.60	839.84	100.0	9.6
신선식품	310.86	312.70	336.27	342.62	375.55	44.7	9.6
- 육류	87.26	87.99	94.81	96.83	106.30	12.7	9.8
- 채소류	85.25	85.72	92.16	93.86	102.90	12.3	9.6
- 낙농품 및 난류	64.74	65.05	69.88	71.12	77.88	9.3	9.5
- 과일 및 견과류	60.70	61.02	65.59	66.79	73.17	8.7	9.6
- 유지류	12.91	12.92	13.83	14.02	15.30	1.8	9.1
가공식품	385.94	387.82	416.56	423.98	464.29	55.3	9.5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36.10	136.50	146.30	148.60	162.40	19.3	9.3
- 스낵류	90.57	93.47	102.70	106.60	118.60	14.1	11.3
- 영유아용 식품	50.43	51.13	55.42	56.90	62.85	7.5	10.5
- 편의식품	46.30	46.32	49.55	50.20	54.74	6.5	9.0
- 스프레드 및 당류	40.88	38.69	39.34	38.08	39.93	4.8	4.9
- 소스 및 향신료	21.66	21.71	23.25	23.60	25.77	3.1	9.2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펠푸드 시장 규모 제외)

- 신선식품 주요 품목 중 1인당 소비량이 가장 큰 품목은 채소류로 총 73.89kg이며, 전년 대비 4.0%의 증가율을 보임

* 낙농품 소비량은 39.65kg, 과일 및 견과류 31.17kg, 육류 19.24kg, 유지류 2.76kg 수준으로 소비됨

- 가공식품 중에서는 2021년 1인당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량이 126.12kg으로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뒤이어 스프레드 및 당류 21.97kg, 스낵류 16.99kg, 편의식품 12.90kg 순으로 집계되며, 스프레드 및 당류 외 가공식품 품목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1인당 식품 소비량(2017~2021)

(단위 : 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65.80	67.51	69.52	71.02	73.89	4.0
	- 낙농품	38.38	38.12	38.27	38.73	39.65	2.4
	- 과일 및 견과류	28.06	28.59	29.26	29.97	31.17	4.0
	- 육류	16.24	16.93	17.73	18.31	19.24	5.1
	- 유지류	2.61	2.63	2.65	2.68	2.76	3.0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25.75	124.18	123.28	123.74	126.12	1.9
	- 스프레드 및 당류	25.80	24.51	23.47	22.46	21.97	△2.2
	- 스낵류	14.87	15.29	15.73	16.28	16.99	4.4
	- 편의식품	12.96	12.78	12.66	12.69	12.90	1.7
	- 영유아용 식품	9.52	9.50	9.53	9.66	9.95	3.0
	- 소스 및 향신료	8.37	8.26	8.20	8.21	8.35	1.7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농식품 수출액 458억 7,478만 6,000달러(한화 약 62조 1,924억 원)로 전년 대비 42.9% 증가한 규모로 집계
 - 말레이시아(18.6%), 동티모르(8.4%), 싱가포르(6.8%) 등으로 주로 수출되며, 대부분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음
 - *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액은 85억 5,050만 6,000달러(한화 약 11조 5,919억 원)로 전년 대비 70.4% 증가
 - * 동티모르로는 38억 4,699만 9,000달러(한화 약 5조 2,154억 원)를 수출하며 전년 대비 10.4% 증가
 - * 싱가포르로 수출액은 31억 2,908만 4,000달러(한화 약 4조 2,421억 원)로 전년 대비 65.9% 증가
 -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3억 3,993만 5,000달러(한화 약 4,608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6.4% 증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33,119,400	30,824,634	28,004,247	32,101,169	45,874,786	100.0	42.9	8.5	
1	말레이시아	4,021,316	4,073,903	4,610,275	5,018,426	8,550,506	18.6	70.4	20.8
2	동티모르	5,295,555	4,001,955	2,705,725	3,485,220	3,846,999	8.4	10.4	△7.7
3	싱가포르	2,223,213	1,968,434	1,756,719	1,885,909	3,129,084	6.8	65.9	8.9
4	아랍에미리트	1,668,478	1,527,668	1,223,545	1,737,987	2,870,629	6.3	65.2	14.5
5	미국	1,742,264	1,877,450	1,748,938	1,927,373	2,726,381	5.9	41.5	11.8
6	독일	1,102,649	1,249,630	1,299,675	1,251,294	1,778,944	3.9	42.2	12.7
7	브루나이	763,982	874,476	709,809	989,991	1,501,120	3.3	51.6	18.4
8	네덜란드	900,382	905,874	760,486	768,367	1,471,001	3.2	91.4	13.1
9	방글라데시	1,660,931	1,517,359	1,147,053	1,138,296	1,390,925	3.0	22.2	△4.3
10	캄보디아	976,193	699,871	696,931	790,681	1,303,818	2.8	64.9	7.5
26	한국	172,701	227,512	198,210	319,599	339,935	0.7	6.4	18.4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 품목은 유지류 및 가공식품 위주인 것으로 나타남

- * 팜유 및 분획물 수출액은 239억 7,154만 8,000달러(한화 약 32조 4,982억 원)로 전년 대비 89.9% 증가하였으며 전체 52.3% 비중 차지
- * 팜유(조유) 수출액은 26억 9,357만 9,000달러(한화 약 3조 6,517억 원)로 전년 대비 43.2% 감소
- * 뒤이어 아자유와 그 분획물 기타 수출액 18억 5,088만 9,000달러(한화 약 2조 5,093억 원), 동식물성 유지 및 분획물 조제품이 15억 2,185만 달러(한화 약 2조 632억 원) 수출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33,119,400	30,824,634	28,004,247	32,101,169	45,874,786	100.0	42.9	8.5	
1	팜유와 그 분획물 (조유, 팜 올레인, 팜 스테아린 외 기타)	13,814,800	12,951,023	11,006,386	12,621,245	23,971,548	52.3	89.9	14.8
2	팜유 (조유)	4,698,225	3,576,825	3,626,674	4,743,567	2,693,579	5.9	△43.2	△13.0
3	아자유와 그 분획물 기타	1,831,770	1,368,561	863,214	1,087,297	1,850,889	4.0	70.2	0.3
4	동·식물성유지 및 분획물 조제품 (기타/마가린, 이미테이션 라드, 쇼트닝 제외) *기타 유지가공품	827,740	777,007	660,423	770,420	1,521,850	3.3	97.5	16.4
5	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 *박류	442,879	607,117	562,701	664,603	1,153,687	2.5	73.6	27.0
6	커피 (볶지 않은 것/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1,175,544	808,735	872,355	809,164	842,521	1.8	4.1	△8.0
7	기타 식물성유지	315,668	283,343	250,871	288,508	838,065	1.8	190.5	27.6
8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681,062	824,048	724,605	790,990	668,824	1.5	△15.4	△0.5
9	조제품 기타	381,913	421,650	390,088	489,466	602,094	1.3	23.0	12.1
10	아자유, 분획물 (조유, 정제유 이외 기타)	456,991	368,117	255,131	309,409	538,944	1.2	74.2	4.2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1년 농식품 수입액은 231억 1,108만 8,000달러(한화 약 31조 3,317억 원)로 전년 대비 25.9% 증가함
 - 호주산이 전체 1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중국산(13.0%), 미국산(13.0%)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 * 호주산 수입액은 34억 2,201만 8,000달러(한화 약 4조 6,392억 원)로 전년 대비 94.6%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1%의 성장세 기록
 - * 중국산 수입액은 30억 1,512만 4,000달러(한화 약 4조 876억 원)로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기록
 - * 미국산 수입액은 30억 450만 1,000달러(한화 약 4조 732억 원)로 연평균 3.1%의 성장률을 기록
 - 한국산 수입액은 1억 7,564만 2,000달러(한화 약 2,381억 원)로 전체 0.8% 차지하며, 2017년 이후 연평균 6.9% 증가율을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7,676,168	19,722,480	18,505,011	18,362,235	23,111,088	100.0	25.9	6.9
1 호주	2,701,898	2,280,693	1,809,893	1,758,784	3,422,018	14.8	94.6	6.1
2 중국	2,475,008	2,707,481	2,713,166	2,735,665	3,015,124	13.0	10.2	5.1
3 미국	2,658,598	2,690,780	2,673,828	2,689,686	3,004,501	13.0	11.7	3.1
4 인도	672,200	958,458	825,654	1,046,339	2,173,538	9.4	107.7	34.1
5 아르헨티나	1,107,011	1,327,947	1,733,743	1,695,343	1,947,073	8.4	14.8	15.2
6 브라질	1,215,093	1,018,973	937,512	1,716,846	1,789,853	7.7	4.3	10.2
7 태국	1,705,763	2,367,110	1,784,588	1,188,961	1,027,485	4.4	△13.6	△11.9
8 우크라이나	429,081	604,360	730,467	731,594	962,381	4.2	31.5	22.4
9 캐나다	524,642	630,547	791,873	768,813	830,603	3.6	8.0	12.2
10 뉴질랜드	494,981	504,699	514,802	557,240	696,197	3.0	24.9	8.9
18 한국	134,315	148,236	150,567	142,583	175,642	0.8	23.2	6.9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밀과 메슬린, 대두박, 기타 사탕수수당 등

* 기타 밀과 메슬린 수입액은 35억 4,835만 6,000달러(한화 약 4조 8,105억 원)로 전년 대비 35.6% 증가

* 대두박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8.2% 증가한 26억 7,942만 9,000달러(한화 약 3조 6,325억 원)로 집계

* 기타 사탕수수당 수입액은 전년 대비 23.0% 증가한 22억 2,989만 달러(한화 약 3조 231억 원)로 집계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7,676,168	19,722,480	18,505,011	18,362,235	23,111,088	100.0	25.9	6.9	
1	메슬린 외 기타 (기타)	2,637,300	2,559,945	2,799,260	2,616,036	3,548,356	15.4	35.6	7.7
2	대두박 *박류	1,641,738	2,033,447	1,658,749	1,938,225	2,679,429	11.6	38.2	13.0
3	기타 사탕수수당 (편광도수 98.5도 초과)	2,017,962	1,746,299	1,317,596	1,813,552	2,229,890	9.6	23.0	2.5
4	대두 기타	1,150,766	1,102,749	1,064,565	1,003,421	1,482,849	6.4	47.8	6.5
5	마늘 (기타)	583,300	497,259	529,965	585,785	665,818	2.9	13.7	3.4
6	쇠고기 (냉동/뼈 없는 것)	387,918	523,324	600,223	507,771	664,811	2.9	30.9	14.4
7	조제품 기타	418,540	500,880	492,781	495,038	629,522	2.7	27.2	10.7
8	코코아 두 (볶은 것)	486,544	528,742	532,131	505,495	616,927	2.7	22.0	6.1
9	탈지분유 외 기타 (농축/설탕 및 감미료 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343,746	319,012	441,747	541,583	595,576	2.6	10.0	14.7
10	순종 사육 이외 생우	515,774	564,010	584,595	428,107	528,111	2.3	23.4	0.6

*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종자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현황

- 한국산 농식품 수출액 2억 4,353만 7,200달러(한화 약 3,302억 원)로 전년 대비 36.0% 증가함
 - 전체 수출액 비중의 81.5%는 농산물이 차지하며, 임산물, 축산물 순으로 뒤따름
 - * 농산물 수출액 전년 대비 32.9% 증가한 1억 9,840만 3,300달러(한화 약 2,690억 원)로 집계
 - 수출 상위품목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커피크리머, 조제품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등이 수출됨
 - * 커피크리머 수출액은 4,923만 500달러(한화 약 667억 원)로 전년 대비 46.1% 증가
 - * 기타 조제품 수출액은 1,427만 200달러(한화 약 193억 원)로 전년 대비 54.3% 증가
 -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는 전년 대비 74.6%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으며, 라면은 전년 대비 2.9%의 감소율을 보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규모(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76,151.20	204,970.80	169,741.20	179,097.70	243,537.20	100.0	36.0	8.4
농산물	146,428.90	174,387.50	149,843.50	149,237.20	198,403.30	81.5	32.9	7.9
축산물	4,358.30	4,819.40	11,171.40	7,757.20	9,514.30	3.9	22.7	21.6
임산물	25,364.00	25,763.90	8,726.30	22,103.30	35,619.60	14.6	61.2	8.9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76,151.20	204,970.80	169,741.20	179,097.70	243,537.20	100.0	36.0	8.4
1 커피크리머	18,947.90	41,264.10	36,832.50	33,691.50	49,230.50	20.2	46.1	27.0
2 조제품기타	19,078.40	8,428.60	5,959.50	9,247.50	14,270.20	5.9	54.3	△7.0
3 알코올 미함유 음료	6,247.70	19,337.10	8,163.00	7,913.90	13,815.80	5.7	74.6	21.9
4 라면	14,471.10	18,157.20	21,893.80	11,998.10	11,645.90	4.8	△2.9	△5.3
5 조제식료품 기타 (쌀가루의 것)	2,084.00	885.60	785.30	3,522.10	5,454.40	2.2	54.9	27.2

*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연초 등은 제외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통관 절차상 특징

- 인도네시아는 통상적인 '선 신고 후 심사'와는 대조적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이 통관 절차상 특징임
-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선 통관 사후 심사(Post Auditing)'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격적인 심사는 통관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통관 후 물품 인수까지 마쳤더라도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는 의미는 아님
- 지역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완료된 제품의 수입 신고서는 관할 본부 세관으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신고 내용이 재검토되며, 문제 발생 시 수입업체 심사를 진행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수입업체는 통관 당시의 수입신고서 및 기타 선적서류들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함

• Step 1 : 서류 준비

- 인도네시아는 통상적인 '선 신고 후 심사'와는 대조적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이 통관 절차상 특징임
- 무역면허(SIUP)
 - * 인도네시아에서 교역활동을 수행하려는 기업체는 무역면허(SIUP)를 등록해야 함
 - * 무역면허에는 회사의 활동 및 대표자 정보 등을 기입해야 함
- 사업자 등록번호(NIB)
 - * 2018년 7월부터 수입허가 간소화를 위해 수입허가(API), 관세청 등록번호(NIK)를 통합하여 사업자 등록번호(NIB)로 일원화함
 - *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은 온라인 인허가 통합시스템 웹사이트(<http://oss.go.id>)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함
 - *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인들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사업자 등록번호 취득 대상에 포함됨
 - * 사업자 등록번호 취득을 위해서는 사업 당사자가 OSS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회사 설립 증서 번호, 각종 허가 사항에 대한 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함
 - *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 시 투자자들은 납세자 고유번호(NPWP) 취득이 필요하며, 납세자 고유번호 또한 OSS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과 발급이 가능함
 - * 사업자 등록번호와 관련된 절차가 완료되면 투자자들에게 13자리의 번호가 발급됨
- 납세자 번호(NPWP)
 - * 납세자 번호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함
- 특정제품 수입 등록서(ITPT)
 - * 특정 제품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사전에 수입허가를 취득 및 산업부에 등록허가를 받아야 함
 - * 수입 규제 품목은 식음료, 의류, 신발, 전자제품, 완구, 전통 의약품, 허브, 화장품임

- Step 2 : 도착 전
 - 운송수단이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에 도착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현지 관세청에 운송수단이 도착 예정임을 통보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알려야 함
 - * 운송사 상호, 선박 편, 항공 편 등의 운송수단 식별번호, 운송수단 명칭, 출발항,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도착 직전 최종 기착지, 목적항, 운송수단 도착예정일, 하역 예정의 포장 개수, 컨테이너 개수 혹은 벌크 제품의 개수,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내의 다음 목적항

- Step 3 : 도착 시
 - 운송수단이 관세항구에 도착했을 시 수입업자는 선적 화물 및 부속 화물을 포함하여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세관신고서는 영어 또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며, 선박 편은 도착 후 24시간 이내, 항공 편은 도착 후 8시간 이내, 육로 편은 도착 후 즉시 제출해야 함
 - 세관신고서 작성 시 운송수단 승객 및 승무원 명단, 운송수단 연료 및 식량 공급 계획, 운송수단 적재 계획, 총기류 목록, 마약류를 포함한 치료용 의약품 목록이 포함되어야 함

- Step 4 : 하역
 - 수입된 물품은 검사 책임자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 하에 세관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하역해야 함
 - 운송사는 12시간 이내에 하역된 컨테이너 혹은 벌크 수량의 목록을 수기 또는 전자목록 형태로 세관에 제출함

- Step 5 : 수입관세 및 제세 납부
 -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외국환 은행이나 세관을 통해 관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제세를 납부해야 함
 - 판중 프리옥 항구와 수카르노 하타 공항 등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자신고방식(EDI) 시스템이 잘 구축된 곳에서는 전자방식으로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할 수 있음

- Step 6 : 수입신고서 제출
 - 통관 세관의 수입신고 방식(EDI, 전자서류, 서류)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제출함
 - 인도네시아 주요 세관인 판중 프리옥 I, II, III 세관과 수카르노 하타 I, II 세관은 수입신고를 전자신고방식(EDI)으로 제출하며, 기타 세관의 경우 서류 또는 저장매체(USB, CD 등)를 이용하여 제출함
 - 세관은 제출 또는 전송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입 세금이 납부된 은행과 연락하여 수입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함. 수입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세관에서 수입신고서를 접수하며, 수입신고서 접수가 확인되면 원본 서류를 세관에 제출함

- 선적 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등)는 세관내규에 따라 원본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4시간 이내에 수입신고서 접수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어느 반출 통로(Channel of Release)로 지정되었는지 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음. 만약 세관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통지서에 그 사유가 명시됨
- 세관은 세관 내부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마켓 판매가, 시장가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가격을 확인하고 통상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해당 신고가격을 불인정함

• Step 7 : 서류 심사 및 실물 검사

- 수입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관세청 직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 선적 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화물인도 지시서 등), 수입관세 및 제세납부 증거자료 등 첨부문서를 검토하고, 검토 후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물품의 실물 검사가 따를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세관은 과거 수입자의 정보, 수입자의 법규준수도, 신용도, 수입물품과 기타 정보의 위험도 따라 등급을 정해 통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음
- 통관 행정 서비스는 적색 채널(Red Channel, 고위험), 황색 채널(Yellow Channel, 위험), 녹색 채널(Green Channel, 우수), 최우수 채널(MITA Channel, 최우수) 4가지 채널로 구분되며 채널에 따라 물품 검사를 진행함
-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 세관 통관을 허락하고 화물 출고 동의서가 발급됨
- 화물 출고 동의서를 물품 창고에 제출 후 창고 비용을 지불하면 물품 반출이 가능함

• Step 8 : 물품 인도

- 관세청의 승인을 득한 후 수입물품이 인도되며, 물품의 인도시점은 화물 대기 순서 분류에 따름

• Step 9 : 물품 인수

- 수입된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최장 2개월 동안 항구의 임시창고 혹은 노상장소에 보관될 수 있지만 지정기간 내 통관 허가를 받지 못한 물품은 소유권이 세관으로 이관될 수 있음
- 지정기간 이내에 통관 허가를 받지 못한 물품은 소유권자가 없는 물품으로 구분되어 세관이 폐기, 제거, 재수출, 경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음

- 수입물품 통관 시, 수입신고서(PIB)를 포함해 다음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수입신고서(PIB) : 신고자 이름과 주소, 수출자 이름과 주소, 수입자 이름과 주소, 운송수단 명칭, 물품가격 정보 포함
 -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보험증서
 - 수입허가

검역제도

- 인도네시아 법안 “No.16(1992) 동물,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 관련”은 수생종을 포함한 동물 및 식물의 수출입 및 이전과 관련된 검역 요구조건을 정의함.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 검역부문의 최상위 법안임. 동 법안의 시행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검역제도 및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장관규정 및 결의, 소관부서 결정사항 등을 계속 발표하고 있음
 - 농림부 산하 인도네시아 검역청(IAAQ)은 검역제도의 중심 집행기구임. 해양수산부는 산하의 검역,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해 수산 제품을 규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관련 조례 및 규정의 변경 등 검역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신선과일 및 채소는, 이전에는 8개의 관세 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반입할 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4개의 관세항구를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함

● 검역 시 제출서류

- 요구되는 서류는 수입되는 제품의 유형에 따라 다름. 일부 서류양식 및 요구서류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역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 운송수단/목재포장재/PSAT 확인서
 - * 식물검역시행절차/안전감독/PSAT 승인서
 - * 화물하역 승인서
 - * 훈증 증명서
 - * 소독 증명서
 - * 식물 검역 증명서
 - * 운송수단 도착 보고서
 - * 원산지 및 경유지 국가의 건강 증명서

● 검역절차

번호	순서	내용
1	검사	인가된 기관에서 요구서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역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
2	격리	장기간, 특수시설, 제어된 환경조건 등을 요구하는 검역대상 제품은 격리될 수 있음
3	관찰	격리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 관찰이 진행됨
4	처리	<p>검역대상의 제품은 아래의 경우에 처리가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오염(감염) 또는 오염(감염)으로 의심이 갈 경우 -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다고 의심이 갈 경우
5	역류	인도네시아의 수입 요구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검역대상 제품은 역류됨.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규정 충족을 위해 허용되는 기간을 명시
6	거부	<p>아래의 경우, 제품은 거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결과, 검역대상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혹은 질병에 오염 또는 감염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어 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 요구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 역류 조치 이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운송수단 내에서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7	폐기	<p>아래의 경우, 제품은 폐기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이 되고, 후속적인 검사에서 제품이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감염이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 입국 거부 이후에, 지정된 기간 이내에 소유주가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 영외 또는 목적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을 경우 - 격리 후 관찰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의 오염/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 - 운송수단에서 하역 후 추가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8	인도	제품이 오염 혹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경우 제품 인도가 되며 수입업자가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인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 수출 가능 품목

협상 없이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콩, 감자
- 과일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유자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당근, 딸기, 멜론, 참외,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양파, 오이, 마늘쫑, 도라지, 호박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느타리, 송이, 새송이, 표고, 팽이
- 화훼류 : 선인장묘, 채송화묘, 다육식물, 스테비아 묘

* 주요 신선·건조농산물 중 수출금지 품목 없음(탄중프리옥 항 제외)

* 수입허구 과부하 및 과실파리유입 우려를 사유로 충청남도산 배를 제외하고는 현재 한국산 농산물의 탄중프리옥항으로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음

● 축산물

- 가죽제품, 오징어간 분말, 개·고양이 사료, 우모류, 어유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과일류 : 블루베리, 망고
- 채소류 : 마늘, 수박
- 특작류 : 인삼
- 종자류 : 팥, 더덕, 딸기
- 묘목류 : 딸기묘, 알코카시아묘

* 상기 품목 외에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축산물

- 유제품, 가금육, 멸균 식육가공품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MGH(인도네시아)
업체 유형	한인마트
담당자명	Mr. Miftah

- 자사는 현지에서 한국 가공식품의 인기가 높아 라면과 과자를 주로 수입하였으나,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와 Kpop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산 신고배, 샤인머스켓(포도), 감, 딸기 등 일부 신선식품도 수입하고 있음
- 한국산 신선식품 중에서는 포도가 가장 많이 팔렸으며 특히 프리미엄 마켓에서만 판매하는 샤인머스켓은 일본산에 비해 맛과 가격 모두 좋아서 인기가 높음
- 배는 주로 미국이나 중국에서 수입되지만 최근 한국 신고배가 독특한 식감과 맛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딸기의 경우 현지인들에게는 일본산 딸기가 더 익숙하고 한국산 딸기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경쟁에서 밀림
- 과거에는 한국산 인삼도 수입하였으나 판매량이 너무 적어서 더 이상 수입하지 않으며, 인삼차, 종합비타민, 인삼 사탕 등 인삼 가공식품은 수입함
- 인도네시아 고객들이 인삼 효능에 대해 아직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인삼 제품의 가격은 비싼 편이라 구매하지 않는 편이고 인도네시아 자체 허브와 향신료도 유명하기 때문에, 현지산을 선호함
- 샤인머스켓 외에 다른 한국산 포도도 수입할 계획이었으나(특히 Khoyo 포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여전히 포도 수입에 수량제한을 두고 있어서 제약이 있으며, 신선 농산물의 수입 절차가 가공식품보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선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공식품의 수입을 더 선호함
- 한국산 과일은 중국산 과일보다 달아서 주로 중산층에게 인기가 있으며, 프리미엄 과일로 인식되어 그 수요가 한정적임
-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식품 문제는 인도네시아 현지 라면 회사인 M사(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제품 문제로, 지난 10월 해당 업체가 라면에 사용한 고춧가루에서 높은 살충제 함량이 확인되어 문제가 되었고, 싱가포르와 호주에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 바 있음

03 비관세 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인도네시아는 Regulation 42(2019), Regulation 39(2019)등에 근거하여 육류, 식용 내장, 열대과일을 비롯한 농산물에 대해 수입국별로 시장접근 승인제도를 적용함
- 인도네시아는 “향료 첨가물에 관한 2020년 NAFDC 규정 제13호”의 내용을 추가하는 2021년 식품의약품관리청(NAFDC) 규정 제11호를 발표함. 해당 규정에는 향료 보조물질, 합성 향료, 식품 첨가물에 사용이 허용되는 향료 화합물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일부 변경됨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자국 내 통관 항구의 과부하 해소 및 과실파리 유입 방지를 위해 자카르타 인근의 판중프리옥 항구를 폐쇄하고 수라바야 항구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국가안전협정을 통해 과실파리 무발생을 인정받은 국가는 기존 판중프리옥 항구의 통관이 허용되며, 수입검역 간소화 예외조치 혜택을 받음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신선농산물 수출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수출국 식품안전 담당기관의 분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22개 품목을 설정함
 - 수출국 식품안전담당기관은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또는 식품 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품 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의 경우 수출업체는 사전신고서와 분석증명서(COA)를 제출해야 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농업부 법령정보포털	http://jdih.pertanian.go.id/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의약청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page/2/order/2/DESC
오염물질 규정	식품의약청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page/2/order/2/DESC
미생물 규정	식품의약청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page/4/order/2/DESC

통보문 개정현황(2022년)

- 개정사항 없음

2. TBT

주요 TBT 내용

-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2014년 33호 법률 시행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9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식품과 음료는 5년간의 추가 계도기간을 두고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됨. 하랍 원료가 들어간 품목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며 2024년 10월 이후 할랄 인증이 없으면 등록이 불가해짐
- 가공식품 라벨링에 관한 2018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1호의 내용을 개정하여 2021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 제20호에 명시함
 - 가공식품의 라벨링 요구사항
 - 재가공식품에 대한 라벨링 요구사항
 - 원료 비율을 포함시키기 위한 요구사항
 - 알코올 함량의 포함시키기 위한 요구사항
 - 소매 판매용 식품 첨가물에 대한 추가 라벨링 요구사항
 - 알레르겐에 대한 설명, 식품 포장과 관련된 문안, 로고 및/또는 사진
 - 가공식품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규정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 국장의 승인하에 라벨에 기재되어야 하는 기타 정보
-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니 식품의약품청(BPOM)에 수입식품 등록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을 강화하여, 2022년 5월 기준 301개 품목을 SNI 강제인증 적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해당 품목은 SNI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통관이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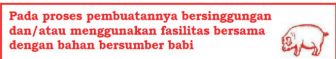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식품의약품 법령정보포털	https://jdih.pom.go.id/view/chart/5/row/10/page/2/order/2/DESC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유통기한 • BPOM 등록번호 • 성분 분석표 • 성분 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LAL 로고 (필요한 경우) • 순중량 또는 순용량 • 제조사명 또는 수입자명 및 그 주소 • 제조일 그리고/또는 생산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 유기농, GMO 함유 정보 등 (필요한 경우) • 사용 및 보관방법 • 주의 정보와 사용자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인도네시아어,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로 표기해야 함 라벨의 스티커 작업 후 부착을 허용함	
	그림	라벨의 정보 전달을 방해할 수 있는 색상, 그림, 기타 장식의 사용 금지함	
	유통기한	‘일, 월, 년’ 순으로 작성해야 함 와인, 10% 이상의 일코올을 포함하는 음료, 식초, 설탕(Sucrose), 24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빵 또는 케이크는 제외함	
	BPOM 등록 번호	수입 식품은 ML, 국내 생산 식품은 MD로 표시해야 함	
	성분 분석표	하루 섭취량 정보와 설탕 함량 정보를 표기해야 함	
	성분리스트	식품첨가물의 경우 첨가물이 속한 분류와 첨가물 명을 같이 표기해야 함 (e.g. Antioxidant : Ascorbic acid) 인공감미료를 포함하는 경우 인공감미료가 포함되었다는 문구와 그 함량 정보 표기 필요함	
	성분리스트	아스파탐을 포함하는 경우 ‘페닐알라닌을 포함하고 있으며, 페닐케톤뇨증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그리고 ‘가열될 음식에는 적합하지 않음’ 이라고 표기해야 함	
	성분리스트	식용 색소를 함유하는 경우 초록색 박스 안에 ‘PEWARNA PANGAN(Food Coloring)’ 또는 ‘PEWARNA MAKANAN(Food Coloring)’을 표기해야 함	
	성분리스트	식품 첨가물의 표기와 관련하여 ‘Free’, ‘Without’, ‘No Content’와 그 외 기타 유사한 표현에 대해 금지함 가능한 표기 방법(감미료, 보존료, 착색료, 산화방지제, 조미료에만 사용 가능함) ‘특정 식품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Without certain food additives)’ ‘인공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Do not contain artificial sweeteners)’	
	성분리스트	폴리올을 포함하는 경우 ‘과도한 섭취는 설사 증상 등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표기해야 함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HALAL	로고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야 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함
		수입 제품의 경우 Foreign Halal Certifying Body(FHCB)의 인증을 받아야 함
		신HALAL 인증법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4년 10월 17까지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식음료는 그림, 기호, 글자로 제품 내외부에 비HALAL 표기를 해야 함
		돼지고기와 알코올을 제외한 비HALAL 성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색과 형태로 된 성분 분석표를 추가해야 함
	기타	방사선에 노출된 식품의 경우 'IRADIASI(Irradiated)' 표기와 함께 로고 부착 필요. 시설의 주소, 연월, 국가 정보 및 조제 과정 정보를 포함해야 함
		방사선의 재조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TIDAK BOLEH DIRADIASI ULANG(Not to be re-irradiated)'라고 표기해야 함
		가공식품 및 즉석식품에 대해 설탕, 소금, 지방에 대한 함유 정보와 건강에 대한 문구의 표기가 필요함 ¹⁾
		GMO 원료를 5% 이상 포함하는 경우 'PRODUK REKAYASA GENETIK(Genetically engineered product)'라고 표기해야 함
	돼지고기 관련	돼지고기 함유 표시는 붉은 네모칸에 붉은 글씨로 돼지의 그림과 함께 표시해야 함
		 <p>식제조 과정의 돼지와 연관된 식품 접촉은 붉은 네모칸에 붉은 글씨로 돼지 그림과 함께 표시해야 함</p> 
주의 정보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텐 - 조개류 - 달걀 - 생선 - 땅콩 - 대두 - 우유 - 락토스 - 견과류 - 아황산염 	

* 자료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USDA FAS)

1) e.g. 1인이 하루에 50g 이상의 설탕, 2,000mg의 소금 또는 67g의 지방을 섭취할 경우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심장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Sodium 67g of fat per person per day increase the risk of hypertension, stroke, diabetes, and heart attack)

● 비스킷 / 쿠키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파인애플 잼 우유 과자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가루 - 식물성 기름 - 백설탕 - 포도당 - 과당 - 파인애플 푸레 - 분유 - 소금 - 콩 레시팅 - 산도조절제 - 탄산칼슘 - 향미 물질 - 합성 색상 - 비타민 - 캐러멜 	
내용량	32g	
출시일(발행일)	2022. 09. 21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Mayora Indah	
알레르겐 주의 성분	우유, 밀, 글루텐 함유 시리얼	
영양성분 정보	- 1회 제공량 24g	
	- 총 제공량 13.50	
	열량(Kcal)	110kcal
	지방	3.5g
	포화 지방산	1.5g
	단백질	1g
	탄수화물	18g
당류	6g	
나트륨	50mg	

● 액상 발효유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보라색 타로 향 요거트 음료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 백설탕 - 크림 분유 - 탈지분유 - 안정제 - 토란 추출물 - 타로 향료 - 천연 색소 	
내용량	120g	
출시일(발행일)	2021. 11. 30	
저장방법	냉장 보관	
제조사	Cisarua Mountain Dairy	
알레르겐 주의 성분	우유	
영양성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제공량 70g당 - 총 제공량 2회 	
	열량(Kcal)	70kcal
	지방	2g
	단백질	3g
	포화지방	1.5g
	탄수화물	11g
	당류	8g
	나트륨	35mg

인증

[필수 인증]

• 인도네시아 BPOM 등록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의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을 감지, 예방 및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및 식품관리 인증 시스템을 도입함.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해당 등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에 대해 필수적으로 등록을 요구함. 수입업체 또는 현지법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현지법인이 없는 국내기업의 경우 등록이 제한됨

인증명	인도네시아 BPOM 등록	
발행 및 검사기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등록신청서, 수입업자의 법률 문서, 보관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제조업체 품질관리 인증서, 자유판매증명서, 건강증명서, 위축장, 성분 구성정보, 제조공정, 제품 저장 정보, 생산 코드 정보, 레이블 디자인, 완제품 분석 인증서	
비용	-	
소요기간	약 3~6개월	
절차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수수료 지불 → 제품번호 통보 → 심사 → 인증 승인 및 등록번호 부여	


• SNI(Indonesian National Standard)

- SNI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임. 전자기기, 의료기기, 기타 공산품, 가공식품 등에 요구되는 인도네시아의 인증제도임. 강제대상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은 반드시 지정인증기관을 통해 SNI 인증서를 발급받고 제품에 마크를 표시해야만 인도네시아로 수입/판매가 가능하며, 인증서는 최대 4년간 유효함

인증명	SNI(Indonesian National Standard)	
발행 및 검사기관	인도네시아 산업부(MIT) 지정 시험소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상표등록증, 카탈로그 원본, 사용	
비용	5,500 ~ 25,000 USD	
소요기간	최대 3개월	
절차	신청 접수 → 공장 심사 → 샘플 검사 → 승인 및 인증발급	


• HALAL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4년 발표한 법률(No. 33/2014)이 지난 10월부로 발효됨에 따라 식품, 음료, 화장품 등의 품목에 할랄 인증이 필수 취득 사항으로 되었음. 인도네시아 이슬람 할랄 위원회(LPPOM MUI)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보증기구(BPJPH)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함. 다만, 식품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오는 2024년 10월까지의 할랄 인증 획득을 완료해야 함. 인도네시아 이슬람 할랄 위원회는 인도네시아와 아시아, 유럽 등지에 위치한 45개의 할랄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통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음

인증명	HALAL	
발행 및 검사기관	LPPOM MUI 또는 지정인증 기관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 정보(필요한 경우), HAS 매뉴얼, 가공 공정도, 가공 공장 주소, 사내 할랄 교육에 대한 정보, 할랄 인증 신청서 	
비용	20~50만 원	
소요기간	1~2개월	
절차	서류제출 → 인증수행계약 체결 → 사전 모니터링 → 현장조사 → 인증서 발급	

• HACCP


- HACCP 인증은 농축산물 및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제도임.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HACCP, ISO 22000, GMP 인증 3가지 중 1개 이상 취득이 필수임

인증명	HACCP(품질안전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계획서 등	
비용	20만 원	
소요기간	약 4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심사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발급	

[선택 인증]

- ISO 22000(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ISO 22000 인증은 식품의 가공업체, 유통업체 모두에 적용되는 최종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표준임. 해당 표준은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인증명	ISO 22000	
발행 및 검사기관	ISO 등록 시험 기관	
강제유무	권장	
제출 서류	인증심사 신청서	
비용	투입 심사관의 노동량 기준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심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	
절차	서류제출 → 인증계약 → 계획통보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시정조치 → 인증심의 → 인증취득 → 사후관리심사 → 갱신심사	

- IFS Global Markets Food

- IFS Global Markets Food 인증은 식품 유통업체를 위한 인증으로, 식품의 제조와 유통, 관리 등 최종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평가 인증임. 유사 인증인 IFS Food 인증은 식품 가공업체를 위한 인증으로, 식품 가공 및 제조 과정과 완제품 최종 포장 과정까지의 안전을 평가하는 인증임

인증명	IFS	
발행 및 검사기관	IFS 지정 인증기관	
강제 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비용	약 900 ~ 1,000만 원	
소요기간	약 24주	
절차	인증 신청 → 사전 심사 → 현장 심사 → 부적합 사항 시정 조치 → 인증 발급	

No.	제목	할랄 인증 의무화되거나 인증 취득의 까다로움	해당국가	인도네시아
			관련품목	식품전반
			유형*	TBT
1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 신할랄법의 시행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은 할랄 인증 적용이 의무화되며, 제품에 따른 단계적 시행 정책에 따라 식품에는 2024년 10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의무 적용됨 신할랄법에 따라 할랄인증청(BPJPH)의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할랄인증청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해 할랄 검사를 수행해야 함 할랄 인증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주체 : 수출사(브랜드 보유자) 또는 제품의 제조(생산)사 - 심사 대상 : 제품의 제조 시설 공장 - 신청 방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https://ptsp.halal.go.id/ 접수 ② 할랄 인증 심사 기관 선택(LPPOM MUI(국내외), Sucofindo(국내), Surveyor Indonesia(국내) 등 3개 기관 중) ③ 할랄 인증 심사 기관에서 할랄 신청 기업 실사 후, 합격 시 교부 - 획득 소요 기간 : 21~41일(서류 및 할랄 제품 공정에 문제없는 경우) - 획득 소요 비용 : USD 13,000~20,000(심사 공정 및 제품 유형별로 상이) - 유효기간 : 4년 - 타국 인증 상호인정 여부 : 인정 추진 중 (*현재 한국이슬람교할랄위원회와 BPJPH 사이 교차 인증은 불가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랄 의무 규정에 따라 생산공장 재설립 또는 현지 공장, 지사 설립 등 이외에 타개할 방법이 없어 수출에 많은 제약이 생김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할랄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 할랄 인증이 필요하나, 인증받기가 까다로움 		
	기타	<p>※ 인도네시아, 신할랄인증법 도입</p> <p>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9600&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p>		

No.	제목	2-클로로에탄올과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 강화	해당국가	인도네시아									
			관련품목	라면									
2			유형*	SPS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처는 인도네시아 식품 중 즉석 라면의 조미료, 즉석 라면에서 기준치 이상의 2-CE(클로로에탄올)와 ETO(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령 43호 규정》의 2-CE와 ETO 검출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함 국제 기준에 따라 강화된 인도네시아 2-CE 및 ETO 검출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2-CE(클로로에탄올)</th> <th>ETO(에틸렌옥사이드)</th> </tr> </thead> <tbody> <tr> <td>대상 품목</td> <td>아이스크림, 채소/해초/콩/깨, 면류(파스타, 라면 등), 약초 및 향신료</td> <td>아이스크림, 채소/해초/콩/깨, 면류(파스타, 라면 등), 약초 및 향신료(고춧가루)</td> </tr> <tr> <td>최대 허용치</td> <td>85mg/kg</td> <td>0.01mg/kg</td> </tr> </tbody> </table>				분류	2-CE(클로로에탄올)	ETO(에틸렌옥사이드)	대상 품목	아이스크림, 채소/해초/콩/깨, 면류(파스타, 라면 등), 약초 및 향신료	아이스크림, 채소/해초/콩/깨, 면류(파스타, 라면 등), 약초 및 향신료(고춧가루)	최대 허용치	85mg/kg	0.01mg/kg
	분류	2-CE(클로로에탄올)	ETO(에틸렌옥사이드)										
	대상 품목	아이스크림, 채소/해초/콩/깨, 면류(파스타, 라면 등), 약초 및 향신료	아이스크림, 채소/해초/콩/깨, 면류(파스타, 라면 등), 약초 및 향신료(고춧가루)										
최대 허용치	85mg/kg	0.01mg/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조치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식품에 적용되는 개정사항이지만, 인도네시아 내 유통 식품도 동일한 기준치가 적용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CR / ETO 규정 강화로 수프 생산 후 검사, 완제품 생산 후 재검사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및 수출품목 확대에 애로사항이 있음(기준 10여 개 수출 제품을 4개로 축소하여 운영 중임) 												
기타	<p>※ 인도네시아, 2-클로로에탄올과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 강화</p> <p>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6961&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2&srchWord=%EC%9D%B8%EB%8F%84%EB%84%A4%EC%8B%9C%EC%95%84&page=1&srchGubun=75</p>												

No.	제목	홍삼제품 통관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움	해당국가	인도네시아
3			관련품목	홍삼제품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는 전통의약품 원료로 지정된 재료가 사용될 경우 보편적으로 전통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의약품 원료 : 홍삼, 인삼, 당귀, 천궁, 작약, 지황, 동충하초 등 • 전통의약품은 알코올 잔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알코올은 최대 5% 사용이 허용되어 있으나 그 이상의 알코올 함량이 나올 경우, 해당 사항을 제품에 라벨링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검사에서 Negative로 나올 경우, 그 검사의 유효 조작 범위 LOD(Limited of Detection)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 • 전통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홍삼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인증 및 할랄 인증취득이 필수임. 또한,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농식품 수입 기준 법률에 따른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청 인증 신청 절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BPOM 온라인 시스템 수입사 등록 ② GMP 사본의 공증 제출 후 제조사 온라인 등록 ③ 개별 제품의 등록 접수 신청 ④ 제품의 안정성 및 기능성, 제품의 재료, 제조의 관리와 제조 기술 안정성에 관련된 검증 자료 요구 및 검사 ⑤ 제품의 포장 디자인 심사 - 식약청 인증 구비서류는 인도네시아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애로·건의 사항		<p>홍삼 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내에서 전통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준비 및 진행에 어려움이 큼. 특히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진행하는 데 2~3년의 시간이 소요됨</p>		
기타		-		

1. 홍삼 스틱 제품

제품 사전검토 결과

• 식약청 등록 유형

No.	등록 기관	등록 유형	비고
01	BPOM(식약청)	SI ²⁾	-

• 전 성분 조사 설명

- 전 성분의 홍삼 추출물(extract)과 홍삼 파우더를 재료로 사용할 때에는 건기식 및 식품 유형 모두 사용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인니 식약청에서는 인삼류의 사용을 Panax Ginseng C.A Meyer and Panax Quinquifolius- American Ginseng(Ekstrak Ginseng)만 허용하고 있음. 다만 한국의 인삼류는 모두 Panax Ginseng C.A Meyer 종임으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인삼 종의 표기를 포함한 제품사향서의 준비가 필요함
- Fructo-Oligosaccharide의 경우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가공 식품 등에 자유로이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인니에서도 본 재료 자체는 사용에 문제가 없으나 홍삼 제품에 Fructo-Oligosaccharide 첨가 시 인니 미 등록 구성 사례로 인니 식약청의 안정평가표준 관리국의 심의 후 확인서를 받아 제품 등록 신청 및 심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음
- 인삼 열매, 진생베리는 식품류와 건강기능식품 및 전통의약품으로 허용된 재료이지만, 인니 BPOM에는 미등록된 재료이므로 사용할 수 없음.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본 재료의 사용이 식약청의 안정평가 심사국(SPO)에 별도 재료 사용 승인 절차 등록 후 사용 가능
- 건기식의 경우 제조사의 GMP 인증은 필수 사항임. 그리고 active(활성) 재료와 부형제 재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며, 활성 재료는 안정성 보고서 등이 요구됨
- 전통의약품으로 구분 적용 시 프락토올리고당의 첨가는 신규 배합으로 지정되어 심사에 별도 추가 안정성 평가국의 심의가 필요하나 아민류 등의 혼합으로 본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등록 시 프락토올리고당의 혼합 사례가 있어 등록 허가 진행에 비교적 유리할 수 있음
- Fermented라는 발효 홍삼 추출방법으로 발효의 유무를 구분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아 현재 발효 관련 사항의 재료명은 '일반적인 홍삼추출물'로 기재하여 신고 필요

2) SI(Supplement impor)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급으로 허브 재료와 함께 비타민류 등이 복합 재료의 제품

- 제품의 전 성분표 작성 기준(건강기능식품 기준으로 적용 준비 시 참고사항)

- 전 성분표는 활성(Active)/부형제(Excipient) 재료로 구분되어야 하며 그 기능성 또는 용도를 함께 표기해야 함. 또한, OTSM 등급에서는 제조 시 1lot(또는 Batch) 대한 제조량의 기제와 함께 사용량 % 기재가 필요함
- OTSM 등록 신청 시의 전 성분표 작성 기본 요구사항 : 기본 타입으로 형식 변경 가능
- 일반 가공식품 등록 시에는 전 성분 및 함량 표기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건강기능식품 경우 구분 표기 필수

- 완제품 의무 시험 성적서 검사 유의사항

- 건강기능식품 등록 대상 중 액상 제품의 재료에 대한 생산 공정 및 완제품의 생산 공정상 알코올 보조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잔류 알코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잔류 알코올이 0.01% 이상 경의 해당 검사 결과를 제품 포장에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됨
- Napza(Napza is an acronym for Narcotics, Psychotropics and Other Addictive Substances. Other terms that are often used are drugs and psychoactive substances) 약자 표기로 전통의약품의 경우 전 성분의 구성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잔류검사 대상임

- 주의 참고사항

- 본 제품의 전 성분 구성 중 한국에서는 부형제를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나 인니 기준 활성 재료에 해당되는 성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 자료 입증 요구가 많이 나올 수 있음. 또한, 인니 허용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제품 재료의 구성 배합이 인니 신규 구성일 경우 식약청의 안정성 평가 심사국에 등록하기 이전에 사전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등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규 배합 구성의 경우 식약청의 사전 확인은 불가하며, 신청 접수 또는 공식 상담 자료 제출 시 확인받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안정성 평가국의 해당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할 연구 자료 및 근거 논문 자료, 독성 검사 자료, 유효성에 대한 근거 자료, 다른 국가의 등록 사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며, 심사평가에 따라 추가 자료들의 요구를 받아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섭취에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근거를 등록 신청사에서 소명되어야 함
- 본 제품은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홍삼과 마카, 프락토올리고당으로 구성된 다른 제품의 사례가 있는지 등에 따라 제품 심사 진행 시 추가적으로 논문 또는 시험보고서 등이 요구될 수 있음. 진생베리의 경우 미사용 사례 제품에서 제외하는 것이 통관 진행 시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인도네시아 라벨링 제도 중요 정보 안내 사항

-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농수산물식품의 할랄 인증 의무화
 - 인도네시아 MUI 할랄인증 의무화법 시행으로 식품과 음료를 수출하는 한국 농가·수산·가공 기업은 현지 기관을 통해 MUI 할랄 인증을 획득하거나 교차 인증대상 할랄을 신청해야 함
 - * 국내 적용 교차 인증기관 미지정 - 추후 교차 인증 지정 시 국내 인증기관에 신청 가능
 - 2019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 적용을 유예기간을 추가하여 2024년 10월 17일부터 적용
 -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보장청에서 할랄 인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 할랄 접수처 BPJPH(종교부-할랄인증보장청) - 할랄 인증 심사 LPPOM MUI(BPJPH 할랄 접수 등록 확인서 필수 제출 필요)
 - *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부터 MUI 할랄 인증 의무화 적용

2. 소스류

제품 사전검토 결과

• 식약처 등록 유형

No.	등록 기관	등록 유형	비고
01	BPOM(식약청)	ML	(-)

- 본 제품은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등록 시 만두/파스텔/스프링 롤 등의 유형에 포함되어 Saus Bumbu(564)의 타입에 적용되며, Saua Bambu Non-Emulsi Lainnya(120602222)카테고리로 등록 가능

• 식약청 제출 서류(일반 가공식품 기준)

-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원본 발급요청 후 출력물 원본을 제출
- 임명서(LOA Letter of Appointment) : 한글, 영문본 준비하여 법무법인 번역 공증 후 영사과 공증
- 제품 성분 함량표(Ingredients in percent) : 영문 작성
- 각 재료에 대한 제품 규격서(Specification) : 필요에 따라 재료의 시험 성적서 요청(제품 규격서 대신 COA 재료 시험 성적서 제출 가능)
- 제조 공정도 : 제품별 공정의 단계적 차트 - 회사에서 사용하는 작업 지시서의 개념이 아님
- 완제품(등링 제품)의 제품 규격서 : 제조사 자가 시험 성적서
- 완제품의 시험 성적서(COA) : 미생물 5, 중금속 4 사항을 제품별 재확인(공인 성적서)
- 포장 재료의 규격서(Specification)
- 유효기간 설명서 : 제품의 유효기간 설정 사유와 표기에 대한 설명
- Batch No. 또는 LOT No.의 표기 설명서 : 번호 구성에 대한 설명 포함된 자료
- 제품의 사용법(조리법) : 국문 및 영문 자료 준비하여 모두 인도네시아어 번역 제출 의무
- 제품의 포장 디자인(컬러판 평면도) 한글 포장 제품의 경우 한글의 인도네시아어 번역 공증 필요
- 포장 라벨링 표기사항 : 유통에 표기될 사항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어 작성 제출
- 샘플 3~5개(BPOM의 확인 요청 시 방문 제출 및 시험 검사용)
- 기타 인증서 사본(HACCP, ISO 등) : HACCP 또는 ISO22000의 사본 필수(공증 불필요)

● 주요 준비서류의 주의 사항

- 자유판매증명서는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전통의약품) 포함하여 현재 공증 없이 한국의 지방 식약처에 온라인 발급된 전자문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 영사과 공증 불필요함
- LOA는 영사과의 공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건으로 공증 발행 이전 문안 내용상의 제품에 대한 표기사항과 위임 업무 사항에 대한 표기 등 표현상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 후 공증 처리에 주의 필요
- 완제품의 시험 성적서는 제조사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도 필수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외부 시험기관으로부터 미생물 및 중금속의 시험검사를 받아 그 성적서(공인기관)를 제출해야 함. 현재 한국의 시험 검사법의 기준 표기 방식이 일부 차이가 있어 가급적 인니의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받는 것이 유리함
- 일반 가공식품, 기타 가공식품, 수산 가공식품 등 모든 식품은 제조사에서 GMP / HACCP / ISO22000 중 1택 필수적으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전 성분 사용 재료의 모든 재료는 Specification(규격서-사양서)를 필수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식품류의 경우 원재료의 제조사가 아닌 완제품 제조사의 헤드레터 사용으로 제출 가능)

● 제품의 성분 검토

- 인도네시아 식약청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의 전 성분 재료 사용 함량에 따른 최대 허용치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가공식품과 건강보조식품에 따른 기준과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식약청 기준에 충족하도록 필히 사전 확인과 준비가 필요함
- 가공식품의 등급으로 진행 시에는 재료(첨가물)에 따라 허용 기준치에 적합한지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국제 식품규격인 CODEX 규정을 참고하여 확인이 가능함

3. 스낵류

제품 사전검토 결과

● 식약처 등록 유형

No.	등록 기관	등록 유형	비고
01	BPOM(식약처)	ML	-

- 본 제품은 인도네시아 식약처의 등록 시 일반 가공식품 제품 Makanan Ringan Ekstrudat(737)의 타입에 적용되며, Makanan Ringan Ekstrudat(압축 스낵)(150129) 카테고리 등록 가능

● 식약처 유기농 표기 사항

-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에서는 해외 제조 유기농 제품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포장 라벨링 표기 심사 시에 인도네시아 유기농 인증서가 없을 시 해당 제품명에서 organic(유기농) 한글 및 영문 표기 삭제, 그리고 로고 사용의 삭제 및 대표 원재료 표기에 대한 부분도 모두 유기농 부분을 삭제 조건으로 가공식품 등록 기준 충족 시 허가 등록을 승인함. 해당 제품은 인도네시아 식약처 등록 시 일반 가공식품 제품 Makanan Ringan Ekstrudat(737)의 타입에 적용되며, Makanan Ringan Ekstrudat(압축 스낵)(150129) 카테고리 등록 가능

● 유기농 인증 서류 준비사항

- 제조사의 품질관리 및 표준 운영 시스템 SOP 매뉴얼(보편적 ISO22000 또는 HACCP의 SOP 준비 제출 필요)
- 유기농 시스템에 대한 SOP
- 전 성분표
- 제조사 국가(한국) 유기농 인증서 사본
- CFS 사본
- 사업자등록증 영문 사본
- 제품 공정도
- 원재료 유기농 근거 서류(재료 SPEC 및 유기농 확인서)
- 품질관리 책임자의 영문 이력서(경력사항 포함)
- 인증 신청서

● 심사 절차 사항 및 비용

- ①인증 신청서류 제출 접수 → ②구비서류 요건 검토 및 충족 시 비용청구서 발행 → ③ 신청사 비용 납부 → ④ 서류 본 심사 → ⑤ 추가 요구사항 또는 심사 완료 → ⑥ 인증서 발급 (3년 유효)
- 비용 평균 Rp.15,000,000 ~20,000,000(KRW 1,500,000~2,000,000) : 인증 품목 수 등을 기준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인보이스 발행 및 납부 후 심사 진행(onsite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여행 및 체류 재경비 신청사 부담)

● 특이사항

- 유기농 인증서 발급 시 유효기간은 3년이나, 매해 공장 실사를 진행하지 않는 인증기관의 경우 서류 갱신사항을 점검 및 심사하며, 공장 실사가 포함된 심사를 시행하는 인증기관은 매년 현장 실사를 진행함(이때 현장 실사와 관련된 항공비 및 재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함)

● 인도네시아 VEGAN 로고 사용 절차

- 인도네시아 BPOM의 Vegan 로고 사용에는 해당 인증서(국내외 모두 가능) 사본 그리고 DNA 동물성 미검출 검사 증명서 제출 필수이며, 조건 충족 시 Vegan 표기 사용이 가능함
- DNA 검사서는 해외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사용 가능
- 전 성분 사용 재료의 모든 재료는 Specification(규격서- 사양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식품류의 경우 원재료의 제조사가 아닌 완제품 제조사의 헤드레터 사용으로 제출 가능)

● 일반 가공식품의 라벨링 표기 의무 사항

- 수입 및 유통 인도네시아어 표기 의무 사항(식약청 표기사항 사전 심의 및 제품 등록·허가 필요)

No	Indonesia 표기	설명	비고
1	Product Type(제품유형명)	제품의 유형만 표기 또는 제품의 유형과 제품명을 병행 표기 가능	
2	komposisi(전 성분)	전 성분 표기로 함량이 높은 순으로 기재 인니어로 표기	
3	Diimpor oleh(수입사)	수입사 명 및 주소 표기	
4	Diproduksi oleh(제조사)	제조사의 명 및 주소 표기	
5	Berat Bersih(용량, Net)	제품의 내용물 용량(포장구성)	
6	BPOM RI ML(등록허가번호)	BPOM의 등록 허가 번호 기입	QR 코드 의무표기
7	Kode Produksi(제조 Lot)	제조 Lot를 직접 표기 또는 제품 포장에 별도 인쇄식으로 기재	
8	Baik digunakan sebelum	Best before로 유통기간 표기를 직접 라벨 표기 또는 별도 인쇄 참조로 가능	
9	Pentunjuk Penyajian	음용법 또는 제조 방법 표기	
*	Mengandungn alkohol	음료 제품 또는 알코올 포함 재료 사용 시 알코올 잔류 검사 의무 대상에 따른 표기 의무	± 0.01% 이상 의무 표기

● 일반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검사 의무표기 안내

[영양성분 의무 검사]

- 인도네시아 지정 시험검사 기관에서 검사 성적서 필요

No	Parameter Test(Ind)	Parameter Test(Eng)	Max Limit	Intake per serving
1	Lemak total	Total Fat	67g / day	< 18g
2	Energi / Kalori	Calories	2150 kcal / day	
3	Protein	Protein	60g / day	
4	Karbohidrat total	Total Carbohydrate	325g / day	
5	Lemak Jenuh	Saturated Fat	20g / day	
6	Garam	Natrium	1500mg / day	< 300mg
7	Gula	Sugar	-	-

신남방

필리핀 PHILIPPINES

2022년 한눈에 보이는
필리핀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308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320
03. 비관세 장벽 현황	322
04. 수출 애로사항	330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식품시장 규모는 980억 6,300만 달러(한화 약 132조 9,440억 원)로 전년 대비 9.4% 증가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408억 8,900만 달러(한화 약 55조 4,332억 원)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41.7% 차지함
 - * 육류 시장규모(19.1%)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며, 뒤이어 낙농품 시장(8.2%), 채소류(8.0%), 과일 및 견과류(4.3%), 유지류(2.0%) 순임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571억 7,400만 달러(한화 약 77조 5,108억 원)로 전체 시장규모의 58.3%에 해당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시장규모가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뒤이어 스낵류 시장(11.6%), 영유아용 식품(3.3%), 소스 및 향신료(2.7%) 순임

식품시장 규모(2017~2021)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69,240.4	73,087.5	79,713.6	89,659.0	98,063.0	100.0	9.4
신선식품	29,017.0	30,591.0	33,320.0	37,433.0	40,889.0	41.7	9.2
- 육류	13,370.0	14,070.0	15,300.0	17,160.0	18,710.0	19.1	9.0
- 낙농품	5,606.0	5,935.0	6,493.0	7,328.0	8,041.0	8.2	9.7
- 채소류	5,564.0	5,875.0	6,407.0	7,207.0	7,883.0	8.0	9.4
- 과일 및 견과류	3,016.0	3,180.0	3,463.0	3,889.0	4,248.0	4.3	9.2
- 유지류	1,461.0	1,531.0	1,657.0	1,849.0	2,007.0	2.0	8.5
가공식품	40,223.4	42,496.5	46,393.6	52,226.0	57,174.0	58.3	9.5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25,330.0	26,770.0	29,240.0	32,930.0	36,060.0	36.8	9.5
- 스낵류	7,777.0	8,287.0	9,115.0	10,340.0	11,410.0	11.6	10.3
- 영유아용 식품	2,373.0	2,486.0	2,691.0	3,003.0	3,259.0	3.3	8.5
- 소스 및 향신료	1,877.0	1,981.0	2,159.0	2,427.0	2,654.0	2.7	9.4
- 스프레드 및 당류	1,992.0	2,065.0	2,216.0	2,451.0	2,636.0	2.7	7.5
- 편의식품	874.4	907.5	972.6	1,075.0	1,155.0	1.2	7.4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1억 1,3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함
 - 연령대 별 인구 비중은 0~14세(20.5%), 15~24세(18.5%), 25~34세(16.0%), 35~44세(12.7%), 45~54세(9.9%), 55세 이상(22.4%)으로, 0~14세 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여성 인구수는 약 5,610만 명(약 49.2%), 남성 인구수는 약 5,780만 명(50.8%)으로, 남성 인구의 비중이 여성 인구보다 높음 편임

- 2021년 가구수는 총 2,198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2,550달러(한화 약 346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870달러(한화 약 118만 원)로 약 34.0%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5.5% 증가함

- 2021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883.13달러(한화 약 119만 7천 원)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모든 품목의 소비액이 전년 대비 증가함
 -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368.24달러(한화 약 49만 9천 원)로 전년대비 7.8% 증가
 - * 육류 소비액은 168.50달러(한화 약 22만 8천 원)로 19.1%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낙농품(8.2%), 채소류(8.0%), 과일 및 견과류(4.3%), 유지류(2.0%) 순으로 나타남
 - 1인당 가공식품 소비액은 514.89달러(한화 약 69만 8천 원)로 집계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은 324.80달러(한화 약 44만 원)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36.8%를 차지, 뒤이어 스낵류(11.6%), 영유아용 식품(3.3%) 순임

1인당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658.27	685.37	737.23	818.22	883.13	100.0	7.9
신선식품	275.87	286.81	308.17	341.61	368.24	41.7	7.8
- 육류	127.10	131.90	141.50	156.60	168.50	19.1	7.6
- 낙농품	53.30	55.65	60.06	66.87	72.41	8.2	8.3
- 채소류	52.91	55.09	59.26	65.77	70.99	8.0	7.9
- 과일 및 견과류	28.67	29.81	32.03	35.49	38.26	4.3	7.8
- 유지류	13.89	14.36	15.32	16.88	18.08	2.0	7.1
가공식품	382.40	398.56	429.06	476.61	514.89	58.3	8.0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240.80	251.10	270.40	300.50	324.80	36.8	8.1
- 스낵류	73.94	77.70	84.31	94.37	102.70	11.6	8.8
- 영유아용 식품	22.56	23.31	24.89	27.41	29.35	3.3	7.1
- 소스 및 향신료	17.85	18.57	19.97	22.15	23.90	2.7	7.9
- 스프레드 및 당류	18.94	19.37	20.49	22.37	23.74	2.7	6.1
- 편의식품	8.31	8.51	9.00	9.81	10.40	1.2	6.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 신선식품 품목 중 1인당 소비량은 채소류가 40.92kg으로 가장 높음
 - * 다음으로는 낙농품 소비량이 27.56kg으로 집계되었고 육류 소비량은 24.30kg으로 나타나며, 과일 및 견과류, 유지류 소비량은 각각 18.33kg, 3.09kg으로 집계
- 가공식품 중에서는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1인당 소비량이 236.33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뒤이어 스낵류가 16.32kg, 스프레드 및 당류 8.63kg, 소스 및 향신료 4.67kg, 영유아용 식품 3.96kg, 편의식품 1.90kg 순으로 나타남

1인당 식품 소비량(2017~2021)

(단위 : 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37.82	38.37	38.83	39.52	40.92	3.5
	- 낙농품	24.40	25.01	25.49	26.46	27.56	4.2
	- 육류	21.51	22.07	22.62	23.37	24.30	4.0
	- 과일 및 견과류	17.00	17.17	17.27	17.74	18.33	3.4
	- 유지류	2.98	2.98	2.98	3.03	3.09	2.1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221.25	223.03	224.66	229.62	236.33	2.9
	- 스낵류	14.86	15.09	15.31	15.75	16.32	3.6
	- 스프레드 및 당류	8.29	8.32	8.35	8.46	8.63	2.0
	- 소스 및 향신료	4.44	4.46	4.48	4.55	4.67	2.5
	- 영유아용 식품	3.85	3.84	3.84	3.88	3.96	2.0
- 편의식품	1.93	1.90	1.88	1.89	1.90	0.9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57억 9,283만 3,000달러(한화 약 7조 8,533억 원)로 집계됨
 -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19.9%), 일본(12.8%), 중국(12.8%) 등이 있음
 - * 미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3% 증가한 11억 5,427만 8,000달러(한화 약 1조 5,649억 원)로 집계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0.5%의 감소율을 보임
 - *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7억 4,121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49억 원)로 전년 대비 20.1%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11.0%의 높은 성장률 기록함
 - *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7억 4,055만 9,000달러(한화 약 1조 40억 원)를 기록했지만, 최근 5개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19.2%로 높음

-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4억 1,480만 3,000달러(한화 약 5,623억 원)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기록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4,745,201	5,124,959	5,618,471	5,220,745	5,792,833	100.0	11.0	5.1	
1	미국	1,176,148	1,026,755	846,591	859,473	1,154,278	19.9	34.3	△0.5
2	일본	488,285	760,235	932,328	927,448	741,215	12.8	△20.1	11.0
3	중국	366,556	708,283	911,194	764,365	740,559	12.8	△3.1	19.2
4	네덜란드	751,108	447,279	443,402	404,396	644,677	11.1	59.4	△3.7
5	한국	313,268	395,224	471,701	420,244	414,803	7.2	△1.3	7.3
6	말레이시아	158,641	169,369	238,182	216,479	244,547	4.2	13.0	11.4
7	태국	113,127	136,363	140,173	154,408	148,356	2.6	△3.9	7.0
8	인도네시아	44,521	61,072	77,662	55,491	118,434	2.0	113.4	27.7
9	스페인	44,498	84,091	72,158	53,680	115,379	2.0	114.9	26.9
10	캐나다	94,718	87,202	78,180	93,443	106,725	1.8	14.2	3.0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바나나(19.1%), 야자유(18.0%), 코코넛(6.8%) 등이 있음

* 바나나(기타) 품목의 수출액은 2021년 11억 582만 달러(한화 약 1조 4,992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31.2% 감소

* 야자유(조유)의 수출액은 10억 4,344만 1,000달러(한화 약 1조 4,146억 원)로, 전년 대비 96.8%가 증가

* 코코넛(신선, 건조)의 수출액은 3억 9,512만 달러(한화 약 5,357억 원)로 전년 대비 54.9% 증가한 수치로 집계되며, 뒤이어 야자유, 분획물(6.8%), 파인애플(기타 방법 조제)(5.3%), 파인애플(신선, 건조)(4.8%) 순으로 나타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4,745,201	5,124,959	5,618,471	5,220,745	5,792,833	100.0	11.0	5.1	
1	바나나 (기타)	-	1,504,260	1,930,382	1,607,796	1,105,820	19.1	△31.2	N/A
2	야자유 (조유)	993,099	643,945	579,132	530,319	1,043,441	18.0	96.8	1.2
3	코코넛 (신선, 건조)	263,825	282,950	249,263	255,094	395,120	6.8	54.9	10.6
4	야자유, 분획물 (조유, 정제유 이외 기타)	561,032	410,686	290,052	243,876	391,627	6.8	60.6	△8.6
5	파인애플 (기타 방법 조제)	277,326	192,161	181,935	235,246	305,031	5.3	29.7	2.4
6	파인애플 (신선, 건조)	172,357	191,979	323,763	307,747	280,400	4.8	△8.9	12.9
7	식물성 점질물 (한천, 로우커스트 점질물 이외 기타) *식물성 액즙	158,110	166,480	201,240	162,221	207,311	3.6	27.8	7.0
8	파인애플주스 (기타)	94,043	75,188	100,261	119,495	171,720	3.0	43.7	16.2
9	과실견과기타 (조제저장처리)	109,449	114,018	121,360	144,494	159,906	2.8	10.7	9.9
10	채소주스	-	26,670	72,261	150,728	125,853	2.2	△16.5	N/A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1년 농식품 수입액은 149억 6,976만 1,000달러(한화 약 20조 2,945억 원)로, 전년 대비 26.6%, 최근 5년간 연평균 10.2% 증가함
 - 미국산 농식품 수입액이 가장 큰 비중(21.4%)을 차지하며 인도네시아산(10.9%), 중국산(9.5%), 베트남산(8.7%) 순으로 집계, 한국은 21위 수입 대상국임
 - * 미국산 농식품의 수입액은 32억 55만 8,000달러(한화 약 4조 3,390억 원)로 전년 대비 19.0% 증가
 - * 對인도네시아 수입액은 전년 대비 47.6% 증가한 16억 3,844만 5,000달러(한화 약 2조 2,212억 원), 중국산은 14억 2,576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9,329억 원)로 집계됨
 - * 한국산 수입액은 1억 659만 3,000달러(한화 약 1,445억 원)로 전년 대비 10.3% 증가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0,165,787	12,112,466	12,491,610	11,823,304	14,969,761	100.0	26.6	10.2
1 미국	2,296,489	2,636,037	2,597,272	2,688,468	3,200,558	21.4	19.0	8.7
2 인도네시아	1,021,358	1,162,237	1,165,713	1,109,934	1,638,445	10.9	47.6	12.5
3 중국	852,565	943,028	1,100,932	1,291,642	1,425,765	9.5	10.4	13.7
4 베트남	416,748	656,647	1,071,551	1,078,019	1,308,083	8.7	21.3	33.1
5 호주	681,729	692,832	818,258	488,396	1,063,435	7.1	117.7	11.8
6 말레이시아	809,080	759,200	676,490	772,344	960,706	6.4	24.4	4.4
7 태국	678,839	1,084,820	753,895	602,848	618,537	4.1	2.6	△2.3
8 싱가포르	430,985	458,279	465,691	473,834	546,828	3.7	15.4	6.1
9 브라질	114,234	205,947	298,878	268,818	432,072	2.9	60.7	39.5
10 인도	206,533	300,258	210,203	215,421	406,347	2.7	88.6	18.4
21 한국	89,032	68,850	74,652	96,657	106,593	0.7	10.3	4.6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메슬린 외 기타(기타)(11.6%), 대두박(8.3%), 참쌀(6.8%) 등이 있음
- * 메슬린 외 기타(기타) 품목의 수입액은 17억 3,948만 8,000달러(한화 약 2조 3,582억 원)로 전년 대비 24.5% 증가
- * 대두박 품목 수입액은 12억 3,569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6,752억 원)로, 전년 대비 40.4% 증가함
- * 뒤이어 참쌀의 경우 전년 대비 49.9% 증가한 10억 2,149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3,848억 원) 규모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0,165,787	12,112,466	12,491,610	11,823,304	14,969,761	100.0	26.6	10.2
1 메슬린 외 기타 (기타) *밀	-	1,499,277	1,535,431	1,397,140	1,739,488	11.6	24.5	N/A
2 대두박 *박류	559,873	1,026,383	973,306	880,229	1,235,695	8.3	40.4	21.9
3 참쌀	231,423	662,896	921,728	681,598	1,021,495	6.8	49.9	44.9
4 조제품 기타	670,361	642,908	725,602	725,202	847,454	5.7	16.9	6.0
5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기타) *기타 동물성 유지	599,104	541,135	561,981	670,927	633,003	4.2	△5.7	1
6 팜유와 그 분획물 (조유, 팜 올레인, 팜 스테아린 외)	180,769	176,235	30,035	52,197	573,734	3.8	999.2	33.5
7 쇠고기 (냉동/뼈 없는 것)	348,091	388,170	366,147	322,981	470,265	3.1	45.6	7.8
8 탈지분유 외 기타 (농축/설탕 및 감미료 첨가/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326,811	286,076	365,457	435,650	452,601	3.0	3.9	8.5
9 커피조제품 기타	219,675	411,891	451,467	338,473	436,549	2.9	29.0	18.7
10 닭 (기타 설육/냉동)	204,492	239,415	278,207	259,257	386,419	2.6	49.0	17.2

*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필리핀 농식품 수출현황

- 한국산 농식품의 對필리핀 수출액 전년 대비 13.9% 증가한 2억 79만 6,300달러(한화 약 2,722억 원)로 집계됨
 - 전체 수출액 중 농산물 수출액은 1억 7,589만 7,000달러(한화 약 2,385억 원)로 87.6% 차지
 - * 축산물 수출액은 1,577만 6,800달러(한화 약 214억 원)로 전년 대비 90.4%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출 비중 7.9%에 불과
 - * 임산물 수출액 전년 대비 5.4% 감소한 912만 2,500달러(한화 약 124억 원)로 전체 농식품 수출의 4.5% 차지

-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의 비중이 가장 크고(14.0%), 조제품 기타(8.0%), 리큐르(4.0%), 아이스크림(코코아를 함유한 것)(3.9%),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 음료(3.9%) 순으로 확인됨

* 라면 수출액은 2,816만 2,500달러(한화 약 382억 원)로 전년 대비 19.0% 증가하였으며 2017년 이후 연평균 19.6%의 증가세를 보임

* 조제품 기타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1,613만 1,300달러(한화 약 219억 원)로 집계됨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 규모(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50,212.2	130,345.6	133,312.4	176,339.0	200,796.3	100.0	13.9	7.5
농산물	142,019.2	117,614.1	117,585.5	158,413.8	175,897.0	87.6	11.0	5.5
축산물	3,755.2	4,249.3	6,867.1	8,285.9	15,776.8	7.9	90.4	43.2
임산물	4,437.8	8,482.2	8,859.8	9,639.3	9,122.5	4.5	△5.4	19.7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한국의 對필리핀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43,224.3	150,212.2	130,345.6	133,312.4	176,339.0	100	13.9	7.5
1 라면	13,783.7	12,093.5	14,436.4	23,671.0	28,162.5	14.0	19.0	19.6
2 혼합조제 식료품	15,595.5	16,594.5	16,515.8	16,693.6	16,131.3	8.0	△3.4	0.8
3 리큐르	378.7	311.1	2,077.1	10,556.5	8,120.0	4.0	△23.1	115.2
4 아이스크림 (코코아를 함유한 것)	3,942.9	4,430.9	5,070.3	4,787.5	7,765.9	3.9	62.2	18.5
5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 음료	1,831.4	2,082.3	3,144.6	4,300.0	7,023.1	3.5	63.3	39.9

*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시료, 담배, 섬유판, 종자 등은 제외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필리핀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①수입신고 → ②검사 및 검역 → ③관세납부 → ④물품반출 순으로 진행됨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동식물 위생법 및 식품안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자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은 수입 불가
 - 수출 전 현지 수입업체는 수입면허(CAS)를 취득해야 함
 - * 농축산식품 수입 시 위생/검역증명서(SPSIC)를 발급받아야 하며, 가공식품은 사전에 필리핀 식약청에 등록(CPR)되어야 함
 - * 필리핀 무역산업부 수입서비스국을 통해 수입가능 품목인지 사전 파악이 필요함
 - 단일통관창구(NSW)를 통해 수입 신고하며 제반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일괄 제출 가능
 - * 제출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
 -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슈퍼그린레인(Super Green Lane), 그린레인(Green Lane), 레드레인(Red Lane)으로 분류해 검사 및 검역이 진행됨
 - * 그린레인은 서류 검사만 진행되나, 레드레인은 전수검사를 시행함
 - * 우수인증기업은 슈퍼그린레인 제도를 통해 검사 생략 또는 통관 간소화 혜택을 부여
 - 관세는 필리핀 정부가 지정한 공인 은행에서만 납부 가능하며 필요시 상품의 샘플 검사가 시행될 수 있음
 - * 과세가격은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관세와 더불어 부가세(12%), 특별소비세(Excise Tax), 물품세 등을 부과
 - * 신규 반입 품목의 경우 관행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
 - 검사 등 통관과정 상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물품반출을 허가함

단계	내용
수출 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수입업체는 수입면허(CAS)를 취득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 식품 수입 시 위생/검역증명서(SPSIC)를 발급받아야 함 - 가공식품은 사전에 필리핀 식약청에 등록(CPR)되어야 함 • 필리핀 무역산업부 수입서비스국을 통해 수입 가능품목인지 사전 파악 필요
수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통관창구(NSW)를 통해 수입신고하며 제반 서류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일괄 제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
검사 및 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슈퍼그린레인(Super Green Lane), 그린레인(Green Lane), 레드레인(Red Lane)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레인은 서류검사를 시행하며, 레드레인은 전수검사 시행 - 우수인증기업은 슈퍼그린레인 제도를 통해 검사 생략 또는 통관 간소화 혜택을 부여

관세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정부가 지정한 공인 은행에서만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상품의 샘플검사가 시행될 수 있음 • 과세가격은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 관세, 부가세(12%), 특별소비세(Excise Tax), 물품세 등을 부과 • 신규 반입품목의 경우 관행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
물품반출	<p>검사 등 통관과정 상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물품 반출을 허가함</p>

* 출처 : 필리핀 관세청(www.customs.go.ph)

● 수입되는 가공식품 전반에 식약청 제품 등록을 요구함

-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관리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 제품 등록제도를 운영

* 모든 가공식품이 등록되어야 하며 수입면허(CAS)를 보유한 업체만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됨

- 위험도에 따른 가공식품 분류

*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은 가공식품을 위험도에 따라 두 개로 분류하여 등록 업무를 진행하는데, 카테고리별로 소요 기간과 비용에 다소 차이가 있음

1유형(저위험)	2유형(중·고위험)
<p>빵 및 관련 제품, 사탕 및 과자, 비일코올음료 및 음료 믹스 코코아 및 관련 제품, 커피, 차, 프림(Non-Dairy Creamer) 양념, 소스, 드레싱, 스프레드 요리용 제품, 젤라틴, 디저트 믹스, 유제품, 밀가루, 밀가루 믹스, 녹말, 수산물, 과일, 채소, 포장 육류 제품, 면, 파스타, 호두, 기름, 지방, 쇼트닝, 스낵, 시리얼, 설탕 및 관련 제품</p>	<p>알코올음료, 식품보조제, 차, 병에 담긴 생수 영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 특별 식이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유전공학/바이오테크 사용) 필리핀에서 흔하지 않은 재료로 만든 식품</p>

- 제품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수입업체/유통업체의 신청서
- 평가표(Assessment Slip)
- 제품 리스트
- 공증된 진술서(Affidavit of Undertaking)
- 라벨, 다각도(최소 2개 측면)에서 촬영된 제품사진
- 다음 서류의 원본 스캔본 :
 - 대리점계약서, 판매인증서, 위촉장, 견적송장, 제조업체의 양해각서
- 다음 서류 중 하나 :
 - 제조자 GMP 인증서 혹은 동등한 서류, 유효한 위생증명서, 유효한 ISO 22000 인증서, 원산국에서 발행한 HACCP 인증서, 원산국에서 인증된 기관이나 상공회의소 혹은 원산국의 필리핀 영사관의 자유판매증명서
- 필요시 기술 혹은 영양연구 또는 보고서, 시장조사보고서, 검사증명서 등 입증 서류
- 표준과 규제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검역제도

- 필리핀의 검역제도는 크게 동물성 제품과 식물성 제품으로 구분되어 관리됨
 - 수입 동물성 제품은 동물산업국(BAI)에서 발행한 수의학검역허가증(VQC) 발급이 필수임
 - * 30개월 미만의 소와 도축 전 중추신경 관련 질병이 없는 소만 수입이 가능
 - * 동물성 제품의 라벨에 상표명, 원산지, 제품고유번호, 설명 및 성분정보, 생산일자, 유효기간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함
 - 수입 식물성 제품 또한 식물산업국(BPI)의 식물위생검역허가증(PQC)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함
 - * 이와 함께 수출국 식물위생증명서(PC) 발급이 요구됨
 - * 식물성 제품에서 파생된 제품이나 유전자변형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통제 대상에 해당하여 별도 허가가 필요

식품 분류	필수 발급서류	내용
동물성 제품	수의학 검역허가증 (VQ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I(Bureau of Animal Industry)에서 발행 • 수입 전 정식 수입업자가 신청해야 함 • 타인 양도가 불가하며 유효 기간은 최대 60일
식물성 제품	식물위생검역허가증 (PQ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I(Bureau of Plan Industry)에서 발행 • 수입 전 정식 수입업자가 신청해야 함 • 신선 및 냉동 제품 모두 동일함

- 필리핀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 전 수출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을 파악해야 함
 - 필리핀으로 수출 가능한 한국 식품은 7종 36개 품목이며, 일부 품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 후 수출 가능함

대상품목	주요 수출요건 및 식물위생증(PC) 부기사항
사과,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서 구비 • 상업용 화물만 수출이 가능하며 휴대 화물은 수출 금지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출 전 필리핀 식물검역소에 모든 수출자 및 거래 상표명 (corresponding brand names)을 통보 • 모든 포장 박스 3면에 'FOR PHILIPPINES' 표기 • 모든 컨테이너를 봉인(seal) 한 후, 봉인번호를 PC의 식별표시란 (Distinguishing Marks)에 표기 <p>※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화물 선적 전 필리핀 식물검역소장에게 수입허가서, PC 등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야 함.</p>

양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서 구비 • 상업용 화물만 수출이 가능하며 휴대 화물은 수출 금지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출 전 필리핀 식물검역소에 수출업자 명단(주소포함)을 통보 • PC 부기사항 : 수입업자의 수입허가 번호
파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서 구비 • 재배온실 및 선과장 등록 및 관리 필요 • 보관 및 수송 중 저온(10℃ 이하)으로 유지
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서 구비 • 모든 컨테이너를 봉인(Seal) 한 후, 봉인번호를 PC의 식별표시란 (Distinguishing Marks)에 표기 • 수입업자의 수입허가 번호를 PC 부기사항에 기재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서 구비 • 제주도 산 생과실 감귤만 수출 가능 • 수출단지(선과장, 과수원) 등록 필요
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서 구비 • 수출선과장 및 온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 필요 (재배지검역(2회) 실시 및 벚초파리 트랩조사) •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PC 부기사항 : Fresh strawberry fruits are exported in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stated in the bilateral agreement. These have been by the APQA and are found to be free from quarantine pests of concern to the philippines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 수출 가능 품목

협상 타결 품목

- 농산물
 - 사과, 배, 단감, 양파, 감귤, 파프리카, 딸기
- 축산물
 - 유제품
 - * 최근 한국의 ASF 발생으로 멸균여부와 관계없이 돈육기반제품은 수입금지

협상 없이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 과실류 : 사과, 배, 감, 단감, 감귤
 - * 감귤 :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필리핀 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채소류 : 양파, 딸기, 파프리카
 - * 딸기 :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필리핀 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 파프리카 :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필리핀 측과 합의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 가능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수박, 오이, 호박, 참외, 토마토, 고추, 시금치, 파, 상추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새송이, 팽이버섯 등 모든 버섯류
 - * 버섯류 수출 시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The fresh mushrooms are grown in isolated controlled area and all materials used are sterilized. The consignment is free from injurious plant pests and diseases"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 난초, 국화, 튜립, 백합, 글라디올러스
 - 화훼류 기타 : 다육식물
 - * 다육식물류 수출 시 *Trichodorus* sp.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거나 테스트를 통해 *Trichodorus* sp. 무감염을 증명해야 함
- 축산물
 - 개·고양이 사료, 젤라틴, 오징어간 분말, 사료첨가제(동물성 원료 미사용), 소가죽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과일류 : 포도, 복숭아, 참다래, 자두, 살구, 밤, 대추, 은행, 망고
- 채소류 : 멜론(참외), 토마토, 고구마, 인삼, 무, 배추, 오이, 호박, 피망
- 묘목류 : 딸기묘, 잔디묘

* 상기 품목 외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 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축산물

- 우유, 가금육, 식육가공품(열처리축산물 등)*

* 한국의 ASF 발생으로 멸균여부와 관계없이 돈육기반제품은 수입금지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ShineKmart(필리핀)
업체 유형	수입유통업체
담당자명	Mr.Michael

- 필리핀에서는 라면, 스낵류, 냉동식품, 음료 등 가공식품류와 김치, 생고기 등 다양한 한국 식품이 인기가 있고 잘 판매되고 있음
- 한국산 바나나, 배, 사과는 가끔 취급하지만, 한국산 과일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고소득층이 주로 구매하며 과일과 채소는 필리핀 인근 국가에서 더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으므로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의 수요가 더 높고 수입도 많이 하고 있음
- 한국산 인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인기가 높아졌으나 인삼 가격이 높아서 실제 구매 인구는 적은 편임
- 필리핀의 농산물 수입은 품목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며, 규제기관의 업무 지연으로 인해 수입 프로세스가 종종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함
- 이에 필리핀 정부는 최근 수입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입 규제 부문을 분권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주요 식품안전 관련 이슈로는 WHO 기준치보다 높은 요오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인스턴트 음식 증가로 정부가 식품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03

비관세 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필리핀은 1970년 행정명령 제122호 시리즈에 규정된 금지를 해제하여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사이클람산 및 그 염의 사용을 허용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필리핀 농수산물 표준사무국(BAFPS) MRLS List	https://bafs.da.gov.ph/bafs_admin/admin_page/pns_file/2021-02-24-PNSBAFS%20160-2015%20PesticideResidue%20MRLs_mango.pdf
식품 첨가물 허용치	필리핀 식품의약청(FDA) 식품 첨가물 표준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1/05/Bureau-Circular-No.-2006-016.pdf
미생물 규정	필리핀 식품의약청(FDA) 가공식품의 미생물학적 품질 평가 (FDA Circular No.2013-101)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1/03/FDA-Circular-No.-2013-010.pdf

통보문 개정현황(2022년)

- 개정사항 없음

2. TBT

주요 TBT 내용

- 필리핀 FDA는 FDA 회람 제2013-010호 “가공식품의 미생물 품질평가를 위한 개정된 지침”을 폐지하고,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함. 이는 특정 가공식품의 미생물 품질평가를 위한 업데이트 지침을 제공하며, 식품 제조업체가 우수제조관리기준(GMP)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 필리핀은 2023년 6월 18일까지 필리핀 식품 공급망에서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 지방산 (TFA)을 제거하기 위해 2021년에 발행된 지침을 업데이트함
- 필리핀 보건부는 현대 기술의 사용으로 파생된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유전자 변형(GM) 신고가 필요한 수입 상품 목록을 행정명령 AO 08 Series of 2002에 지정하고, 해당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
- 필리핀 FDA는 경계선상에 있는 건강식품의 분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초안을 발표함. 시행령에는 경계선상의 제품과 이의 지정 제품 범주 내의 예비목록 제공, 제품 분류 결정 시 고려사항, 적절한 재분류를 위한 과도기간에 대한 지침을 포함함
- 필리핀 FDA는 제품 등록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인증서 수정 프로세스 단계 및 이와 관련한 추가 지침은 포함하고, “원료 및 사전포장 가공식품에 대한 변경된 전자등록 시스템 사용절차”와 “사전포장 가공식품에 대한 전자등록 시스템 사용절차”를 폐지함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필리핀 식품의약청(FDA)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1/03/Administrative-Order-No.-2014-0030.pdf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상품명 또는 상표 • 성분 목록 • 중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상호와 주소 • 제품번호 • 보관조건 •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알레르기 정보 • 사용(섭취) 방법 • 영양정보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영어 또는 타갈로그어로 표기할 것(혼용 가능) 외국어로 표기된 정보는 반드시 영문 번역을 첨부할 것	
	제품명	제품명은 구체적이고 식품의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을 사용할 것 식품 기준상 특정 식품을 지칭하는 제품명 또는 이름이 존재하는 경우, 그중 하나를 사용할 것 식품의 성격과 상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단어나 문구를 표시할 것(예 : 건조, 농축, 훈제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중량	미터법과 같은 국제적 단위로 기재할 것 액상 식품의 경우, 부피기준으로 표기할 것 고체 식품의 경우, 무게로 표시할 것 반고체 또는 점성 식품의 경우, 무게 또는 부피 중 하나를 선택할 것	
	성분 목록	함량이 많은 성분부터 나열할 것(첨가제, 착향료, 보존제 포함)	
	유통기한	날짜, 월, 연도순으로 표기할 것 날짜와 연도는 숫자로, 월은 문자로 표기할 것	
	업체 상호와 주소	제조업체, 포장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상호와 주소 표기할 것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자와 원산지 국가의 완전한 이름과 주소를 기재할 것 제 2국에서 가공되어 식품의 본질이 변경된 경우, 제 2국을 라벨링 상의 원산지국으로 간주할 것	
	제품번호	제품 포장용기에 양각으로 새기거나 영구적으로 표기할 것	
	알코올 음료 표기사항	알코올 농도는 % vol 단위로 표기할 것	
	보관조건	실온보관 이외 조건이 필요한 제품은 보관조건을 분명하고 눈에 띄게 표기할 것	
	사용(섭취) 방법	식품의 적절한 활용 또는 섭취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것	
	식품 알레르기 정보	성분 목록 바로 아래에 분명하고 눈에 띄게 표기할 것	
	영양정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칼로리를 표로 표기할 것	

* 자료 : 필리핀 식품의약품(FDA), 포장식품 라벨 통칙(AO 2014-0030)

• 가정 편의식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KC 시그니처 순살 치킨 파스텔									
원재료명 (원료·원산지명)/ 첨가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고기 - 소시지 - 감자 - 초리조 - 당근 - 치즈 및 치즈 제품 - 크림 - 버터 - 흰 밀가루 - 우유 - 흰 양파 - 화이트 와인 - 레드 벨 페퍼 - 풋고추(녹색) 									
내용량	600g									
보존방법	냉동									
제조사	Artemisplus Express									
제조지(원산지)	필리핀									
유통기한	2022. 11. 10									
영양성분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칼로리)</td> <td style="text-align: right;">774kcal</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백질</td> <td style="text-align: right;">110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td> <td style="text-align: right;">22g</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탄수화물</td> <td style="text-align: right;">39g</td> </tr> </table>		에너지(칼로리)	774kcal	단백질	110g	지방	22g	탄수화물	39g
에너지(칼로리)	774kcal									
단백질	110g									
지방	22g									
탄수화물	39g									
알레르겐 주의 성분	우유, 셀러리									

• 디저트 토핑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딸기 시럽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과당 옥수수 시럽 - 물 - 포도당 시럽 - 인공 향미 물질, 구연산(식품산) - 벤조산나트륨(신선함 유지, 향산화제) - 잔탄검 - 알루라 레드 AC(인공, 식용색소, 인공색소) 	
내용량	623g	
출시일(발행일)	2022. 01. 18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Hershey's 허쉬스	
영양성분표시(100g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제공량 19g - 총 32회 제공 	
	에너지	50kcal
	단백질	0g
	지방	0g
	콜레스테롤	0g
	나트륨	0g
	탄수화물	120g
	당류	11g


인증

[필수 인증]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에 요구되는 식품등록(CPR)을 위해서는 GMP, HACCP 또는 ISO 22000 인증 중 적어도 하나를 필수로 취득해야 함
- GMP 인증
 - 우수제조기준 인증으로 식품의 생산 안전성과 생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인증


인증명	GMP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필리핀 식약청 혹은 타 인증기업	
적용품목	농업, 식품 제조업	
유효 기간	3년	
소요기간	신청제품에 따라 상이함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및 심사 → 판정 → 인증발급	

- ISO 22000
 - ISO 22000 인증은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특히식품공급사슬의모든조직이자율적으로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통합적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임

인증명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발행 및 검사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신청조직 관련정보, 프로세스라인, 해썬 연구 정보 및 계획서, 작업교대 횡수 관련 정보, 업무흐름도, 문서체계표 등	
비용	신청제품에 따라 상이함	
소요기간	4~8개월	
유효기간	3년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심사 → 판정 → 인증발급 → 사후관리	


• HACCP

- HACCP 인 증은 농 축 산 물 및 식 품 의 생 산, 가 공, 유통 등 의 과 정 에 서 발 생 할 수 있 는 제 품 의 오 염 을 방 지 하 기 위 한 인 증 제 도 임

인 증 명	HACCP(품 질 안 전 인 증)	
발 행 및 검 사 기 관	한 국 식 품 안 전 관 리 인 증 원	
강 제 유 무	필 수	
제 출 서 류	영 업 허 가 증 사 본, 제 품 생 산 현 황, 제 조 및 검 사 기 계, 기 구 목 록, HACCP 실 시 상 황 자 체 평 가 표(3개 월 이 상 의 적 용 실 적), HACCP 관 리 기 준 서 및 관 련 서 식, 위 생 관 리 기 준 서 및 관 련 서 식, 교 육 훈 련 수 료 증 사 본(HACCP 팀 장, HACCP 담 당 자)	
비 용	신 청 제 품 에 따 라 상 이 함	
소 요 기 간	3~5개 월	
절 차	서 류 제 출 → 서 류 검 토 → 현 장 실 시 및 시 설 조 사 → 판 정 → 인 증 발 급	

• 필 리 핀 식 품 의 약 품 청 등 록

- 국 민 의 건 강 을 지 키 고, 안 전 을 도 모 하 기 위 한 시 스 템 을 확 립 하 고 자 도 입 함. 모 든 절 차 를 진 행 하 기 앞 서 해 당 물 품 의 수 입 적 합 여 부 는 수 입 서 비 스 국(Bureau of Import Services, BIS)을 통 해 사 전 에 확 인 해 야 함

인 증 명	필 리 핀 식 품 의 약 품 청 등 록	
발 행 및 검 사 기 관	필 리 핀 식 품 의 약 품 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강 제 유 무	필 수	
제 출 서 류	영 업 허 가 증 사 본, 제 품 생 산 현 황, 제 조 및 검 사 기 계, 기 구 목 록, HACCP 실 시 상 황 자 체 평 가 표(3개 월 이 상 의 적 용 실 적), HACCP 관 리 기 준 서 및 관 련 서 식, 위 생 관 리 기 준 서 및 관 련 서 식, 교 육 훈 련 수 료 증 사 본(HACCP 팀 장, HACCP 담 당 자)	
비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 위 험 식 품 - 2,500 PHP • 중, 고 위 험 식 품 - 3,000 PHP • 식 품 보 조 제 - 15,000 PHP 	
소 요 기 간	20일	
절 차	CFRR 전 자 등 록 시 스 템 계 정 발 급 → 상 품 등 록 증(CPR) 신 청 → 사 전 평 가 → 비 용 지 불 → 상 품 등 록 증(CPR) 발 급	

04

수출 애로사항

No.	제목	필리핀 FDA 식품등록	해당국가	필리핀
			관련품목	식품 전반
			유형*	TBT
1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식품의약품 안전처법에 따르면, FDA에 등록되지 않은 건강 제품(식품을 포함함)은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및 유통, 이전, 소비자의 사용, 홍보, 광고 등이 금지됨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현지의 인증 수입자를 통해 제품등록인증서를 신청해야 하며, 제품등록 인증서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채 판매되면 리콜 조치 대상이 됨 • 따라서, 한국산 식품의 리콜 사례 현상은 현지 수입자가 수입 식품의 제품등록 인증서를 연장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리콜 조치된 식품은 총 99건으로, 문제 사유는 1개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필리핀 FDA에 식품을 등록 또는 갱신하지 않아 리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됨 			
기타	※ 관련 규정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09' 제11조			

No.	제목	수입통관 시, 다양한 서류 구비의 애로사항	해당국가	필리핀
			관련품목	식품 전반
			유형*	수입통관
2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제품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때문에, 사업면허번호(LTO)와 제품등록 신청서(CPR) 문서를 제시해야 함 - LTO 발급 시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수수료 지급 증명서, 업체 등록 증명서, 업체 소재지 증명서, 제품리스트, 위치도, 제조업체의 평면도/배치도 • 수입업체는 필리핀 식약청에서 발부한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제품을 등록할 수 있음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출 국가의 규정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 증명서를 수반해야 함. 위생증명서는 입국 시 통관 및 상품의 수량 검사를 돕는 수입허가서와 함께 검사를 위해 제출되어야 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식약청(FDA)을 통과하기 위해 서류 작업을 많이 거쳐야 함 			
기타	-			

신남방

말레이시아 MALAYSIA

2022년 한눈에 보이는
말레이시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334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345
03. 비관세 장벽 현황	347
04. 수출 애로사항	354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356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농식품 시장규모는 405억 1,850만 달러(한화 약 54조 9,309억 원)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함
 - 전체 식품시장에서 신선식품의 비중은 45.3%, 가공식품은 54.7%로 구분됨
 - * 신선식품 품목 중 육류가 59억 8,700만 달러(한화 약 8조 1,166억 원)로 가장 큰 비중(14.8%)을 차지하며, 뒤이어 채소류(11.9%), 과일 및 견과류(8.5%), 유제품 및 낙농품(8.4%), 유지류(1.8%) 순임
 - * 가공식품 품목 중 시장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스낵류로 84억 9,900만 달러(한화 약 9조 601억 원)이며,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편의식품, 영유아용 식품, 소스 및 향신료 순임

식품시장 규모(2017~2021)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8,973.6	33,504.8	35,226.1	36,248.6	40,518.5	100.0	11.8
신선식품	13,195.9	15,238.9	16,005.1	16,455.6	18,371.5	45.3	11.6
- 육류	4,339.0	5,002.0	5,240.0	5,373.0	5,987.0	14.8	11.4
- 채소류	3,443.0	3,986.0	4,193.0	4,316.0	4,829.0	11.9	11.9
- 과일 및 견과류	2,447.0	2,832.0	2,979.0	3,066.0	3,429.0	8.5	11.8
- 유제품 및 낙농품	2,448.0	2,821.0	2,967.0	3,059.0	3,412.0	8.4	11.5
- 유지류	518.9	597.9	626.1	641.6	714.5	1.8	11.4
가공식품	15,777.7	18,265.9	19,221.0	19,793.0	22,147.0	54.7	11.9
- 스낵류	5,877.0	6,862.0	7,275.0	7,543.0	8,499.0	21.0	12.7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4,823.0	5,566.0	5,838.0	5,992.0	6,683.0	16.5	11.5
- 편의식품	1,883.0	2,172.0	2,278.0	2,338.0	2,607.0	6.4	11.5
- 영유아용 식품	1,444.0	1,665.0	1,745.0	1,789.0	1,994.0	4.9	11.5
- 소스 및 향신료	879.7	1,014.0	1,063.0	1,090.0	1,214.0	3.0	11.4
- 스프레드 및 당류	871.0	986.9	1,022.0	1,041.0	1,150.0	2.8	10.5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3,357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함
 - 연령대 별 인구수는 균등한 편이며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23.5% 수준임
 - 여성 인구수는 1,640만 명(약 48.9%), 남성 인구수는 1,720만 명(51.1%)으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음
- 2021년 가구수는 664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6,620달러(한화 약 898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0년 대비 7.2% 증가함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1,520달러(한화 약 206만 원)로 약 23.0%의 비중이며, 전년 대비 4.9% 증가함
-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236.10달러(한화 약 168만 원)로 집계됨
 -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560.40달러(한화 약 76만 원) 수준으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45.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2% 증가함
 - 가공식품 소비액은 총 675.70달러(한화 약 92만 원)이며, 스낵류가 259.30달러(한화 약 35만 원)로 가장 큰 비중(21.0%)을 차지함

1인당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931.50	1,062.66	1,102.45	1,119.99	1,236.10	100.0	10.4
신선식품	424.27	483.27	500.89	508.47	560.40	45.3	10.2
- 육류	139.50	158.60	164.00	166.00	182.60	14.8	10.0
- 채소류	110.70	126.40	131.20	133.40	147.30	11.9	10.4
- 과일 및 견과류	78.68	89.83	93.23	94.72	104.60	8.5	10.4
- 낙농품 및 난류	78.71	89.48	92.86	94.53	104.10	8.4	10.1
- 유지류	16.68	18.96	19.60	19.82	21.80	1.8	10.0
가공식품	507.23	579.39	601.56	611.52	675.70	54.7	10.5
- 스낵류	188.90	217.70	227.70	233.10	259.30	21.0	11.2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55.10	176.50	182.70	185.10	203.90	16.5	10.2
- 편의식품	60.52	68.90	71.30	72.23	79.55	6.4	10.1
- 영유아용 식품	46.43	52.82	54.61	55.28	60.82	4.9	10.0
- 소스 및 향신료	28.28	32.17	33.26	33.66	37.04	3.0	10.0
- 스프레드 및 당류	28.00	31.30	31.99	32.15	35.09	2.8	9.1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 신선식품 주요 품목 중 1인당 소비량이 가장 큰 품목은 채소류로 총 71.81kg이며, 전년 대비 3.7%의 증가율을 보임

* 낙농품 소비량은 34.54kg, 과일 및 견과류 29.80kg, 육류 20.49kg, 유지류 3.57kg 수준으로 소비됨

- 가공식품 중에서는 2021년 1인당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량이 124.18kg으로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2.8% 증가함

* 뒤이어 스낵류 46.83kg, 편의식품 18.02kg, 스프레드 및 당류 12.06kg, 소스 및 향신료 12.00kg, 영유아용 식품 9.60kg 순으로 집계되며, 모든 가공식품 품목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1인당 식품 소비량(2017~2021)

(단위 : 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62.31	65.02	67.67	69.26	71.81	3.7
	- 낙농품	29.80	31.04	32.25	33.29	34.54	3.8
	- 과일 및 견과류	27.10	27.80	28.44	28.98	29.80	2.8
	- 육류	16.78	17.85	18.97	19.61	20.49	4.5
	- 유지류	3.18	3.29	3.39	3.47	3.57	2.9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11.62	115.09	118.44	120.83	124.18	2.8
	- 스낵류	40.49	42.21	43.85	45.13	46.83	3.7
	- 편의식품	16.14	16.66	17.16	17.52	18.02	2.9
	- 스프레드 및 당류	11.14	11.36	11.62	11.80	12.06	2.2
	- 소스 및 향신료	10.77	11.11	11.45	11.68	12.00	2.8
	- 영유아용 식품	8.62	8.89	9.15	9.34	9.60	2.8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팻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말레이시아의 농식품 수출액은 약 284억 7,447만 2,000달러(한화 약 38조 6,028억 원)로 전년 대비 34.1% 증가함
 - 주요 수출국은 인도(13.7%), 중국(10.9%), 싱가포르(8.8%)이며,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1.9%로 집계
 - * 인도로의 수출액은 약 39억 58만 9,000달러(한화 약 5조 2,880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도 수출 규모의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됨
 - * 對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약 30억 9,443만 5,000달러(한화 약 4조 1,951억 원), 對싱가포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25억 1,173만 5,000달러(한화 약 3조 4,052억 원)로 집계됨
 - * 한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5억 4,659만 달러(한화 약 7,410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35.4%의 큰 증가율을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21,192,420	20,019,699	19,843,620	21,227,027	28,474,472	100.0	34.1	7.7
1 인도	1,435,333	1,416,260	2,309,156	1,829,206	3,900,589	13.7	113.2	28.4
2 중국	1,967,448	1,936,773	2,198,833	2,691,661	3,094,435	10.9	15.0	12.0
3 싱가포르	2,037,371	2,117,636	2,249,258	2,237,972	2,511,735	8.8	12.2	5.4
4 네덜란드	1,005,480	901,583	719,881	1,178,101	1,845,778	6.5	56.7	16.4
5 필리핀	916,801	842,313	735,680	828,116	1,064,684	3.7	28.6	3.8
6 터키	664,356	582,241	591,933	635,103	1,009,362	3.5	58.9	11.0
7 일본	808,875	735,362	769,447	743,028	956,477	3.4	28.7	4.3
8 베트남	828,658	713,294	672,124	587,803	864,419	3.0	47.1	1.1
9 케냐	174,395	162,561	120,205	359,658	855,804	3.0	137.9	48.8
10 미국	774,408	700,977	732,323	830,141	747,700	2.6	△9.9	△0.9
14 한국	411,828	377,230	357,637	403,602	546,590	1.9	35.4	7.3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 품목은 유지류 및 지방성 식품 등으로 나타남

- * 팜유와 그 분획물, 팜유(조유) 품목이 전체 수출 품목 중 49.8%를 차지하며, 기타 팜유와 그 분획물의 경우 전년 대비 34.8%, 팜유(조유)의 경우 전년 대비 67.1%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수출 품목은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기타)로, 전년 대비 2배 수준(107.2%)으로 수출 규모가 증가한 것이 확인됨
- * 유지류 품목 외에도 조제품 기타(2.9%), 조제식품 기타(1.9%), 기타 베이커리 제품(1.8%)이 상위 수출 품목에 해당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21,192,420	20,019,699	19,843,620	21,227,027	28,474,472	100.0	34.1	7.7
1 팜유와 그 분획물 (조유, 팜 올레인, 팜 스테아린 외)	7,835,231	6,745,797	6,653,504	6,857,318	9,241,424	32.5	34.8	4.2
2 팜유 (조유) *식물성 유지	1,877,985	1,954,636	1,944,965	2,955,489	4,937,815	17.3	67.1	27.3
3 기타 식물성유지	1,927,572	1,656,293	1,497,392	1,643,634	2,259,970	7.9	37.5	4.1
4 조제품 기타	612,013	645,665	676,064	680,377	811,535	2.9	19.3	7.3
5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기타) *기타 동물성 유지	82,947	128,038	202,837	357,030	739,639	2.6	107.2	72.8
6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377,629	390,851	613,186	599,725	604,794	2.1	0.8	12.5
7 기타 (조유, 정제유, 팜핵유, 바바수유 외)	480,209	330,721	229,976	339,788	559,809	2.0	64.8	3.9
8 바바수유 (조유) *식물성 유지	375,059	331,336	219,087	368,310	555,247	1.9	50.8	10.3
9 조제식품 (기타)	475,435	445,924	511,258	512,981	544,308	1.9	6.1	3.4
10 기타 베이커리 제품	407,006	483,322	457,814	330,805	506,083	1.8	53.0	5.6

* 주1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1년 농식품 수입액은 약 195억 640만 8,000달러(한화 약 26조 4,448억 원)로 전년 대비 22.9%, 연평균 7.7%로 증가함
 - 주요 수입국은 인도네시아(14.8%), 중국(10.0%), 아르헨티나(8.4%)이며,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 비중은 0.9%에 불과
 - * 인도네시아산 농식품의 수입액이 28억 9,535만 4,000달러(한화 약 3조 9,252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평균 13.2%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 최근 5년간 연평균 7.0% 증가세를 보이며, 2021년 기준 19억 4,489만 2,000달러(한화 약 2조 6,367억 원) 규모 수입
 - * 아르헨티나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34.7%가 증가한 약 16억 4,327만 4,000달러(한화 약 2조 2,278억 원)로 집계됨
 -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약 1억 6,975만 4,000달러(한화 약 2,301억 원)로 전년 대비 40.2% 증가하였으며, 2017년 이후 연평균 12.7% 증가세를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4,504,042	15,140,540	14,841,119	15,866,637	19,506,408	100.0	22.9	7.7
1 인도네시아	1,763,104	1,877,992	1,717,562	2,024,975	2,895,354	14.8	43.0	13.2
2 중국	1,485,429	1,593,801	1,689,580	1,909,746	1,944,892	10.0	1.8	7.0
3 아르헨티나	1,138,639	1,172,677	1,092,035	1,219,818	1,643,274	8.4	34.7	9.6
4 태국	1,063,438	1,331,715	1,188,054	980,649	1,567,319	8.0	59.8	10.2
5 인도	850,824	863,642	869,494	1,161,238	1,456,588	7.5	25.4	14.4
6 미국	972,931	972,222	1,113,246	1,047,586	1,198,652	6.1	14.4	5.4
7 호주	934,467	939,760	827,131	826,126	1,132,407	5.8	37.1	4.9
8 브라질	1,184,222	841,712	539,017	797,071	1,000,972	5.1	25.6	△4.1
9 싱가포르	551,600	616,578	572,025	554,917	692,964	3.6	24.9	5.9
10 뉴질랜드	642,732	628,664	613,818	587,948	572,586	2.9	△2.6	△2.8
20 한국	105,349	105,511	99,683	121,123	169,754	0.9	40.2	12.7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코코아 두, 기타 팜유 및 그 분획물, 조제품 기타 등의 품목을 주로 수입함

* 코코아 두 수입액은 2021년 약 12억 859만 9,000달러(한화 약 1조 6,385억 원)로 집계되며, 코코아버터, 코코아가루 등으로 재가공하여 수출하기 위해 코코아 두를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됨

* 기타 팜유 및 그 분획물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3배(215.2%) 증가하여 약 10억 597만 9,000달러(한화 약 1조 3,638억 원)로 확인되며, 조제품 기타 품목은 전년 대비 33.7% 증가한 약 10억 152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3,578억 원)가 수입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4,504,042	15,140,540	14,841,119	15,866,637	19,506,408	100.0	22.9	7.7
1 코코아 두 (볶은 것)	695,146	791,812	828,222	973,017	1,208,599	6.2	24.2	14.8
2 팜유와 그 분획물 (조유, 팜 올레인, 팜 스테아린 외)	189,837	177,954	92,969	319,177	1,005,979	5.2	215.2	51.7
3 조제품 기타	594,149	651,825	690,617	749,257	1,001,525	5.1	33.7	13.9
4 기타 사탕수수당 (편광도수 98.5도 초과)	886,883	683,727	567,469	719,101	811,741	4.2	12.9	△2.2
5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기타)	17,471	114,892	136,560	334,434	644,345	3.3	92.7	146.4
6 대두박 *박류	609,161	590,351	522,169	519,413	628,456	3.2	21.0	0.8
7 옥수수 (종자용, 사료용, 팜콘용 이외 기타)	531,829	546,030	477,094	441,043	627,844	3.2	42.4	4.2
8 찹쌀	346,429	404,340	450,083	578,479	565,733	2.9	△2.2	13.0
9 쇠고기 (냉동/뼈 없는 것)	468,233	462,854	417,846	467,432	504,683	2.6	8.0	1.9
10 기타 식물성유지	241,607	198,949	164,253	196,450	428,948	2.2	118.3	15.4

*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유박(찌꺼기), 종자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농식품 수출현황

- 한국산 농식품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액 1억 8,180만 8,600달러(한화 약 2,465억 원)로 전년 대비 36.4%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이 전체의 90.0%에 달하는 1억 6,366만 8,000달러(한화 약 2,219억 원)로 집계, 전년 대비 33.7% 증가세를 기록함
 - 축산물과 임산물 수출 비중은 각각 9.5%와 0.5%이며, 전년 대비 축산물은 큰 증가(121.0%)를 보인 반면 임산물은 크게 감소(△71.7%)하였음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수출 규모(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12,120	114,311	108,976	133,280	181,808.6	100.0	36.4	12.8
농산물	108,146	111,385	106,174	122,457	163,668	90.0	33.7	10.9
축산물	941	1,075	1,401	7,826	17,292.9	9.5	121.0	107.0
임산물	3,033	1,851	1,401	2,997	847	0.5	△71.7	△27.3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2021년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이며 옥수수전분, 커피조제품 순으로 수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2019년부터 3년간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이며 옥수수전분, 커피조제품, 딸기 등 또한 수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 2021년 말레이시아로 수출된 라면은 2,771만 달러(한화 약 376억 원) 임
 - * 옥수수전분은 약 864만 달러(한화 약 117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2020년보다 7.5% 증가함
 - * 커피 조제품은 전년 대비 23.3%의 큰 성장률 보이며 수출 3위로 기록됨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한국산 수출 상위 5개 품목(2019~2021)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라면	16,497	라면	19,185	라면	27,713
2	옥수수전분	9,073	옥수수전분	8,040	옥수수전분	8,639
3	커피조제품	5,459	커피조제품	7,555	커피조제품	6,034
4	옥수수유	4,722	비스킷	4,083	우지	5,485
5	딸기	4,659	딸기	3,779	프로필렌글리콜	4,937

* 주 : 기타 조제식료품, 전분박 등은 제외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통관은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서 관세제도를 담당하는 관세청(Royal Customs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음
 - 관세청에서는 수입 통관 및 관세 징수 등 법률 집행 업무를 담당하며, 관세청의 상위기관인 재무부는 집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행정을 담당함
 - 수입 식품의 검역은 말레이시아 검역처(MAQIS)에서 총괄하나 품목별로 검역 수행기관이 달라질 수 있음
- 수입통관을 위해 말레이시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준수해야 함
 - (사전준비) 현지 수입자는 품목에 따라 수입 면허 취득, 식품 사전 등록,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이 필요함
 - * 알코올음료, 동물성 제품, 육류 제품 수입 시 수입 면허 취득이 요구됨
 - * 보건부의 식품 안전 및 품질보증부(FoSIM)에 수입 식품 사전 등록이 필요함
 - * 「식품검역법」에 의거하여 수입국 요구 사항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역이 필요하며, 현지 국가에서도 수출국의 식물위생증명서를 요구함
 - (수입신고) 말레이시아에서는 포워딩 업체가 관세사 역할도 함께 병행하고 있어 기타 제반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며,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다강넛(Dagang.Net) 전자통관 서비스를 활용해야 함
 - (검사 및 검역) 물품검사는 전체 물품 중에서 약 5% 정도만 샘플로 선택하여 육안 및 스캔 검사를 실시하고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 없이 통관이 이뤄짐
 - * 다만, 블랙리스트나 수입 식품 규제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제품은 검사 대상이 되기도 함

통관 시 제출 서류

- 세관신고 양식(Custom No.1)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입국 권한 증명에 필요한 문서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 한-아세안 FTA 체결로 C/O 제출 필요

- 관세 제도 관리 기관은 관세청(Royal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법(Customs Act 1967)에 따라 처리함
 - 세관국의 관세부서에서는 무역진흥산업과(Trade Facilitation And Industry Branch) 업무는 보세구역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입 국경관리과(Import/Export and Border Control Branch) 업무는 수출관리 집행을 담당함
 - 말레이시아는 16개 지역 세관 및 1개 싱가포르 세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세관에서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관리 업무 등을 진행함

-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 기준은 대부분 20~30%의 증가세를 적용하나 품목에 따라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함
 - 상품코드 분류방식은 HS 코드(10단위)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출입되는 상품 모두 정확한 관세 코드에 맞게 분류되어야 함
 -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국 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해 농산물, 담배, 음료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은 한-아세안 FTA의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관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편임
 - * 관세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을 첨부해야 함
 - 수입품의 세금은 일부 품목에 한하여 판매세 및 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수입 통관 시 수입 관세를 납부하고 판매세 및 소비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 판매세는 0~10%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별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함
 - * 맥주, 포도주 등 알코올 제품에는 20%의 소비세를 부과함
 -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부품, 포장소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를 면제함

검역제도

- 수입품의 검사 및 검역은 「검역법(Malaysia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s Act 2011)」에 따라 검역처(MAQIS)에서 관할하며 식품 수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
 - (검사 신청) 수입된 식품이 수입허가를 받으면 제품검역이 진행되며, 수입식품의 품목에 따라 검역 담당 부서와 제출 서류가 분류됨
 - * 식물성 제품의 경우, 검역 신청시 수입허가서(AP), 식물위생증명서, 해충검역검사 및 식물 위생 규제 준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 동물성 제품의 경우, 검역 신청시 수입허가서(AP), 할랄 인증서, 수의검역부(DVS) 허가증, 육류 및 가공류 수출증서(FSIS Form 9060-5)를 제출함

- 식물성 제품은 「유해성 농작물 규정 법안」, 동물성 제품은 「도축법」에 근거하여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 방식을 진행함
 - (식물성 제품) 검역소에 도착하기 4일 전 식물위생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농업부 장관의 수입증명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함
 - * 농업부에 검역 신청 및 검역 비용을 납부하면 세관에 자동으로 통지됨
 - (동물성 제품) 수입되는 모든 육류 제품은 할랄(HALAL)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슬람개발부 (JAKIM)에서 인정한 도살장에서 도살된 제품이어야 함
 - * 수의검역부에 검역 신청 및 검역 비용을 납부하면, 검역 승인 후 동물 건강증명서가 발행되고 승인 내역과 증명서가 세관에 자동으로 통지됨

- 말레이시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지정되어 있어, 수출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함
 -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은 8개 품목 78개 종이며, 감귤 묘목, 국화묘, 옥수수종자는 수출이 불가능함

- 2021년 4월부터 말레이시아로 곡물 및 곡물 제품의 수입 시 말레이시아 검역당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와 수출국의 국립식물보호소에서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가 요구됨
 - 곡물 및 곡물 제품의 수입 요건으로 추가된 식물위생증명서의 경우 해충 및 오염 검사를 시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 외에 대상 제품의 검역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본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품목은 시리얼(10류), 제분 제품(11류), 채유종실(12류)로 해당 조치는 곡물 수입을 통해 유입되는 해충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2014년에는 콩과 옥수수 수입 시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된 바 있음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 수출 가능 품목

협상타결 품목

- 축산물
 - 소 정액, 우유 및 유가공품, 멸균돈육가공품

협상 없이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물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일류 : 감(단감), 밤, 참다래, 유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망고, 자두
 - * 감귤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에 ①수입허가서 번호, ②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 및 과일파리(Fruit fly) 무감염 사항 기재
 - 특작류 : 인삼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양파, 썩갓, 아욱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 버섯류 품목은 수출 시 위생증 또는 위생증 부기를 첨부하여야 함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 절화류 품목도 수출 시 위생증 또는 위생증 부기를 첨부하여야 함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 축산물
 - 오징어간 분말, 소가죽, 멸균 삼계탕, 물고기 사료, 사료첨가제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금지 품목 없음
 - 감귤 묘목, 국화묘, 옥수수종자, 딸기묘
- 축산물
 - 쇠고기, 가금육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Komart
업체 유형	한인마트
담당자명	김형창

- 신선식품으로는 한국 딸기와 감류가 인기가 많고 가공식품 중에서는 라면, 장, 소스류 등이 인기가 높음(소스류는 주로 한국 식당에 납품)
- 자사는 한국에서 농산물 수입하고 있으며, 주로 감, 사과, 배, 샤인머스켓 등의 신선식품을 일부 취급함. 그러나 신선식품의 경우 수입 절차가 복잡하고 통관 비용이 높아 한국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말레이시아인들보다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음
- 앞으로 한국산 야채와 잡곡류를 판매하고 싶으나 판매가격과 신선도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며, 딸기, 감 등 외에도 기타 한국산 과일에 수요가 있으나 가격 경쟁력이 아쉬움
- 농산물 수입 시 통관서류 준비, 검역절차 및 상품의 신선도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어렵게 통관을 통과한다 해도 시장가 대비 가격이 높고 신선식품에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음
-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농산물 포장 제품도 있는데, 이 경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받는 부분이 높은 시장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03 비관세 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말레이시아는 신선 베텔잎, 신선 고추, 신선 두리안 수입 시 신규 수입요건을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유전자변형작물은 오직 식품 및 사료용, 가공용으로 사용될 때만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판매가 허가됨. 말레이시아는 소량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과 대두가 판매를 허가했으며, 2013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공식품을 포함해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라벨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실효되지는 않음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식품 규정 1985에 따른 부칙	http://fsq.moh.gov.my/v6/xs/page.php?id=72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 규정 1985에 따른 부칙	http://fsq.moh.gov.my/v6/xs/page.php?id=72
유전자 변형 식품 라벨 지침	식품 라벨링 지침	http://fsq.moh.gov.my/v6/xs/page.php?id=441000080

통보문 개정현황(2022년)

- 개정사항 없음

2. TBT

주요 TBT 내용

- 식품 규정 1985 [P.U.(A) 437/85]의 규정 360A에 대한 개정
 - 총 용존 고형물(Total Dissolved Solids) 50mg/l의 최소 수준을 삽입하여 식품 규정 1985 [P.U.(A) 437/85]의 규정 360A를 개정함
 - * 해당 품목은 광천수(mineral water)(HS 코드 : 2201.10.10 00), 탄산수(aerated water)(HS 코드 : 2201.10.20. 00)
- 식품 규정 1985 [P.U.(A) 437/1985]에 대한 개정
 - 2021년 7월, 천연 광천수에 대한 국제식품규격에 부합하도록 천연 광천수 포장의 불소 함량에 대한 조건부 라벨링 요구사항에 새로운 단락을 삽입하여 1985년 식품 규정[P.U.(A) 437/1985]의 하위 규정 360A(11)를 개정함
 - 2021년 6월, 건조중량 기준으로 100g당 6.0 mg 이상의 철(푸마르산제일철) 및 260 µg 이상의 엽산을 함유해야 하는 1 kg 이하로 포장된 밀가루에 관한 새로운 하위규정(4A)을 삽입하여 1985년 식품규정[P.U.(A) 437/1985]의 규정 43을 개정. “저 트랜스지방산”과 그 조건에 대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를 삭제하고 “무트랜스지방산”과 그 조건에 대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를 삽입하여 제5차 부속서 A의 표 1을 개정함
 - 2021년 6월, 식품 규정 1985 [P.U.(A) 437/1985]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판매용 식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의 성분 목록에 추가된 물을 표시하는 요구사항을 삽입하여 제11(1)(e)호에 명시된 라벨링 요구사항을 개정. 칼륨 및 토코트리에놀이 풍부한 분획(TRF)에 대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에 요구되는 최소량을 삽입하여 제5차 부속서 A의 표 3을 개정함
 - 2022년 10월, 알코올 함량, 다른 성분 추가, 식품 첨가물 사용 및 라벨 요구사항에 관련된 알코올음료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식품 규정 1985 [P.U.(A) 437/85]의 일부 부칙 표 개정
 - 유아용 조제분유, 성장기 조제분유 및 어린이용 조제분유에서 1:2의 비율로 LNnT 60mg/100ml, 2-푸코실락토오스(2-FL) 120mg/100ml의 농도로, 허용된 선택적 성분으로 락토-N-네오테트라오스(LNnT)
 - * 어린이용 조제분유에서 60mg/100ml의 최대 농도로(조리된 형태), 허용된 선택적 성분으로 락토-N-네오테트라오스(LNnT)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말레이시아 식품안전품질본부	http://fsq.moh.gov.my/v6/xs/page.php?id=441000080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용량 • 성분 • 제조사 및 수입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 영양성분 • 유통기한 • 보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정보 (GMO 여부, 식품첨가제, 방사선조사 여부 등)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표기할 것	
		기타 추가 언어 병기 허용	
	제품명	제품의 명칭은 원재료의 일반 명칭 또는 학명으로 표기해야 함	
	용량	순중량 또는 부피 또는 내용물의 수로 표기해야 함	
	성분	모든 성분은 적절한 명칭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중량에 따른 내림차순으로 기재되어야 함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한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해야 함	
	제조사 및 수입업체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의 주소, 연락처, 정보를 기재해야 함	
	원산지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의 정보와 함께 원산지 정보도 기재해야 함	
	영양성분	영양성분은 100g(ml) 당 및 1회 제공분에 대한 형태로 표기해야 함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방은 필수로 표기해야 함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일/월/년' 또는 '월/년' 순으로 표기해야 함	
		유통기한의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함	
기타	품질에 관한 문구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식품의 기능에 관한 라벨링 규정을 따라야 함		

* 자료 : 말레이시아 식품안전품질본부(FSQD), KATI농식품수출정보

• 에너지 음료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와일드 베리 에너지 샷 음료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 베리류 및 기타 과일 혼합 - 콜린비타르트산염 - 과라나 추출물 - 그룹 B 비타민 - 엽산 - 수크랄로스 보존제 - 컨디셔너 	
내용량	90g	
출시일(발행일)	2022. 02. 23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Beta Maju	
제조지(원산지)	말레이시아	
영양성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제공량 90g - 총 1회 제공 	
	열량(Kcal)	9.90kcal
	단백질	0.27g
	탄수화물	15g
	당류	0.45g
	지방	0g

• 기타 부리 가공 스낵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오리지널 맛 새우 과자	
원재료명	- 카사바 전분 - 새우 - 팜 오일	- 소금 - 물 - 백설탕
내용량	70g	
출시일(발행일)	2022. 01. 14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Boon Lee Food Industries	
알레르겐 주의 성분	해산물, 갑각류	
영양성분 정보	- 제공량 100g당	
	열량(Kcal)	549kcal
	지방	33g
	포화지방	15g
	트랜스지방	0g
	콜레스테롤	25g
	식이섬유	1g
	당류	8g
	단백질	5g
	비타민 D	0mcg
	칼슘	52mg
	철분	0.3mg
칼륨	178mg	
원산지	말레이시아 생산	

인증

[필수 인증]

• JAKIM 할랄 인증

- 말레이시아는 인구 60% 이상이 무슬림인 거대 할랄 시장이며, 무슬림 인구의 올바른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서 인증을 도입함. 육류 및 육류기반의 제품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이외 식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임. JAKIM 할랄 인증 신청 대상자로는 제조업체, 포장업체, 도축업체, 물류업체 등이 있으며 인증대상으로 모든 식품 가공 산업뿐만 아니라 도축장이나 식당·연회 서비스업체까지도 적용됨.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슬람율법과 관련사항에 대한 말레이시아 지침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되는 할랄 제품들은 JAKIM 할랄 인증 또는 JAKIM과 교차인증되는 할랄 인증마크만 부착할 수 있음. JAKIM 할랄 인증과 교차인증이 가능한 외국 할랄 인증기관은 약 40개국 70여 개 이상이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의 할랄 인증도 해당됨. 교차인증이 가능함에도 말레이시아 무슬림 소비자들에게는 JAKIM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JAKIM의 할랄 인증을 직접 받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인증명	JAKIM 할랄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	
강제유무	필수(육류 제품, 권장(기타 식품))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명, 사업자등록증, 제품명과 제품설명 등 기본 정보 • 식품원료의 할랄 상태, 식품원료 설명서 또는 할랄 인증서(있는 경우) • 제조과정 순서도와 생산 절차 • HACCP, ISO, GHP, GMP, TQM 등과 같은 다른 인증서 • 육류 및 육류 기반 제품용 말레이시아 수의국의 수입허가서 사본 • 도축장을 위한 수의국 발급 수의학 건강증명서(VHC) • 기간이 만료된 할랄 인증서 사본(있는 경우) 	
비용	약 250만~1,500만 원	
소요기간	4~6개월	
절차	신청 및 서류 제출 → 수수료 청구서 발송 및 납부 → 현장실사 및 샘플링 분석 → 심사 보고서 작성 → 인증서 승인 및 발급	

[선택 인증]

• SIRIM 인증

- SIRIM 인증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유통하고자 하는 제품이 말레이시아 표준 또는 국제규격에 부합함을 인증기관인 SIRIM을 통해 확인받은 것을 의미함. SIRIM 인증은 제품 품질 및 안전이 입증 제품만 말레이시아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인증으로, 임의인증이 원칙이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품목만 의무인증 대상임. 식품의 경우 임의인증 품목에 해당되며 말레이시아 내 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증이 가능함. 단,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직접 규정을 제시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설탕, 밀가루, 칠리소스, 인스턴트 면류 등이 SIRIM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

인증명	SIRIM 인증	
인증기관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 (SIRIM,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시험 및 인증대행기관	SIRIM QAS Intenational Bhd	
강제유무	선택(권장)	
제출 서류	인증 질의서(Questionnaire) 및 신청서, 관제당국의 승인 문서, 상표 및 제품명에 관한 승인서, 제조업체 정보	
비용	건당 2,500링깃 이상	
소요기간	약 2개월 이상	
절차	인증 문의 → 인증 신청 → 서류 심사 → 현장실사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인증서 발급	

No.	제목	해당국가	말레이시아
1		식품 할랄인증 취득 필요	식품전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는 육류 및 육류 기반의 제품은 할랄인증 필수 취득을 요구하며, 그 외 식품은 권고사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품목 : 음식,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과 음료를 이루는 기초원료, 부자재 등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식품·음료류, 농·축·해산물류, 첨가제, 향신료, 식품 가공 보조제, 원재료류 • 할랄 인증 신청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온라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 : http://apps.halal.gov.my/myehalal/pemohon/ - 해외 : http://apps.halal.gov.my/international/e-halal.php?new= ② 서류 제출 - 온라인 등록 후 5일 이내 ③ 수수료 청구서 발송 - 서류에 이상 없을 시 1~5 영업일 이내 ④ 수수료 납입 -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⑤ 현장실사 및 샘플링 분석 - 서류 제출 후 30일 이내 ⑥ 인증서 승인 ⑦ 인증서 발급 - 승인 후 5 영업일 이내 • 할랄 인증 취득을 위한 구비 서류 : 회사소개서, 법인등록사본, 인증제품 소개서, 원료 목록, 재료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 이름과 주소, 제품에 사용되는 생산 원료에 대한 할랄 인증 사본, 포장 재질 종류, 제품제조 공정 및 절차, 타 인증서(HACCP, ISO, GMP), 공장 및 부지 지도 • 한국 KMF, KHA, 카자흐스탄 AHİK 인증에 대한 상호동등성 인정 	
	애로·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슬림 인구가 60%를 차지하는 국가로, 할랄인증 취득 준비가 필요함 	
	기타	-	

No.	제목	쌀 반입의 어려움	해당국가	말레이시아
			관련품목	쌀
			유형*	수입통관
2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레이시아는 자국 농민 보호와 쌀의 적정가격 수준 유지를 위해 수량 제한(쿼터 제도)을 시행하고 있음 [사례] 2017년, 충남 서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농협쌀 수출 쿼터 1,000톤을 확보하고 수출을 진행한 바 있음 말레이시아로 쌀 수출 시, 수입업체는 농림부로부터 수입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서에 수입 품목과 수입량이 표시되어야 함. 또한, 수입품목의 관리방법, 초과분에 대한 신고, 수출업체들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기입해야 함 아세안(ASEAN)의 공동유효관세조약(CEPT)에 의한 쌀 수입관세는 20%, WTO 농업협정(AoA)에 의한 수입 관세는 40%이나, 대한민국은 아세안 FTA(AKFTA)에 의거 수입 관세는 면제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레이시아로 쌀 반입 시 어려움이 있음 		
	기타	-		

1. 과일 음료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라벨링 현지화 지원

제품 사전검토 결과

• 기본 라벨링 표기 사항

- 제품명, 성분, 중량, 제조사 및 수입업체정보, 유통기한, 기타 정보(영양정보, GMO 여부, 식품첨가제, 방사선 조사 식품 여부 등), 보관방법

• 제품 및 라벨 표시사항

- 사용언어

- *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제조/포장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어로 표기하며 다른 언어를 함께 적을 수 있음
- * 수입식품은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며 다른 언어를 병행표기 가능
- * 다른 언어의 번역은 본래의 의미와 같아야 함

- 기본 표기사항

- * 식품명은 눈에 띄어야 하며 시각적으로 강조되고 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내용과 비교해 더 눈에 띄어야 함
- * 제품 명칭은 원재료의 일반적 명칭 또는 학명으로 표기
- * 혼합식품일 경우 'mixed 또는 'blended'라고 표기. 단, 본 규정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 * 식품별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야 함
- * 식품에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가 포함되어 있거나, 돼지 또는 소고기에서 나온 부산물, 돼지비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CONTAINS(포함사항)'라고 표기
- * 식품에 알코올이 첨가된 경우 'CONTAINS ALCOHOL'이라고 기재함. 이때, 반드시 밑줄 없이 굵은 대문자로 글자 크기는 6 포인트 이상으로 표기

- 성분표기

- * 물, 식품첨가물, 영양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이 각 성분의 적절한 명칭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2 개 이상일 경우 총량에 따른 비율의 내림차순으로 기재
- * 식용 지방 또는 기름이 함유된 경우 해당 지방 또는 기름의 이름을 원재료를 함께 기재
예) Vegetable oil(Palm oil, corn oil)
- * 동물에서 추출한 성분이나 첨가물인 경우 해당 동물의 일반적인 명칭을 함께 표기
예) Collagen(Fish)
- *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경우 "Contains permitted(관련 식품첨가물 유형)"로 기재
- * 식품개선훈제(Food Conditioner)가 첨가된 경우 "Contains(식품개선훈제 분류) as permitted food container."로 기재
- * 향미증진제를 첨가된 경우 "Contains(향미증진제의 화학명) as permitted flavour enhancer."로 기재

- 중량표시

- * 최소 순중량 또는 부피 또는 내용물의 수에 대한 문구가 포장지에 표시되어야 하며 글자의 높이는 동일해야 함

- 제조자/수입자/원산지의 이름 및 주소

- * 모든 식품 라벨은 제조자/수입자/원산지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야 함
- * 수입 식품의 경우, 식품 라벨은 다음을 표시해야 함 : 해외 제조업체의 이름 및 주소, 제조 또는 포장 권리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에이전트 이름 및 주소, 말레이시아 내 수입업체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식품의 원산지

- 유통기한 : 다음과 같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 * EXPIRY DATE 또는 EXP DATE(날짜, 일/월/년 또는 월/년)
- * USE BY(날짜, 일/월/년 또는 월/년)
- * CONSUME BY 또는 CONS BY(날짜, 일/월/년 또는 월/년)
- * BEST BEFORE 또는 BEST BEF(날짜, 일/월/년 또는 월/년)
- * 유통기한 날짜는 세리프체가 아닌 굵은 대문자로 글자 크기는 6 포인트 이상으로 표기
- * 필수 표시제품 목록에 없더라도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영양성분표기

- * 영양성분은 100g(ml) 당 및 1회 제공분에 대한 형태로 표기
- *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방은 필수로 표기
- * 비타민과 무기질(미네랄)은 영양소 기준치(NRV)에 기재
- * 비타민과 무기질(미네랄)의 1회 제공분이 기준치의 5% 이상인 경우만 표기(5% 미만은 표기하지 않음)

2. 커피 음료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커피 1종에 대한 원료 검토

검토 결과

- 품목
 - Vanillabeen Latte
 - 제출된 원료는 말레이시아 Food Regulations 1985에 의거하여, 수입금지 및 제한되는 원료를 포함하지 않지만, 일부 성분은 함량 규정 혹은 라벨링 규정이 있음
- 원료별 검토사항
 - 커피 에센스 혹은 커피 추출물은 커피에서 추출한 액체 혹은 에센스 형태의 물질로 글리세롤이나 설탕 혹은 이들의 조합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을 수 있음. 이외의 물질은 첨가할 수 없음. 커피에서 파생된 무수카페인(anhydrous caffeine)을 0.5% 이상 함유하여야 함
 - 커피에센스 혹은 액상커피추출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포장 라벨에 표기하여야 함. 다른 폰트보다 큰 크기로 “Coffee essence” 혹은 “Liquid Coffee Extract” 등의 형태로 표기하고, 커피의 카페인 함량도 함께 표기해야 함
 - ‘Pure’ 혹은 유사한 의미의 단어는 포장에 사용될 수 없음
 - 커피콩은 커피나무의 씨앗으로 날것 혹은 로스트 된 것이어야 함
 - Skim milk에서 수분을 제외하여 얻은 제품일 것
 - 5% 이상의 수분 혹은 1.5% 이상의 유지방을 함유할 수 없음
 - Skim Milk Powder는 허용된 Food Conditioner를 함유할 수 있음
- 라벨 표기 사항
 - ‘Skimmed Milk Powder’ 혹은 ‘Skim Milk Powder’가 포함되어 있음을 라벨에 표기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Not suitable for infants excepts on medical advice’라는 문구가 함께 표기되어야 함. 해당 문구는 다른 문구와 함께 같은 줄에 표기되어서는 안 되며 독립적으로 표기되어야 함
 - 섭취방법이 라벨에 표기되어야 함

신남방

싱가포르 SINGAPORE

2022년 한눈에 보이는
싱가포르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362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373
03. 비관세 장벽 현황	375
04. 수출 애로사항	382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384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식품시장 규모는 81억 4,810만 달러(한화 약 11조 464억 원)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으며 전 품목 감소세를 보임
 - 신선식품 시장은 2021년 기준 47억 5,450만 달러(한화 약 6조 4,457억 원) 임
 - * 육류 시장 규모는 15억 9,600만 달러(한화 약 2조 1,637억 원)로 집계되어 전체 19.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뒤이어 채소류(12.7%), 낙농품(12.7%), 과일 및 견과류(10.8%) 순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33억 9,360만 달러(한화 약 4조 6,007억 원)로 집계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시장이 10억 900만 달러(한화 약 1조 3,679억 원)로 전체 12.4%를 차지하며, 스낵류(10.8%), 편의식품(7.7%), 영유아용 식품(6.6%) 순으로 나타남

식품시장 규모(2017~2021)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7,979.1	8,277.3	8,368.8	8,258.5	8,148.1	100.0	△1.3
신선식품	4,635.8	4,812.5	4,871.4	4,813.5	4,754.5	58.4	△1.2
- 육류	1,560.0	1,619.0	1,637.0	1,617.0	1,596.0	19.6	△1.3
- 채소류	990.9	1,032.0	1,051.0	1,045.0	1,038.0	12.7	△0.7
- 낙농품	1,017.0	1,054.0	1,065.0	1,049.0	1,034.0	12.7	△1.4
- 과일 및 견과류	856.9	890.0	900.2	888.7	877.2	10.8	△1.3
- 유지류	211.0	217.5	218.2	213.8	209.3	2.6	△2.1
가공식품	3,343.3	3,464.8	3,497.4	3,445.0	3,393.6	41.6	△1.5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998.0	1,033.0	1,042.0	1,025.0	1,009.0	12.4	△1.6
- 스낵류	866.2	898.1	906.7	892.7	877.4	10.8	△1.7
- 편의식품	589.7	617.9	630.4	627.8	625.0	7.7	△0.4
- 영유아용 식품	532.3	551.7	556.8	548.5	540.2	6.6	△1.5
- 소스 및 향신료	214.4	223.0	225.9	223.4	220.8	2.7	△1.2
- 스프레드 및 당류	142.7	141.1	135.6	127.6	121.2	1.5	△5.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594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함
 - 연령대별 인구수는 55세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의 약 33.8% 비중으로 높으며, 14세 이하 인구수의 비중(8.2%)이 적음
 - 여성 인구수는 280만 명(약 47.7%), 남성 인구수는 310만 명(52.3%)으로, 남성 인구의 비중이 여성 인구보다 높음

- 2021년 가구수는 18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2만 2,720달러(한화 약 3,080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함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1,530달러(한화 약 207만 원)로 약 6.7%의 비중이며, 전년 대비 13.5% 증가함

-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1,381.92달러(한화 약 187만 3천 원)로 나타남
 - 신선식품 소비액은 806.4달러(한화 약 109만 3천 원)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58.4% 차지
 - * 육류 소비액은 270.70달러(한화 약 36만 7천 원)로 19.6% 비중을 차지하며 품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
 - * 뒤이어 낙농품(12.7%), 채소류(12.7%), 과일 및 견과류(10.8%), 유지류(2.6%) 순으로 집계
 - 전체 41.6%를 차지하는 가공식품 소비액은 575.52달러(한화 약 78만 2천 원)로 나타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은 171.10달러로 12.4% 비중을 차지
 - * 이어서 스낵류(10.8%), 영유아용 식품(7.7%), 편의식품(6.6%), 소스 및 향신료(2.7%), 스프레드 및 당류(1.5%) 순

1인당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1,397.79	1,437.73	1,441.62	1,411.59	1,381.92	100.0	△2.1
신선식품	812.07	835.87	839.10	822.64	806.40	58.4	△2.0
- 육류	273.30	281.10	282.00	276.30	270.70	19.6	△2.0
- 낙농품	173.60	179.30	181.00	178.50	176.00	12.7	△1.4
- 채소류	178.10	183.10	183.40	179.40	175.40	12.7	△2.2
- 과일 및 견과류	150.10	154.60	155.10	151.90	148.80	10.8	△2.0
- 유지류	36.97	37.77	37.60	36.54	35.50	2.6	△2.8
가공식품	585.72	601.86	602.52	588.95	575.52	41.6	△2.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74.80	179.50	179.50	175.30	171.10	12.4	△2.4
- 스낵류	151.80	156.00	156.20	152.60	148.80	10.8	△2.5
- 영유아용 식품	103.30	107.30	108.60	107.30	106.00	7.7	△1.2
- 편의식품	93.26	95.82	95.93	93.76	91.62	6.6	△2.3
- 소스 및 향신료	37.55	38.73	38.92	38.18	37.45	2.7	△1.9
- 스프레드 및 당류	25.01	24.51	23.37	21.81	20.55	1.5	△5.8

* 출처 : STATISTA

- 신선식품 중 채소류의 1인당 소비량이 77.65kg으로 가장 높음
* 뒤이어 낙농품 소비량이 52.43kg, 과일 및 견과류 소비량은 36.17kg으로 집계됨
- 가공식품 중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1인당 소비량이 55.31kg으로 가장 높음
* 뒤이어 스낵류 16.98kg, 편의식품 13.16kg, 영유아용 식품 10.65kg 순으로 집계됨

1인당 식품 소비량(2017~2021)

(단위 : 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85.10	84.51	84.55	83.42	77.65	△6.9
	- 낙농품	56.40	56.15	56.46	56.03	52.43	△6.4
	- 과일 및 견과류	40.93	40.19	39.77	39.01	36.17	△7.3
	- 육류	28.32	28.63	29.21	29.06	27.31	△6.0
	- 유지류	5.89	5.72	5.59	5.45	4.99	△8.4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61.93	61.23	61.01	59.81	55.31	△7.5
	- 스낵류	19.03	18.84	18.78	18.39	16.98	△7.7
	- 편의식품	14.60	14.47	14.46	14.20	13.16	△7.3
	- 영유아용 식품	11.34	11.36	11.46	11.38	10.65	△6.4
	- 소스 및 향신료	7.44	7.41	7.43	7.35	6.85	△6.8
	- 스프레드 및 당류	8.02	7.60	7.25	6.82	6.09	△10.6

* 출처 : STATISTA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농식품 수출액은 157억 3,162만 달러(한화 약 21조 3,274억 원)로 집계, 전년 대비 6.7% 증가함
 - 주요 수출국은 미국(24.7%), 중국(8.6%), 일본(7.2%) 순
 - * 미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22.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기준 38억 9,334만 9,000달러(한화 약 5조 2,782억 원)로 집계됨
 - * 2위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3억 5,272만 4,000달러(한화 약 1조 8,339억 원)로, 연평균 20.3%의 성장률을 기록함
 - * 대한민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2억 836만 8,000달러(한화 약 2,825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증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3,765,760	17,316,823	16,295,791	14,744,929	15,731,620	100.0	6.7	3.4
1 미국	160,390	3,116,952	3,130,045	3,553,766	3,893,349	24.7	9.6	122.0
2 중국	644,832	761,383	808,658	1,056,789	1,352,724	8.6	28.0	20.3
3 일본	1,123,478	1,497,493	1,075,507	1,596,309	1,139,007	7.2	△28.6	0.3
4 베트남	1,351,055	1,338,140	1,376,438	876,614	1,064,631	6.8	21.4	△5.8
5 말레이시아	1,065,239	1,101,791	953,754	843,775	889,750	5.7	5.4	△4.4
6 태국	828,907	896,315	944,815	894,615	864,751	5.5	△3.3	1.1
7 호주	873,499	870,226	860,863	758,267	837,880	5.3	10.5	△1.0
8 벨기에	2,530,392	2,099,996	1,654,708	746,819	835,590	5.3	11.9	△24.2
9 인도네시아	693,415	641,017	616,735	648,536	798,909	5.1	23.2	3.6
10 필리핀	502,819	552,929	559,773	561,503	644,921	4.1	14.9	6.4
13 한국	198,565	224,900	249,446	195,227	208,368	1.3	6.7	1.2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조제품 기타(40.9%)를 중심으로 가공식품을 주로 수출하며 다양한 주종(酒種) 수출

* 조제품 기타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한 64억 2,744만 3,000달러(한화 약 8조 7,137억 원)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3.7% 성장

* 포도 증류주(꼬냑 외), 위스키류, 발포성 포도주의 수출액은 모두 전년 대비 성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3,765,760	17,316,823	16,295,791	14,744,929	15,731,620	100.0	6.7	3.4%
1 조제품 기타	1,508,558	4,759,064	5,177,967	5,789,380	6,427,443	40.9	11.0	43.7%
2 포도 증류주 (꼬냑 이외 기타)	960,565	1,096,427	1,153,186	861,666	1,245,507	7.9	44.5	6.7%
3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 *혼합조제식품	3,403,000	3,495,158	2,212,482	1,378,879	1,046,292	6.7	△24.1	△25.5
4 위스키류 (스카치, 버본, 라이 이외 기타)	816,610	893,573	921,889	701,061	778,606	4.9	11.1	△1.2
5 조제식품 (기타)	1,086,244	1,163,152	1,152,829	681,275	526,862	3.3	△22.7	△16.5
6 발포성 포도주	371,284	387,184	402,945	273,467	420,486	2.7	53.8	3.2
7 핵산과 이들의 염, 그 외 헤테로고리 화합물 (기타) *혼합조제식품	395,800	410,295	282,513	476,810	329,864	2.1	△30.8	△4.5
8 유아용 기타 조제품	201,372	232,767	225,085	290,779	240,437	1.5	△17.3	4.5
9 코코아 조제품 (기타/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179,700	195,059	212,076	189,716	223,788	1.4	18.0	5.6
1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151,486	144,717	149,916	173,088	145,143	0.9	△16.1	△1.1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1년 수입액은 151억 485만 9,000달러(한화 약 20조 4,777억 원)로 전년 대비 16.7% 증가
 - 말레이시아산(14.5%), 프랑스산(11.3%) 중국산(9.8%) 순으로 집계
 - * 말레이시아산 수입액은 21억 8,562만 달러(한화 약 2조 9,630억 원)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함
 - * 프랑스산은 전년 대비 35.2% 증가하며 17억 991만 달러(한화 약 2조 3,181억 원) 수입되었으며, 연평균 6.0%의 성장률을 보임
 - * 중국산 수입액은 14억 7,809만 3,000달러(한화 약 2조 39억 원)로 전년 대비 17.1% 증가함
 - 한국산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1.8%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50.5%가 증가한 2억 6,715만 3,000달러(한화 약 3,622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2017년 이후 연평균 18.5%의 증가율을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2,318,366	12,669,038	12,568,086	12,941,231	15,104,859	100.0	16.7	5.2	
1	말레이시아	1,849,750	1,860,160	1,846,489	1,870,420	2,185,620	14.5	16.9	4.3
2	프랑스	1,356,233	1,532,513	1,474,870	1,264,707	1,709,910	11.3	35.2	6.0
3	중국	1,020,018	1,046,448	1,158,907	1,262,684	1,478,093	9.8	17.1	9.7
4	미국	937,145	893,473	1,033,211	1,279,736	1,477,197	9.8	15.4	12.0
5	호주	956,762	868,129	729,945	972,200	1,198,725	7.9	23.3	5.8
6	인도네시아	805,057	881,900	846,699	909,411	1,085,999	7.2	19.4	7.8
7	영국	752,264	783,832	747,480	701,123	699,439	4.6	△0.2	△1.8
8	태국	522,624	555,883	570,668	623,952	622,443	4.1	△0.2	4.5
9	뉴질랜드	476,884	465,726	440,568	472,083	539,998	3.6	14.4	3.2
10	브라질	410,663	411,487	422,537	481,973	498,138	3.3	3.4	4.9
13	대한민국	135,554	150,419	199,004	177,562	267,153	1.8	50.5	18.5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6.9%), 포도 증류주(6.3%), 조제품 기타 (5.0%)등이 있음

*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77.0%로 크게 증가한 10억 4,436만 달러(한화 약 1조 4,158억 원)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4.5%로 성장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¹⁷⁻²¹)
전체	12,318,366	12,669,038	12,568,086	12,941,231	15,104,859	100.0	16.7	5.2
1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기타)	112,683	126,055	379,278	590,125	1,044,360	6.9	77.0	74.5
2 포도 증류주 (포넛 이외 기타)	752,916	866,723	845,789	704,746	958,282	6.3	36.0	6.2
3 조제품 기타	364,943	488,736	609,831	647,840	748,964	5.0	15.6	19.7
4 위스키류 (스카치, 버본, 라이 이외 기타)	605,767	670,534	634,248	570,355	620,044	4.1	8.7	0.6
5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 (기타)	136	205	261	476,273	603,670	4.0	26.7	N/A
6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 포도즙 (기타/ 붉은 포도주, 흰포도주 제외/ 2리터 이하의 용기)	786,525	836,725	787,475	524,878	570,096	3.8	8.6	△7.7
7 발포성 포도주	232,899	289,873	273,628	275,273	442,952	2.9	60.9	17.4
8 코코아 두 (볶은 것)	181,299	213,305	216,295	227,438	262,945	1.7	15.6	9.7
9 돼지고기 (냉동/기타/기타)	209,990	200,483	192,301	256,971	244,633	1.6	△4.8	3.9
10 찹쌀	196,609	204,919	218,026	276,490	234,706	1.6	△15.1	4.5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종자 등은 제외함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싱가포르 농식품 수출현황

- 2021년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한 1억 7,750만 8,900달러(한화 약 2,406억 원)로 집계됨

- 농산물 수출액이 1억 5,428만 5,600달러(한화 약 2,092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86.9% 차지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조제품 기타(12.0%),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9.5%), 초본류 딸기(8.5%) 등

- * 조제품 기타는 2,132만 5,700달러(한화 약 289억 원)로 전년 대비 2.0%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4.9% 성장
- * 딸기와 프로펠렌글리콜 수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7.2%, 51.3% 성장률을 기록
- * 동식물성 유지의 수출액은 1,686만 700달러(한화 약 229억 원)로 전년 대비 733.2%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임
- * 라면은 919만 1,700달러(한화 약 105억 원)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지만, 연평균 5.3% 성장률을 보임

한국의 쇠싱가포르 수출 규모(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11,642.0	114,928.7	126,263.4	154,182.9	177,508.9	100.0	15.1	12.3
농산물	105,455.5	108,524.9	119,442.5	143,470.7	154,285.6	86.9	7.5	10.0
축산물	2,181.4	1,594.8	1,255.2	5,392.4	20,943.3	11.8	288.4	76.0
임산물	4,005.1	4,809.0	5,565.7	5,319.8	2,280.0	1.3	△57.1	△13.1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한국의 쇠싱가포르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11,642.0	114,928.7	126,263.4	154,182.9	177,508.9	100.0	15.1	12.3
1 조제품 기타	6,432.0	7,426.0	12,724.80	20,899.2	21,325.7	12.0	2.0	34.9
2 동식물성 유지	-	0.1	-	2,023.5	16,860.7	9.5	733.2	-
3 초본류 딸기	11,301.6	11,235.8	13,740.2	14,040.3	15,046.8	8.5	7.2	7.4
4 프로펠렌글리콜	563.0	324.8	1,203.9	6,284.4	9,509.0	5.4	51.3	102.7
5 라면	7,479.5	7,874.6	6,844.3	9,373.9	9,191.7	5.2	△1.9	5.3

*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종자 등은 제외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싱가포르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①수입신고 → ②관세납부 → ③검사 및 검역 → ④물품반출 순으로 진행됨

단계	내용
수출 전 절차	• 수입자는 수입업체 등록 및 수입허가 취득 필요
수입신고	• 전자통관시스템(Trade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 컨테이너 화물과 비컨테이너 화물을 구분하여 수입신고함 •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통관허가서 등을 제출하며 필요시 원산지증명서, 검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관세납부	• 일반적으로 주류 등을 제외한 식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나,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납부해야 함 • Inter-Bank GIRO를 통해 싱가포르 세관에 납부
검사 및 검역	• 싱가포르 식품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입식품 검사 신청 가능 • 화물통관허가증, 건강증명서 및 관련서류, 검사대상 제품 등 제출
물품반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허가

* 출처 : 싱가포르 관세청(www.customs.go.sg)

- 2019년부터 싱가포르 식품청(SFA)에서 식품 안전 및 수입 식품 관리를 총괄
-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 수입 전 다음과 같은 준비단계를 거칠 것을 요구

식품 분류를 사전에 확인 → 싱가포르 식품청의 무역 라이선스 취득 또는 등록 →
관련 식품법안 준수 여부 확인 → 식품 라벨링 요건 충족 →
특정 식품의 경우 수입 조건 확인 → 수입허가 취득 → 식품 검사 신청

* 출처 : 싱가포르 식품청(www.sfa.gov.sg)

-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담당하는 기관이 식품청 또는 보건과학청(HSA)으로 상이함

* 식품청은 식이보충제와 같이 일상적으로 섭취하거나 복용량 제한 없이 섭취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보건과학청은 의학적 목적으로 섭취하고 복용량 제한이 있는 의약품을 담당함

● 식품 품목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음

품목명	분류 기준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또는 조류의 전체 또는 부분 • 냉장, 냉동, 가공 및 통조림 형태를 포함 • 육류 함량 5% 이상이며 동물성 유지류 함유
신선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되지 않은 과일류 및 채소류 • 절단, 박피, 통조림 처리, 냉동은 제외
신선 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계란
가공 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지 하거나 보존 처리한 계란 • 액상 및 분말형태의 계란 • 완전히 익히거나 오믈렛 형태의 조리된 계란
가공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신선농산물 등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식품

* 출처 : 싱가포르 식품청(www.sfa.gov.sg)

검역제도

- 일반적으로 모든 식품은 검사 대상에 해당됨
 - 싱가포르 식품청의 온라인 시스템(SFA Inspection & Laboratory e-Services)을 통해 수입식품의 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 * 식품 검사 시에는 화물통관허가증, 건강증명서 및 관련 서류, 검사 대상 제품 등을 제출해야 함
 - * 검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경우에 따라 수출이 중지될 수 있음
 - 2015년부터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모든 신선란은 최소 검사 1일 전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싱가포르 식품청은 품목별 수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사전 파악이 필요
 - 육류는 식품청이 승인한 국가 및 시설에서만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산 육류는 돼지고기, 가금육, 식용란 등을 수출할 수 있음
 - * 육류 수입 시 수출국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음
 - * 난류 수입은 승인된 시설 및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하며 수입일 7일 이내에 발급된 건강증명서 첨부를 요구함

한국산 육류 수입 승인현황(2023년 3월 기준)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미승인	미승인	열처리한 제품 및 멸균 제품 승인	열처리한 제품 및 멸균 제품 승인	
식용란	가공란	염지란/보존란	개구리알	기타
수입 일시 제한 조치	특정 지역 제품의 경우 최소한의 열처리 필요	미승인	미승인	미승인

* 출처: 싱가포르 식품청, 「신선 및 가공 육류제품 수출승인 국가목록」(2023.03)

- 신선농산물은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잔류물질허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입 가능함

* 멕시코 등 남미 국가에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남미잎마름병(SALB)이 없음을 증명하는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을 요구함

- 가공식품은 수출국 식품 당국의 적절한 감독하에 제조되어야 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포장된 미네랄이나 식수, 얼음 ▲코코넛 밀크, 나시르막 등 ▲유아용 시리얼 및 유아용 조제분유 ▲최소 가공된 과일 및 채소 ▲저온살균 우유(액상) ▲절단 사탕수수 ▲월병 등 수입 시 서류 첨부를 요구함

* 위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HACCP 인증서, GMP 인증서, 건강증명서, 수출증명서, 제조공장 면허 등을 요구할 수 있음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 수출 가능 품목

협상타결 품목

- 축산물
 - 삼계탕, 식용란, 멸균 식육가공품, 가금육, 식용란

협상 없이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일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망고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 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 묘목류 : 딸기묘
 - * 주요 신선 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 * 묘목류의 경우, 싱가포르 측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 전 수입업체에 확인이 필요함

- 축산물
 - 비식용 우지

2. 수출 불가능 품목

- 축산물
 - 열처리 돈육가공품(살균)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Giant store(싱가포르)
업체 유형	과일, 농산물 유통업체
담당자명	Ms Tanya Dao

- 자사는 현지 및 수입 과일,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로,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식품은 채소 품목 중에서 피망, 김치용 배추, 감자, 고구마 등, 과일 품목 중에서는 제주감귤, 배, 딸기 꺾임 등이 있으며, 가공식품 중에서는 김치, 김, 즉석수프, 생선 통조림 등이 있음
- 특히, 한국산 딸기가 프리미엄 과일로 수입되고 있고 선명한 색과 좋은 퀄리티로 현지에서 인기가 많음
- 싱가포르의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고, 신선식품은 보존/보관의 용이성에 따라 구매하기 때문에 한국산 신선 감 제품이 단맛이 강하고 보관하기 쉬워서 시장성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중국 수입제품이 더 손쉽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제품 경쟁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편
- 신선식품은 자동 유통이 허용되지 않으며 식품 안전을 위해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하며, 특히 신선과일 및 채소의 경우 질병 관리 및 보존성 시험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 싱가포르에 큰 식품 이슈는 없었지만, 싱가포르에서 소비되는 야채 중 90%가 수입산으로 싱가포르 내에서는 높은 식량 수입 의존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힘

03 비관세 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계란의 수입을 위한 수의학적 조건을 2021년 5월 OIE(세계동물보건 기구)에서 채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관련 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힘
 -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강화를 위해 식용 계란 및 저온살균된 난류의 수의학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 식품청은 냉장 가금류의 수입 촉진을 위해 냉장 가금류의 수입 촉진을 위해 냉장 가금류 및 냉장 가금 식품에 관한 제품 포장 및 유통기한 관련한 수출업자의 의무사항 및 수출국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자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트랜스지방으로 여겨지는 수소화된 오일(PHOs)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2021년 6월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힘
-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2020년 초 발표된 식품 판매 규정의 내용 중 일부 표현을 삭제 또는 덧붙이거나 식품첨가물, 색소 물질, 제품별 허가된 감미제(sweetening agents)의 목록을 수정한 개정안을 발표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regulatory-limits/limits-for-incident-constituents-in-food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regulatory-limits/limits-for-food-additives
미생물 규정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regulatory-limits/limits-for-incident-constituents-in-food

통보문 개정현황(2022년)

- 개정사항 없음

2. TBT

주요 TBT 내용

- 싱가포르 보건부(MOH)와 건강진흥원(HPB)은 국민의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Nutri-Grade”영양 표시 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조치를 규정하기 위해 2021년 식품(개정 제 2호) 규정을 개정함
 - Nutri-Grade 마크는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음료 제품의 영양 등급을 “A”, “B”, “C”, “D”로 나누고, “C” 또는 “D” 등급을 받은 Nutri-Grade 음료는 Nutri-Grade 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D” 등급을 받은 Nutri-Grade 음료의 경우, 광고가 금지되며, Nutri-Grade 라벨 표시 제도 및 광고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모든 Nutri-Grade 음료에는 영양 정보 패널(NIP)도 표시해야 함
 - 해당 라벨 표시 제도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선포장 식품에 대한 라벨링 요구사항을 개정함
 - 선포장 식품 라벨링의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식품 규정 5를 개정하며, 잠재적 구매자가 정보에 액세스할 경우 최대 표면적이 10cm² 미만인 선포장 식품은 라벨에 일부 정보 표시가 면제되도록 규정 6을 개정함. 섭취하기에 안전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포함한 식품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규정 9를 개정하며,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광고 또는 판매되는 식품에 일부 정보 고시를 요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12A를 추가함
-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식품 규정에서 식품에 대한 59개의 식별 기준 삭제와 관련한 식품 규정의 개정안을 2022년 10월 WTO에 통보함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food-information/labelling-packaging-information/labelling-guidelines-for-food-importers-manufacturers
“Nutri-Grade” 라벨 표시 제도에 대한 Q&A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legislation/sale-of-food-act/response-to-comments-received-from-the-public-consultation-on-labelling-and-advertising-requirements-for-nutri-grade-beverages.pdf?sfvrsn=b4dcc344_2.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원료 정보 • 알레르기 정보 • 용량(순중량) • 제조업체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 유통기한 • 사용방법 • 감미료 • 영양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목적을 지닌 식품 라벨 (저열량, 무가당 등) • 특정 카테고리 식품에 대한 라벨링 • 특정 원료에 대한 정보 표기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영어로 표기할 것	
		제품명 또는 제품 설명, 원료 정보, 알레르기 정보, 순중량 정보는 최소 1.5mm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기할 것	
	제품명	제품 포장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인쇄하거나 부착할 것	
		제품의 일반명 또는 식품의 설명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표기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원료 정보	모든 원료 및 첨가제 정보를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할 것	
		혼합 원료인 경우 해당 원료 뒤에 함유원료들을 나열할 것	
	알레르기 정보	중량이 많은 첨가물부터 내림차순으로 작성할 것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및 원료를 기재할 것	
		글루텐을 포함한 시리얼, 달걀 및 달걀 가공 제품, 어류 및 어류 제품, 땅콩, 콩, 호두 제품 등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용량	순중량으로 표기할 것
		소포장 상품 패키지가인 경우 수량*소포장 중량으로 표기할 것
		최소 수량 기준 또는 평균 수량 기준으로 작성할 것
		액체 제품의 경우 부피를 나타낼 수 있는 밀리리터 혹은 리터로 표기할 것
	제조업체 정보	제조업체,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기할 것
		수입 제품의 경우 현지 수입업자, 유통업자 혹은 대행사의 이름과 주소를 필수적으로 표기할 것
	원산지	수입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필수임
		도시, 군, 구와 같은 행정 단위 표기는 불가함
	유통기간	유통기간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오염되는 등의 훼손되지 않는 형태로 표시되어야 하며, 최소 3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것
	사용방법	'사용방법' 또는 '조리법'이라는 표기와 함께 제공하며, 특정 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우 그림으로 표시할 것
	감미료 표기	아세설팜-K, 사카린 등의 특정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최대 섭취 허용량에 대한 정보를 표기할 것
	특정용도식품	저칼로리, 당뇨병 식품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식품의 경우 해당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표기할 것
영양정보	열량, 나트륨, 단백질과 아미노산, 탄수화물, 전분, 당, 지방, 산화지방, 콜레스테롤, 식이섬유, 비타민 또는 무기질, 기타 영양성분 등	
기타	방사능 조사 식품, 홀그레인(Whole grain), 우유, 와인 등의 제품은 각 해당 식품별로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지킬 것	
	건강 기능성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것	

* 자료 : 싱가포르 법률정보시스템(Singapore Statutes Online)

● 파스타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판네 파스타	
원재료명	- 팔가루 - 옥수수가루 - 토마토가루 - 이눌린 - 완두콩 단백질	
내용량	250g	
출시일(발행일)	2022. 05. 13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San Remo Macaroni	
제조지(원산지)	이탈리아	
영양성분 정보	- 제공량 125g당 - 총 2회 제공	
	열량(KJ)	1830kJ
	단백질	24.80g
	지방	3.8g
	포화지방	0.6g
	탄수화물	70g
	식이섬유	8.5g
	나트륨	5mg

• 가공 도우 및 빵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스마트 저탄수 저당 GI 37 빵	
원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곡물 - 밀가루 - 호밀가루 - 굴린 오트 - 정제수 - 밀 글루텐 - 아마씨 - 해바라기씨 - 효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리 - 소금 - 반죽 촉진제 - 식품 효소 - 식물성 지방 - 인산 트리칼슘 - 탄산칼슘 - 비타민 C
내용량	360g	
출시일(발행일)	2022. 07. 08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지(원산지)	말레이시아	
영양성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제공량 72g - 총 제공량 5 	
	열량(Kcal)	163kcal
	단백질	13.1g
	지방	4.1g
	포화지방	0.6g
	탄수화물	18.5g
	당류	1.7g
	식이섬유	6.4g
	베타-글루칸	0.6g
	나트륨	230mg
	철분	1.7mg
	칼슘	146mg
	비타민 B1	0.35mg
	비타민 B2	0.12mg
비타민 B3	1.07mg	

인증


[필수 인증]

• 싱가포르 식품청(SFA) 업체등록

- 식품의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싱가포르는 모든 식품을 수입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식품 수출이 가능함. 식품의 유형에 따라 수입면허 취득이 필요한 식품과 등록이 필요한 식품으로 구분됨

* 육류 및 어류, 과일 및 채소류, 계란류는 수입면허(License) 취득이 요구됨


*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업체등록(Registration) 절차를 거쳐야 함

인증명	싱가포르 식품청 업체등록	
발행 및 검사기관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수출자의 기술서류, 검역 당국의 검역증명서	
비용	연간 84~378 싱가포르 달러	
소요기간	1일(신선란은 5일)	
절차	신청서 제출 → 비용 납부 → 면허 취득/등록 완료	
유효기간	1년	

[선택 인증]

• MUIS 할랄 인증

- 싱가포르는 무슬림 인구의 안전한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 할랄 인증제도를 도입함. 할랄 품질경영시스템(Hal-MQ)을 중심으로 할랄 식품에 대해 심사하고, 음식이나 식품 관련 산업의 성격에 따라 7종류의 할랄 인증이 가능함. MUIS에서 인증제도를 관리하며, 산하 Warees Halal 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서 발급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함

인증명	MUIS 할랄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국내 인증대행기관 / Warees Halal	
강제유무	권장	
제출 서류	업체별로 상이	
비용	한화 약 500만 원	
소요기간	2~4개월	
절차	온라인 신청 → 신청 수수료 지급 →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 승인 및 인증서 발급 → 정기 감사/사후관리	
유효기간	2년	
교차인증	한국 KMF인증, 인도네시아 MUI인증, 말레이시아 JAKIM인증	

No.	제목	싱가포르 “당” 관련 라벨링 제도 도입으로 신 라벨 부착 진행 필요																							
		해당국가	싱가포르																						
		관련품목	음료																						
1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 규정을 개정하면서 일부 용어의 정의와 음료에 적용하는 영양 등급 규정을 새롭게 추가함 • 음료의 영양 등급은 설탕과 지방의 함량에 따라 A, B, C, D로 구분되며, 상세 적용 기준은 개정안의 별지 16에 규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등급 “D”인 음료는 광고를 시행할 수 없음 *별지 16에 규정된 설탕과 지방의 영양 등급 함량 기준 <p>① 설탕 함량에 따른 등급(당 함량은 음료 100ml 당 총설탕의 함량(g)에서 음료 100ml 당 젓당과 갈락토스의 함량(g)을 뺀 값임)</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A</th> <th>B</th> <th>C</th> <th>D</th> </tr> </thead> <tbody> <tr> <td>설탕 함량 (100mg 당 g)</td> <td>1 이하</td> <td>1초과 5 이하</td> <td>5 초과 10 이하</td> <td>10 초과</td> </tr> </tbody> </table> <p>② 지방 함량에 따른 등급(포화지방 함량은 음료의 100ml 당 함량(g) 임)</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A</th> <th>B</th> <th>C</th> <th>D</th> </tr> </thead> <tbody> <tr> <td>지방 함량 (100mg 당 g)</td> <td>0.7 이하</td> <td>0.7 초과 1.2 이하</td> <td>1.2 초과 2.8 이하</td> <td>2.8 초과</td> </tr> </tbody> </table>				등급	A	B	C	D	설탕 함량 (100mg 당 g)	1 이하	1초과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등급	A	B	C	D	지방 함량 (100mg 당 g)	0.7 이하	0.7 초과 1.2 이하	1.2 초과 2.8 이하	2.8 초과
		등급	A	B	C	D																			
		설탕 함량 (100mg 당 g)	1 이하	1초과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등급	A	B	C	D																					
지방 함량 (100mg 당 g)	0.7 이하	0.7 초과 1.2 이하	1.2 초과 2.8 이하	2.8 초과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당라벨제도 도입으로 신 라벨 부착을 진행해야 함. D 등급의 라벨 제품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p>※ 싱가포르, 영양 등급 음료 규정을 추가한 식품 규정 개정안 공고</p> <p>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557&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2&srchWord=%EC%8B%B1%EA%B0%80%ED%8F%AC%EB%A5%B4&page=5&srchGubun=</p>																							
기타																									

No.	제목	해당국가		싱가포르											
2		스테비아을 배당체 함량 준수의 어려움		주류											
		유형*		SPS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비아는 주로 감미료로 사용되는 식물 추출 성분으로, 설탕 대신 단맛으로 내는데 사용됨 • 해당 사례는 '막걸리 키트 제품' 수출 시 발생한 것으로 싱가포르 내 사용 기준은 '믹스를 포함한 수프 및 국물'의 최대 허용치를 기준으로 비교함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24 464 496 531">국가</th> <th data-bbox="496 464 667 531">미국</th> <th data-bbox="667 464 839 531">한국</th> <th data-bbox="839 464 1003 531">싱가포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4 531 496 624">적용 대상</td> <td data-bbox="496 531 667 624">일반 식품</td> <td data-bbox="667 531 839 624">일반 식품</td> <td data-bbox="839 531 1003 624">믹스를 포함한 수프 및 국물</td> </tr> <tr> <td data-bbox="324 624 496 847">스테비아을 배당체 사용 기준</td> <td data-bbox="496 624 667 847">GMP (GRAS 목록)</td> <td data-bbox="667 624 839 847">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1. 설탕 2. 포도당 3. 물엿 4. 벌꿀류</td> <td data-bbox="839 624 1003 847">50ppm</td> </tr> </tbody> </table>				국가	미국	한국	싱가포르	적용 대상	일반 식품	일반 식품	믹스를 포함한 수프 및 국물	스테비아을 배당체 사용 기준	GMP (GRAS 목록)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1. 설탕 2. 포도당 3. 물엿 4. 벌꿀류
국가	미국	한국	싱가포르												
적용 대상	일반 식품	일반 식품	믹스를 포함한 수프 및 국물												
스테비아을 배당체 사용 기준	GMP (GRAS 목록)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1. 설탕 2. 포도당 3. 물엿 4. 벌꿀류	50ppm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한국, 싱가포르의 스테비아 사용 기준을 확인한 결과, 미국과 한국은 일반 식품을 대상으로 스테비아의 사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상세 품목 별로 스테비아 사용 기준이 별도 설정되어 있음 														
기타	-														

싱가포르 무역정책 및 수입 관련 법규,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

싱가포르 무역 정책 개요

- 싱가포르는 투명하고 개방된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규제 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고 담배, 주류, 자동차, 유류 등 4개 제품 외 모든 상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음. 다만 정상가격(Fair Market Price : 수출국 시장의 일반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여 싱가포르 내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계 반덤핑 관세법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싱가포르 식료품 수입 관련 법규

- 싱가포르는 식료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되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민감한 국가임.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입규정을 기초로 자국 내 상황에 맞게 수정된 식품규정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Sales of Food Act와 Food Regulations의 규제를 받고 있음
- 싱가포르 식품청(SFA)에서 모든 어류, 육류, 과일, 채소, 및 가공식품에 대한 검역을 담당하며, 싱가포르의 식료품 안전 요구사항은 HACCP와 국제 식품규격 위원회(Codex)의 국제표준에 맞춰져 있음

일반 수입 통관 절차 요약

- 수입 통관은 수화인 또는 수화인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상품이 싱가포르에 도착 후 24 시간 이내에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해야 함. 항구 및 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 장치되는 물품 중 환적용 화물에 대해서는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보세구역물 벗어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함

- 1단계 : 물품 도착 /무역업 계정 및 라이선스 확인

- 2단계 : 수입 신고 / 수입 신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3단계 : 수입부가세 등 납부/ 신고서 처리 및 수입부가세(7%), 신선식품의 경우 Import Fees 납부

- 4단계 : 물품검사 및 반출/ 검사대상 물품 검사 및 물품 반출

* 물품반출 및 반입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에서 이루어지며, 수입부가세 등 통관 관련 각종 세금은 은행 GIRO를 통해 자동 결제됨. 또한 세관은 반입화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음

1. 홍삼 스틱, 홍삼정

홍삼 통관 절차 상세

- 싱가포르에 홍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3개의 기관에서 수입 승인이 필요함. 관세청에서 무역업 계정 활성화(Trade Account Activation) 신청, 식품청에서 가공식품 수입 라이선스 취득, 그리고 홍삼의 경우 추가적으로 식약청에서 중국 의약품의 제품 등록(Product listing) 및 Dealer Licence를 취득해야 함

1. 관세청 무역업 계정 활성화(Trade Account Activation)

- 싱가포르 법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무역업 계정을 활성화해야 하며, 정보 변경 및 종료도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 가능함
 - * 관할 정부기관 : 싱가포르 관세청 <https://www.tradenet.gov.sg/tradenet/login.jsp>
- 필요 정보 및 서류
 1. 싱가포르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UEN : Unique Entity Number)
 2. 싱가포르 법인의 CorpPass
 3. 상품 기본 정보 및 HS Codes
- 신청절차
 1. 싱가포르 관세청에 무역업 계정 신청 시 일반적으로 1 영업일 후에 승인 결과를 받음
 2. 무역업 계정 승인 후 Cargo Clearance Permit(CCP)를 받을 수 있음.
 3. CCP 에는 해당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필요 여부가 기재되어 있음

2. 가공식품 및 주방용품 수입 라이선스(Processed Food Products and Food Appliances)

- 싱가포르에 가공식품 및 주방용품 수입을 위하여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 관할 정부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
- 필요 서류 및 정보
 1. 싱가포르 관세청 무역업 계정
 2. ACRA(싱가포르 기업청) 사업자 등록증(Business Profile)
 3. 싱가포르 법인 이사의 CorpPass
 4. Giro 신청서 : 법인계좌 정보, 은행 서명권자 서명, 법인도장(Stamp)
- 신청 절차
 1. GoBusiness Licensining에서 가공식품 수입 라이선스 신청(수입 상품에 대한 상세내역 및 수입업체의 정보를 기입) 및 신청 비용 결제
 2. Giro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입부가세 및 Import Fees의 자동 이체를 위해 Giro 신청서를 제출함.

Giro 신청하지 않아도 라이선스 취득은 가능하지만 향후 수입 관련 세금 미납 발생 시 해당 금액이 완납될 때까지 상품 통관이 지연되므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해 놓는 것이 좋음

3. 라이선스 취득에 1 영업일 소요, 라이선스 승인 익영업일부터 수입 통관이 가능함

3. 중국 의약품 제품 리스팅 신청(Chinese Proprietary Medicines Product Listing)

- 싱가포르에 중국 의약품 수입하기 위해서 제품 등록("Product List")이 필요하며 이후 수입 Dealer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함. 별도 신청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제품 등록을 위해서 제출해야 할 보고서 및 증빙 자료가 요구되며 부적합한 물건을 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SGD 5,00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 관할 정부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

4. 라벨링 요구 사항

- 라벨링에는 성분 및 효능에 대해서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특정 질병, 질환에 대한 예방, 완화, 치료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면 안 됨(암 / 백내장 / 마약 중독 / 난청 / 당뇨병 / 간질 또는 발작 / 고혈압 / 신장 질환 / 나병 / 월경 장애 / 마비 / 결핵 / 성기능 / 임신 / 불임 / 허약 체질)
- 중국 의약품의 라벨링 규정은 MEDICINES(LABELLING OF CHINESE PROPRIETARY MEDICINES) REGULATIONS을 따라야 함
- 싱가포르로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반드시 싱가포르 식품청의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5. 광고 및 판촉 규제 사항

- 의료 광고를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 HSA의 승인이 필요함
<https://www.hsa.gov.sg/advertisements-and-promotions-of-medicinal-products>
- 해당 광고는 MEDICINES(MEDICAL ADVERTISEMENTS) REGULATIONS의 규제를 받음
<https://sso.agc.gov.sg/SL/MA1975-RG2?DocDate=20000131>

2. 가공식품 / 건강 보조제

• 통관 보고서 요약

- 싱가포르 식약처(HSA)를 통해 Supplement(건강보조제)로 분류된 경우 HSA의 승인 및 라이선스 대상은 아니므로 SFA 승인만으로도 통관 가능함

건강 보조제 통관 절차 상세

- 싱가포르에 건강 보조제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2개의 기관에서 하기 내용을 확인해야 함. 관세청에서 무역업 계정 활성화(Trade Account Activation) 신청, 식품청(SFA)에서 가공식품 수입 라이선스 취득, 그리고 건강 보조제 딜러는 건강 보조제를 공급 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 확인 의무가 발생

1. 관세청 무역업 계정 활성화(Trade Account Activation)

- 싱가포르 법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무역업 계정을 활성화해야 하며, 정보 변경 및 종료도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함

* 관할 정부기관 : 싱가포르 관세청 <https://www.tradenet.gov.sg/tradenet/login.jsp>

- 필요 정보 및 서류

1. 싱가포르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UEN : Unique Entity Number)
2. 싱가포르 법인의 CorpPass
3. 상품 기본 정보 및 HS Codes

- 신청절차

1. 싱가포르 관세청에 무역업 계정 신청 시 일반적으로 1 영업일 후에 승인 결과를 받음
2. 무역업 계정 승인 후 Cargo Clearance Permit(CCP)를 받을 수 있음
3. CCP 에는 해당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필요 여부가 기재되어 있음

2. 가공식품 및 주방용품 수입 라이선스(Processed Food Products and Food Appliances)

- 싱가포르에 가공식품 및 주방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관할 정부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

- 필요 정보 및 서류

1. 싱가포르 관세청 무역업 신청 완료
2. ACRA(싱가포르 기업청) 사업자 등록증(Business Profile)

3. 싱가포르 법인 이사의 CorpPass
4. Giro 신청서 : 법인계좌 정보, 은행 서명권자 서명, 법인도장

- 신청절차

1. GoBusiness Licensining에서 가공식품 수입 라이선스 신청(수입 상품에 대한 상세내역 및 수입업체의 정보를 기입) 및 신청 비용 결제
2. Giro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입부가세 및 Import Fees의 자동 이체를 위해 Giro 신청서를 제출함. Giro 신청하지 않아도 라이선스 취득은 가능하지만 향후 수입 관련 세금 미납 발생 시 해당 금액이 완납될 때까지 상품통관이 지연되므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해 놓는 것이 좋음
3. 라이선스 취득에 1 영업일 소요되며 라이선스 승인 익영업일로부터 수입 통관이 가능함

3. 건강 보조제 확인 사항

1. 독극물법(234 항) 및 독극물 규칙, 약물 남용법(185 항), 마약판매법(282 항) 금지되는 성분 및 건강보조 식품 리스트
2. 인체부위에서 추출한 성분
3. 인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
4. 동물 전염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는 성분
5. 멸종위기종 수출입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성분
6.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활성물질
7.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 목적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약리학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문서화된 활성 성분
8. 중금속 제한 사항

* 중국 의약품에는 허용 가능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금속 함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중금속	허용 가능 용량
비소	5 ppm1(5백만 분의 1 ppm)
카드뮴	0.3 ppm
리드	10 ppm
수은	0.5 ppm

9. 미생물 제한 사항

미생물	미생물 수(제품의 g 또는 ml 당 균집 형성 단위(CFU))
비총 호기성 미생물 수	105 이하
효모 및 곰팡이	5 x 10 ² 이하
리드	10 ppm
대장균, 살모넬라균 및 황색 포도구균	0.5 ppm

* 중금속 및 미생물 제한사항은 딜러 및 판매자의 의무임. 해당지침은 링크를 참조 <http://asean.org/asean-economic-community/sectoral-bodies-under-the-purview-of-aem/standards-and-conformance/policy-and-guidelines>

10. 비타민 제한 사항

영양	일일 제한 사항
비오틴	0.9 mg
엽산	0.9 mg
니코틴 아마이드	450 mg
니코틴 산	15 mg
Vitamin A(Retinol)	15 mg(5000 IU)
Vitamin B1	100 mg
Vitamin B2	40 mg
Vitamin B5(Pantothenic acid)	200 mg
Vitamin B6	100 mg
Vitamin B12	0.6 mg
Vitamin C	1000 mg
Vitamin D	0.025 mg(1000 IU)
Vitamin E	536 mg(800 IU)
Vitamin K1 / K2	0.12 MG

11. 라벨링 요구 사항

제품 라벨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독성을 요구. 영어로 되어있어야 하며, 정보는 적절하고 거짓정보가 있으면 안 됨. 레이블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 (1) 상품명
- (2) 모든 활성 성분의 이름과 양
- (3) 제품 표시/사용 목적
- (4) 일일 복용량
- (5) 사용 방법
- (6) 팩 크기
- (7) 배치(Batch) 번호
- (8) 만료 날짜(또는 "사용 기한", "~까지 사용" 또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
- (9) 필요한 경우 주의 라벨 또는 문구가 있어야 함
- (10) 현지 제조업체 또는 현지 수입업체의 이름 및 주소
- (11) 수입 제품의 제조 국가 이름

참고 : 성분 이름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명을 기반으로 해야 함. 성분명의 일반명 사용은 선택사항임. 광물의 경우 일반명 또는 화학명을 사용할 수 있음

* 작은 용기에 포장된 제품(예 : 단위 용량의 봉지, 블리스터 스트립) 및 라벨 공간의 제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제품 이름, 배치 번호 및 만료 날짜가 제품에 있어야 함. 전체 제품 정보는 외부 상자와 같이 함께 제공되는 외부 용기에 있어야 함

12. 광고 및 판촉

- 건강 보조제 특정 의약 목적으로 표시, 광고 또는 판촉 되어서는 안 됨. 여기에는 질병, 장애 또는 관련 상태의 치료 또는 예방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
- 건강 보조 식품의 광고 및 판촉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예 : 비타민과 미네랄만 함유한 제품)을 제외하고 허가 승인 대상은 아님. 제품 분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HSA의 CHP(Complementary Health Products) 분류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CHP의 분류를 확인
- 광고 및 판촉 메시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포함하거나 제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어지거나 대중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됨

3. 닭가슴살

통관 보고서 요약

- 한국산 닭고기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인증한 한국 내 생산기관에서 생산된 닭고기만 싱가포르 수입 업체에서 육류 수입 라이선스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함.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기관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정부의 생산기관 인증을 받은 후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될 수 있음

육류 통관 절차 상세

- 싱가포르에 육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무역업 계정 활성화(Trade Account Activation) 신청 및 식품청에서 육류 & 어류 수입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함. 만약 싱가포르 정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생산기관에서 가공/생산된 경우 해당 생산기관은 싱가포르 정부에 생산기관 승인받은 후 일반적인 통관 절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함

1. 관세청 무역업 계정 활성화(Trade Account Activation)

- 싱가포르 법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무역업 계정을 활성화해야 하며, 정보 변경 및 종료도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함
* 관할 정부기관 : 싱가포르 관세청 <https://www.tradenet.gov.sg/tradenet/login.jsp>

- 필요 정보 및 서류

1. 싱가포르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UEN : Unique Entity Number)
2. 싱가포르 법인의 CorpPass
3. 상품 기본 정보 및 HS Codes

- 신청절차

1. 싱가포르 관세청에 무역업 계정 신청 시 일반적으로 1 영업일 후에 승인 결과를 받음
2. 무역업 계정 승인 후 Cargo Clearance Permit(CCP)를 받을 수 있음.
3. CCP 에는 해당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필요 여부가 기재되어 있음

2. 육류 및 어류 라이선스(Meat and Fish Products)

- 싱가포르에 육류를 수입하기 위해서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관할 정부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

- 필요 정보 및 서류

1. 싱가포르 관세청 무역업 신청 완료

2. ACRA(싱가포르 기업청) 사업자 등록증(Business Profile)
3. 싱가포르 법인 이사의 CorpPass
4. Giro 신청서 : 법인계좌 정보, 은행 서명권자 서명, 법인도장

- 신청절차

1. GoBusiness Licensining에서 가공식품 수입 라이선스 신청(수입 상품에 대한 상세내역 및 수입업체의 정보를 기입) 및 신청 비용 결제
2. Giro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입부가세 및 Import Fees의 자동 이체를 위해 Giro 신청서를 제출함. Giro 신청하지 않아도 라이선스 취득은 가능하지만 향후 수입 관련 세금 미납 발생 시 해당 금액이 완납될 때까지 상품통관이 지연되므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해 놓는 것이 좋음
3. 라이선스 취득에 1영업일 소요되며 라이선스 승인 익영업일로부터 수입 통관이 가능함

3. 해외 생산기관 인증(Accredited Overseas Meat and Egg Processing Establishment)

- 해외 공장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육류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승인된 해외 생산기관의 상품만 싱가포르에서 수입이 가능함. 의뢰하신 수지스링크는 싱가포르 정부 승인 생산시설 리스트 1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능함. 수지스링크에서 가공/생산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SFA")에 해외 인증 생산기관 신청서 2를 제출하여 SFA에서 심사 및 승인 후 해당 생산기관의 상품을 싱가포르에서 수입이 가능함

* 관할 정부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

- 필요 정보 및 서류

1. 해외 생산기관 인증 신청서
 - ① 생산기관 기본 정보(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설립연도, 기관 면적)
 - ② 상품 기본 정보(육류, 상품명, 보관 상태(냉장, 냉동))
 - ③ 수출 상품 과거 수출 이력
 - ④ 검역 증명서(Health Certificate)
 - ⑤ 공장 도면
 - ⑥ 상수도 정보
 - ⑦ 생산기관 인적 자원 정보(총 종업원수, 생산기관의 품질 관리자수)
 - ⑧ 육류 가공 시설 정보
 - ⑨ 생산기관 동영상 자료(생산기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
 - ⑩ 싱가포르 수입업체 정보

- 작성된 신청서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인 후 SFA에 제출 가능. 그렇지 않은 경우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서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SFA에 제출해야 함. 제출 시에는 식품에 대한 생산기관의 신청서, 비디오, 브로셔가 첨부되어야 함. SFA에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생산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최종 검사를 실시하며 심사기간은 12주 소요됨

신북방

러시아 RUSSIA

2022년 한눈에 보이는
러시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396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406
03. 비관세 장벽 현황	408
04. 수출 애로사항	416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418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식품시장 규모는 1,691억 4,630만 달러(한화 약 229조 3,116억 원)로, 전년 대비 7.2% 증가함
 -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1,010억 2,800만 달러(한화 약 136조 9,637억 원)이며, 전체 시장의 59.7%에 해당함
 - * 채소류 및 과일류보다 육류와 낙농품(난류 포함) 시장이 더 큰 규모로 형성
 - * 육류 시장 규모는 370억 2,000만 달러(한화 약 50조 1,880억 원)로 가장 큰 비중(21.9%) 차지, 뒤이어 낙농품 시장 14.7%, 채소류 11.1%, 과일 및 견과류 9.5% 순
 -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681억 1,830만 달러(한화 약 92조 3,840억 원)로 전체 식품시장의 40.3%를 차지하며, 스낵류 시장 규모가 전체의 19.7%로 가장 높음

식품시장 규모(2017~2021)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182,112.4	173,948.4	177,811.2	157,798.2	169,146.3	100.0	7.2
신선식품	108,601.0	103,772.0	106,111.0	94,236.0	101,028.0	59.7	7.2
- 육류	39,730.0	37,980.0	38,850.0	34,560.0	37,020.0	21.9	7.1
- 낙농품	26,840.0	25,600.0	26,140.0	23,160.0	24,810.0	14.7	7.1
- 채소류	20,060.0	19,190.0	19,640.0	17,450.0	18,740.0	11.1	7.4
- 과일 및 견과류	17,310.0	16,550.0	16,930.0	15,030.0	16,130.0	9.5	7.3
- 유지류	4,661.0	4,452.0	4,551.0	4,036.0	4,328.0	2.6	7.2
가공식품	73,511.4	70,176.4	71,700.2	63,562.2	68,118.3	40.3	7.2
- 스낵류	35,710.0	34,170.0	34,990.0	31,080.0	33,350.0	19.7	7.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20,880.0	19,960.0	20,410.0	18,110.0	19,430.0	11.5	7.3
- 편의식품	8,281.0	7,946.0	8,161.0	7,272.0	7,833.0	4.6	7.7
- 소스 및 향신료	4,302.0	4,110.0	4,203.0	3,729.0	4,000.0	2.4	7.3
- 스프레드 및 당류	3,374.0	3,073.0	3,002.0	2,546.0	2,624.0	1.6	3.1
- 영유아용 식품	9,64.4	917.4	934.2	825.2	881.3	0.5	6.8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1억 4,510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함
 - 연령대 별 인구수는 55세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의 약 35.7% 비중으로 높으며, 24세 이하 인구 비중이 21%로 낮은 편임
 - 여성 인구수는 약 7,770만 명(약 53.6%), 남성 인구수는 약 6,740만 명(46.4%)으로, 여성 인구의 비중이 남성 인구보다 높음
- 2021년 가구수는 3,709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6,190달러(한화 약 839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0년 대비 23.1% 증가함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1,620달러(한화 약 220만 원)로 약 26.2%의 비중이며, 전년 대비 16.7% 증가함
- 2021년 식품 부문 1인당 연간 소비액은 1,159.17달러(한화 약 157만 원)로 전년 대비 7.2% 증가함
 -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692.26달러(한화 약 93만 원)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
 - * 육류 소비액이 253.70달러(한화 약 34만 원)로 가장 높은 비중(21.9%)을 보임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466.91달러(한화 약 63만 원)이며 스낵류(19.7%)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1.5%)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
 - * 스낵류 소비액은 228.60달러(한화 약 30만 원)로 전년 대비 7.3% 증가함

1인당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1,251.40	1,193.66	1,219.15	1,081.36	1,159.17	100.0	7.2
신선식품	746.23	712.15	727.60	645.76	692.26	59.7	7.2
- 육류	273.00	260.60	266.40	236.80	253.70	21.9	7.1
- 낙농품	184.40	175.70	179.20	158.70	170.00	14.7	7.1
- 채소류	137.80	131.70	134.70	119.60	128.40	11.1	7.4
- 과일 및 견과류	119.00	113.60	116.10	103.00	110.50	9.5	7.3
- 유지류	32.03	30.55	31.20	27.66	29.66	2.6	7.2
가공식품	505.17	481.51	491.55	435.60	466.91	40.3	7.2
- 스낵류	245.40	234.50	239.90	213.00	228.60	19.7	7.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43.50	136.90	139.90	124.10	133.20	11.5	7.3
- 편의식품	56.90	54.52	55.95	49.83	53.68	4.6	7.7
- 소스 및 향신료	29.56	28.20	28.82	25.56	27.41	2.4	7.2
- 스프레드 및 당류	23.18	21.09	20.58	17.45	17.98	1.6	3.0
- 영유아용 식품	6.63	6.30	6.40	5.66	6.04	0.5	6.8

* 출처 : STATISTA

- 신선식품 소비량 중 1인당 연간 채소류 소비량이 112.06kg로 가장 높으며, 뒤이어 낙농품이 56.13kg로 활발히 소비됨
 - * 1인당 연간 과일 및 견과류 소비량은 50.59kg, 육류는 41.70kg 순으로 집계
- 가공식품 중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60.57kg로 최고 수준
 - * 스낵류 소비량이 39.23kg, 편의식품 11.87kg, 스프레드 및 당류 8.23kg 순

1인당 식품 소비량(2017~2021)

(단위 : kg,%)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125.16	122.54	120.87	114.29	112.06	△2.0
	- 낙농품	68.58	65.12	62.45	58.34	56.13	△3.8
	- 과일 및 견과류	59.29	57.21	55.61	52.19	50.59	△3.1
	- 육류	48.81	46.84	45.43	42.95	41.70	△2.9
	- 유지류	6.25	5.99	5.78	5.45	5.27	△3.4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74.96	70.72	67.39	63.00	60.57	△3.9
	- 스낵류	48.59	45.83	43.65	40.83	39.23	△3.9
	- 편의식품	14.51	13.73	13.12	12.31	11.87	△3.5
	- 스프레드 및 당류	11.16	10.39	9.76	8.82	8.23	△6.6
	- 소스 및 향신료	9.30	8.78	8.37	7.80	7.48	△4.1
	- 영유아용 식품	1.22	1.15	1.09	1.01	0.97	△4.3

* 출처 : STATISTA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농식품 수출액은 265억 3,959만 7,000달러(한화 약 35조 9,797억 원)로 전년 대비 13.4% 증가
 - 주요 수출국은 튀르키예(16.3%), 카자흐스탄(10.1%), 중국(8.4%)으로 집계
 - * 튀르키예 수출액은 43억 2,427만 9,000달러(한화 약 5조 8,624억 원)로 전년 대비 38.2%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5.5% 증가
 - *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액은 26억 7,634만 8,000달러(한화 약 3조 6,283억 원)로 전년 대비 34.0%, 연평균 17.1% 증가
 - * 對중국 수출액은 22억 2,595만 4,000달러(한화 약 3조 177억 원)로 전년 대비 3.3% 감소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7,090,764	20,497,394	19,679,353	23,411,757	26,539,597	100.0	13.4	11.6	
1	튀르키예	1,743,589	1,876,891	2,491,511	3,128,113	4,324,279	16.3	38.2	25.5
2	카자흐스탄	1,424,102	1,505,302	1,794,772	1,997,403	2,676,348	10.1	34.0	17.1
3	중국	647,422	970,781	1,429,286	2,302,638	2,225,954	8.4	△3.3	36.2
4	이집트	1,779,950	2,146,716	1,469,154	1,955,082	1,834,439	6.9	△6.2	0.8
5	벨라루스	966,240	1,185,417	1,282,494	1,308,825	1,704,924	6.4	30.3	15.3
6	우크라이나	637,810	620,259	649,546	695,900	801,370	3.0	15.2	5.9
7	우즈베키스탄	306,559	354,641	460,679	679,859	789,272	3.0	16.1	26.7
8	아제르바이잔	579,213	409,175	606,210	674,312	698,816	2.6	3.6	4.8
9	사우디아라비아	343,646	497,038	346,776	690,994	683,225	2.6	△1.1	18.7
10	라트비아	276,171	537,012	409,897	486,243	679,605	2.6	39.8	25.2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수출 주력 품목은 메슬린 외 기타(27.0%)이며 이외 유지류, 곡류, 서류 등이 상위 수출 품목에 해당

* 메슬린 외 기타 수출액은 전년 대비 8.7% 감소한 71억 7,322만 2,000달러(한화 약 9조 7,247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27.0% 차지

* 잇꽃유의 수출액은 24억 3,138만 9,000달러(한화 약 3조 2,962억 원)로 전년 대비 33.6%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출의 9.2% 차지

*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곡류, 조유, 정제유 등이 주를 이루며, 가공식품 중 초콜릿 및 초콜릿 과자 외 코코아 조제품(2.2%)이 수출액 상위에 위치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7,090,764	20,497,394	19,679,353	23,411,757	26,539,597	100.0	13.4	11.6	
1	메슬린 외 기타 (기타) *밀	5,736,495	8,324,549	6,307,167	7,853,729	7,173,222	27.0	△8.7	5.7
2	잇꽃유 (조유) *식물성유지	1,322,084	1,186,577	1,649,154	1,819,475	2,431,389	9.2	33.6	16.5
3	보리 기타 (기타)	731,210	1,025,627	704,746	897,110	964,468	3.6	7.5	7.2
4	저에루크산 유채유와 그 분획물 (조유) *식물성유지	231,561	353,333	496,067	534,861	905,798	3.4	69.4	40.6
5	옥수수 (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이외 기타)	839,312	849,619	527,955	390,394	688,083	2.6	76.3	△4.8
6	잇꽃유 (조유, 정제유 이외 기타) *식물성유지	458,655	420,999	471,732	652,632	673,623	2.5	3.2	10.1
7	코코아 조제품 (초콜릿 및 초콜릿 과자 이외 기타)	359,630	425,443	486,654	495,766	583,473	2.2	17.7	12.9
8	대두유 (조유/기타)	348,371	339,757	332,716	410,847	493,599	1.9	20.1	9.1
9	대두박 *박류	142,158	206,423	194,537	235,072	488,248	1.8	107.7	36.1
10	해바라기박 *박류	187,258	227,801	354,479	362,545	474,055	1.8	30.8	26.1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수산물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1년 농식품 수입액은 311억 2,843만 7,000달러(한화 약 42조 2,008억 원)로 전년도보다 14.6% 증가

- 주요 수입국은 벨라루스(13.5%), 중국(5.3%), 인도네시아(5.3%), 브라질(5.1%), 독일(5.0%) 순으로 집계

* 벨라루스산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41억 8,768만 5,000달러(한화 약 5조 6,772억 원)로 집계되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세

*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6억 5,293만 6,000달러(한화 약 2조 2,409억 원)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으며, 인도네시아산은 전년 대비 59.2% 증가한 16억 4,326만 4,000달러(한화 약 2조 2,278억 원)로 집계

* 브라질산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5억 9,582만 1,000달러(한화 약 2조 1,635억 원), 독일산 농식품 수입액은 14.2% 증가한 15억 7,043만 3,000달러(한화 약 2조 1,290억 원)로 집계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27,027,188	27,726,521	27,790,441	27,152,624	31,128,437	100.0	14.6	3.6
1 벨라루스	3,684,187	3,801,634	3,960,835	3,884,212	4,187,685	13.5	7.8	3.3
2 중국	1,721,338	1,750,358	1,630,249	1,467,806	1,652,936	5.3	12.6	△1.0
3 인도네시아	947,669	919,867	850,544	1,032,222	1,643,264	5.3	59.2	14.8
4 브라질	2,480,753	1,360,340	1,476,476	1,423,754	1,595,821	5.1	12.1	△10.4
5 독일	1,294,015	1,469,689	1,411,514	1,374,946	1,570,433	5.0	14.2	5.0
6 튀르키예	781,288	882,937	1,001,479	1,162,259	1,296,989	4.2	11.6	13.5
7 에콰도르	1,261,453	1,249,298	1,217,221	1,176,204	1,296,102	4.2	10.2	0.7
8 이탈리아	987,870	1,138,155	1,104,067	1,048,391	1,282,179	4.1	22.3	6.7
9 프랑스	899,095	943,000	895,717	956,998	1,152,777	3.7	20.5	6.4
10 아르헨티나	505,927	710,025	669,955	640,633	836,670	2.7	30.6	13.4

- 팜유와 그 분획물 수입액은 12억 7,152만 7,000달러(한화 약 1조 7,238억 원)로 가장 높은 수입 규모(4.1%)이며, 전년 대비 60.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뒤이어 대두 기타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46.8% 증가한 12억 5,902만 8,000달러(한화 약 1조 7,069억 원), 바나나(기타)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10억 7,956만 3,000달러(한화 약 1조 4,636억 원) 기록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27,027,188	27,726,521	27,790,441	27,152,624	31,128,437	100.0	14.6	3.6	
1	팜유와 그 분획물 (조유, 팜 올레인, 팜 스테아린 외)	702,599	752,397	663,616	793,164	1,271,527	4.1	60.3	16.0
2	대두 기타 (기타)	963,850	989,584	788,272	857,858	1,259,028	4.0	46.8	6.9
3	바나나 (기타)	1,140,357	1,154,707	1,119,909	1,116,757	1,079,563	3.5	-3.3	-1.4
4	치즈 (기타)	733,484	746,997	884,975	922,473	965,853	3.1	4.7	7.1
5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 포도즙 (기타/붉은 포도주, 흰 포도주 외/ 2리터 이하의 용기)	752,159	773,336	873,991	853,392	942,751	3.0	10.5	6.0
6	조제품 기타	583,495	624,459	659,028	698,534	889,950	2.9	27.4	11.1
7	쇠고기 (냉동/뼈 없는 것)	853,383	857,596	792,618	696,315	674,494	2.2	-3.1	-5.7
8	핵산과 이들의 염, 그 외 헤테로고리 화합물 (기타)	197,459	277,210	384,590	438,824	570,826	1.8	30.1	30.4
9	버터	486,850	379,318	567,739	497,871	529,089	1.7	6.3	2.1
10	커피 (볶지 않은,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449,624	387,084	403,168	416,155	504,179	1.6	21.2	2.9

*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종자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러시아 농식품 수출현황

• 2021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의 對러시아 수출액 1억 8,894만 6,600달러(한화 약 2,562억 원)로 전년 대비 30.9% 증가

-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과 커피크리머 수출액 비중은 각각 12.0%, 8.0%로 집계

*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은 2,261만 700달러(한화 약 307억 원)로 전년 대비 75.1% 증가하였으며 커피크리머 수출액은 1,512만 4,600달러(한화 약 205억 원)로 전년 대비 17.1% 증가함

- 조제품 기타(7.9%), 프로필렌글리콜(6.8%), 물(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착색한 것)(6.6%) 순
- * 조제품 기타 수출액은 전년 대비 63.9% 증가한 1,489만 2,800달러(한화 약 202억 원)로 집계됨
- * 프로필렌글리콜 수출액은 1,280만 6,900달러(한화 약 174억 원)로 전년 대비 170.4% 증가했으며, 물(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착색한 것) 수출액은 1,247만 5,000달러(한화 약 142억 원)로 전년 대비 19.5% 증가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 규모(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45,172.30	188,817.20	168,513.80	144,308.90	188,946.60	30.9	6.8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45,172.3	188,817.2	168,513.8	144,308.9	188,946.6	100.0	30.9	6.8	
1	소스, 소스제조용 조제품	9,815.0	12,472.5	13,608.3	12,915.1	22,610.7	12.0	75.1	23.2
2	커피크리머	13,567.0	16,850.8	13,670.0	12,915.1	15,124.6	8.0	17.1	2.8
3	조제품 기타	2,028.8	3,367.3	13,740.2	9,086.1	14,892.8	7.9	63.9	64.6
4	프로필렌글리콜	2,033.6	3,694.9	6,181.5	4,735.7	12,806.9	6.8	170.4	58.4
5	물 (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착색한 것)	7,305.4	7,384.5	10,808.3	10,438.6	12,475.0	6.6	19.5	14.3

*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러시아로 수출 시 TR CU 인증 취득이 요구됨
 - 곡물류, 채소 및 과일음료, 유제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등 식품안전 관련 규정(TP TC 021/2011)에서 정하는 품목이 해당됨
- EDI를 통한 수입신고는 현재 도입 단계로, 서류 또는 디스켓을 제출함
 - 통관서류로는 세관신고서,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등이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등은 품목별로 추가 제출
 - 제품설명서 및 라벨링 등은 러시아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류상 경미한 실수도 세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 및 규제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재
- 검역 및 식품위생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음
 - Russian Veterinary Service에서 육류 및 가금류 식품의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수의 인증서가 요구됨
 - 수입되는 식품이 인체에 유해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식품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음
 -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서류를 확인하고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센터에 식품 위생 검사를 요청
 - 러시아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러시아 관할 세관에 통보
- 관세 및 제세 납부까지 완료한 후 최종 통관결정을 받아 물품을 반출
 - 평균 수입관세는 13%로 CIF가격 기준 종가세를 부과하며, 일부 상품은 종량세 및 증가·종량혼합세를 적용함
 - 러시아 연방관세위원회(Federal Customs Committee)에 모든 서류 사본이 송부된 후 연방관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통관 결정이 내려지면 반출 가능함

검역제도

- 러시아로 수출되는 농식품은 식품위생 검사를 거쳐 국내로 반입됨
 - 식품위생 검사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

- 미네랄워터(일반, 치료용 모두)
- 어린이용 식품(모유 대용품, 시리얼, 우유,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으로 제조된 제품, 유아용 식품, 유아용 허브차, 임산부 및 모유를 먹이는 여성용 식품 등 포함)
- 식이요법 제품
- 유제품
- 육류 및 육가공품
- 식품첨가물
- 생물학적 활성 식품 첨가물
- 유전자 변형으로 제조된 식품
- 신기술로 제조된 식품(식품 원자재 포함)

- 육류 및 육가공품, 우유 및 유제품, 동물성 원료로 제조된 식품 등은 수의검역 대상에 해당

- 모든 종류의 동물
- 고기 통조림, 소시지 등 가공육류
- 수출국 위생검사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득한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수입 가능
- 건강한 가축을 도살한 제품으로 제조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된 사료로 사육되지 않은 가축이어야 함
- 질병이 없는 가축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함
- 우유 및 유제품
- 동물 전염병이 없는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
- 수출국 위생검사기관의 통제를 받고 허가를 득한 제조업체의 제품
- 동물성 원료로 제조된 식품
- 동물이 원료인 기타 제품
- 동물 사료
- 동물 의약품 등

- 식물검역은 러시아 연방식물검역소에서 담당하며, 검사 담당 직원이 국경에서 제품을 검사함

- 공식적으로 對러시아 수출 가능 여부가 확인된 농산물은 6개 품목 55종이며, 자두, 복숭아, 아몬드 등 3개 묘목류는 수출 불가함
- 수출 가능 품목은 품목에 따라 재배지 검역 실시 후 수출이 가능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 식물위생요건의 확인이 필요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 수출 가능 품목

협상타결 품목

- 축산물
 - 반려동물사료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옥수수
 - 과일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석류
 - *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중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또는 사과 과실파리, Numonia pyrivorella가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이 필요함
 - 채소류 :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양파
 - 종자류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양파, 콜라비
 - * 수출 시 LMO(GMO)-free 증명서 필요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화훼류 기타 : 심비디움, 팔레놉시스(호접란)
 - * 버섯 및 화훼류 기타 품목은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는 수출불가
 -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식품위생요건 개정에 따라 기존 수출가능 품목도 수출검역요건 확인필요
- 축산물
 - 유제품(크리머), 가죽, 훈제오리육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묘목류 : 자두 묘목, 복숭아 묘목, 아몬드 묘목
 - * 상기 품목 외,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수출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긴 어려움
 - * 검역본부 홈페이지 수출식품검역정보 긴급공지사항 참조
 -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식품위생요건 개정에 따라 기존 수출가능 품목도 수출검역요건 확인필요

• 축산물

- 멸균 식육(돈육) 가공품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Koreana Market(러시아)
업체 유형	한국식품 수입유통업체
담당자명	Olga

- 자사 취급 품목 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품목은 면(라면)이며, 과자나 칩, 미역 등도 잘 팔리지만 캔디류와 같은 당 제품은 잘 팔리지는 않음
- 한국 식품의 통관 진행 시 큰 문제는 없는 편이지만 최근 컨테이너 기다리는 시간이 기존의 2달에서 최소 4달로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음
- 한국 물품만 파는 한국 마켓은 배송에 문제가 있어 제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물류가 가장 큰 문제임
- 이외에 현지에서 이슈가 되는 식품 안전 문제는 특별히 없었음

1. SPS

주요 SPS 내용

- 유전자 공학 활용 농산물 규제에 관한 조치
 - 러시아 정부는 농업 생명공학 식품과 사료의 인증 시스템을 신설함
 - * 해당 시스템에 따라 식품 등록은 유효기간 없이 등록이 가능하지만 사료의 경우 5년 간만 유효하게 됨. 재등록 시에는 평균 100,0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함
 - * 농업 생명 기술을 활용한 작물 경작은 2023년에서 2024년 중 가능해질 예정이며, 그 이전까지는 해당하는 종자의 무역이 금지됨
 -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의 라벨링 요구사항에 따르면 농업생명공학 기술로 생산한 재료가 0.9% 이상 함유되어 있는 모든 식품에 라벨링을 부착해야 함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러시아연방 동식물 검역국	https://fsvps.gov.ru/fsvps/importExport/korea/index.html?_language=en
식품 첨가물 허용치	유라시아연합 집행위원회	http://www.tsouz.ru/KTS/KTS17/Pages/P2_299.aspx

통보문 개정 현황(2022년)

- 개정사항 없음

2. TBT

주요 TBT 내용

- 식품 조성에 사용된 유지 표시를 비롯하여 기술규정의 특정 조항을 명확히 하는 관세동맹 기술규정 “식품 라벨링” 개정안 제4호가 2021년 4월 공고됨
 - 관세동맹 기술규정 “식품 라벨링” 개정안 제4호는 제조에 사용된 식물성(동물성) 유지의 유형, 제품 조성 표시를 비롯한 적용 관행을 고려해 기술규정의 특정 조항을 명확히 함
- <육류 및 육류제품의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CU TR 034/2013) 개정안이 2021년 4월 공고되었으며, 일부 조문의 도입을 규정함
 - CU TR 034/2013 제17항에 이유식 육류 제품의 단백질 및 지방을 나타내는 실제 지표가 CU TR 034/2013의 부속서 4에 규정된 허용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보충함
 - CU TR 034/2013의 제106항에 도축제품 및 육류 제품의 영양가 정보 표시에 적용되는 식품 성분(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열량(칼로리)) 함량의 실제값에 대한 허용제한치 관련 요구사항을 보충함
- 유라시아 정부간위원회 명령 제12호에 따라 <식품 안전성>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개발되었으며, 2021년 2월 이를 공고함
 - <식품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동물에서 유래한 가공되지 않은 식품 및 가공식품에 포함될 수 있는 수의학 의약품 잔류물의 최대 허용 수준을 설정하는 측면에서 개발됨
- 러시아는 모든 제품에 디지털 라벨을 적용하기 위한 디지털 라벨링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함
 - 유제품(치즈, 아이스크림, 우유 등)으로, 아이스크림 및 치즈류가 2021년 6월부터 디지털 라벨링이 적용되며, 그 외 유제품류는 유통기한에 따라 9월과 12월에 순차적으로 디지털 라벨링이 적용됨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유라시아연합 집행위원회	eurasiancommission.org/en/search/results.aspx?k=" TR%20CU%20022/2011"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정보 • 순중량 또는 용량 또는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 영양성분 • 유통기한 •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일자와 포장일자 • TR-CU 인증(EAC 마크) • GMO 원료 정보(해당 시)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러시아어로 표기할 것	
	제품명	제품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명칭을 사용할 것	
		특수가공 처리된 제품의 경우 해당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것	
		항미증진제를 함유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할 것	
	원료	성분의 양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재할 것	
		복합 성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내용은 괄호로 기재할 것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나 가공되지 않은 신선 과일, 베리류, 채소의 경우 미표기 가능	
	보관방법	제조사가 제시하는 보관방법 또는 EAEU의 표준에 따른 보관방법을 작성할 것	
		제품 개봉 이후 제품의 안전성이나 그 품질에 변화가 초래되는 경우, 개봉 후 보관방법에 대해 작성할 것	
	용량	용량 및 중량의 단위는 ml, cl, l, g, kg으로 표기할 것	
개수로 판매되는 제품은 개수로만 표기 가능			
제조일자/유통기한	유통기한이 72시간 미만인 경우 : 시간, 일, 월		
	72시간에서 3개월인 경우 : 일, 월, 년		
	3개월 이상인 경우 : 월, 년 또는 일, 월, 년		
	설탕의 경우 제조년도만 표기할 것		
제조사 정보/수입업체 정보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함께 표기할 것		
	제조사 등록인 상호명을 사용할 것		
	여러 업체에 의해 제조된 경우 해당 업체 정보를 모두 기입할 것		
	제3국에서 생산된 경우 해당 제조사에 대한 정보도 표기할 것		
영양/성분 정보	제3국에서 수입된 제품의 경우 수입자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표기할 것		
	열량(칼로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에 대한 정보를 표기할 것		
	나트륨, 설탕, 지방산의 함량을 일일 권장소비량 기준 백분율로 나타내어 기준에 따라 초록, 노랑, 빨강으로 표시		
	껌, 커피, 식품첨가물, 병입 된 미네랄 생수 등 관세동맹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식품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성분정보	성분 정보의 기준은 100g 또는 100ml 또는 1회 제공량으로 할 것	
		열량 정보는 줄(Joule)과 칼로리(Calorie)로 표기할 것	
	사용방법	제품의 사용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거나 제품의 사용에 있어 위험을 초래하거나 제품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사용방법을 명시할 것	
기타	GMO 원료의 함유량이 0.9% 이상인 식품의 경우 GMO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함		

* 자료 :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USDA FAS)

• 땅콩 스프레드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크런치 땅콩 페이스트	
원재료명	- 땅콩 알맹이 - 지방산의 모노 및 디글리세리드(안정제, 식품산, 지방) - 소금	
내용량	250g	
출시일(발행일)	2021. 12. 23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Agroimpeks	
알레르겐 주의 성분	땅콩, 견과류	
영양성분 정보	- 제공량 100g당	
	단백질	27g
	지방	46g
	탄수화물	10g
	열량(KJ)	2330kJ
	열량(Kcal)	560kcal

• 차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녹차(민트와 레몬밤)
원재료명	- 녹차 - 민트 - 레몬밤 향
내용량	1.8g * 25개입
출시일(발행일)	2022. 02. 03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Mal Kom

인증

[필수 인증]

• TRCU(EAC)

- TRCU(EAC) 인증은 유라시아 경제연합(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공동의 표준 및 인증으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C) 소관임.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내로 수입, 유통되는 제품은 TRCU(EAC) 인증 취득이 필수임

인증명	TRCU(EAC)	
발행 및 검사기관	유라시아 경제연합 집행위원회(EEC) 지정 시험소 및 인증기관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제품설명서, 제조 공정 설명서, 라벨 샘플, 기취득 시험 성적서 등	
비용	650 ~ 25,000유로	
소요기간	2~4주	
절차	신청서 제출 → 시험소 및 제출 서류 안내 → 시험소로 서류 및 샘플 제출 → 실험 및 적합 판정 → 인증 발급	


• HACCP

- HACCP 인증은 유라시아 공통의 인증인 EAC 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취득하여야 하는 인증임

인증명	HACCP	
발행 및 검사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계획서 등	
비용	20만 원	
소요기간	약 40일	
절차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판정 → 인증발급	

• 국가위생등록(SGR)


- 국가 등록은 각 EEU회원국의 관할 기관에서 수행하는 안전에 대한 기본 안전 요구 사항, 통합 위생-역학 및 위생 요구 사항 및 기술 규정 준수에 대한 국가 평가의 유일한 형태임. 이는 연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인구의 안전을 보장함

인증명	국가위생등록(SGR)	
발행 및 검사기관	유라시아 경제연합 집행위원회(EEC) 지정 시험소 및 인증기관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등록증 신청서, 공인시험소에 실시된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 충족에 대한 증빙서류 • 제품 안전성 및 기술규정 요구사항 충족 증빙 서류 	
비용	5,000 RUB *대리인비용/시험비용/컨설팅비용 제외	
소요기간	약 12주	
절차	서류 준비 → 관할 기관에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정보 등록	

[선택 인증]

• GOST-R

-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러시아 기술표준 인증임. GOST-R 인증은 제품 품목과 세부사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적합성 선언, 그리고 자발적 인증으로 나뉨

인증명	GOST-R	
발행 및 검사기관	러시아연방 기술조정 및 도량기관(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강제유무	권장	
제출 서류	제조업자, 수출업자 정보 및 제품 HS CODE, 제품설명서 (러시아어), 기취득 시험 성적서, ISO 품질시스템 인증서, 위생 증명서, 인증 신청서 등	
비용	80만 원	
소요기간	1 ~ 2주	
절차	신청서 제출 → 시험소 및 제출 서류 안내 → 시험소로 서류 및 샘플 제출 → 실험 및 적합 판정 → 인증 발급	


• Hygienic Certificate(위생 인증)

- Hygienic Certificate은 GOST-R 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취득하여야 하는 인증인 동시에, 제품 통관 시 세관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

인증명	Hygienic Certificate	
발행 및 검사기관	러시아연방 위생관리위원회 지역 사무소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수출국 정부 발급 위생 증명서, 식품 검사 신청서	
비용	42만 원	
소요기간	3~5일	
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 검토 → 샘플 검사 → 판정 → 인증발급	

• ISO 22000(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ISO 22000 인증은 식품의 가공업체, 유통업체 모두에 적용되는 최종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 표준임. 해당 표준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인증명	ISO 22000	
발행 및 검사기관	ISO 등록 시험 기관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인증심사 신청서	
비용	투입 심사관의 노동량 기준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심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	
절차	서류제출 → 인증계약 → 계획통보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시정조치 → 인증심의 → 인증취득 → 사후관리심사 → 갱신심사	

No.	제목	수출 서류 구비의 시간 소요로 인한 선적 지연 문제	해당국가	러시아
			관련품목	조미김
1			유형*	수입통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의 통관절차 중 대부분은 러시아 수입상에 의해 처리되나, 한국 기업들이 제공해야 할 서류도 많으므로 절차 등을 잘 숙지해야 함 선적서류 작성은 한국 내 수출업자와 담당 운송업체가 진행해야 하고 나머지 현지 통관서류도 수출업자가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하거나 구비서류 중 한국 수출업자 제출 서류가 별도로 있으므로 잘 숙지해야 함 단계별 구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적 서류 작성 : 선적통지서, 상업송장, 화물리스트, 선하증권, Gost-R인증서, 원산지 증명서 서면 서류 심사 단계 : 세관신고서, 선적 시 작성한 서류, 국경검사대가 작성하여 통관기관에 송부한 전자 통관서류 화물 검사 단계 : 별도 없음, 특혜관세 제품인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서면신고 및 화물검사 재검토 : 수입업자와의 계약서 통관비 납부 및 Deposit 금액 환불 단계 : 통관비 납부 증명 통관 완료 및 반출 단계 : 없음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해야 할 수출 서류가 많아 서류 준비 시간으로 인해 선적이 지연되는 문제 		
기타		-		

No.	제목	겨울철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잦은 선박 지연으로 인한 물류 지연	해당 국가	러시아
			관련 품목	식품전반
2			유형*	기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10월 말부터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물류 수요와 극동 지역 컨테이너 화물 유입이 급증하여 블라디보스토크항, 보스토치니항이 수 주 동안 심각한 적체 및 이로 인한 정기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을 빚음 2023년 1월 극동 항구의 화물 회전율은 2022년 말부터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인해 소폭 증가하여, 선박 대기 시간이 2배 단축되었음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철 12~2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항의 동결로 인해 선박 지연이 잦아 물류가 지연되는 애로사항이 있음 		
기타		-		

No.	제목	러시아어 라벨링 필수 표기 사항 준수	해당국가	러시아
			관련품목	식품전반
			유형*	TBT
3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9월, 식품 라벨에 제조일과 유통기한 정보의 표기를 제외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어,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은 제조일과 유통기한 정보가 유라시아 경제 연합(관세동맹) 기술규정《TR CU 022/2021》에 따라 식품 라벨 의무 표기 사항임을 강조함 •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TR TS 022/2021 Food Products Labeling' 규정에 따라 러시아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식품명, 식품의 구성, 식품의 양, 식품 제조일 및 유통기한, 식품 보관 조건, 식품 제조업체의 이름 및 소재지, 권장 사용법 및 사용방법, 영양 정보, GMO 성분 포함 여부 및 관련 정보,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장에서 사용되는 제품 유통 표식이 필수로 표기되어야 함 • 또한, 러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GOST R. 53598-2009》의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수출 식품의 라벨 준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링 규정 혼동 및 러시아어 라벨 준비로 어려움을 겪음 			
기타	<p>※ [러시아] 식품 수출 시 라벨에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기 필수</p> <p>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6091&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EB%9F%AC%EC%8B%9C%EC%95%84&page=1&srchGubun=75</p>			

1. 녹차분말(녹차 및 미림당 혼합)

일반 정보

• 관세 분류

부류	품명	HS CODE	관세율	비고
기타 조제 농산품	녹차분말	2101202000	11%	수입 부가세 20%

- 수입 인지세는 인보이스에 따라 다름

• 필요 서티(인증)

- 품질 인증서(흔히 DC서티라고도 함)
- 식품 안전규정 021/2011에 의거한 인증서

수입 관세 책정 방법

• 관세 책정 방법

- 모든 관세는 러시아 도착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
- 인코텀스 조건상 'C' 조건을 기준으로 금액 책정
- 인보이스 기준이 FOB일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운임(해상 혹은 에어)을 포함한 가격에서 관세 책정

• 예시

- 1) 인보이스 조건 : FOB BUSAN
- 2) 도착지 : 블라디보스토크
- 3) 인보이스 금액 : 25,000\$
- 4) 해상운임 : 1,000\$
- 5) 적하보험 : 100\$

• 관세 및 부가세 책정

1) 수입 관세

→ 인보이스 + 해상운임 + 적하보험=26,100\$ → 26,100\$ × 0.11(관세 11%) = 2,871\$

2. 수입 부가세

→ 합계금액(26,100\$) + (관세) 2,871\$ = 28,971\$

→ 28,971\$ × 0.2(부가세 20%) = 5,794.2\$

3) 수입 인지세

→ 합계금액(26,100\$) × 환율(1\$=75) = 1,957,500루블

→ 1,200,000루블 ~ 2,700,000루블 사이 요율적용 : 8,530루블

서티(품질 인증)

• 서티 표시내용

- 신청(법)인
- 제품정보
- 제품명, TM
- 제조사명 및 주소
- H.S.Code
- 안전규정 종류(식품은 TP TC 021/2011)
- 시험 성적서 관련 정보
- 시험 성적서 발행 연구소
- 시험성적서 고유 번호
- 추가 정보
- 서티 사용기한
- 서티 고유번호/서티 발행일

• 특징

- 서티 신청은 러시아 법인만 가능
 - * 2019년까지 생산자도 신청가능했으나, 변경됨
- 서티 신청법인이 수입자가 아닐 경우는 서티 발행법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사용가능
- 서티(DC) 종류
 - * 사용기한에 따라 Shipment 혹은 기간(1년, 3년, 5년짜리)으로 나뉨
 - * 시험성적서 종류에 따라 1D, 2D, 3D, 4D로 나뉨
 - 1D 및 3D는 사용기간(1년, 3년, 5년)
 - 2D, 4D는 Shipment 전용
 - * 1D, 2D는 지정되지 않은 연구소의 시험 성적서로 발행가능, 추후 문제발생 가능성 있음
 - * 3D, 4D는 지정된 연구소에서 나온 시험성적서 로만 서티 발행

- 서티 발급 방법

- 서티 발행법인 지정
- 샘플 연구소 발송(공식 샘플통관 진행)
- 연구소에서 나온 시험성적서 수령
- 발행된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서티 발급
- 발급기간
 - * 샘플 통관 : 제품 발송 후 약 1주일
 - * 시험성적서 수령 : 연구소 제품 수령 후 약 2~4주
 - * 시험성적서 발급 후 약 1주일(서티 발행)
- 금액
 - * 시험성적서(1개 기준) : 약 8,000루블 ~ 15,000루블(일반 식품의 경우)
 - * 서티 발급 : 약 10,000루블 ~ 20,000루블

- 서티 발급 종류(1D, 2D, 3D, 4D)

- 1D : 제품안전 규정 중
 - * 산업설비 : 010,004,020,037 가능
 - * 포장용 : 005(산업용일 경우)
 - * 경공업제품 : 017(가죽제품)
 - * 기름 : 030
 - * 식품 : 021,022,029
- 3D : 제품안전 규정 중 모든 제품
- 1D방법으로만 받아야 하는 제품은 없고, 1D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있음
- 일반적으로 전부 3D 방법으로 서티를 받음

라벨링

- 필수 표기사항

- '제품명' 기능적 특성 및 카테고리+TM
- 구성성분
- 제조사 : 제조사명, 주소
- 원산지
- 중량 : net Weight
- 제조일 및 유통기한
- 보관방법
- 영양정보(kcal,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필수표기)
- 수입자 혹은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곳 → 법인명, 주소, 연락처
- EAC 마크

- 특징

- 라벨이 없는 제품은 통관 불가
- 라벨을 별도동봉하여도 통관 불가
- 라벨이 없는 제품은 판매 불가

- EAC 란

-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의 동일한 표시로, 제품이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의미임
- 2011년 9월 23일 시행령 제정 2013년 8월부터 적용
- 크기는 5mm 이상이어야 하고, 제품의 포장단위 혹은 판매단위에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예시



2. 샤인머스켓

일반 정보

• 관세 분류

부류	품명	HS CODE	관세율	비고
신선포도	샤인머스켓	0806101000	5%	수입 부가세 - 식품 수입 : 10% - 종자 또는 기타 목적 : 20%

• 서티(인증) 요구사항

- 본 상품은 EACU 유라시아 관세동맹기술규정 준수 요구됨
 - * 021/2011 식품안전준수
 - * 022/2011 식품 라벨 준수
 - * 029/2011 식품 보조제, 향료 및 가공 보조제에 대한 안전 준수 요구
- DC “품질준수면장”을 발급받아야 함
 - * 1D-scheme DC : 5 000 RUB - 9 000 RUB(Apr.2021)
 - 발급비용 저렴하지만, 수입통관 시 추가서류 요구 가능성 높음
 - * 3D-scheme DC : 20 000 RUB - 25 000 RUB(Apr.2021)
 - 발급비용 높지만 수입통관 시 추가문의 없이 빠른 통관 기대됨

- 유라시아 관세동맹국 수입 시 국경에서 식물위생검역 대상이 됨
- 의무라벨 마크 : EAC(유라시아품질규격) 마크
- 라벨기재언어 : 러시아어

수입 관세 책정 방법

• 관세 책정 방법

- 수입관세는 상품에 대한 세관인정가격에 적용됨
- 인보이스 기준이 FOB일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운임(해상 혹은 에어)을 포함한 가격에서 관세 책정

서티(품질 인증)

- 식품품질 및 안정규정 법령 TR 021/2011의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식품생산자는 HACCP 원칙에 따라 모든 생산절차 및 방법을 관리하고 실행해야 함

- 관련 법령 TR 022/2011에 의거하여 식품라벨은 하기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제품명
 - 브랜드명 + 기능적 특성 및 카테고리(광고 아님)
 - 구성성분
 - 제조업체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등/연락처
 - 원산지
 - 상표, 브랜드명
 - 중량/Gross weight, Net weight, 용량
 -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통기간 및 만료일
 - 보관방법
 - 권장섭취방법
 - 바코드
 - 인증정보
 - 영양정보(킬로칼로리, 비타민, 설탕... 등)

- 식품에 하기 성분이 사용되었거나 함유되었을 경우 라벨에 표시해야 함
 - 생물학적 활성 건강보조제/첨가제
 - 향미 물질(향미 품질을 향상하는 물질도 포함됨)
 - 식품착색제
 - 유전자 변형제품

- 러시아 국가표준규격에 의거하여 식품 성분은 함유량 크기 순서대로 기재함

- 2종 이상 혼합성분 시 각 성분을 풀어서 라벨에 기재하며, 추가 혼합성분들은 기준 성분 알 괄호로 묶어서 기재할 수 있음
 - 성분 2% 미만일 경우에는 각 성분들을 열거할 필요가 없음
 - 유전자변형물질(GMO)로 만들어졌거나 사용된 생물학적 활성 건강보조제, 첨가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라벨에 기재해야 함

- 미네랄&비타민
 - 천연(첨가되지 않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포함된 경우, 함량 정보 없이 기재할 수 있음
 - 그러나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제품의 일일 권장량을 제시해야 함

- 알레르기 반응 항원성분
 -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거나 특정 질병 및 건강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은 반드시 열거해야 함
 - 이러한 성분은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 라벨에 표시해야 함
- 영양정보
 - 러시아국가표준규격에 의거하여 100g(10ml 또는 100cc) 당 함유량을 제품 라벨에 기재해야 함

품질준수면장

- 유라시아관세동맹 기술규정 021/2011에 의거하여 수입자는 유라시아경제연합국가로 수입하거나 유통 시 식품안전에 관한 품질준수면장(DC)을 발급받아야 함
- 품질준수면장 DC는 하기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신고업체명 및 주소
 - 제조업체명 및 주소
 - 제품식별정보 : 상품설명, 브랜드명
 - 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EACU 기술 규정
 - 신고 절차
 - 품질준수면장 DC의 접수 근거로 유라시아 관세동맹 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의 연구소 테스트, 측정, 연구에 대한 정보
 - 품질준수면장 DC의 유효기간 표시
- 신선포도 신고 시 1D, 2D, 3D 세 가지 신고 방식이 있음
 - EACU RT 021/2011 및 EACU 위원회의 2011년 4월 7일 621 법령에 따라 수입자는 세 가지 신고 방식 주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1D와 3D는 연속 생산/출하 제품에 사용되므로, 신고면장 유효기간 내에 무제한 생산/출하가 가능함
 - * 1D 신고방식 : 신고자가 상품 제조국, EACU 국가들 또는 제3국의 실험실 또는 테스트 기관 중 상품 테스트 장소를 선택할 수 있음
 - * 3D 신고방식 : EAEU 내에 있는 EAEU 공식지정 실험실에서만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수입 전에 소량 샘플 물량을 수입하여 테스트를 진행함
 - 2D는 제한된 수량으로 생산되고 출하되는 상품에만 사용되므로 본 신선포도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

식물위생 국경 검역

- 식품용으로 수입된 신선 포도는 유라시아 관세동맹국 국경에서 식물위생검역 대상이며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식물검역센터에 원산지(수출국)에서 발급된 수출용 식물검역증 원본을 제출해야 함(사본 대체 불가)
 - 원산지 수출용 식물검역증은 선적건 별로 매번 발급받아야 함
 - 관세동맹국 수입항에 도착된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식물 검역증이 제출되고, 세관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식물위생검역센터는 포도의 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를 위해 인증된 실험실로 보내 검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면 수입식물검역증을 발급함
 - * 식물위생검역센터는 수입자에 제조업체, 원산지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EAC 인증마크 표시

- 유라시아품질규격(EAC) 품질인증 서티를 발급받은 상품은 포장에 “EAC 인증마크”를 표시한 후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들의 시장에 유통할 수 있음
 - EAC 마크는 제품 포장 위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포장 인쇄를 통해서 표시되어야 함
 - 러시아를 포함한 EAEU 유라시아경제연합국가들 영토에 도착하기 전에 표시되어야 함
 - EAEU 유라시아경제연합 인증서티와 EAC 마크 없이 수입통관할 수 없으며, 시장에 유통할 수 없음
- EAC 인증마크는 일반적으로 하기의 두 가지 형태로 포장 라벨에 표시됨



- EAC 인증마크는 흑백 이외의 다른 색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서로 대조된 색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마크, 기호 등을 가리지 않아야 함

- 러시아어 상품정보 라벨스티커를 한글 포장 라벨 위에 겹쳐 부착하여 러시아 시장에서 유통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됨

신북방

카자흐스탄 KAZAKHSTAN

2022년 한눈에 보이는
카자흐스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430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439
03. 비관세 장벽 현황	440
04. 수출 애로사항	444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전체 식품시장 규모는 486억 7,450만 달러(한화 약 65조 9,880억 원)로 전년 대비 5.7% 증가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279억 7,200만 달러(한화 약 25조 762억 원)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57.5% 차지
 - * 육류 시장규모가 93억 1,900만 달러(한화 약 12조 6,338억 원)로 전체 시장의 19.1%를 차지하며, 신선식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207억 250만 달러(한화 약 28조 664억 원)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42.5% 차지
 - * 스낵류 시장이 가장 높은 비중(21.5%) 차지하며, 전년 대비 5.7% 증가함.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2.0%), 편의식품(4.7%), 소스 및 향신료(2.4%) 순

식품 시장 규모(2017~2021)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43,094.5	45,769.1	46,399.6	46,039.9	48,674.5	100.0	5.7
신선식품	24,771.0	26,306.0	26,667.0	26,459.0	27,972.0	57.5	5.7
- 육류	8,317.0	8,815.0	8,919.0	8,832.0	9,319.0	19.1	5.5
- 낙농품	6,536.0	6,935.0	7,025.0	6,965.0	7,358.0	15.1	5.6
- 채소류	4,849.0	5,159.0	5,238.0	5,206.0	5,513.0	11.3	5.9
- 과일 및 견과류	3,934.0	4,191.0	4,262.0	4,242.0	4,498.0	9.2	6.0
- 유제품	1,135.0	1,206.0	1,223.0	1,214.0	1,284.0	2.6	5.8
가공식품	18,323.5	19,463.1	19,732.6	19,580.9	20,702.5	42.5	5.7
- 스낵류	9,283.0	9,858.0	9,992.0	9,914.0	10,480.0	21.5	5.7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5,218.0	5,531.0	5,595.0	5,540.0	5,845.0	12.0	5.5
- 편의식품	1,979.0	2,111.0	2,151.0	2,144.0	2,277.0	4.7	6.2
- 소스 및 향신료	1,044.0	1,110.0	1,126.0	1,118.0	1,183.0	2.4	5.8
- 스프레드 및 당류	570.6	610.4	622.9	621.5	660.6	1.4	6.3
- 영유아용 식품	228.9	242.7	245.7	243.4	256.9	0.5	5.5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1,920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함
 - 연령대 별 인구수는 55세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의 약 27.8% 비중으로 높지 않으며, 24세 이하 인구 비중이 32.2%로 높은 편임
 - 여성 인구수는 약 10,000만 명(약 51.9%), 남성 인구수는 약 9,200만 명(48.1%)으로, 여성 인구의 비중이 남성 인구보다 높음
- 2021년 총 가구수는 427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5,420달러(한화 약 735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1년 대비 13.6% 증가함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3,170달러(한화 약 430만 원)로 약 58.5%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3.9% 증가함
- 가장 소비량이 많은 품목은 채소류로 1인당 연간 219.55kg 소비
 - 채소류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로 2021년 전년 대비 1.3% 감소 동향을 보였으며, 뒤이어 낙농품 125.2kg, 과일 및 견과류 98.77kg 순으로 집계됨
 - 가공식품 중에서는 베이커리 제품 및 시리얼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43.4k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뒤이어 1인당 연간 스낵류 소비량이 92.42kg으로 집계

1인당 식품 소비량(2017~2021)

(단위 : 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219.22	223.03	229.44	222.34	219.55	△1.3
	- 낙농품	131.21	131.19	132.74	128.28	125.20	△2.4
	- 과일 및 견과류	104.20	104.12	105.20	101.02	98.77	△2.2
	- 육류	81.46	81.38	82.34	79.60	77.67	△2.4
	- 유제품	12.74	12.74	12.91	12.46	12.12	△2.7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56.15	154.18	154.27	148.02	143.43	△3.1
	- 스낵류	100.07	98.92	99.08	95.23	92.42	△3.0
	- 편의식품	27.08	26.86	27.00	26.06	25.40	△2.5
	- 소스 및 향신료	17.48	17.32	17.39	16.71	16.23	△2.9
	- 스프레드 및 당류	12.82	12.76	12.83	12.38	12.05	△2.7
	- 영유아용 식품	1.44	1.42	1.42	1.36	1.32	△3.2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농식품 수출액은 30억 797만 7,000달러(한화 약 4조 779억 원)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함
 - 우즈베키스탄(36.3%), 아프가니스탄(14.6%), 타지키스탄(12.9%) 등으로 주로 수출
 - * 우즈베키스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2% 증가한 10억 9,339만 3,000달러(한화 약 1조 4,823억 원)로, 2017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23.2% 기록
 - * 아프가니스탄 수출액은 4억 3,997만 3,000달러(한화 약 5,965억 원)이며 전년 대비 9.9% 감소함
 - * 2021년 이란 수출액이 전년 대비 115.2%로 크게 증가하여, 2억 7,412만 2,000달러(한화 약 3,716억 원)로 집계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878,492	2,447,537	2,604,569	2,669,127	3,007,977	100.0	12.7	12.5
1 우즈베키스탄	474,242	635,628	761,188	965,912	1,093,393	36.3	13.2	23.2
2 아프가니스탄	425,058	403,721	320,054	488,481	439,973	14.6	△9.9	0.9
3 타지키스탄	241,946	234,559	280,433	341,932	386,526	12.9	13.0	12.4
4 이란	169,880	330,682	297,531	127,399	274,122	9.1	115.2	12.7
5 중국	162,837	228,938	359,686	405,739	229,267	7.6	△43.5	8.9
6 투르크메니스탄	27,994	67,943	73,170	45,377	99,414	3.3	119.1	37.3
7 이탈리아	61,117	69,412	32,846	40,775	78,628	2.6	92.8	6.5
8 벨기에	47,932	62,538	94,981	60,163	75,019	2.5	24.7	11.8
9 튀르키예	79,301	111,643	99,273	30,205	72,755	2.4	140.9	△2.1
10 폴란드	19,746	29,074	34,640	31,723	56,829	1.9	79.1	30.2
34 한국	480	377	568	460	595	0.0	29.2	5.5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 품목 중 메슬린 외 기타(44.5%)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메슬린 가루, 아마인, 보리 등 곡류, 종자류를 주로 수출하고 있음
 - * 수출 1위 품목인 메슬린 외 기타 품목의 수출액은 13억 3,896만 달러(한화 약 1조 8,152억 원)로 전년 대비 33.3% 증가함
 - * 뒤이어 메슬린 가루의 수출액이 4억 1,716만 달러(한화 약 5,655억 원) 전체 수출액의 13.9%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9.5% 감소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878,492	2,447,537	2,604,569	2,669,127	3,007,977	100.0	12.7	12.5	
1	메슬린 외 기타 (기타) *밀	514,243	801,479	848,421	1,004,146	1,338,960	44.5	33.3	27.0
2	메슬린 가루 *밀	459,584	432,028	336,603	460,996	417,160	13.9	△9.5	△2.4
3	아마인 (파쇄여부 불문)	104,523	138,735	168,256	198,095	202,868	6.7	2.4	18.0
4	보리 기타 (기타)	135,011	287,850	288,146	172,732	169,815	5.6	△1.7	5.9
5	해바라기씨 (파쇄여부 불문)	83,120	90,363	154,154	80,264	65,677	2.2	△18.2	△5.7
6	잇꽃유 (조유) *식물성유지	26,994	38,448	49,152	75,610	65,097	2.2	△13.9	24.6
7	순종 사육 이의 생우	580	19,383	70,840	10,103	60,838	2.0	502.2	220.0
8	듀럼종 (기타) *밀	84,671	102,258	83,053	67,721	53,476	1.8	△21.0	△10.9
9	잇꽃유 (조유, 정제유 이외 기타) *식물성유지	9,678	10,449	13,313	14,099	36,465	1.2	158.6	39.3
10	저에루크산 유채유와 그 분획물 (조유) *식물성유지	6,605	18,150	44,058	40,764	29,260	1.0	△28.2	45.1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1년 농식품 수입액은 18억 5,431만 달러(한화 약 2조 5,139억 원)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

- 우즈베키스탄(14.1%), 우크라이나(8.7%), 중국(8.6%), 미국(7.4%), 브라질(4.3%) 등에서 주로 수입, 한국산 수입액의 비중은 0.7%로 전체 수입국 중 30위

* 우즈베키스탄산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2억 6,192만 3,000달러(한화 약 3,551억 원)로 집계, 연평균 6.4%의 감소율 기록

* 우크라이나산 수입액은 1억 6,101만 7,000달러(한화 약 2,183억 원)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으며, 뒤이어 중국산 수입액의 규모가 1억 5,936만 2,000달러(한화 약 2,160억 원)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미국산 수입액은 1억 3,634만 9,000달러(한화 약 1,848억 원)로 전년 대비 6.7% 감소함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772,826	1,816,244	1,710,264	1,610,554	1,854,310	100.0	15.1	1.1
1 우즈베키스탄	341,718	413,405	290,624	260,088	261,923	14.1	0.7	△6.4
2 우크라이나	192,391	170,454	165,432	152,735	161,017	8.7	5.4	△4.4
3 중국	155,481	150,459	168,719	149,605	159,362	8.6	6.5	0.6
4 미국	122,650	147,611	177,900	146,159	136,349	7.4	△6.7	2.7
5 브라질	96,504	52,759	47,473	29,670	79,078	4.3	166.5	△4.9
6 이란	28,521	35,935	29,897	64,986	78,892	4.3	21.4	29.0
7 튀르키예	37,063	31,202	38,874	47,322	66,975	3.6	41.5	15.9
8 폴란드	78,943	62,037	72,373	54,612	56,486	3.0	3.4	△8.0
9 케냐	51,282	52,542	51,435	55,265	55,543	3.0	0.5	2.0
10 독일	57,895	62,493	48,049	55,757	55,002	3.0	△1.4	△1.3
30 한국	19,960	15,152	21,371	9,472	12,529	0.7	32.3	△11.0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 중 닭(기타 설육/냉동)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1억 315만 9,000달러 (한화 약 1,399억 원)로 가장 큰 수입 비중(5.6%) 차지

* 뒤이어 조제품 기타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억 31만 1,000달러(한화 약 1,360억 원) 기록

* 홍차와 부분발효차(기타) 수입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8,438만 6,000달러(한화 약 1,144억 원)로 집계

* 2020년 대비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기타 사탕수수당과 버찌 기타(신선) 품목으로, 기타 사탕수수당은 전년 대비 291.1%의 성장률로 8,302만 1,000달러(한화 약 1,126억 원)의 수입액을 기록했으며, 버찌 기타(신선)는 전년 대비 143.2% 증가하여 3,842만 6,000달러(한화 약 521억 원)로 집계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772,826	1,816,244	1,710,264	1,610,554	1,854,310	100.0	15.1	1.1
1 닭 (기타설육/냉동)	90,545	94,810	131,102	108,043	103,159	5.6	△4.5	3.3
2 조제품 기타	59,191	66,056	85,096	102,648	100,311	5.4	△2.3	14.1
3 홍차와 부분발효차 (기타)	92,881	84,245	82,576	80,818	84,386	4.6	4.4	△2.4
4 기타 사탕수수당 (평균도수 98.5도를 초과하는 것)	112,932	59,528	43,088	21,225	83,021	4.5	291.1	△7.4
5 포도 (신선)	68,878	66,798	64,919	43,182	49,922	2.7	15.6	△8
6 팜유와 그 분획물 (조유, 팜 올레인, 팜스테아린 외 기타)	20,019	29,555	23,030	31,465	44,486	2.4	41.4	22.1
7 사과 (신선)	50,801	44,224	60,882	44,197	40,107	2.2	△9.3	△5.7
8 조제식료품 (기타)	40,772	41,317	16,173	20,371	39,382	2.1	93.3	△0.9
9 버찌 기타 (신선)	47,642	102,704	10,448	15,801	38,426	2.1	143.2	△5.2
10 토마토 (기타, 신선, 냉장)	55,824	44,973	38,963	38,403	37,386	2.0	△2.6	△9.5

* 주1: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종자 등은 제외함

* 주2: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농식품 수출현황

• 2021년 對카자흐스탄 한국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한 2,222만 1,800달러 (한화 약 301억 원)로 집계

- 농산물 수출액이 2,163만 9,300달러(한화 약 293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97.4%를 차지하며, 축산물이 전년 대비 203.7%의 성장률로 46만 1,300달러(한화 약 6억 원)의 수출액 기록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라면(17.5%), 조제품 기타(13.6%), 커피크리머(13.0%), 라신의 염(9.0%), 베이커리 조제품(8.5%)이 있음

* 라면 수출액이 389만 7,300달러(한화 약 53억 원)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여, 전체 수출액의 17.5% 비중으로 1위를 기록함

* 조제품 기타는 301만 5,600달러(한화 약 41억 원)로 전년 대비 26.4%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4%를 기록함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수출 규모(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32,848.2	34,990.9	26,983.6	19,070.4	22,221.8	100.0	16.5	△9.3
농산물	28,737.4	23,894.5	23,541.1	18,554.5	21,639.3	97.4	16.6	△6.8
축산물	60.1	4.5	31.7	151.9	461.3	2.1	203.7	66.4
임산물	4,050.7	11,091.9	3,410.8	364.0	121.2	0.5	△66.7	△58.4

* 출처: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32,848.2	34,990.9	26,983.6	19,070.4	22,221.8	100.0	16.5	△9.3
1 라면	2,630	3,152	3,839	3,612	3,897.3	17.5	7.9	10.3
2 조제품 기타	3,196	2,587	2,445	2,386	3,015.6	13.6	26.4	1.4
3 커피크리머	5,568	6,750	5,210	3,815	2,885.3	13.0	△24.4	△25.6
4 라신의 염	216	683	675	900	2,005.8	9.0	122.9	74.5
5 베이커리 조제품	813	1,300	1,372	1,484	1,884.7	8.5	27.0	23.4

* 주: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섬유판, 종자 등은 제외함

* 출처: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카자흐스탄으로 수출 시 TRCU 인증 취득이 요구됨
 - 곡물류, 채소 및 과일음료, 유지류,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등 식품안전 관련 규정(TP TC 021/2011)에서 정하는 품목이 해당됨
- 세관 도착 전 미리 신고하거나 도착한 직후 수입신고
 - 세관에 상품 또는 차량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세관 신고가 진행되고 통관 승인은 1년간 유효
 - 계약서, 상업송장, 사진이 첨부된 제품설명서,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원산지증명서, 세관 신고와 관련 신고자 위임장, 검역증명서(요구 시) 등을 제출

- 품목에 따라 검역 및 검사가 실시됨
 - 동물성 제품은 가공 및 생산하는 시설을 당국에 생산시설로 등록
 - 원산지증명서, TRCU 인증 적합성선언(DOC), 식물검역증명서, 수의검역증명서, Non-GMO 확인 서류 등 필요
 - 수입업자가 식품검사를 신청하며 보건부 산하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검사결과 적합 시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세관에 결과 통보

- 관세납부 후 화물 반출 및 통관 완료
 - 평균 수입관세는 약 9% 수준으로 부가세는 품목별로 공통 12%를 적용, 소비세 및 통관비용은 품목에 따라 상이
 - 수입식품이 부적합 판정된 경우 반송, 폐기, 재처리 등의 조치를 취함

검역제도

-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농식품은 품목에 따라 ① 위생-전염병 검역 ② 수의검역 ③ 식물검역이 요구됨
 - 위생-전염병 검역(Sanitary-Epidemiological control)은 아래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카자흐스탄의 품질 및 안전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및 연방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을 제출해야 함
 - * 국가등록증명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는 제품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위생규정을 따른다는 확인서로 2010년 6월 1일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국가별 위생증명서(Hygienic Certificate)를 통합·대체함
 - * TR CU 021/2011 식품안전규정(2011.12.9.)에 따라 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 생산하는 시설은 국가등록 필요

- 미네랄워터(일반, 치료용 모두)
- 어린이용 식품(모유 대용품, 시리얼, 우유,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으로 제조된 제품, 유아용 식품, 유아용 허브차, 임산부 및 모유를 먹이는 여성용 식품 등 포함)
- 식이요법 제품
- 유제품
- 육류 및 육가공품(영양이 첨가된 제품 포함)
- 식품첨가물
- 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물
- 유전자 변형으로 제조된 식품
- 신기술로 제조된 식품(식품 원자재 포함)

- 육류 및 육가공품, 우유 및 유제품, 동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 동물 사료 및 의약품 등은 수의 검역 대상에 해당

* 유라시아경제연합 수의 위생 조치의 적용에 대한 관세동맹 위원회 결정 317호(2010.6.18.)에서 수의규제 대상 품목을 규정

- 산 동물(농업용, 가정용, 야생, 동물원, 바다, 상업용 모피, 서커스, 실험용 등을 포함한 모든 동물), 산 새(가정용, 야생, 장식용 등을 포함한 모든 새)
- 모든 종류의 육류 및 육류제품 : 가공류 포함
- 우유 및 유제품
- 조란 제품
- 동물을 원료로 하는 물질
- 동물 사료 및 사료 첨가물 : 애완용 식품 포함

* 검역대상 품목의 관세동맹 영토 내로의 반입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반입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허가는 연간 반입물량에 정함이 있음

* 관세동맹 영토 내로 반입되는 검역대상 물품은 반입 시마다 반입허가서와 수출국의 권한 기관에서 발급한 수의 위생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의 제출 필요

* 검역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는 국경 통과소에서 서류검토와 컨테이너 검사로 진행하며, 국경 통과소 통과 물품은 목적지에서 완전한 수의 위생 관리가 이루어짐

- 카자흐스탄은 수출국의 수출식품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 국내 검역 후 수출된 식품은 카자흐스탄의 식물위생검역소 및 차량 국경 교차점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통합 검역 식물 위생 요건에 따라 검역 진행

* 검역 규제 품목은 식물위생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대부분의 구근, 산 식물, 신선 화훼·채소·과일 종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건조 및 반 가공된 농산물은 저위험군으로 분류됨

*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해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물 검역 후 검사 합격증(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발급받아 카자흐스탄 세관 당국에 사전 제출해야 함

* 검역은 서류검토, 운송 수단 검사, 검역 대상 품목 검사로 진행되며, 수출국의 식물위생 특성에 따라 필요시 샘플링, 실험실 테스트를 진행

*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식품은 식물위생검역소에서 검역 후 통과 시 검역확인서(Act of quarantine phytosanitary control) 발행

● 공식적으로 對카자흐스탄 수출 가능 여부가 확인된 농산물은 사과, 배, 감자, 양배추 종자가 유일¹⁾

1)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 수출 가능 품목

협상 없이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사과, 배, 감자, 양배추 종자
 - * 상기 품목 외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가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2. 수출 불가능 품목

- 수출 불가능 품목 없음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Miko(카자흐스탄)
업체 유형	한국식품 수입유통업체
담당자명	alexandra

- 자사에서 취급하는 한국 식품 중에서는 라면과 떡볶이의 판매량이 가장 많으며, 새우깡이나 꿀, 양파링 등 과자류와 인스턴트커피 등이 잘 팔림
- 할랄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판매촉진에 도움이 될 것 같음
- 한국식품 수입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류 운송 시간으로, 카자흐스탄까지 도착하는 데 4~5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농식품 수입에 한계가 있으며, 수입을 한 경우라고 해도 판매시한이 길지 않아 수입 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국산 과일 및 채소는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하지 않고 있음
-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떡볶이 제품이 있었으나, 카자흐스탄 도착 후 내용물에 상해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음

03

비관세 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식물 위생 검역 요건에 대한 개정안 고시
 - 유라시아경제연합 집행위원회는 2016년 11월 식물 검역 요건에 대한 수정안을 고시함
 - * 본 규정은 ToBRFV(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PepMV(Pepino Mosaic Virus), TSWV(Tomato Spotted Wilt Virus)와 기타 식물 위생과 관련하여 통관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유라시아경제연합 집행위원회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xnreg/depsanmer/regulation/Pages/%D0%A4%D0%B8%D1%82%D0%BE%D1%81%D0%B0%D0%BD%D0%B8%D1%82%D0%B0%D1%80%D0%BD%D1%8B%D0%B5-%D0%BC%D0%B5%D1%80%D1%8B.aspx
식품 첨가물 허용치	유라시아경제연합 집행위원회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xnreg/deptexreg/tr/Pages/default.aspx

통보문 개정 현황(2022년)

- 개정사항 없음

2. TBT

주요 TBT 내용

- 식품 관련 주요 TBT 규정 확인된 바 없음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유라시아경제연합 집행위원회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xnreg/deptexreg/tr/Pages/default.aspx
포장 규정	유라시아경제연합 집행위원회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xnreg/deptexreg/tr/Pages/default.aspx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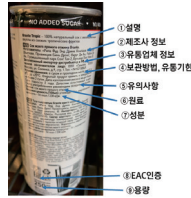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제조사 정보 또는 수입업체 정보 • 순중량 또는 용량 또는 수량 •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O 원료 정보 • 성분 정보 • 보관 방법 • 유통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일자와 포장일자 • 추천 또는 제한되는 사용방법(필요한 경우) • EAC 마크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카자흐스탄어와 러시아어로 표기할 것	
	제품명	제품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명칭을 사용할 것	
		특수가공 처리된 제품의 경우 해당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것	
	원료	항미증진제를 함유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할 것	
		성분의 양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재할 것	
		복합 성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내용은 괄호로 기재할 것	
	보관방법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나 가공되지 않은 신선 과일, 베리류, 채소의 경우 미표기 가능	
		제조사가 제시하는 보관 방법 또는 EAEU의 표준에 따른 보관방법	
	용량	제품 개봉 이후 제품의 안전성이나 그 품질에 변화가 초래되는 경우, 개봉 후 보관 방법에 대해 작성할 것	
		용량 및 중량의 단위는 ml, cl, l, g, kg으로 표기할 것	
제조일자/유통기한	개수로 판매되는 제품은 개수로만 표기 가능		
	유통기한이 72시간 미만인 경우 : 시간, 일, 월		
	72시간에서 3개월인 경우 : 일, 월, 년		
	3개월 이상인 경우 : 월, 년 또는 일, 월, 년		
	설탕의 경우 제조년도만 표기할 것		
제조사 정보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함께 표기할 것		
	제조사의 등록된 공식적인 상호명을 사용할 것		
	여러 업체에 의해 제조된 경우 해당 업체 정보를 모두 기입할 것		
	제3국에서 생산된 경우 해당 제조사에 대한 정보도 표기할 것		
성분정보	제3국에서 수입된 제품의 경우 수입자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표기할 것		
	열량(칼로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에 대한 정보		
	맛, 겉, 커피, 식품첨가물, 병입 된 미네랄 생수 등 관세동맹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식품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성분 정보의 기준은 100g 또는 100ml 또는 1회 제공량으로 할 것		
	열량 정보	열량 정보는 줄(Joule)과 칼로리(Calorie)로 표기할 것	
	사용방법	사용자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거나 제품의 사용에 있어 위험을 초래하거나 제품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사용 방법을 명시할 것	
기타	GMO 원료의 함유량이 0.9% 이상인 식품의 경우 GMO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함		

* 자료 : TR CU 022/2011, 미국 농무부 해외식품서비스(USDA FAS)

• 음료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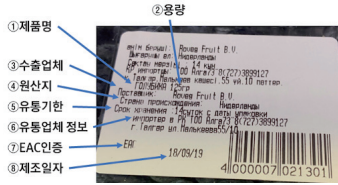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명	MANGO JUICE 망고 주스
제조사 정보	зготовитель: "Рита Фуд энд Дринк Компани Лимитед"(Вьетнам, Провинция Бинь Дуонг, Округ Ди Ан, Район Ди Ан, Промышленный парк Сонг Тан 2, Бульвар Тонг Нкат, 8. "Rita Food and Drink Company Ltd"(Vietnam, Bin Dong province, Di An District, 2 Song Tan industrial park, 8 Tong Nhat Avenue)
유통업체 정보	Эксклюзивный импортер-дистрибьютер в РФ, уполноченное изготовителем лицо :ООО "Гранте", 109028, Москва, ул. Солянка, д.9, стр.1.Тел : +74952150849 TOO Grante Asia, 050057, Almaty, Ryskulov ate. 48A, apartment 214. 전화 : +77273274959
보관방법, 유통기한	Условия хранения: в сухом и прохладном месте при 1°C от 0°C до +25°C. Открытый продукт хранить в холодильнике не более 2 суток. Дата изготовления указана на дне банки. Срок годности 2 года. 0 ~ 25°C의 온도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에는 2일 동안 냉장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 일자 는 캔 아래에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2년입니다.
유의사항	Допустим естественный осадок. Перед употреблением рекомендуем охладить и взболтать. 약간의 침전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드시기 전에 차게 하여 흔들어 드세요.
원료	Состав: сок манго прямого отжима. 직접 착즙 한 망고 주스
성분(100ml 당)	Energy 238 kj / 56kcal, Total Fat 0g Saturated Fat 0g, Total Carbohydrate 14g, Total Sugars 14g, Protein 0g, Salt 0.03g 열량 238 kj / 56 kcal, 총 지방 0g 산화지방 0g, 총 탄수화물 14g, 총 설탕 14g, 단백질 0g, 나트륨 0.03g
용량	250ML
인증	EAC 인증, 할랄, ISO 22000:2005, HACCP
제조일 및 유통기간	포장상 표기(Best Before 일/월/연도) 유통기한 : 12개월

• 신선식품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명	ГОЛУБИКА 블루베리	
용량	125g	
수출업체	Roveg Fruit B.V.	
원산지	Нидерланды 네덜란드	
유통기한	14 суток с даты упаковки 제조일로부터 14일 이내	
유통업체 정보	импортер в РКТООАлга 73°8"(727) 3899127 г. Талгар ул. Малькеева 55/10	"TOO Alga 73" 8(727) 3899127. Talgar city, 55/10 Malkeeva str
인증정보	EAC 인증	
제조일자	18/09/19	

인증

[필수 인증]

• TRCU(EAC)

- TRCU(EAC) 인증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공동의 표준 및 인증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내로 수입, 유통되는 제품은 TRCU(EAC) 인증 취득이 필수임

인증명	TRCU(EAC)	
발행 및 검사기관	유라시아 경제연합 집행위원회(EEC) 지정 시험소 및 인증기관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 신청서, 제품설명서, 제조 공정 설명서, 라벨 샘플, 기취득 시험 성적서 등	
비용	650 ~ 25,000유로	
소요기간	2~4주	
절차	신청서 제출 → 시험소 및 제출 서류 안내 → 시험소로 서류 및 샘플 제출 → 실험 및 적합 판정 → 인증 발급	

No.	제목	물류 문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당국가	카자흐스탄
			관련품목	가공식품
			유형*	기타
1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제품 수출 시 이용 가능한 항공 물류사는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아스타나가 있음 운송기간은 하루가 소요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항공물류 운행 주기가 주 3~4회에서 2주에 1번으로 급감했으며, 항공 운송료도 인상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는 가공식품을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고 있음 카자흐스탄으로 수출 시 항공 운송을 이용하는 데 최근 항공 운송비용이 증가하여 수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타	-		

No.	제목	GMO 성분 사용 규제	해당국가	카자흐스탄
			관련품목	가공식품
			유형*	TBT
2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자흐스탄 정부는 GMO 함량 표기, 라벨링, 유통기한 등에 대한 확인이 엄격함 카자흐스탄 수출 식품 중 GMO 성분의 함량이 0.9% 이상인 식품은 다음의 문구로 식품에 기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 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 유전자변형물질에서 나온 식품(Products obtain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 유전자변형물질을 포함하고 있음(The product contains component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자흐스탄으로 제품 수출 시 GMO 성분 표기 기준이 엄격하여 수출 라벨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한국산 라면이 카자흐스탄에서 GMO 성분 표기 문제로 인해 리콜 조치된 사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사유 : GMO 대두 성분 1.45%~10.25% 검출 - 조치 사항 : 카자흐스탄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No.	제목	통관 절차 및 수입서류 준비의 어려움	해당국가	카자흐스탄
			관련품목	식품 전반
			유형*	수입통관
3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으로 식품을 수입할 경우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수의검역증명서), 그리고 TRCU 적합성선언(DOC)이 통관 절차에서 요구됨 • 특히, TRCU 적합성선언(DOC)은 모든 신선 및 가공 식품에 필요한 인증 서류로, 제조업체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며, 신청 후 온라인 등록까지 약 2~3주가 소요됨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한국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한국산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딸기, 사과, 프리미엄 배 등의 과일을 수입하고 싶지만 높은 물류비와 통관 절차 시 필요한 수입서류 준비가 까다로워 신선식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타	-		

신북방

몽골 MONGOLIA

2022년 한눈에 보이는
카자흐스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448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460
03. 비관세 장벽 현황	462
04. 수출 애로사항	469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470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몽골 식품시장 규모는 33억 6,280만 달러(한화 약 4조 5,590억 원)로 전년 대비 8.3% 증가함
 -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16억 8,750만 달러(한화 약 2조 2,878억 원)로 전체의 50.2%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8.2% 증가함
 - * 육류 시장이 2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뒤이어 채소류(9.6%), 낙농품(7.4%), 과일 및 견과류(7.2%) 순
 -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6억 7,530만 달러(한화 약 2조 2,712억 원)로 전체의 49.8% 차지하며, 전년 대비 8.4% 증가함
 - * 스낵류 시장은 전체의 21.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집계,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2.4%), 편의식품(6.1%), 영유아용 식품(5.6%), 소스 및 향신료(2.5%), 스프레드 및 당류(1.6%) 순

식품 시장 규모(2017~2021)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377.5	2,763.7	2,914.1	3,104.6	3,362.8	100.0	8.3
신선식품	1,197.6	1,390.7	1,465.1	1,559.5	1,687.5	50.2	8.2
- 육류	579.3	672.4	708	753.1	814.5	24.2	8.2
- 채소류	228.4	265.5	280	298.4	323.2	9.6	8.3
- 낙농품	176.3	204.7	215.7	229.7	248.6	7.4	8.2
- 과일 및 견과류	172.3	200.3	211.2	225	243.7	7.2	8.3
- 유지류	41.32	47.84	50.24	53.31	57.51	1.7	7.9
가공식품	1,179.8	1,372.9	1,449.0	1,545.1	1,675.3	49.8	8.4
- 스낵류	517.4	601.2	633.6	674.4	729.9	21.7	8.2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295.5	343.1	361.4	384.6	416.2	12.4	8.2
- 편의식품	148.9	172.1	180.4	191	205.7	6.1	7.7
- 영유아용 식품	121.4	144.3	155.5	169.3	187.2	5.6	10.6
- 소스 및 향신료	60.85	70.31	73.68	78.01	83.99	2.5	7.7
- 스프레드 및 당류	35.78	41.9	44.39	47.76	52.34	1.6	9.6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3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함
 - 연령대 별 인구 비중은 0~14세(20.7%), 15~24세(13.5%), 25~34세(16.5%), 35~44세(14.4%), 45~54세(11.1%), 55세 이상(23.8%)으로 확인됨
 - 여성 인구수는 약 169만 명(약 50.4%), 남성 인구수는 약 166만 명(49.6%)으로, 남녀 성비가 비슷함
- 2021년 가구수는 총 72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4%가 증가한 평균 2,700달러(한화 약 366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940달러(한화 약 127만 원)로, 약 34.7%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7.9% 증가함
- 2021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1,010.03달러(한화 약 137만 원)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으며, 모든 품목의 소비액이 전년 대비 증가함
 -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506.85달러(한화 약 69만 원)로 전년대비 6.6% 증가
 - * 육류 소비액은 244.60달러(한화 약 33만 원)로 24.2% 비중을 차지하며, 채소류(9.6%), 낙농품(7.4%), 과일 및 견과류(7.2%), 유지류(1.7%) 순으로 나타남
 - 1인당 가공식품 소비액은 503.18달러(한화 약 68만 원)로 집계됨
 - * 스낵류 소비액이 219.20달러(한화 약 30만 원)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21.7%를 차지,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2.4%), 편의식품(6.1%) 순임

1인당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763.60	871.73	903.65	946.94	1,010.03	100.0	6.7
신선식품	384.66	438.71	454.28	475.65	506.85	50.2	6.6
- 육류	186.10	212.10	219.50	229.70	244.60	24.2	6.5
- 채소류	73.34	83.75	86.82	91.01	97.09	9.6	6.7
- 낙농품	56.61	64.58	66.89	70.05	74.68	7.4	6.6
- 과일 및 견과류	55.34	63.19	65.49	68.63	73.20	7.2	6.7
- 유지류	13.27	15.09	15.58	16.26	17.28	1.7	6.3
가공식품	378.94	433.02	449.37	471.29	503.18	49.8	6.8
- 스낵류	166.20	189.60	196.50	205.70	219.20	21.7	6.6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94.89	108.20	112.10	117.30	125.00	12.4	6.6
- 편의식품	47.82	54.29	55.93	58.28	61.79	6.1	6.0
- 영유아용 식품	39.00	45.53	48.23	51.64	56.24	5.6	8.9
- 소스 및 향신료	19.54	22.18	22.85	23.80	25.23	2.5	6.0
- 스프레드 및 당류	11.49	13.22	13.76	14.57	15.72	1.6	7.9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농식품 수출액은 4,829만 4,000달러(한화 약 655억 원)로 전년 대비 32.3% 감소하였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17.8%의 성장률을 보임
 - 중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이 90.4%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음
 - * 중국국 수출액은 4,368만 1,000달러(한화 약 592억 원)로 전년 대비 34.8% 감소하였고, 전체 수출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 뒤이어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액이 99만 4,000달러(한화 약 13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625.5%로 크게 증가
 - * 한국으로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50.7% 증가한 88만 3,000달러(한화 약 12억 원)로 집계되며 전체 수출액의 1.8% 비중 차지
 - * 카자흐스탄외에도 홍콩 수출액이 전년 대비 445.5%, 러시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0.5%로 크게 증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25,045	92,460	62,558	71,323	48,294	100.0	△32.3	17.8
1 중국	16,591	87,287	57,154	67,044	43,681	90.4	△34.8	27.4
2 카자흐스탄	816	186	32	137	994	2.1	625.5	5.1
3 한국	583	673	533	586	883	1.8	50.7	10.9
4 러시아	956	1,383	562	399	800	1.7	100.5	△4.4
5 일본	108	449	669	600	797	1.7	32.8	64.8
6 캄보디아	1,005	874	2,365	413	545	1.1	32.0	△14.2
7 미국	58	47	64	271	230	0.5	△15.1	41.1
8 홍콩	16	15	40	22	120	0.2	445.5	65.5
9 대만	31	75	158	162	93	0.2	△42.6	31.6
10 말레이시아	21	88	-	-	55	0.1	-	27.2

* 출처: ITC Trade Map

- 주요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육류 조제품(66.1%)이며, 뒤이어 쇠고기(조제)(13.4%), 조제품 기타(7.0%)등이 있음
 - * 육류 조제품의 수출액은 3,194만 2,000달러(한화 약 433억 원)이며, 전년 대비 30.4% 감소함
 - * 쇠고기(조제)의 수출액은 648만 5,000달러(한화 약 188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49.7%로 크게 감소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25,045	92,460	62,558	71,323	48,294	100.0	△32.3	17.8	
1	육류조제품 (가금류, 돼지고기, 쇠고기 외/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797	46,286	25,379	45,909	31,942	66.1	△30.4	105.3
2	쇠고기 (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기타)	4,257	28,678	24,737	12,894	6,485	13.4	△49.7	11.1
3	조제품 기타	1,856	2,219	1,653	2,828	3,361	7.0	18.8	16.0
4	밀에서 나온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류	3,083	4,657	3,511	2,865	1,510	3.1	△47.3	△16.3
5	그 밖의 동물성 유지 및 분획물 (기타/우각유와 분획물 제외)	178	254	495	292	692	1.4	137.0	40.4
6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기타)	336	296	399	368	604	1.3	64.1	15.8
7	보드카	65	136	242	325	497	1.0	52.9	66.3
8	맥주	473	383	532	159	459	1.0	188.7	△0.7
9	발효 또는 신성화된 밀크와 크림 (기타)	416	92	2	119	191	0.4	60.5	△17.7
10	비휘발성 식물성 유지 (아마인, 옥수수, 피마자, 참기름, 들기름, 쌀겨기름, 동백유, 호호바유, 동유 및 분획물 이외 기타)	60	137	132	253	143	0.3	△43.5	24.2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

- 2021년 농식품 수입액은 7억 4,971만 7,000달러(한화 약 1조 164억 원)로 전년 대비 37.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며, 주로 러시아, 중국, 한국에서 수입함
 - 러시아산 농식품 수입액은 2억 3,972만 8,000달러(한화 약 3,250억 원)로 전체 32.0% 비중을 차지
 - * 중국산 수입액은 9,492만 5,000달러(한화 약 1,287억 원)로 전년 대비 13.5% 증가
 - * 뒤이어 한국산 수입액은 6,992만 1,000달러(한화 약 948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34.5% 증가, 수입 대상국 3위에 위치
 - * 이 외에도 독일(5.4%), 폴란드(4.3%) 순으로 집계됨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463,034	536,006	541,623	545,852	749,717	100.0	37.3	12.8
1 러시아	135,487	148,005	143,849	171,868	239,728	32.0	39.5	15.3
2 중국	69,944	86,139	87,222	83,613	94,925	12.7	13.5	7.9
3 한국	33,183	36,008	46,881	51,977	69,921	9.3	34.5	20.5
4 독일	21,276	25,576	25,240	25,419	40,764	5.4	60.4	17.7
5 폴란드	21,148	25,448	23,076	21,948	32,210	4.3	46.8	11.1
6 미국	12,046	16,954	17,318	14,308	20,946	2.8	46.4	14.8
7 베트남	9,807	13,449	17,659	17,509	19,718	2.6	12.6	19.1
8 이탈리아	7,188	9,679	9,057	9,670	18,332	2.4	89.6	26.4
9 태국	11,002	13,360	15,136	13,239	16,184	2.2	22.2	10.1
10 프랑스	6,918	10,980	8,445	7,644	15,373	2.1	101.1	22.1

* 출처 : ITC Trade Map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조제품 기타(12.5%), 코코아 조제품(초콜릿 및 초콜릿 과자 외)(5.6%), 자당(고체의 것/항미제 및 착색제 미첨가)(4.8%) 등이 확인됨

- * 조제품 기타의 수입액은 9,394만 3,000달러(한화 약 1,274억 원)로, 전년 대비 52.3% 증가한 규모로 집계
- * 코코아 조제품(초콜릿 및 초콜릿 과자 외)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5.2% 증가한 4,194만 4,000달러(한화 약 569억 원)로 집계
- * 자당(고체의 것/항미제 및 착색제 미첨가)의 수입액은 3,577만 3,000달러(한화 약 485억 원)로 전년 대비 43.1% 증가하여 3위 기록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463,034	536,006	541,623	545,852	749,717	100.0	37.3	12.8	
1	조제품 기타	45,606	60,035	58,637	61,673	93,943	12.5	52.3	19.8
2	코코아 조제품 (초콜릿 및 초콜릿 과자 이외 기타)	27,387	31,567	31,982	31,023	41,944	5.6	35.2	11.2
3	자당 (고체의 것/항미제 및 착색제 미첨가) *당류	26,529	31,450	23,018	25,003	35,773	4.8	43.1	7.8
4	참쌀	17,859	22,252	22,196	28,313	27,932	3.7	△1.3	11.8
5	설탕과자류 (추잉검, 감초엑스, 캔디류 이외 기타)	22,395	21,160	22,140	18,722	26,007	3.5	38.9	4
6	스위트 비스킷	13,832	15,089	16,386	16,068	20,568	2.7	28.0	10.4
7	파스타 (조제하지 않은 것, 속을 채운 것 이외 기타)	14,389	18,537	20,137	19,022	20,181	2.7	6.1	8.8
8	기타 음료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13,290	14,631	17,346	15,297	19,162	2.6	25.3	9.6
9	기타 베이커리 제품	8,083	9,886	11,792	12,613	18,455	2.5	46.3	22.9
10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9,174	10,724	11,402	11,410	16,748	2.2	46.8	16.2

* 주1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

한국의 對몽골 농식품 수출현황

- 2021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몽골 수출액은 8,247만 4,700달러(한화 약 1,118억 원)로, 전년 대비 33.2%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0.1%로 성장
 - 농산물의 수출액이 7,932만 1,600달러(한화 1,075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뒤이어 임산물, 축산물 순임
 - 라면(7.3%),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5.7%), 소스류(4.9%), 기타 조제품(4.7%), 맥주(4.4%) 등 가공식품이 상위에 위치함
 - * 라면 수출액은 605만 1,100달러(한화 약 82억 원)로 전년 대비 38.2% 증가
 - *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는 2017년부터 수출 시작 후, 2021년 474만 100달러(한화 약 64억 원)로 집계, 뒤이어 소스 및 소스 제조용 조제품의 수출액이 406만 1,300달러(한화 약 55억 원)로 전년 대비 38% 증가

한국의 對몽골 수출 규모(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39,587.9	47,102.6	52,839.8	61,934.5	82,474.7	33.2	20.1
농산물	37,944.5	45,176.6	50,670.3	59,096.4	79,321.6	34.2	20.2
임산물	1,075.1	1,014.0	1,377.50	1,434.0	2,185.8	52.4	19.4
축산물	568.3	912.0	792.0	1,404.1	967.3	△31.1	14.2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한국의 對몽골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39,587.90	47,102.60	52,839.80	61,934.50	82,474.70	100.0	33.2	20.1
1 라면	2,512.90	3,559.40	4,451.20	4,379.40	6,051.10	7.3	38.2	24.6
2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3,285.20	4,020.70	4,331.60	3,995.10	4,740.10	5.7	18.6	9.6
3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1,900.10	2,479.10	2,448.40	2,943.10	4,061.30	4.9	38.0	28.8
4 기타 조제품	243.50	645.60	1,257.10	1,823.20	3,848.40	4.7	111.1	111.1
5 맥주	804.80	1,383.50	1,350.20	1,120.70	3,598.7	4.4	221.1	45.4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섬유판, 종자 등은 제외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몽골 관세청에서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
 - 몽골의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①수입신고 → ②서류검사 → ③제품 검사 및 검역 → ④관세납입 및 반출 순서로 진행됨

- 식품 수입 규정에 따라 몽골에 등록된 법인만이 식품 수출입 업무 가능, 수입 식품은 자체 식품검수, 품질관리체계(HACCP, GMP, GHP, ISO)를 도입한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 수입식품은 통관 시 유통기한의 3분의 2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유기농·농축산물·유전자 변형 식품의 경우 국가기관에 신고해야 함
 - * 동식물성 식품과 원재료를 수입자가 처음으로 수입할 경우 이름, 종류, 지역, 국가, 원산지명을 상차 30일 전에 검수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함
 - 식품 수입 시 하기와 같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됨
 - * 원산지증명서 :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않는 물품에는 일반 관세율이 적용 및 부과됨
 - * 라이선스 : 몽골 정부가 규정한 자국산 전략품목 중 분유, 우유, 육가공식품(소·말·낙타·염소·양), 밀가루, 생수 수출입 시 라이선스 취득이 선행되어야 함
 - 원산지 증명서는 몽골 상공회의소에서, 품질 증명서는 표준 측정원에서, 건강 우생 증명서는 전문 검수원에서 각각 발급하며, 실험실 검사의 경우, 축산업 제품은 국가가축병원위생중앙 연구원, 기타 농축산물 및 식품은 식품위생 국가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 원산지증명서(필수)	• 수입 후 제품 보관할 창고 증명서
• 건강위생증명서	• 법률에 지정된 라이선스
• 검사결과서	

- 통관 시 유통기한
 - 식품에는 제조일자와 보존기간 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포장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통관 시 최대한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원칙임.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상품은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음
 - 보존 유통기한이 1년인 식료품의 경우에는 남은 보존기간이 최소 3개월이어야 하며, 보존 유통기한이 6개월인 식료품의 경우에는 남은 보존기간이 최소 2개월이어야 함

- 몽골은 생산기반이 미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나 주류의 경우 수입 허가품목에 해당되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 수입 가능
- 몽골은 식량안보 및 전략물자 취급에 까다롭고,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규제하기 때문에 사전에 품목확인 필요
 - 기존에는 우유 및 분유, 육류, 밀가루 등의 식품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규제하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몽골 정부는 주요 식품의 가격, 조달 및 공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식품 수입 허용을 결정함
 - * 밀, 쌀, 설탕 및 식물성 기름과 같은 곡류 등 전략 식품을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서 면제하기로 조정함
- 수입통관 전 화물에 대한 내용을 몽골 관세청에 신고
 - 몽골의 수입통관 시 몽골 관세청에서 승인한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CDF)와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 제반서류는 수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국제 가축병원 증명서, 포장정보, 관세납부증명서임
 - 사전수입신고는 국경을 통과하기 전 혹은 세관에서 정밀 검사하기 전에 각각 할 수 있으며, 사전 수입신고 시 관세청에 구비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물품 수령 후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함
- 수입신고한 서류 내용을 토대로 통관 서류 검사를 실시
 - 몽골 수출의 경우 통관허가 및 서류제출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보다 높은 편임. 수입을 위해 12개의 서류가 요구되고, 115시간이 소요됨
 - 필요에 따라 외국거래 계약서, 송장, 운송관련 문서, 포장내역, 원산지 증명서, 권한당국으로부터 받은 증명서 등을 몽골어 작성본 또는 번역본으로 제출함
 - 관련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하면 관세청에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상품의 관세를 평가한 후 수입자에게 수입세, 부가가치세, 기타 조세를 부과함
- 몽골 관세청 명령으로 제품에 대한 검사 및 검역을 실시함
 - 검역문제는 전문 검역청의 국경검역부서가 담당함. 표준측정청이 표준기준규칙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표준에 적합 여부 판단은 전문 검역청이 모니터링함. 몽골의 경우 2018년에 개정된 “동식물, 동식물 원재료, 제품이 몽골국경 진입 시의 검역 통제, 검사에 관한” 법으로 규제함
 - 몽골은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 판매, 사용 이전의 검역을 의무로 함
 -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국경순찰대, 식물검역연구소 등과 같은 기관에서 발급한 표준품질인증서(Standard and Quality Certification)를 제출하는 것에 한해 허가증을 발부함

- 식품을 수입할 경우 ISO인증서, 제품 리스트, 가격 리스트, 결제조건(선결제 /후결제) 정보가 필요하며, 수입식품의 통관 검역 기관은 서류가 완벽할 경우 보통 1주일 이내로 통관이 가능함

- 서류 및 물품검사 이후 관세율에 따른 통관 세금을 납부
 - 몽골은 대외무역에서 개방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낮은 편임
 - 수입품의 경우 특별세 부과대상 외에 기타 물품에 대한 세율은 대략 5% 정도이나 유제품, 꿀, 감자, 배추, 순무 등 일부 야채와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계절에 따라 5~15%의 수입관세를 부과함
 - 수입품에 부가가치세(VAT)는 세금 부과 금액의 10%로 함.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에 관세와 특별세 등을 부과하여 정함
 - * 특별세 대상 품목 : 술, 와인, 담배, 맥주 등을 포함
 - 몽골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가입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일부 농식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됨. 몽골 측이 우리에게 관세를 인하하는 품목을 살펴보면, 수산물(03류) 및 수산물 조제품(16류) 113개 품목, 과실·견과류(08류)와 커피·향신료(09류) 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됨

몽골의 APTA협정 양허표 요약(농식품 해당 품목)

(단위 : %)

번호	HS코드 대분류	해설	품목 수	기본 관세율	협정세율
1	03류	어패류	102개 품목(1-102)	5	3.5-4
2	0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1개 품목(103)	5	4
3	07류	식용 채소류	7개 품목(104-110)	5	4
4	08류	과실·견과류	13개 품목(111-123)	5	4
5	09류	커피·향신료	10개 품목(124-133)	5	4
6	10류	곡물	3개 품목(134-136)	5	4
7	12류	채유용 종자·인삼	7개 품목(137-143)	5	4-4.5
8	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3개 품목(144-146)	5	4
9	16류	육·어류 조제품	11개 품목(147-157)	5	3.5-4.5
10	17류	당류와 설탕과자	3개 품목(158-160)	5	4.5
11	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0개 품목(161-170)	5	4-4.5
12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3개 품목(171-173)	5	4.5
13	23류	음료·주류·식초	1개 품목(174)	5	4.5

* 출처 : TradeNavi

- 관세를 납부하면 화물인도지시서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
 - 몽골 수출의 경우 통관 허가 및 서류 제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보다 높음

검역제도

- 제품의 위험도가 낮을 경우 서류 심사로 통관을 진행하나 위험도가 높을 경우에는 서류, 검수, 시험검사를 3개월마다 수행함
 - 제품의 위험도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기준에 따라 국경 및 세관 진입 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상이함
 - * 검수는 검역의 초기 검수로 제품이 파손 및 변질, 오염, 품질, 안전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실험실 검사를 실시함

구분	위험도 기준	분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및 동물에게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할 가능성 • 몽골에 등록되지 않은 질병이나 해충, 독성 식물 등이 확산되어 몽골 농축산업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 • 자연환경을 파괴할 가능성 	높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 자연환경 및 농작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음 	중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및 동물,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없음 	낮음

- 동식물, 동식물 원재료, 제품은 가축병원 검역, 식물검역, 검사를 실시하며, 검역 및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포유류, 애완 및 야생동물, 파충류, 수생동물, 새, 벌, 그것들의 새끼나 배아, 살아있는 알
- 고기, 우유, 부속 고기, 지방, 계란, 가죽, 뼈, 모피, 울, 캐시매어, 털, 내장, 뿔, 발굽, 새의 깃털, 오리털, 발톱, 가죽의 생식기, 쓸개, 샘 등 동물성 원재료, 제품
- 자연 작물이나 재배된 뿌리채소, 열매채소 등, 나무, 그것의 씨앗, 목료, 부위
- 곡물, 감자, 채소, 잎, 사료, 원두, 경공업 및 식품 공장에서 사용되는 식물성 기타 원재료, 건조된 식물, 수집, 목재, 그것의 일부, 각종 과일, 밀가루, 설탕, 양념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것
- 혈 및 혈청, 혈장
- 사냥한 동물
- 각종 병을 유발하는 벌레나 곤충, 미생물 배양, 유전자 변형 방식으로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생물
- 동물 사체, 분뇨, 병을 유발하는 물질
- 흙, 청동, 돌
- 차량, 컨테이너, 포장용 스티로폼 및 완충재, 깔개, 동물의 털로 가공한 펠트, 가죽의 사육 물품, 건축 부자재(줄, 끈 등)

- 동물, 식물, 원자재, 제품의 원산지는 동물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식물의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한 국가 및 지역이어야 하고, 해당 제품의 위험요소가 없어야 함
- 검역 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국가전문검역청에 제출해야 함

- 동물, 식물, 제품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및 그와 유사한 서류
- 동물, 식물, 제품을 운송할 운송수단 종류, 차종, 도로 경로
- 해당 국경 지역, 기간
- 원자재, 제품 수량, 가공상태(반가공, 원재료, 냉동, 신선 등), 포장, 상표, 품질, 안전성에 대한 정보

- 對몽골로 수출가능한 한국 신선 및 건조 농산물은 8개 품목 80개 종이며, 신선 및 건조 농산물 중 금지품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 수출 가능 품목

협상타결 품목

- 축산물
 - 돈육 및 돈지방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 선인장), 신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 묘목류 : 딸기

* 상기 품목 외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 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축산물
 - 열처리 식육가공품(돈육 만두, 치킨 너겟 등), 유제품

2. 수출 불가능 품목

- 수출 불가능 품목 없음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MK Mall(몽골)
업체 유형	수입유통업체
담당자명	Bayaraa

- 몽골의 울란바토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라면/국수, 된장, 간장, 조미료, 장류, 통조림, 커피, 녹차 등의 한국 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자사는 이외에도 한국에서 육류, 생선 및 해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음
- 또한 몽골인들에게는 한국산 인삼이 유명하여 인삼 분말, 추출물, 캡슐, 생인삼 등 다양한 형태의 인삼을 취급하고 있음
-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산 신선 식품으로는 토마토, 양상추, 양배추, 오이, 당근, 순무, 콜리플라워,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포도, 멜론, 체리, 복숭아, 자두, 파인애플, 바나나 등이 있음
- 한국과 몽골은 우호적인 무역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식품을 수입할 때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몽골 정부가 최근 검역 정책을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마련하면서 식품 공급망에도 영향이 있었으며 운송비 증가, 노동력 부족, 보관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식품 가격이 많이 인상되었음
- 최근 제한적이었던 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안정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몽골에서 식품 안전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어 법률, 모니터링, 감시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식품, 농업 및 경공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될 “국가 코덱스 위원회(NCC)”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엄격한 식품 안전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임

03

비관세 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몽골은 식품 첨가물 및 기타 위생요건에 관한 자체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국제식품규격 코덱스(CODEX) 기준을 따르고 있음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CODEX 식품 규격	식품안전정보포털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codexStandardList.do?data_type=STAN&menu_grep=MENU_NEW04&menu_no=2926

통보문 개정 현황(2022년)

- 개정사항 없음

2. TBT

주요 TBT 내용

- 1999년 개정된 몽골 식품법의 9조 2.6항에 라벨링 규정 명시
 - 몽골 식품법에서 식품은 위생·품질 조건에 맞는 유의사항, 저장 조건 및 기간, 이용 방법, 영양성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몽골 관세청의 라벨링 규정에서는 수입식품의 라벨은 몽골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몽골 등록 법인만이 식품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식품인증제도

- 육류, 식품, 유제품, 밀가루, 음료, 주류, 담배 등의 수입품은 ISO 및 HACCP 등의 국제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몽골 국가품질인증인 MNS 인증을 취득해야 함. 또한 몽골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MNS 인증 취득이 의무 사항임

● 알코올음료 유통 관리 및 알코올 중독 퇴치에 관한 법안

- 본 법안의 목적은 알코올음료의 생산, 수출입, 재수출, 판매, 서비스 및 소비와 관련된 관계를 규제하고 알코올 중독을 예방·퇴치하는 데 있음

● 육류 및 육류제품의 생산 및 거래에 관한 기술규정안

- “표준화, 기술규정 및 인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모든 표준은 자발적으로 적용함
- 인간 소비용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생산, 운송, 보관, 국내의 판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의 도축 및 해체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 법인, 관할당국 및 공무원에게 적용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적용함
- 인간 소비용 소, 말, 양, 염소, 돼지 및 가금류의 생산 및 판매에 적용함
- 제2조 제5항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관할기관의 특정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기타 동물들의 육에도 적용함
- 외국에서 몽골로 수입된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일반적인 수의·위생 요구사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적용함
- 시민에 의한 동물 도축 및 해제에는 적용하지 않음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규정	몽골 식품법 1999	https://faolex.fao.org/docs/pdf/mon42182.pdf
MNS 표준	몽골표준계량원	https://estandard.gov.mn/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p>라벨 표기사항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원료 • 중량 • 제조사 및 수입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 제조일자 또는 포장일자 • 유통기한 • 사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량 • 영양성분 • 임신부 및 어린이 사용 관련 표시
<p>라벨 표기사항 (가이드)</p>	<p>표기 언어</p>	<p>몽골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p>	
	<p>제품명</p>	<p>제품의 명칭</p>	
	<p>원료</p>	<p>원료 목록</p>	
	<p>중량</p>	<p>순중량, 총중량 및 기타 수치적 지표</p>	
	<p>제조사 및 수입업체</p>	<p>제조사, 수입업체, 유통업체, 판매자 명칭 및 주소</p>	
	<p>원산지</p>	<p>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의 정보와 함께 원산지 정보도 기재해야 함</p>	
	<p>제조일자 또는 포장일자</p>	<p>제품을 제조 또는 포장한 날짜</p>	
	<p>유통기한</p>	<p>유통기한 및 저장 조건</p>	
	<p>사용 설명</p>	<p>제품 사용 또는 섭취 방법</p>	
	<p>열량</p>	<p>열량 정보</p>	
	<p>영양성분</p>	<p>영양성분과 함량 단위 표기</p>	
	<p>기타</p>	<p>주의사항</p>	

• 소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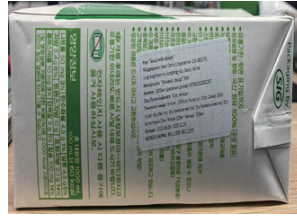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명	CJ 백설 닭볶음탕양념 290G / Тахиан мах амтлагч 290гр	
주의사항	제품 성분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найрлагыг үзээд өөрт харшлах орц байгаа эсэхийг шалгаж хэрэглэнэ үү.	
사용방법	닭고기와 볶아서 사용한다. Тахианы махтай хамт хуурч хэрэглэнэ.	
유통기한	제조일로 부터 18개월 유통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Нарны гэрлээс хол сэрүүн хуурай нөхцөлд хадгална.	
공식대리점	I&R MONGOLIA LLC “Ай энд Эр Монголиа” ХХК	
제조사명 및 소재지	대한민국, “CJ” 그룹, БНСУлс, “CJ” корпораци	
원산지	South Korea 한국	
영양정보	칼로리/Илчлэг	133.9 kcal
	탄수화물/Нүүрс ус	26.6 g
	설탕/Сахар	9.4 g
	단백질/Уураг	4.4 g
	지방/Өөх тос	1.1 g
	포화 지방/Ханасан тос	0.6 g
	불포화 지방/Ханаагүй тос	0 g
	콜레스테롤/Холестрин	0 mg
	나트륨/Натри	2425.4 mg

• 유제품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명	서울우유 /“Seoul milk calcium”	
제조사명 및 소재지	Seoul Dairy Cooperative 131-861/70, Jungnangcheon-ro, jungnang-gu, Seoul, Korea	
수입처	Universe foods LLC	
용량 및 제품번호	1000ml, 19760262002297	
성분	우유, 칼슘	
유통기한	2020.06.09~2020.11.23	
연락처	89112305, 89112307	
영양정보	칼로리/Илчлэг	135 kcal
	탄수화물/Нүүрс ус	10 g
	설탕/Сахар	10 g
	단백질/Уураг	6 g
	지방/Өөх тос	8 g
	포화 지방/Ханасан тос	5 g
	불포화 지방/Ханаагүй тос	0 g
	콜레스테롤/Холестрин	20 mg
	나트륨/Натри	100mg
	칼슘	200mg

인증

[필수 인증]

• MNS 인증

- 몽골은 1998년부터 몽골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품질인증인 MNS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MNS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함. 몽골표준계량원(MASM, Mongolian Agenc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에서 MNS 인증을 발급함. MNS 인증은 모든 수입품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필수 인증은 아님. 그러나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수입품은 2005년 제정된 '규격화 적합평가에 대한 추가 규정 127 호'에 따라 ISO나 HACCP 등의 국제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MNS 인증을 받아야 함

장	조	열	국가코드	상품명
02				고기, 식품
04	04.02			설탕 및 기타 양념에 들어가는 원액 우유
	04.03	0403.10.	00	요구르트
	04.05			버터, 우유 기름, 진한 버터
	04.06			치즈, curds from sour milk
05	05.04			가축, 동물의(생선 외) 내장
09	09.01			로스티드커피 및 원두커피, 카페인 커피, 무카페인 커피
	09.02			맛, 향이 첨가된 차, 첨가되지 않은 차(ferment, no ferment tea)
11	11.01	1101.00		밀, 호밀
	11.02	1101.00		밀, 호밀 외 기타 밀가루
	11.04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곡물
15				가축, 동물 및 식물유
16	16.01			고기, 보조 고기 및 혈액 등 영양식품
	16.02			고기, 보조 고기 및 기타 식품, 캔 식품
	16.04			생선 캔, 생선 알 등의 식품
17				설탕, 설탕 식품
19				곡물, 밀가루, 녹말, 밀가루 식품
21				기타 여러 가지 식품
22				물, 음료, 알코올, 술, 와인, 간장
24				담배, 담배 대체제

* 자료 : KATI농식품수출정보

인증명	MNS 인증	
인증기관	몽골표준계량원 (MASM, Mongolian Agenc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p>현지 수입업체 신청서, 수입업체 사업자등록증, 상품 매매계약서, 제품 수량 및 가격, 제품에 대해 수행된 공인 실험실 테스트 결과, 담당 기관에서 발급한 라이선스(필요시), 수출국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인증서</p>	

No.	제목	냉동식품 등 물류 운송의 어려움	해당국가	몽골
			관련품목	식품전반
			유형*	기타
1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10월부터 2월까지 식음료와 같은 액체형의 제품을 수입 할 경우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해야 함.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제품을 미리 수입하여 보관 후 판매를 하고 있으나, 현지 냉장·냉동 보관시설 부족으로 보관료가 높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몽골은 열악한 물류 인프라 및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인해 수입 상품가격의 30% 이상을 물류비용이 차지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인프라가 열악하여 비용, 시간 지연 등 물류 운송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나 냉장·냉동식품의 경우 더 어려움 		
	기타	<p>※ 주요 수출입 물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추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은《신부흥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2022-2032) 국경검문소 현대화 및 물류인프라 구축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항공인프라 개선 관련 사업 7개, 철도망 확대 사업 10개, 도로망 확대 사업 15개, 국경통관 시설 현대화 및 물류시설 구축 사업 7개를 각각 추진할 예정임 		

No.	제목	현지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	해당국가	몽골
			관련품목	식품전반
			유형*	기타
2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기업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아 온라인으로 바이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음 • 몽골 인구의 60% 이상이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울란바토르를 방문하여 직접 바이어를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는 HMR 식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운송 문제, 주 수출 대상국인 러시아의 전쟁 상황과 내부 부정부패 문제로 인한 정치적인 불안정, 송금 문제 등으로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현지 바이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자사는 버섯을 몽골로 수출하고 있으며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을 겪어 최근 수출이 저조해져 중단한 상황임 		
	기타	-		

1. 농산물 및 신선가공식품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제품 수출 시 관세율은?
- 몽골 현지 법인 설립 시 구비 서류 및 절차는?
- 식품 위생 기준은?

제품 사전검토 결과

• 관세율

- 1999년 6월 3일 몽골 국회 29호령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확정되었고, 이후 12번에 걸친 추가 변경으로 초기에는 관세율이 5%로 동일하였으나, 지금은 품목에 따라 5~15%의 수입관세를 부과함
- 몽골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가입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일부 농식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었으므로 수출 시 품목 확인 필요

• 몽골 현지에 외국인 투자 사업체(회사) 설립 시 구비 서류

- 투자자가 외국 회사(법인) 일 경우
 - * 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회사 정관
 - * 한국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 및 결의문 국제공증본(아포스티유)
 - * 한국 회사 대표이사의 여권 사본
 - * 몽골 현지회사의 대표가 될 사람의 여권 사본, 이력서, 증명사진
 - * 몽골에 설립될 회사의 정관
 - * 몽골에 설립될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 회사 이름(몽골 등록청에서 허가받은 이름)
 - * 개설된 회사 계좌에 납입자본금이 입금된 은행 확인서
 - * 위임장(설립 절차 위탁 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법인 설립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 국제공증본

-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 * 회사 이름(몽골 등록청에서 허가받은 이름)
 - * 회사 정관
 -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 비즈니스 계획(마스터플랜)
 - * 개설된 회사 계좌에 납입자본금이 입금된 은행 확인서, 현물일 경우 세관신고서
 - * 투자자의 여권 사본, 이력서, 증명사진

● 몽골 현지에 외국인 투자 사업체(회사) 설립 절차

- 국가 등록청에서 상호명 취득
 - * 중복되는 이름이 많으니 상호명을 3~4가지 생각하여 가져갈 것
- 상호명 수령 후 몽골에 있는 임의의 상업 은행에 가서 회사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 자본금을 입금
 - * 한국에서 몽골에 있는 회사 계좌로 정관에 명시된 자본금을 송금(최저 미화 10만 달러)
 - * 투자자 1인당 최저 자본금이 미화 10만 달러이므로, 2인이면 20만 달러, 3인이면 30만 달러를 입금해야 함
- 상구 구비 서류 및 회사 계좌로 입금된 자본금 입금 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국가 등록청에 접수한 후 2주 뒤 등기된 사업자등록증 수령
 - * 사업자등록증 수령 후 법인 직인을 신청하여 발급
 - * 직인이 나오면 법인 설립 절차가 모두 완료
 - * 법인 계좌에 예치된 자금 인출 가능

● 식품 위생 기준

- 2012년 12월 2일 [식품법], [식품안전법]이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개인이 수화물로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었던 라면, 김치, 농축산 식품 등은 반드시 몽골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만이 수입, 수출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됨(식품법 제11.1항 참조)
- [식품안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몽골에서 식품판매를 위해서는
 - * ①식품판매자의 상호명, 위치,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②사업자등록증 번호, 신분증 번호, 식품의 종류, 형태, 내부규제 등의 정보를 서면이나 전자형태로 해당 지역에 있는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함(동법 제6.1항)
 - * 감독기관은 식품판매자가 제출한 정보를 접수한 후에 30일 이내에 [식품법] 및 [식품안전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정밀 조사를 진행하여 평가서를 발급함
 - * 감독기관 평가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는 식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신북방

아랍에미리트 UAE

2022년 한눈에 보이는
아랍에미리트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474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487
03. 비관세 장벽 현황	489
04. 수출 애로사항	496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1년 아랍에미리트 식품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315억 3,360만 달러(한화 약 42조 7,501억 원)로 집계됨
 -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156억 2,600만 달러(한화 약 21조 1,842억 원)로 전체의 49.6%에 해당함
 - * 육류 시장이 1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뒤이어 채소류(11.2%), 낙농품(10.7%), 과일 및 견과류(9.3%) 순
 -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59억 760만 달러(한화 약 21조 5,659억 원)로 전체의 50.4% 차지
 - * 스낵류 시장은 전체의 26.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집계,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4.0%), 편의식품(5.1%), 소스 및 향신료(2.0%) 순

식품 시장 규모(2017~2021)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6,569.1	29,692.0	29,684.4	30,623.7	31,533.6	100.0	3.0
신선식품	13,016.9	14,598.0	14,647.0	15,055.0	15,626.0	49.6	3.8
- 육류	3,956.0	4,412.0	4,403.0	4,502.0	4,647.0	14.7	3.2
- 채소류	2,975.0	3,329.0	3,333.0	3,418.0	3,538.0	11.2	3.5
- 낙농품	2,739.0	3,088.0	3,115.0	3,219.0	3,361.0	10.7	4.4
- 과일 및 견과류	2,449.0	2,743.0	2,748.0	2,820.0	2,923.0	9.3	3.7
- 유지류	897.9	1,026.0	1,048.0	1,096.0	1,157.0	3.7	5.6
가공식품	13,552.2	15,094.0	15,037.4	15,568.7	15,907.6	50.4	2.2
- 스낵류	7,041.0	7,872.0	7,870.0	8,306.0	8,438.0	26.8	1.6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3,867.0	4,288.0	4,252.0	4,319.0	4,430.0	14.0	2.6
- 편의식품	1,382.0	1,540.0	1,536.0	1,569.0	1,618.0	5.1	3.1
- 소스 및 향신료	538.5	602.5	602.9	618.1	639.8	2.0	3.5
- 스프레드 및 당류	550.2	591.2	569.9	562.7	560.4	1.8	△0.4
- 영유아용 식품	173.5	200.3	206.6	193.9	221.4	0.7	14.2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약 937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임
 - 연령대 별 인구 비중의 경우, 0~14세(9.8%), 15~24세(9.8%)의 인구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으며, 25~34세(28.9%), 35~44세(27.3%), 45~54세(12.7%), 55세 이상(11.4%)으로 특히 25~44세 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여성 인구수는 약 290만 명(약 30.5%), 남성 인구수는 약 650만 명(69.5%)으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의 약 2배 이상임
- 2021년 가구수는 총 92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1.8%가 증가한 평균 1만 6,020달러(한화 약 2,172만 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5,280달러(한화 약 716만 원)로, 전체의 33.0%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2% 증가함
-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3,156.28달러(한화 약 428만 원)로 전년 대비 1.9% 증가
 - 신선식품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1,564.00달러(한화 약 212만 원)로 전체 식품 부문 지출의 49.6% 차지
 - * 육류 소비액이 465.10달러(한화 약 63만 원)로 가장 높은 수준, 뒤이어 채소류 354.20달러(한화 약 48만 원), 낙농품 336.40달러(한화 약 46만 원), 과일 및 견과류 292.50달러(한화 약 40만 원) 순
 - 가공식품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1,592.28달러(한화 약 216만 원)로 전체 식품 부문 지출의 50.4% 차지
 - * 스낵류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844.60달러(한화 약 115만 원)로 최고 수준,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443.40달러(한화 약 60만 원), 편의식품 162.00달러(한화 약 22만 원), 소스 및 향신료 64.03달러(한화 약 8만 원) 순

1인당 식품 소비액(2017~2021)

(단위 :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800.78	3,082.85	3,037.98	3,096.19	3,156.28	100.0	1.9
신선식품	1,372.14	1,515.70	1,499.00	1,522.10	1,564.00	49.6	2.8
- 육류	417.00	458.10	450.70	455.20	465.10	14.7	2.2
- 채소류	313.60	345.70	341.10	345.50	354.20	11.2	2.5
- 낙농품	288.80	320.60	318.80	325.40	336.40	10.7	3.4
- 과일 및 견과류	258.10	284.80	281.20	285.20	292.50	9.3	2.6
- 유지류	94.64	106.50	107.20	110.80	115.80	3.7	4.5
가공식품	1,428.64	1,567.15	1,538.98	1,574.09	1,592.28	50.4	1.2
- 스낵류	742.20	817.30	805.40	839.80	844.60	26.8	0.6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407.70	445.20	435.20	436.70	443.40	14.0	1.5
- 편의식품	145.70	159.90	157.20	158.60	162.00	5.1	2.1
- 소스 및 향신료	56.76	62.56	61.71	62.49	64.03	2.0	2.5
- 스프레드 및 당류	57.99	61.39	58.33	56.90	56.09	1.8	△1.4
- 영유아용 식품	18.29	20.80	21.14	19.60	22.16	0.7	13.1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육류 및 유지류 외 전 품목의 소비량 작년 대비 감소세

* 채소류의 1인당 소비량이 226.19kg으로 가장 많으며, 전년 대비 0.3% 감소

* 다음으로 낙농품(102.56kg), 과일 및 견과류(91.78kg), 육류(56.90kg), 유지류(22.15kg) 순으로 집계되며, 육류 및 유지류 외 전 품목의 소비량 작년 대비 감소세

- 가공식품은 영유아용 식품을 제외한 전 품목의 소비량이 전년 대비 감소

* 영유아용 식품(2.06kg)의 경우 전년 대비 4.0% 증가

* 가공식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로, 1인당 소비량이 129.61kg으로 가장 많음

* 뒤이어 스낵류(91.62kg), 편의식품(26.66kg) 순으로 집계되며 모두 전년 대비 소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인당 식품 소비량(2017~2021)

(단위 : kg,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204.68	218.57	219.47	226.94	226.19	△0.3
	- 낙농품	92.42	98.79	99.32	102.73	102.56	△0.2
	- 과일 및 견과류	90.58	94.20	92.15	93.49	91.78	△1.8
	- 육류	48.90	53.22	54.56	56.69	56.90	0.4
	- 유지류	19.38	20.81	21.00	22.00	22.15	0.7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22.79	129.98	129.42	131.85	129.61	△1.7
	- 스낵류	85.30	90.26	89.76	94.04	91.62	△2.6
	- 편의식품	24.83	26.39	26.38	27.00	26.66	△1.2
	- 스프레드 및 당류	16.91	17.07	16.26	16.00	15.16	△5.3
	- 소스 및 향신료	10.29	11.06	11.19	11.58	11.56	△0.2
	- 영유아용 식품	1.82	1.99	2.04	1.98	2.06	4.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패스트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1년 농식품 수출액 116억 3,879만 8,000달러(한화 약 15조 7,787억 원)로 전년 대비 13.3% 증가, 2017년 이후 연평균 5.0%의 지속적인 성장세
 - 주요 수출국은 사우디아라비아(9.9%), 이라크(9.6%), 오만(7.6%) 순
 - *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액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11억 5,198만 6,000달러(한화 약 1조 5,617억 원)로 집계, 연평균 증가율 38.9% 기록함
 - * 對이라크 수출액 전년 대비 2.3% 증가한 11억 1,802만 6,000달러(한화 약 1조 5,157억 원)로 집계
 - * 對오만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8억 8,682만 1,000달러(한화 약 1조 2,023억 원)로 집계됨
 -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3,373만 8,000달러(한화 약 457억 원)로 전체 수출의 0.3%를 차지하며, 연평균 61.0%의 높은 성장세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9,562,671	9,770,314	10,004,067	10,269,543	11,638,798	100.0	13.3	5.0
1 사우디아라비아	309,607	1,205,054	1,220,347	1,229,469	1,151,986	9.9	△6.3	38.9
2 이라크	1,761,378	1,707,757	1,442,429	1,092,836	1,118,026	9.6	2.3	△10.7
3 오만	817,972	931,740	1,040,208	758,704	886,821	7.6	16.9	2.0
4 중국	84,154	66,683	266,690	545,995	820,338	7.0	50.2	76.7
5 소말리아	315,029	419,423	560,894	706,262	681,423	5.9	△3.5	21.3
6 리비아	352,344	279,832	357,655	552,677	556,559	4.8	0.7	12.1
7 이란	1,315,145	938,827	625,209	286,047	473,037	4.1	65.4	△22.6
8 쿠웨이트	142,113	384,097	394,920	441,315	457,094	3.9	3.6	33.9
9 시리아	297,736	305,006	405,979	490,252	349,133	3.0	△28.8	4.1
10 파키스탄	142,533	127,176	117,026	361,610	343,492	3.0	△5.0	24.6
44 한국	5,027	6,445	36,350	20,101	33,738	0.3	67.8	61.0

* 출처 : ITC Trade Map

- 2021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당(고체 외 향미제 및 착색제 미첨가)(6.0%), 전지분유 외 기타(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4.9%), 저에루크산 유채유와 그 분획물(조유)(3.1%) 등

* 자당(고체 외 향미제 및 착색제 미첨가)의 수출액은 6억 9,715만 1,000달러(한화 약 9,451억 원)로 전년 대비 20.8% 증가

* 전지분유 외 기타(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의 수출액은 5억 6,782만 7,000달러(한화 약 7,698억 원)로 전년 대비 6.1% 증가

* 저에루크산 유채유와 그 분획물(조유)의 수출액 3억 6,101만 3,000달러(한화 약 4,894억 원)로 전년 대비 25.8% 증가

* 이 외에도 조제품 기타(2.2%), 저에루크산 유채씨에서 나온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1.9%) 등이 있음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9,562,671	9,770,314	10,004,067	10,269,543	11,638,798	100.0	13.3	5.0	
1	자당 (고체의 것/향미제 및 착색제 미첨가) *당류	761,487	338,555	138,396	576,990	697,151	6.0	20.8	△2.2
2	전지분유 외 기타 (농축/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297,293	578,581	549,705	534,966	567,827	4.9	6.1	17.6
3	저에루크산 유채유와 그 분획물 (조유) *식물성유지	6,904	5,311	165,276	287,017	361,013	3.1	25.8	168.9
4	조제품 기타	335,985	300,964	246,519	286,412	257,751	2.2	△10.0	△6.4
5	저에루크산 유채씨에서 나온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 *박류	124,038	80,055	117,153	163,896	215,346	1.9	31.4	14.8
6	정유의 농축물로 테르펜계 부산물,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 애큐어스 솔루션 (기타)	8,226	10,691	12,486	10,214	196,110	1.7	1820.0	121.0
7	팜유와 그 분획물 (조유, 팜 올레인, 팜 스테아린 외 기타)	60,004	92,311	45,989	70,732	162,100	1.4	129.2	28.2
8	유아용 기타 조제품	30,427	34,942	108,354	171,958	141,970	1.2	△17.4	47.0
9	와플과 웨이퍼 *과자류	44,184	107,552	124,995	130,378	141,230	1.2	8.3	33.7
10	위스키류 (스카치, 버본, 라이 이외의 기타)	134,491	141,516	132,300	122,859	141,133	1.2	14.9	1.2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

- 2021년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02억 8,238만 1,000달러(한화 약 13조 9,398억 원)로 집계
 - 주요 수입국은 인도(11.1%), 사우디아라비아(6.6%), 미국(6.0%), 프랑스(5.7%) 등이며, 비교적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이 이루어짐
 - * 인도산 수입액은 11억 4,449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5,516억 원)로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집계
 - * 사우디아라비아산 농식품의 수입액은 6억 8,198만 달러(한화 약 9,246억 원)로 전년 대비 5.4% 증가, 미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8.1% 감소함
 - 한국산 농식품의 수입액은 3억 5,324만 5,000달러(한화 약 4,789억 원)로 전년 대비 25.1%가 감소했으며, 전체 수입액 중 3.4% 차지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¹⁷⁻²¹)
전체	12,090,260	10,657,794	10,050,882	9,587,540	10,282,381	100.0	7.2	△4.0
1 인도	1,109,006	1,054,429	899,822	933,464	1,144,495	11.1	22.6	0.8
2 사우디아라비아	768,863	692,873	703,057	647,009	681,980	6.6	5.4	△3.0
3 미국	724,004	675,064	762,568	674,761	620,195	6.0	△8.1	△3.8
4 프랑스	525,690	547,708	535,636	417,602	582,750	5.7	39.5	2.6
5 영국	466,315	513,121	480,477	418,359	452,950	4.4	8.3	△0.7
6 뉴질랜드	567,295	531,948	440,237	443,600	439,164	4.3	△1.0	△6.2
7 네덜란드	415,887	443,375	431,557	425,757	434,832	4.2	2.1	1.1
8 브라질	1,156,917	524,920	320,810	417,579	414,763	4.0	△0.7	△22.6
9 튀르키예	265,064	255,942	307,750	338,814	366,594	3.6	8.2	8.4
10 한국	736,006	318,461	239,561	471,764	353,245	3.4	△25.1	△16.8

* 출처 : ITC Trademap

- 수입 상위 품목은 조제품 기타(5.8%), 전지분유 외 기타(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5.4%), 찹쌀(3.8%) 등

- * 조제품 기타 품목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5억 9,653만 7,000달러(한화 약 8,087억 원)로 집계
- * 전지분유 외 기타(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 품목의 수입액은 5억 5,491만 2,000달러(한화 약 7,523억 원)로 전년 대비 1.5% 감소
- * 찹쌀 품목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29.9% 감소한 3억 9,125만 3,000달러(한화 약 5,304억 원) 임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12,090,260	10,657,794	10,050,882	9,587,540	10,282,381	100.0	7.2	△4.0	
1	조제품 기타	530,003	504,878	481,529	552,435	596,537	5.8	8.0	3.0
2	전지분유 외 기타 (농축/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523,661	519,173	448,692	563,396	554,912	5.4	△1.5	1.5
3	찹쌀	753,690	692,386	528,622	558,013	391,253	3.8	△29.9	△15.1
4	팜유와 그 분획물 (조유, 팜 올레인, 팜 스테아린 외 기타)	264,625	261,378	212,496	187,805	342,671	3.3	82.5	6.7
5	기타 베이커리 제품	288,850	288,881	312,062	321,224	301,297	2.9	△6.2	1.1
6	사탕수수당 (17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	1,025,190	428,648	228,375	299,619	276,503	2.7	△7.7	△27.9
7	기타 사탕수수당 (편광도수 98.5도를 초과하는 것)	952	734	597	1,706	211,968	2.1	12324.9	286.3
8	연유기타 (설탕, 감미료 미첨가)	109,835	125,966	120,050	218,383	210,662	2.0	△3.5	17.7
9	위스키류 (스카치, 버본, 라이 이외 기타)	229,176	238,252	225,124	157,999	196,541	1.9	24.4	△3.8
10	코코아 조제품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초콜릿과 초콜릿과자 이외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 모양의 것)	87,144	103,513	176,624	137,997	179,881	1.7	30.4	19.9

* 주1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

한국의 對UAE 농식품 수출현황

- 2021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UAE 수출액은 1억 9,991만 7,400달러(한화 약 2,710억 원)로 전년 대비 23.4% 감소, 전체 품목 중 임산물(0.6%)의 수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
 - 농산물 수출이 전체의 99.0%를 차지하며, 임산물(0.6%), 축산물(0.4%) 비중 차지
 - * 농산물 수출액은 1억 9,800만 2,100달러(한화 약 2,684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23.7% 감소
 - * 임산물 수출액은 117만 800달러(한화 약 9억 원)로 전년 대비 129.7% 증가, 2017년 이후 연평균 32.3%의 성장률 기록
 - * 축산물 수출액도 74만 4,500달러(한화 약 6억 원)로 전년 대비 8.9% 감소

한국의 對UAE 수출규모(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²¹)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446,619.8	194,316.9	135,861.4	260,852.6	199,917.4	100.0	△23.4	△18.2
농산물	443,748.2	192,497.4	132,720.5	259,525.8	198,002.1	99.0	△23.7	△18.3
임산물	382.7	398.3	722.6	509.6	1,170.8	0.6	129.7	32.3
축산물	2,488.9	1,421.2	2418.3	817.2	744.5	0.4	△8.9	△26.0

* 출처 :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 프로필렌글리콜, 효소 기타 등임
 -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라면(5.4%)과 프로필렌글리콜(3.8%)로 나타남
 - * 라면의 수출액은 1,082만 7,400달러(한화 약 147억 원)로 전년 대비 113.2%, 최근 5년간 연평균 29.1%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 프로필렌글리콜은 767만 7,400달러(한화 약 104억 원) 수출되어 전년 대비 91.3% 증가했으며, 연평균 38.9%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
 - * 효소 기타 품목의 경우 2021년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214만 900달러(한화 약 29억 원)가 수출됨
 - 그 외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코코아를 함유한 아이스크림 등이 그 뒤를 이어나 모두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확인됨

한국의 對UAE 수출 상위 5개 품목(2017~2021)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21)	증감률		
							전년비 (*20/'21)	연평균 (*17~'21)	
전체	446,619.8	194,316.9	135,861.4	260,852.6	199,917.4	100.0	△23.4	△18.2	
1	라면	3,898.2	3,459.7	3,882.2	5,078.9	10,827.4	5.4	113.2	29.1
2	프로필렌 글리콜	2,060.6	3,517.8	8,876.9	4,012.6	7,677.4	3.8	91.3	38.9
3	효소 기타	-	-	4.7	0.1	2,140.9	1.1	2,140,800.0	2,034.3
4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1,711.6	1,797.2	2,225.3	1,791.7	1,915.7	1.0	6.9	6.9
5	아이스크림 (코코아를 함유한 것)	827.2	1,149.5	1,256.4	1,715.0	1,891.1	0.9	10.3	23.0

*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통관제도

- 수입신고 전 수입업체를 통해 FIRS(Food Import&Re-export System) 또는 ZAD(연방 식품 포털)에 수입식품의 사전등록 필요
 - 토후국¹⁾ 별로 운영되었던 식품 등록 시스템을 통합하여 2018년 연방 식품 포털(ZAD)이 개설되었으며, 현재 수입식품의 사전등록은 FIRS와 ZAD를 혼용하여 사용함
 - FIRS 등록 시 온라인으로 수입신청서와 함께 제품의 라벨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함
 - * 제품의 라벨 사진 첨부가 어려운 경우, 제품의 사진으로 대체 가능함
 - ZAD 등록 시 온라인으로 수입신청서와 함께 제품의 라벨, 포장, 제품의 건강 및 영양 강조 표시에 대한 원산지 관할 당국의 확인증을 제출함
 - 수입식품 등록을 통해 식품 라벨 승인 취득 가능, 수입식품 등록 미진행 시 통관이 거부됨
 - 또한, 식품 수입 전 두바이중앙식품시험소(Dubai Central Food Laboratory) 또는 국제 인정 시험소로부터 수입 대상 식품의 소비적 합성 성적서 취득 권장, 성적서 미보유 시 화물 도착 후 샘플 시험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출이 보류됨

1) 서아시아, 인도 등에서 영국의 지배 및 보호하에 있던 국가를 말함.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구성국, 오만 이슬람왕국, 카타르 등을 지칭함

- 수입업체, 현지 대리인 또는 관세사를 통해 세관 신고를 진행함
 - 온라인 또는 허가받은 통관 브로커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며, 항공송장, 선하증권, 송장,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수입통관허가증을 제출함
- GCC(걸프 협력 회의) 관세 협정에 따라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CIF²⁾ 기준으로 평균 5%의 관세 부과
 - 담배류의 관세율은 100%, 술의 관세율은 50%이며, 예외적으로 무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도 존재함
 - 관세 부과량은 품목에 따라 상이함
- 유통기한과 표시사항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관능검사 실시
 - 정밀검사가 불필요할 경우 반출확인서가 교부되어 통관이 완료되며, 육안검사 부적합 시 위험분류에 따라 단계별 정밀검사 여부를 결정함
 - * 정밀검사는 식품의 위험도에 따라 녹색절차, 황색절차, 적색절차로 분류됨

구분	검사내용
녹색 절차	위생서류 검토만 진행
황색 절차	위생서류 검토 + 화물검사
적색 절차	위생서류 검토 + 화물검사 + 무작위 샘플 채취를 통한 추가검사

-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육류 및 가공육 제품의 할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 반출이 일시적으로 금지되며, 이 외에도 화물에 해충이나 현지 동식물 바이러스 유입이 의심되거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화물 반출이 금지됨
- 관세 납부와 물품검사 완료 시 물품 반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물품의 반출이 가능함
 - 통관 시 수입업자는 반입신고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현지 세관에 제출해야 함
 - * 수출입화물 명세신고서, 화물인도지시서 또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할랄인증서, 검역증명서

2)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화물 선적 시점부터 목적지 도착 시점까지의 운임료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임. 단, 매도인은 화물의 선적 시점까지만 화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선적 후에는 매수인에게 화물에 대한 책임이 있음

검역제도

- 아랍에미리트는 식품의 종류(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가 아닌 식품의 위험도로 분류하여 검역을 진행함
 - 신선 식품은 포장 유형에 따라 저위험 식품에서 고위험 식품까지 분류됨

저위험식품	커피, 차, 설탕, 시럽, 꿀, 탄산음료 농축액, 식품첨가물, 향료추출물, 기름, 지방, 마가린, 건과일, 포장채소, 곡물, 콩, 파스타(스파게티 및 쿠스쿠스), 말린 허브, 소금, 식초, 알코올음료, 증류주
중위험식품	생수, 탄산음료, 주스, 농축액, 신선과일, 포장과일, 냉동야채 및 과일, 코코아, 초콜릿, 비스킷, 사탕, 향신료, 건조 수프, 이스트, 박테리아 배양물, 커피 화이티너, 휘핑크림, 잼, 젤리, 쌀, 밀가루, 전분, 튀김, 조식용 시리얼, 산성식품
고위험식품	육류, 수산물, 우유, 요거트, 치즈, 아이스크림, 달걀, 버터, 냉동 패이스트리 우유와 계란을 함유한 베이커리 제품, 유아용 식품, 특별 규정식, 말린 견과류 및 코코넛, 견과 및 코코넛 플레이크, 참깨, 타히니, 땅콩버터, 자른 사전포장 채소, 증류한 저산성 식품

* 출처 : 아부다비 식품 통제 당국(ADFCA, 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

- 식품 위험도 별로 검역 절차 빈도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음
 - * 위험도가 낮은 식품일수록 비교적 간단한 녹색 절차를 밟을 확률이 높으며, 위험도가 높은 식품일수록 적색 절차를 밟을 확률이 높음

구분	적색 절차	황색 절차	녹색 절차
고위험 식품	80-100%	0-10%	0-10%
중위험 식품	15-25%	15-25%	50-70%
저위험 식품	5-10%	0-5%	85-90%

* 출처 : 아부다비 식품 통제 당국(ADFCA, 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

- 아랍에미리트의 농약 잔류물 허용치는 유럽표준(EUR-Lex)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A,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기준을 따름
- 기후변화환경부 법령 824:2015에서 아랍에미리트로 수입 시 금지되어 검역이 필요한 해충 및 일정 조건 하에서 수입이 허가되어 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해충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 육류와 같이 식품위생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고위험 식품의 경우, 위생서류 검토, 화물검사 등 추가검사가 진행되는 비율이 80~100%에 달함
 - * 축산물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품목에 따라 해당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p>신선 적색육, 기금육 및 열처리 적색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수출업자 이름, 주소, 수출국가, 수입품 일련번호, 상품정보와 수량 기재 • 전염병이 발견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되었다는 내용과 도축일 3개월 이내에 구제역,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명 • 승인된 도축형식을 따랐으며, 도축 전/후에 검사를 완료하였음과 도축된 제품이 도축 직후 섭씨 2도에서 최소 24시간 동안 보관되었다는 증명 • 통조림 적색육은 섭씨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처리되었으며, 조리육은 뼈와 지방이 제거되었고 섭씨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처리되었음 또는 건조-염장 육은 뼈를 제거하였으며 식용 소금에 절여 완전히 건조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 HACCP 시스템을 준수하는 기관에서 생산하였다는 문서
<p>열처리 기금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수출업자 이름, 주소, 수출국가, 수입품 일련번호, 상품정보와 수량 기재 • 전염병이 발견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되었다는 내용과 도축일 3개월 이내에 조류독감 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증명 • 승인된 도축형식을 따랐으며, 도축 전/후로 검사를 완료하였다는 증명 • 기금육에서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람이 섭취해도 된다는 확인서 • 도축된 제품이 섭씨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3.6초 이상 또는 섭씨 74도에서 1초 이상 처리되었다는 확인 • HACCP 시스템을 준수하는 기관에서 생산하였다는 문서

- * 육류 제품은 할랄인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하며, 아랍에미리트 국가의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함
- * 해당 인증은 아랍에미리트 표준측량청(ESMA) 및 표준측량청에서 지정한 지정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 가능
- * 또한, 육류 수출 시에는 육류를 생산하는 도축장이 아랍에미리트 관할 당국인 표준측량청(ESMA)에 등록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등록증 명서가 필요함
- * 가공공장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시행장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축장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 시설 및 위치정보 • 도축 절차에 대한 요약정보(축사 → 도축장 → 냉동 및 냉장 → 포장 → 저장 → 이동절차를 모두 포함) • 가축의 건강 및 질병에 관한 자료 • 수의사 및 도축장의 인력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의 위생상태 정보 • HACCP 인증서, GMP 인증서 등 • 원산지국의 관할 정부당국에 의한 육류의 위생 및 수의 관리 입증 서류 • 이슬람법에 따른 동물 도축 요구사항과 할랄 생산의 지속성을 지킨다는 준수 확인서
---	--

- 가공식품은 저위험 식품에서 고위험 식품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분류를 파악하여 검역절차를 준비해야 함

* 수입식품 검역은 크게 ①제품검사 ②미생물검사 ③화학검사로 분류되며, 분석 기간은 보통 5~10일 정도 소요됨

- 공식 수입 금지된 제품은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산지 국가로 다시 수출되며, 토후국으로 처음 수입되는 식품은 자동으로 검역 대상에 포함됨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 수출가능 품목

협상타결 품목

- 축산물
 - 가금육, 열처리 가금육,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열처리 적색육, 반려동물사료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찹쌀, 현미, 보리, 수수, 조, 콩, 팥, 백미
 - 과일류 : 배, 사과, 감귤, 단감, 포도, 밤, 매실, 자두, 멜론, 수박, 복숭아, 참외
 - 채소류 : 당근, 양배추, 달래, 쑥, 양상추, 우엉, 시금치, 대파, 부추, 배추
 - 종자류 : 무, 배추, 오이
 - 버섯류 : 송이, 새송이, 양송이, 팽이, 표고
 - 화훼류 기타 : 알로에묘, 팔레놉시스묘, 선인장묘
 - 기타 : 건채소류, 배합사료
 -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 아랍에미리트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수입 전 수입허가서를 발급 필요
- 축산물
 - 우모분

2. 수출 불가능 품목

- 수출 불가능 품목 없음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FamilyK(아랍에미리트)
업체 유형	한인마트
담당자명	Mr. Bilal

- 자사는 한국에서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을 다양하게 수입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 현지에서 인기 있는 한국산 가공식품에는 라면과 같은 면류, 김치, 국, 즉석죽, 김밥, 떡볶이 등이 있으며, 신선식품은 브로콜리, 고추, 당근, 콜리플라워, 배, 팥이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오이, 가지, 콩나물, 시금치 등이 있음
- 신선식품 중에는 버섯, 숙주나물, 샐러드용 과일과 채소가 가장 인기가 많으며, 고려인삼에 대한 현지 인지도가 높아서 엑기스, 분말, 캡슐, 액상 등 모든 형태가 인기가 있음
- 한국 신선 농산물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인기가 있지만, 다른 나라의 수입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싼 편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음
- 한국 식품을 UAE로 수입하기 위해서 UAE의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가 필요하며, 수입업체를 통해 UAE 전자식품등록포털(ZAD)에 제품을 사전등록 해야 함. ZAD를 통해 온라인 등록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입 프로세스는 어렵지 않지만, 등록 시 원산지 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또한, 식품 수입 시 GCC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한국 식품의 수입 초반 시기에는 일부 제품의 라벨링 정보가 부적절하여 수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큰 문제없이 수입을 진행하고 있음
- UAE 인구는 대다수가 무슬림으로 할랄 인증 제품이 유리하며, 현지 소비자들도 할랄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이 할랄 제품인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식 제품에도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좋음. 또한, UAE 정부는 식품 첨가물 및 라벨링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UAE로 수출되는 식품은 영양 표시를 위한 상세 분석이 필요함

03 비관세 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아랍에미리트는 식품 첨가물 및 잔류물질에 대한 자국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A,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기준을 준수함
 - 농식품의 잔류농약, 오염물질, 미생물 기준은 기본적으로 Codex 기준을 따르며, 일부 기준은 EU,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기타 국가의 기준을 적용함
 - 아랍에미리트의 식품 첨가물 규정은 GCC 규정(GSO)을 준수하며, GCC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odex, EU 또는 미국의 식품 첨가물 규정을 따름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CODEX 식품 규격	식품안전정보포털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codexStandardList.do?data_type=STAN&menu_grep=MENU_NEW04&menu_no=2926
UAE 식품 규정안	아부다비 농식품 안전청	http://www.adafsa.gov.ae/English/PolicyAndLegislations/Guidelines/Pages/default.aspx
UAE 식품 첨가물 규정	아부다비 농식품 안전청 - 허용된 식품 첨가물	http://www.adafsa.gov.ae/English/PolicyAndLegislations/Guidelines/Documents/PERMITTED%20ADDITIVES%20IN%20FOOD%20cop.pdf
GCC 규정 - 잔류농약 기준 (GSO 382:2021)	GSO (걸프지역 표준화 기구)	https://www.gso.org.sa/store/standards/GSO:781069/GSO%202567:2021?lang=en
GCC 규정 - 식품 첨가물 기준 (GSO 2500:2021)	GSO (걸프지역 표준화 기구)	https://www.gso.org.sa/store/standards/GSO:781222/GSO%202500:2021?lang=en

통보문 개정 현황(2022년)

- 개정사항 없음

2. TBT

주요 TBT 내용

- 아랍에미리트로 식품이 수입되기 전에 라벨 평가를 신청하여, 아랍에미리트의 식품 기준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함
 - 아랍에미리트의 식품 라벨링 규정은 GCC(걸프 협력 회의) 라벨 규정인 GSO(걸프지역 표준화 기구) 9:2017 “선포장식품의 라벨링” 및 기타 GSO 라벨 규정을 따름
 - 라벨 평가는 바코드, trade name, 브랜드 명칭, 영양 정보, 원산지 국가, 유통기한, 저장 요건 등이 라벨에 기입되어 있는지 검토함
- 식품 라벨링과 관련된 규정 개정사항(2021)
 - 2019년 4월부터 ‘신호등 식품 라벨링 체계’라고 불리는 영양성분 라벨링 정책이 2022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임. 이에 따라 신선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은 포장 전면에 빨강, 초록, 노랑 3가지 색으로 지방과 포화지방, 당류, 염분의 제품 함량 수준을 표시해야 함
 - “신선(fresh)”, “천연(natural)”, “순수한(pure)” 등의 문구를 식품 라벨링에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규정한 초안을 발표함
 - 냉동 어류, 냉동 어류 펠레트 제품 및 냉장·냉동 갑각류의 라벨링 기준을 수정한 개정 초안을 발표함
- 개별 식품에 대한 GSO(걸프지역 표준화 기구) 규정의 개정사항(2021)
 - “체다 치즈”, “하바티 치즈”, “까망베르 치즈”, “브리 치즈”, “고다 치즈”, “에담 치즈”, “모차렐라 치즈”에 대한 식품 요구사항 개정 초안을 발표함
 - “탄산음료(비일코올성)”에 대한 식품 요구사항 개정 초안을 발표함
 - “밤 통조림” 및 “밤 껍데 통조림”에 대한 식품 요구사항 개정 초안을 발표함
 - “냉동 시금치”에 대한 식품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함
 - “꿀”에 대한 식품 요구사항 개정 초안을 발표함
 - “양념 고기”에 대한 식품 요구사항 개정 초안을 발표함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라벨링 규정 - 일반 규정	아부다비 농식품 안전청	http://www.adafsa.gov.ae/English/PolicyAndLegislations/Guidelines/Documents/General%20Food%20Labelling%20Requirements%20cop.pdf
라벨링 규정 - 강조표시 규정 (UAE.S GSO CAC/GL 1:2008)	GSO (걸프지역 표준화 기구)	https://www.gso.org.sa/store/standards/GSO:490458/GSO%20CAC-GL%201:2008?lang=en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명 • 제품/물품명 • Lot 번호 •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수입업체 • 보관방법 • 제조업체 주소 • 중량 •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바코드 • 경고문구(필요한 경우) • 알레르기 성분 표시 • 섭취방법 • 영양성분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아랍어 또는 아랍어와 영어를 병기할 것	
		아랍어로 작성된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 가능	
	제품명	등록된 명칭으로 표기할 것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명과 함께 식품에 대한 추가 정보 표기 필요	
	그림	돈육 사진 또는 돈육을 사용한 레시피의 부착 금지	
	보관방법	개봉 후 특별한 보관 방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방법에 대해 기재할 것	
		모든 육류 제품 종류는 보관 온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할 것	
	유통기한	Best before 또는 Best before end	
		'일/월/년' 순으로 표기할 것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월/년' 형식으로 표기 가능	
식용 소금, 흰 설탕, 베이커리 제품, 조미료 및 양념 등 정해진 식품의 경우 생산 날짜를 반드시 기입할 것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하여 도장을 찍거나 엠보싱(도드라진 형태) 형태로 인쇄할 것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	내림차순으로 기재할 것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다른 성분과 구별하여 기입할 것
		돈육 또는 돈육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반드시 '돈육'이 함유되어 있음을 표기할 것
		식품첨가물의 경우 해당 식품첨가물의 그룹과 이름 및 E-번호를 표기할 것
	원산지	제3국가에서 재가공된 제품은 재가공이 실시된 국가를 필수적으로 기입할 것
	중량	중량은 메트릭톤(M/T) 단위로 작성할 것
	영양성분	비타민, 무기질 등 기타 추가된 영양 성분의 경우 영양성분 표기 시 별도로 표기할 것
		모든 영양성분은 그 함량이 100g, 100ml 이하이거나 또는 제조사에서 정해진 제공량이 있을 때 % 단위로 표기할 것
	기타	모든 단위는 국제 기준(gram, mg, ug, IU)을 활용하며, 칼로리 정보는 킬로칼로리(kilocalories)를 기준으로 할 것
		건강에 관한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을 것
라벨을 제거한 경우 기존에 작성된 라벨은 깔끔하게 제거할 것		
라벨은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입될 것		
	식품의 특성에 관하여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실제로 가지지 않은 효능이나 특성의 기입 금지	

* 자료 : 두바이 행정부(DM), 아부다비 농식품안전청(ADFC)

• 조미료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흑해 소금 플레이크
원재료명	바다 소금(플레이크) 식물성 탄소 2%
내용량	125g
출시일(발행일)	2022. 07. 13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Gyma Food Industries
제조지(원산지)	키프로스

• 견과류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오일 로스티드 & 솔티드 캐슈너트	
원재료명	- 캐슈너트 - 식물성 오일 - 소금	
내용량	300g	
출시일(발행일)	2022. 08. 23	
저장방법	상온 진열	
제조사	Gyma Food Industries	
제조지(원산지)	UAE	
알레르겐 주의 성분	견과류	
영양성분 정보	- 1회 제공량 30g	
	- 총 10회 제공	
	열량	186kcal
	지방	14g
	포화지방	3.2g
	나트륨	78mg
	탄수화물	9g
	식이섬유	1g
	당류	1.5g
단백질	5.1g	

[선택 인증]

• ESMA 할랄 인증

- 아랍에미리트의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안전한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 도입된 인증임. 해당 인증은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며, 육류 및 육류를 포함한 식품의 경우 지정된 이슬람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할랄 인정서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ESMA 할랄 인증은 아랍에미르를 포함한 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중동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음

인증명	ESMA 할랄 인증	
인증기관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UAE 표준측량청)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온라인 지원서, 유효한 사업자 등록/면허, 성분 목록표, 재료 목록표, 성분/ 원재료 할랄인증서 또는 제품사양서 사본, 제조공정 플로우차트 및 생산절차, 라벨 디자인, 시 성적서, FSMS/GMP/GHP or QMS 증명서, 자기증명서(자유양식)	
비용	신청업체 별로 상이	
소요기간	3~6개월	
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 계약 검토 → 심사 → 부적합사항 시정 → 시정조치 확인 및 재심사 → 인증서 발급	

No.	제목	UAE 라벨링 규정 준수의 어려움	해당국가	UAE
1			관련품목	건강기능식품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식품 라벨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식품 성분(원료), 영양소 라벨(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기술 규정을 준수), 용량, 업체명 및 주소, 원산지, 보관조건, 로트 번호,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사용 방법 • 돈육 또는 돈육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경우 라벨에 반드시 돈육이 함유되었음을 표기해야 하며, 식품 라벨에는 돈육의 사진이나 사용 레시피를 부착해서는 안 됨 • 냉장/냉동 계육에는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표시사항 외,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원산지 증명, 중량 단위 라벨링 - 알코올성 물질, 동물성 지방, 젤라틴, 식품첨가제 및 혈액 등의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라벨에 해당 내용을 표기해야 함 		
	애로·건의 사항			
	기타	<p>※ 2022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 '영양성분 라벨링 정책' 의무 시행 : '신호등 식품 라벨링 체계'라고 불리는 해당 정책은 제품의 포장 전면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3가지 색깔로 지방, 포화지방, 당류, 염분의 제품 함량 수준을 표시</p> <p>[영양성분 라벨링 정책(Nutrition Labelling Policy) 색깔 표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간색 : 염분, 당류, 지방,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음 • 노란색 : 염분, 당류, 지방, 포화지방과 같은 영양소가 적당함 • 초록색 : 염분, 당류, 지방, 포화지방과 같은 영양소가 적으며 건강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으로 추천됨 		

No.			해당국가	UAE
2	제목	할랄인증 취득의 어려움	관련품목	가공식품
			유형*	TB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할랄인증의 명칭은 ESMA 할랄인증이며, ESMA(UAE 표준측량청) 기관이 관할함 • UAE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안전한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 도입되었음. 할랄인증 취득은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며, 육류 및 육류를 포함한 식품은 할랄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품목 : 상하기 쉬운 동식물성 가공식품, 상하기 쉬운 식물성 가공식품, 실온보관 및 유통기한이 긴 가공식품 - 취득 방법 : 국내 승인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국가 통용여부 : GCC 6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정부에서 공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동 지역은 대부분 통용이 가능, 말레이시아에서도 ESMA 할랄인증을 인정하고 있음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는 일반 가공식품을 UAE로 수출하고 있음. UAE 소비자는 할랄 제품을 선호하며, 특히 육류·가금류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증명서가 필수로 필요한데,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 애로사항이 있음 			
기타		-		

부록

부록 1. 수출교역조건 현황 요약	500
부록 2. 한눈에 보는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508



부록 1

수출교역조건 현황 요약

구분	일본		중국	
협상 타결 품목	농산물	-	농산물	포도, 쌀, 파프리카
	축산물	열처리 돈육, 삼계탕, 유제품, 증제피혁분, 열처리 가금육	축산물	삼계탕, 유제품, 계란분말, 보조사료, 수생동물용 사료, 오리털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농산물	곡류/과실류/채소류/종자류/버섯류/절화류/화훼류 기타	농산물	곡류/채소류/종자류/버섯류/절화류/화훼묘/묘목류/기타
	축산물	개·고양이 사료, 우지, 돼지 콜라겐, 젤라틴, 비식용 돈피, 오징어 분말, 단미사료(계란분말), 계육가공품(멸균)	축산물	사료첨가제, 어유 추출물, 오징어간 분말, 헤파린, 오리털, 가죽
수출 불가능 품목	농산물	화상병 및 자두공보병 관련 기주 식물(재식용 식물, 과실류, 절화류, 화분 등)	농산물	참외, 단감, 딸기, 감귤, 토마토, 버섯류(표고, 느타리, 만가닥), 묘목류, 조경수 수목 등
	축산물	말고기, 가금육·우모분	축산물	가금육, 열처리 가금육, 열처리 돈육, 반려동물사료, 젤라틴, 벌꿀
주요 SPS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미자차와 인삼차등은 한방재료를 사용한 약품으로 분류 한국산 고추, 잭팟 등 통관거부 사례 빈번 육류 및 가금류와 이들의 가공제품을 일본으로 수출 시, 위생증명서(검역증)를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위험분석 관리제도에 따라 한국산 생과일과 채소류 중 일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됨 단감, 감귤, 참외, 딸기, 토마토, 버섯 등의 품목은 한국 정부의 수출허용 요청에 따라 PRA가 진행 중임 	
주요 TBT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정 성분 또는 물질을 함유한 식품의 라벨링 규정 개정 지정 제품의 폐기물 분리 규정 표시 특정 마크 부착 규정 일부 개정 동물성 유기농 가공식품과 동식물성 유기농 가공 식품에 대한 표준 개정안이 채택되어, 2025년 10월에 라벨 표시 요건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통칙 개정안을 수정함 2022년 12월부터 《식품안전 국가표준 음료》가 시행됨 2022년 1월부터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이 발효되어 정부관리 대상 식품 품목이 18개로 증가함 	
라벨링	표기언어	일본어	표기언어	표준 중국어(병음 표기 가능)
	표기사항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유통기한(상미기한), 보존방법, 제조업자 정보, 원산국명, 영양정보	표기사항	식품명칭, 배합원료표, 원산지, 내용량 및 규격, 생산일자/보존기한, 저장조건, 식품 생산허가증 번호, 제품 표준 코드, 수입업체 정보
인증	선택인증		필수인증	선택인증
	JAS 인증, HACCP, JGAP, 스마일케어 인증		SC 인증, AQSIQ 인증	유기산제품인증 (ORGANIC), HACCP, 녹색인증, GAP, 신식품원료허가, CHINA HACCP

구분	대만		홍콩	
협상 타결 품목	농산물	사과, 배, 복숭아, 참다래, 다육식물	축산물	열처리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쇠고기, 가금육, 식용란, 양념쇠고기
	축산물	계란 및 계란제품, 유제품, 반려동물사료, 식용젤라틴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농산물	곡류/과실류/채소류/특작류/종자류 /버섯류/화훼류 기타/모목류	축산물	반려동물 사료, 아이스크림, 식육추출가공품, 치즈, 오믈렛(제빵류), 멸균 돈육가공품(햄)
	축산물	멸균 삼계탕, 오징어 건파우더, 오리탈, 어분, 사료첨가제 (동물유래물질 미포함)		
수출 불가능 품목	농산물	곡류/과실류/채소류/모목류	주요 신선 건조 농산물 중 수출 금지 품목 없음	
	축산물	가금육, 열처리 가금육(삼계탕 제외)		
주요 SPS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개의 특정 CCC코드로 분류되는 식품 또는 식품 관련 용도 제품의 수입품은 검역 신청을 해야 함 유아 식품에 포함되는 글리시딜 지방산에스터의 최고 한도를 조정함 지정검역품목 수입 시 식물검역당국에 제출하는 수입업체의 제출 서류가 개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 가지 종류의 미코톡신 사용 규제 및 식용 지방과 기름, 조미료와 조제식품, 유아용 식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식품 영역의 유해 물질 기준 설정 	
주요 TBT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원료 알로에의 사용 제한 및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을 통보함 “사전 포장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규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홍콩에서 발표한 주요 TBT 규정 내용 없음 	
라벨링	표기언어	중문	표기언어	영어, 중국어(훈용기능)
	표기사항	제품명, 용량, 영양성분, 원산지, 제조사 및 수입자 정보, 제조일자, 유통기한, 식품 첨가물, 알레르기 정보	표기사항	제품명, 원료 정보, 유통기한, 제조사 정보, 섭취방법, 용량, 영양성분, 특정 보관 조건
인증	필수인증	선택인증	필수인증	선택인증
	식품의약품청인증,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S.A.	보건식품인증, CAS, 야채과일 안전인증, TQF 상품인증제도	식품환경위생부 (FEHD) 인증	홍콩 유기농 인증,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S.A., HACCP, GMP

수출교역조건 현황 요약

구분	미국		EU	
협상 타결 품목	농산물	배, 딸기, 사과, 참다래, 감귤, 한라봉(천혜향), 포도, 감, 박과류, 밤, 당근, 두릅, 양파, 파프리카, 미나리, 토마토, 뿌리냉이, 심비디움·호접란, 미니식물 26종	농산물	분재류
	축산물	삼계탕, 열처리가금육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농산물	곡류/과실류/채소류/종자류/버섯류/절화류/묘목구근류	농산물	곡류/과실류/채소류/종자류/버섯류/절화류/화훼류
	축산물	우유 포함 음료, 알가공품, 쇠고기 추출물이 포함된 식품, 라면류의 계란 및 관련 성분, 과자류의 유당 성분, 아이스크림 믹스류·다시다류·라면류의 유청분말 성분		
수출 불가능 품목	농산물	곡류(팥, 녹두, 옥수수)/채소류	농산물	감자, 여주, 감귤 묘목, EU가 지정한 고위험식물류 34속 1종
	축산물	열처리 돈육	축산물	열처리 가금육(삼계탕), 가금육
주요 SPS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의 유통추적을 위해 기록보관 의무를 도입할 예정임 2022년 6월 한국산 메기목 어류 제품에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하여 수입을 제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호르몬을 규제하기 위한 Import Tolerance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 식품 검역 기준으로 적용함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2개로 지정함 식품에 염화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시드 첨가를 위한 개정 초안을 공고함 	
주요 TBT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농무부(USDA) 유기농 규제의 허용 및 금지 물질 국가 목록을 개정함 식품 표시가 필요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함께 추가, 2023년 1월부터 라벨 표시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식품안전관리제도 인증 필수 최종 플라스틱 재료 및 물품의 재활용 내용물에 관한 규칙 제정 어린이 건강 효능 관련 표시는 개별 승인 절차 요구 	
라벨링	표기언어	필수정보는 영어로 표기해야 함	표기언어	현지어 및 여러 언어 병기 가능
	표기사항	제품명, 용량, 원산지/원료 정보, 알레르기 정보, 성분정보, 1회 제공량, 제조업체 정보, 기타 주의 문구	표기사항	제품명, 성분, 알레르기 성분, 용량, 섭취기한 또는 최소 보존일, 원산지, 보관조건/사용조건, 영양성분, 사용방법, 제조업체 이름과 주소, 수입업체 이름과 주소
인증	필수인증	선택인증	필수인증	선택인증
	FDA 등록	IFANCA 할랄 인증, 코셔(Kosher) 인증, USDA Organic 인증, 글루텐프리 인증, NON-GMO 인증	유럽식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제도 인증, 유럽 노블푸드(신식품) 등록	유럽채식협회(V-Label), 지리적 표시(GI), EU 유기농 인증, Global Gap 인증 등

구분	베트남		태국	
협상 타결 품목	농산물	사과, 배, 포도,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농산물	복숭아, 포도, 배, 사과, 감(단감), 딸기, 참외(멜론), 감귤
	축산물	가금육(닭고기), 열처리 가금육	축산물	멸균 식육가공품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농산물	곡류/과실류/채소류/견과류/특작류/서류/종자류/버섯류/버섯종균	농산물	곡류/과실류/채소류/종자류/버섯류/절화류/화훼류
	축산물	유제품, 반려동물 사료, 젤라틴, 오징어간 분말, 어유, 가죽, 계육분, 우모류, 배합사료(포유자돈 대용유), 산업동물 사료(양어), 오리털	축산물	젤라틴(캡슐), 아이스크림, 어유, 오징어간 분말, 계육분, 반려동물 사료
수출 불가능 품목	농산물	과실류(감귤, 복숭아, 대추, 망고)/채소류/종자류/묘목류/화훼류 기타	농산물	과실류(참다래, 자두, 살구)/채소류(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호박, 수박, 가지, 감자)
	축산물	돈육, 열처리 돈육	축산물	가금육, 열처리 가금육, 열처리돈육가공품, 쇠고기
주요 SPS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틸렌옥사이드(EO) 함량 규제 도입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 생과일, 과채류, 재식용 식물에 PRA 규정을 도입 건강식품 수입 시 GMP 인증서류 추가 신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나비디올 추출물이 함유된 식품》에 대한 보건부 공고 안 채택, 간나비디올 추출물을 신식품으로 인정함 2020년 6월부터 한국에서 돼지, 멧돼지,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함 살충제 성분 중 5가지를 위험 물질로 추가 	
주요 TBT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보조 식품에 포함된 최대 수준의 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기술규정 초안 규정 건강보조식품, 식료품, 주류 품목의 라벨링 규정의 개정분을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 광고 방지를 위해 식품 공고 규칙 개정안 발표 유해물질 관련 위험 및 경고 표시가 소형포장용 의무제품 라벨 요소에 포함됨 	
라벨링	표기언어	베트남어	표기언어	태국어
	표기사항	제품명, 원산지, 제품 용량, 제조일, 책임자 명칭 및 주소, 유통기한, 성분 및 성분 함량 /영양정보, 허용량 및 주의 정보 등	표기사항	제품명, 종량, 유통기한, 영양성분, 인공조미료, 원료, 원산지, 경고문, 업체정보, 보관방법, 로트 번호, 사용방법, 알레르기 정보
인증	필수인증	선택인증	필수인증	선택인증
	VFA 적합성 인증	HACCP, HVNCLC, GMP, VietGap 등	태국 식약청 허가, GMP, HACCP, ISO22000	CICOT

수출교역조건 현황 요약

구분	인도네시아		필리핀	
협상 타결 품목	-		농산물	사과, 배, 단감, 양파, 버섯류, 감귤, 파프리카, 딸기
			축산물	유제품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농산물	곡류/과실류/채소류/종자류/버섯류/화훼류	농산물	곡류/과실류/채소류/종자류/버섯류/절화류/화훼류 기타
	축산물	가족제품, 오징어간 분말, 개·고양이 사료, 우모유, 어유	축산물	개·고양이 사료, 젤라틴, 오징어간 분말, 사료첨가제 (동물성 원료 미사용), 소가죽
수출 불가능 품목	농산물	블루베리, 마늘, 수박, 인삼, 팔, 더덕, 딸기, 딸기묘, 알로카시아묘	농산물	과실류/채소류/묘목류
	축산물	유제품, 가공육, 멸균 식육가공품	축산물	우유, 가공육, 식육가공품 (열처리축산물 등)
주요 SPS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농산물 수출 조건 및 절차 설정 및 수출국 식품안전 담당기관에 분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22개 품목 설정 • 향료 보조물질, 합성향료, 식품 첨가물에 사용이 허용되는 향료 화합물 등에 대한 요건이 일부 변경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 행정명령 제122호 시리즈에 규정된 금지를 해제하여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사이클람산 및 그 염의 사용을 허용함 	
주요 TBT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0월 이후 할랄인증 의무화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BPOM)의 가공식품 라벨링 규정 준수 및 수입식품의 식품의약품 등록 필요 • 가공식품 라벨링에 관한 2018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1호의 내용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식품의 분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초안을 발표함 • 유전자 변형(GM) 신고가 필요한 수입 상품 목록을 지정하고, 해당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 • 사전포장 가공식품에 대한 전자등록시스템 사용절차"를 폐지함 	
라벨링	표기언어	인도네시아어	표기언어	영어, 타갈로그어(혼용가능)
	표기사항	제품명, 유통기한, 원산지, 성분분석표, BPOM 등록번호, 성분 리스트, 순중량/순용량, 제조사 또는 수입자명, 제조일/생산번호 등	표기사항	제품명, 유통기한/소비기한, 품명/상표, 성분목록, 중량, 제품번호, 상호와 주소, 보관조건, 알레르기 정보, 사용법, 영양정보
인증	필수인증	선택인증	필수인증	선택인증
	BPOM 등록, SNI인증, HALAL, HACCP	ISO 22000, IFS 인증	GMP, HACCP, ISO 22000 중 하나, 필리핀 FDA 등록	SPS 인증

구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협상 타결 품목	농산물	-	축산물	삼계탕, 식용란, 열처리 식육가공품, 가금육, 식용란
	축산물	소 정액, 우유 및 유가공품, 멸균돈육가공품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농산물	곡물류/과실류/특작류/채소류/종자류 /버섯류/절화류/화훼류 기타	농산물	곡류/과실류/채소류/종자류/버섯류 /절화류/화훼류 기타/ 묘목류
	축산물	오징어간 분말, 소가죽, 멸균 삼계탕, 물고기 사료, 사료 첨가제	축산물	비식용우지
수출 불가능 품목	농산물	감귤 묘목, 국화묘, 옥수수종자, 딸기묘	축산물	열처리 돈육가공품(살균)
	축산물	쇠고기, 가금육		
주요 SPS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배탈잎, 신선 고추, 신선 두리안 수입 시 신규 수입요건을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말레이시아 내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는 허가되지 않지만, 식품 및 사료용,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판매 규정의 내용 중 일부 표현과 감미제 목록을 수정한 개정안을 발표함 •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계란의 수입을 위한 수의학적 조건의 검토를 진행함 	
주요 TBT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함량, 다른 성분 추가, 식품 첨가물 사용 및 라벨 요구사항에 관련된 알코올음료의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개정 • 유아용 조제분유, 성장기 조제분유 및 어린이용 조제분유의 일부 성분 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에 대한 59개의 식별 기준 삭제와 관련한 식품 규정의 개정안을 2022년 10월 WTO에 통보함 • 선포장 식품에 대한 라벨링 요구사항을 개정함 	
라벨링	표기언어	말레이시아어, 영어	표기언어	영어
	표기사항	제품명, 용량, 성분, 영양성분, 원산지, 제조사 및 수입업체 정보, 보관방법, 기타 정보, 유통기한	표기사항	제품명, 원산지, 유통기한, 원료정보, 알레르기 정보, 용량(순중량), 사용법, 제조업체 정보, 감미료, 영양정보 등
인증	필수인증	선택인증	필수인증	선택인증
	JAKIM 할랄 인증	SIRIM 인증	싱가포르 식품청 (SFA) 업체 등록	MUIS 할랄 인증

수출교역조건 현황 요약

구분	러시아		카자흐스탄	
협상 타결 품목	축산물	반려동물 사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음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농산물	곡류/과실류/채소류/종자류/버섯류/화훼류 기타	농산물	사과, 배, 감자, 양배추종자
	축산물	유제품(크리머), 가축, 훈제오리육		
수출 불가 품목	농산물	자두 묘목, 복숭아 묘목, 아몬드 묘목 (검역본부 홈페이지 참조)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음	
	축산물	멸균 식육(돈육) 가공품		
주요 SPS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자 공학 활용 농산물 규제 조치 시행 (농업생명공학 기술 생산 재료 0.9% 이상 함유 시 라벨링 부착 필요) 농업 생명공학 식품과 사료의 인증 시스템이 신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BRFV(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PepMV(Pepino Mosaic Virus), TSWV(Tomato Spotted Wilt Virus)와 기타 식물 위생 검역 요건 개정 	
주요 TBT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성(동물성) 유지의 유형, 제품 조성 표시 등의 관행을 고려한 《식품 라벨링》 개정안 공고 《식품 안전성》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개발됨 2021년 6월부터 디지털 라벨링 제도 단계적 시행 		-	
라벨링	표기언어	러시아어	표기언어	카자흐스탄어, 러시아어
	표기사항	제품명, 원료, 영양성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정보, 보관방법, 보관기간, 순중량/용량/수량, 유통기한	표기사항	제품명, 순중량/용량/수량, 성분정보, 원료,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 정보, 보관방법, 유통기한, EAC 마크, 제조일자 및 포장일자
인증	필수인증		필수인증	
	TRCU(EAC), HACCP, 국가위생등록 (SGR)	GOST-R, Hygienic Certificate, ISO 22000등	TRCU(EAC)	

구분	몽골		아랍에미리트	
협상 타결 품목	축산물	돈육 및 돈지방	축산물	가금육, 열처리 가금육,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열처리 적색육, 반려동물사료
협상 없이 수출가능 품목	농산물	곡류/과실류/채소류/종자류/버섯류/절화류/화훼류 기타/딸기 묘목류	농산물	곡류/과실류/채소류/종자류/버섯류/화훼류 기타 및 견채소류, 배합사료
	축산물	열처리 식육가공품 (돈육 만두, 치킨 너겟 등), 유제품	축산물	우모분
수출 불가능 품목	수출 불가능 품목 없음		축산물	수출 불가능 품목 없음
주요 SPS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은 식품 첨가물 및 기타 위생요건에 관한 자체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 기준을 따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랍에미리트의 식품 첨가물 규정은 GCC 규정(GSO)을 준수함 • GCC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odex, EU 또는 미국의 식품 첨가물 규정을 따름 	
주요 TBT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및 HACCP 등의 국제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수입품은 몽골 국가품질인증인 MNS 인증을 취득해야 함 • 알코올음료의 생산, 수출입, 재수출, 판매, 서비스 및 소비 관련 알코올음료 유통 관리 및 알코올 중독 퇴치에 관한 법안 시행 • 육류 및 육류제품의 생산 및 거래에 관한 기술규정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랍에미리트로 식품이 수입되기 전에 라벨 평가를 신청하여, 아랍에미리트의 식품 기준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함 • 개별 식품에 대한 GSO(걸프지역 표준화 기구) 규정의 개정사항(2021)과 식품 라벨링 관련 규정 개정사항이 발표됨 	
라벨링	표기언어	몽골어, 러시아어, 영어	표기언어	아랍어 또는 아랍어와 영어 병기
	표기사항	제품명, 원료, 중량, 제조사 및 수입업체정보, 원산지, 제조일자/포장일자, 유통기한, 사용법, 열량, 영양성분, 임산부 및 어린이 사용 관련 표시	표기사항	브랜드명, 제품/물품명, Lot 번호,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원산지, 제조업체/유통업체 또는 수입업체, 보관방법, 제조업체 주소, 중량,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 제품 바코드, 경고문구, 알레르기 성분, 섭취방법, 영양성분
인증	선택인증		선택인증	
	MNS 인증		ESMA 할랄 인증	

01. 일본

對일본 농식품 수출 절차



1

수입 전 준비

식품위생기준 확인

- **제출서류(A)**
위생증명서, 수출 전 검사(필요 시)
- **현장검역 필수품목 확인**
- 대상품목 : 루바브, 토마토, 사과지, 배추수
- 적용일자 : '20.01.29 -
- **현지유관부처 농림수산업(MAFF)**

2

수입신고

- **전자통관시스템(NSCCS) 전자신고 또는 세관 직접 신고**
- 화물 도착 7일 전부터 사전신고서 접수
- **제출서류**
①상업송장 ②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 ③원산지증명서(필요 시)
④포장명세서 포함증명서 ⑤수입신고서 ⑥원재료 및 제조 공정 설명서
⑦위생증명서(육류·육어제품 등 수출 시) ⑧시험성적서(필요 시)
- **현지유관부처 지역검역소**
- 소속: 후생노동성(MHLW)
전자통관시스템(NACCS)
- 소속: 재무성 관세과 www.naccs.jp

3

검역 및 검사

- **제출서류**
①수입검사 신청서 ②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검사증명서

동물성 제품

- 검역대상 품목은 수입검역증 또는 농림수산업 대상의 허가 취득 필요
- 우리나라 소, 돼지 등 육류 수출 전면 금지이나 일부 농림수산업 사전승인 공장은 가능
- 검사대상 및 요건 : 농림수산검역본부 수출축산물검역정보의 품목별 수출요건 확인

- **현지유관부처 동물검역소**
- 소속: 농림수산업(MAFF)
지역검역소
- 소속: 후생노동성(MHLW)

식물성 제품

- 수입금지품목: 흙 검역 병해충 검출 품목
- 검사대상: 채소, 과일, 곡류, 콩류, 견과 목초, 절화, 관상용 식물, 종자, 묘목, 구근, 관상용 식물, 목재, 향신료, 한지재 등

- **현지유관부처 식물검역소**
- 소속: 농림수산업(MAFF)
지역검역소
- 소속: 후생노동성(MHLW)

4

관세납부

WTO 협정세율 또는 RCEP 협정세율 적용

- RCEP 협정세율 '22.01. 발효 예정

소비세

- (과세가격+관세) x 소비세율

- **현지유관부처 관세국**

5

반출(합격 시)

● **라벨 제작 표기언어:** 일본어

표기사항: ①명칭 ②원재료명 ③참가를 ④내용량 ⑤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⑥보관방법 ⑦영양성분 함량 및 열량
⑧식품 관련 사업자의 성명/명칭/주소 ⑨제조업체(제조장소) ⑩그 외 식품의 특성에 따른 표시사항(알러르기 항원 표시 등)

2021년 12월 기준



對중국 농식품 수출 절차



1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필수) 및 상표 등록(필요)

중국 해관총서 기업등록 및 등록번호 발급(필수)

- 대상 중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오든식품) 해외 생산기업
- 방법A 수출국 정부가 중국 해관에 추천하여 등록

- ①소재 국가 주관 당국 추천서 ②업체리스트, 업체등록신청서 ③업체 신분증명 서류 ④중국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 ⑤소재 국가 발급 심사, 검사 보고서

- 방법B 자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서류 등록

- ①중복 추천서 ②업체 신분 증명 서류 ③중국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

(A, B 공통) 등록 완료 후 식품 내·외 포장지에 등록번호 기재 필요

- ①등록신청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www.singlewindow.cn)

- ②참고사항
 - 방법A 해당 품목(18종) 육과 육제품, 수산물, 유제품, 제빵임과 제미집 제품, 커피산, 알콜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유(저온 유류, 소가 끓어 있는 알기류식용, 식용유), 곡물제분(강제분과 맥아, 산성 및 탈수채소 및 마른콩, 조미료, 건과류와 씨류, 건조과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식식품, 건강기능식품
 - 방법B 해당 품목: 18종 품목 외 모든 품목
 - KATI 웹사이트(중국 수입식품해외생산업체 등록신청 메뉴얼) 참고

- ③현지유관부처 중국 해관총서

>>>

상표 등록(필요 시)

- 상표(도형, 글자, 도형+글자 등) 등록
- ① 현지유관부처 상표국(소속: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NIPA))

3

수입신고

EDI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현지 대리인이 수입신고 진행
- ①제출서류
 - ①통관신고서 ②선하증권 ③경사검역신고서, 검사결과 신고 위탁서 ④계약서 ⑤포장명세서 ⑥중요라벨 ⑦원산지증명서 ⑧품질증명서
- ② 현지유관부처 중국 해관총서

2

제품 사전심사 및 심의

국가표준 및 심의 기준 여부 확인/준수

- ① 현지유관부처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
- 제품 사전심사
 - ①제출서류
 - ①외포장지 전개도(중문) ②원재료명 및 함량(중문) ③제품 성분해(해일부(중문)) ④제조공정도(필요시) ⑤원산지증명서(필요시) ⑥상표(필요시)
 - ② 현지유관부처 수출입심판전문부
 - 소속: 해관총서

4

통관 및 검역

라벨검사, 식품 안전성 검역 실시

- ①제출서류
 - ①계약서 ②인보이스 ③팩리스트 ④선하증권 ⑤원산지 증명서 ⑥영문위생증명서(필요시) ⑦기타(동식물 검역증 등) ⑧중문라벨 ⑨외포장지전개도 번역본 ⑩영양성분시행장서 ⑪제조공정도
- ② 현지유관부처 특수식품안전감독관리국(특수식품)
 - 소속: 국가식품안전감독관리국
 - 동식물검역부(산선 농·축산물)
 - 소속: 해관총서
 - 지방 해관(간공무원)

5

관세납부 및 반출(합격 시)

- ① 라벨 제작 주기: 2~3주
- ② 라벨 제작 주기: 2~3주
- ③ 라벨 제작 주기: 2~3주
- ④ 라벨 제작 주기: 2~3주
- ⑤ 라벨 제작 주기: 2~3주
- ⑥ 라벨 제작 주기: 2~3주
- ⑦ 라벨 제작 주기: 2~3주
- ⑧ 라벨 제작 주기: 2~3주
- ⑨ 라벨 제작 주기: 2~3주
- ⑩ 라벨 제작 주기: 2~3주

對대만 농식품 수출 절차



1



수입업체 사전등록

허가·규제·금지 품목 여부 확인

- 상품분류관리시스템(貨品分類管理系統) 참고
- 사이트: fbfh.trade.gov.tw/fbh/sp/query/CCCRegForm.do

- **현지유관부처**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안전관리처(FDA)
- 등록 사이트: facebook-fda.gov.tw

2



수입신고

- **제출서류**
①표장명세서 ②상업송장 ③계약서 ④중문라벨정보 ⑤세관신고
⑥원산지 증명서 ⑦수출국 검역증명서(필요 시)
- **현지유관부처** 대만 재정부 관무서지출관, 타이베이관, 타이중관, 가오슝관 등)

5



반출(합격 시)

4



관세납부

CCC코드(11자리) 적용

*사전 품목 분류 심사 신청 가능

- **현지유관부처**
대만 재정부 관무서(지출관, 타이베이관, 타이중관, 가오슝관 등)

3



통관 및 검역

도착 15일 전까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검사신청서 ②제품정보 보고서
③수입 신고서 사본 ④수출국 검역증명서 등

샘플채취, 현장검증, 서류심사 방법으로 검사 진행

- 샘플채취: 표본 추출 검사
- 현장검증: 외관 및 라벨링 검사
- 서류심사: 신청서 및 세관신고자료 대조

- **현지유관부처**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안전관리처(FDA)
대만 재정부 관무서(지출관, 타이베이관, 타이중관, 가오슝관 등)

● **라벨 제작** 표기언어: 중국어(번체자)

표기사항: ①제품명 ②성분목록 ③식품첨가물 ④업체 주소 ⑤원산지 ⑥유통기한 ⑦영양성분표 ⑧기타 요구사항(규정 원문 참조)

2021년 12월 기준



對홍콩 농식품 수출 절차



1

식품 수입 및 유통업체 등록

- 제출서류
 - ①수입식품업체등록증 ②사업자등록증
- 현지유관부처 식품환경위생처

2

수입허가 사전심사

- 제출서류
 - ①원산지증명서 ②위생증명서 ③수입/유통업체 등록증
 - ④식품환경위생처 날인된 받은 허가증
- 현지유관부처 식품환경위생처

>>>

<<<

4

통관 및 검역

- 모든 식품류 임의 현장검사 실시
- 위험성 낮은 품목 신속 통관
- 아래 품목은 품목별 검역절차 상이
 - 냉동 당과제품: 제조원 사전 허가 신청 필요
 - 육류 및 가공육: 식품환경위생부 인정 관할 기관의 증명서 제출
 - 우유 및 유제품: 홍콩 도하 전 식품환경위생부 허가 필요
 - ※ 유아용 분유, 조식료, 식용유지 유채종류 기준서 강화 예정(2023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 제출서류
 - ①수입허가증(일부 품목 사전 수입허가 필요)
 - ②원산지증명서(필요 시) ③위생증명서(필요 시)
- 현지유관부처 홍콩 해관
 - 품목: 일반식품
 - 식품환경위생처
 - 품목: 변질되기 쉬운 식품류

<<< 선적 및 운송 <<<

3

수입신고

- 리벨검사, 식품 안전성 검역 실시
- 제출서류
 - ①상업송장 ②선하증권 ③포장명세서
- 수출입허가증 발급
- 현지유관부처 식품환경위생처

5

세관신고 및 관세납부

- (세관 신고)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 진행
- 제출서류 수출입 세관신고서
- 현지유관부처 홍콩정부 통계처
- (관세납부) 거의 모든 식품에 무관세 부과
- 일교율 30% 이상 주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세납부
- 현지유관부처 홍콩 해관

>>>

6

반출(합격 시)

● 라벨 제작 표기언어: 영어 또는 중국어(번체)
표기사항: ①제품명 ②성분목록 ③제품 보관/사용방법 ④중량 ⑤제조사 명칭과 소재지 ⑥영양성분표 ⑦유통기한

對미국 농식품 수출 절차



1

식품시설 등록 및 기타 사전준비

식품의약청(FDA)에 식품시설 등록

- 대상: 식품의 제조, 가공, 포장, 보관, 운송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
- 홈페이지: www.access.fda.gov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대응 준비

- 수입 식품별 FSVP 작성

- **한자유관부처** 미국 식약처(FDA)
- 소속: 미국 보건부

2

HACCP 인증 취득

(필요 시) HACCP 인증 취득

- 대상: 주·시 가공업체, 식품 유통 및 서비스 업체, 해산물 가공업체

- **제출서류**
- ① 인증신청서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 **한자유관부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4

수입신고

도착 5일 전-도착 후 15일 내에 신고

AMS 또는 ABI 활용

- *AMS: 화물전자신고시스템
- *ABI: 관세사 전용 인터페이스

- **제출서류**
- ① CBP Form 3461 ② 상업영수증 ③ 포장명세서 ④ 신하중권
- ⑤ 원산지 증명서(FTA 협정세율 적용 희망 시)

- **한자유관부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
- 소속: 미국 국토안보부

3

적하목록(ISF*) 사전제출

*ISF: Importer Security Filing

화물전자신고시스템(AMS*) 활용

*AMS: Automated Manifest System

- **제출서류**
- ① 화물정보 ② 송하인과 수하인의 인적 정보 ③ 운송수단과 항구에 대한 정보

(해상화물) 도착 8시간 전까지 제출

- **한자유관부처** 인도네시아 관세청

5

통관 및 검역

CBP 검토에 따라 FDA가 세부검사 여부 결정

- 검사가 요구되는 화물을 선별 후 실물/서류검사
-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시 즉시 수입허가

(농·축산물) 동시물류검역시스템(PHCS) 수입허가증 필요

*유제품 포함

- **한자유관부처** 미국 통관을 검역소(APHIS)
- 소속: 미국 농림부
- 품목: 동식물 제품(유제품 포함)
- 미국 식약처(FDA)
- 소속: 미국 보건부
- 품목: 가공식품
- 미국 식품위생 검사국(FSIS)
- 소속: 미국 농림부
- 품목: 육류 및 가공육 제품

6

관세납부

수입신고 10일 내에 추정관세, 필요서류 납부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

- **한자유관부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
- 소속: 미국 국토안보부

7

반출(합격 시)

● **라벨 제작** 표기언어: 영어

표기사항: ① 식량명 ② 순중량 ③ 원재료 ④ 영양성분표 ⑤ 알레르기항원정보 ⑥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⑦ 원산지 등

※ 2021년 1월부터 '신규 영양성분표(영양표 표시 확대, 향기/포화지방/트랜스지방' 항목 표시 등)' 표기 전면시행

2021년 12월 기준



對프랑스(EU) 농식품 수출 절차



1



중인경제인증영인(AEO) 인증 획득

(필요 시) AEO 인증 중 1개 선택 취득

- AEO C : 세관 간소 인증으로 절차 간소화
- AEO S : 보안 인증으로 사면신고 용이, 세관 검사 혜택 부여
- AEO F : 세관 간소 및 보안 안전 혜택 부여

☑ 현지유관부처 프랑스 관세청

2



세관등록번호(EORI) 발급

통관 시 EORI 번호* 사용 의무

*EU에서 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통관고유번호

☑ 현지유관부처 프랑스 관세청

3



품목분류 사전심사(BTI) (필요 시)

수입신고 시 사용할 품목분류 코드 확정

- 정확한 세관 상품 분류번호 파악

☑ 현지유관부처 프랑스 관세청

5



수입신고

- 제출서류
 - ① 수입신고서 ②운임보험 ③상업송장 ④포장명세서 ⑤선하증권
 - ⑥원산지증명서 ⑦관세가격보고서 ⑧기타 세관 요구 서류

☑ 현지유관부처 프랑스 관세청

4



적하목록(ENS) 제출

화물 유형에 따라 제출시기 상이

- 해상화물: 출발지 선택 24시간 전
- 장거리 벌크화물: EU 최종항 도착 4시간 전
- 철도/문어운송 화물: EU 세관 도착 2시간 전

- 제출정보
 - ① 화물의 상세 정보 ②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정보
 - ③운항 정보(운송 경로 등)

☑ 현지유관부처 프랑스 관세청

6



통관 및 검역

서류검사 및 물품검사

- 수입신고서 요건 충족 시 수입신고 수리
- (필요 시) 검사 및 샘플 채취

(동·식물 제품) 국경통제시스템(BCP) 검역 요구

☑ 현지유관부처 프랑스 관세청
화랑국제 지정 국경통제시스템(BCP)

7



관세납부

(필요 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

-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 필요

☑ 현지유관부처 프랑스 관세청

8



반출(합격 시)

☑ 라벨 제작 표기언어: 프랑스어

표기사항: ①제품명 ②원료(성분)목록 ③일제대기 항원 정보 ④특정 성분 함유량 ⑤실 중량 ⑥보존기/인소버기/한 ⑦보관방법 ⑧원산지
⑨사법자 정보 ⑩사용방법 ⑪도수(알코올 시) ⑫영양성분 등

2021년 12월 기준



對베트남 농식품 수출 절차



1



수입허가 취득

신선농산물은 수입허가 필요

- 일부 재소류 제외

- **한지유관부처** 베트남 식물보호부(PPD)
-소속: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2



식품 안전성 공표

아래 가공식품은 식품안전성 공표 필요

- 대상
 - ①건강보조식품 ②의료영양식품 ③특수식이용식품
 - ④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식품 ⑤혼합식품첨가제
- **한지유관부처** 베트남 보건부(MOH)

4



수입신고

일부 품목에 한해 샘플검사 진행

- **제출서류**
 - ①수입신고서 ②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③선하증권 ④상업송장
 - ⑤포장명세서 ⑥원산지증명서 ⑦식품안전인증서류 ⑧자유판매증명서
- **한지유관부처** 베트남 관세총국



<<< 선적 및 운송 <<<

3



수출직업장 등록

신선육류는 수출직업장 등록 필요

- 육류 가공품의 경우 제외
- **한지유관부처** 베트남 수의부(DAH)
-소속: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5



통관 및 검역

물품 위험도에 따라 서류심사, 물품검사

- Green Channel: 전산 신고로 통관
- Yellow Channel: 서류심사(전산 또는 서면)
- Red Channel: 서류심사(서면), 샘플검사

축산물, 신선농산물은 검역등록 필요

- **한지유관부처** 베트남 식품안전청(VFA)
-소속: 베트남 보건부
-업무: 일반 가공식품 검역
베트남 수의부(DAH)
-업무: 축산물 유통 검역
베트남 식물보호부(PPD)
-업무: 농산물 식물 검역

6



관세납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 관세: {수입물품가격(CIF)+지역비율}*관세율
- 부가가치세: {관세가격+관세}*부가가치세율(통상10%)

- **한지유관부처** 베트남 관세총국

7



반출(합격 시)

● **라벨 제작** 표기언어: 베트남어(영어 인증 가능, 베트남어보다 작게 표기)

표기사항: ①제품명 ②상품 책임자(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 및 주소 ③원산지 ④품목별 필수 표기사항(규정 참조)

對태국 농식품 수출 절차



1



식품 수입허가

- **제출서류**
 - ①식품 수입 허가 신청서 ②사업자 ID/여권 사본
 - ③사업자 거주지 등록증 사본
 - ④법인 등록증 사본 ⑤회사 통장 사본 ⑥수입허가등록증 사본
 - ⑦식품원료등록증 사본 ⑧정소 허가증 ⑨청교 주소, 구조 및 시설 설명도

● **현지유관부처** 태국 식안청(FDA)
-소속: 태국 공중보건부(MOPH)

2



제품 등록

특별통제식품은 식약처에 사전 등록

- **대상**
영유아용 식품, 식이보충제 등 제초조정용 식품, 식품첨가물
- **제출서류**
 - ①식품 등록신청서 ②식품 수입허가증 ③GMP 증명서 및 수입용 사본
 - ④제품의 사양 및 제품설명서 ⑤유통 브랜드 및 상품명 ⑥제조공정도
 - ⑦건강증명서 ⑧COI 식품 성분표

● **현지유관부처** 태국 식안청(FDA)
-소속: 태국 공중보건부(MOPH)

4



수입신고

전자세관시스템(E-Customs System)으로 신고

- **제출서류**
 - ①수입허가증 ②세관신고서 ③원산지증명서 ④상업명장 ⑤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
 - ⑥제품 카탈로그, 성분표 등 기타 관련 문서 (포장명세서)
 - ⑦간류노동안전성적서*
 - *신선 과채류의 경우에만 해당(‘20.01. 시행)

● **현지유관부처** 태국 관세청

3



식품 생산시설 증명서 구비

식품 생산시설 증명서 제출

- 태국 보건부 고시 기준 충족 필요
- ISO 22000, GMP, HACCP, BRC, IFS 국제 통용 식품 생산시스템에 관한 인증

● **현지유관부처** 태국 식안청(FDA)
-소속: 태국 공중보건부(MOPH)

5



관세납부

물품 통관 전 관세납부

● **현지유관부처** 태국 관세청

6



통관 및 검역

제출 서류 기반 검사방식 신청

- 녹색라인: 서류 제출 시 자동으로 반출 허가
- 황색라인: 관세 면제
- 적색라인: 화물 개봉·검사 후 반출 허가

● **현지유관부처** 태국 식안청(FDA)
-소속: 태국 공중보건부(MOPH)
- 업무: 일반 농산물, 식품 검역
태국 축산개발국
-소속: 태국 농업농림부(MOAC)
- 업무: 축산물, 동물 검역

7



반출(합격 시)

● **라벨 제작 표기언어:** 태국어
표기사항: ①제품명 ②제조·포장·수입업체 명칭/주소 ③용량 ④식품일련번호 ⑤주성분 함유량 ⑥알레르기 항원 ⑦식품첨가물
⑧인증조리요 ⑨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⑩공중보건부에서 특정 식품에 관하여 정하는 특정 농구(규정 원문 참조)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절차

1

식품 등록 및 인증취득

식품의약품(BPOM) 식품등록 및 등록번호 발급

- 제출서류
 - ①등록신청서, 신청인을 증명하는 법률 문서
 - ②제조업체 품질관리 인증서(SO 22000, GMP, HACCP 등)
 - ③자유판매인증서(CFS) ④공급확인서 및 수권서 ⑤건강증명서
 - ⑥보관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 ⑦성분구성 및 제조공정 등에 관한 기술정보문서
 - ⑧제품 지정에 관한 기술정보로서 ⑨완제품 분석 인증서 ⑩라벨 디자인

- 현지유관부처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BPOM)
 - 소속: 인도네시아 보건부

국가표준(SNI) 인증 취득

- 대상
 - 인스턴트 식품(카피), 생수, 설탕, 백후추, 밀가루, 조리용 밀유, 분유 등

- 현지유관부처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BPOM)
 - 소속: 인도네시아 보건부

(신선농산물) 농업검역본부(AAQ) 사전신고

- 현지유관부처 농업검역본부(AAQ)
 - 소속: 인도네시아 농업부

2024년 할발인증 취득 의무화

3

수입신고

관세청에 서류 또는 전자 신고서 제출

- 제출서류
 - ①수입신고서 ②선하증권 ③상업송장 ④구매확인서 ⑤원산지증명서 ⑥적하목록

운송망속에 따라 수입신고 시기가 상이

- 선박: 도착 후 24시간 이내
- 항공: 도착 후 8시간 이내
- 육로: 도착 즉시

- 현지유관부처 인도네시아 관세청

2

관세납부

수입입고 전 관세납부

- 현지유관부처 인도네시아 관세청

4

통관 및 검역

위험도에 따라 체널별 검사 진행

- 적색채널(고위험군): 통관 전 서류-화물검사
- 황색채널(중위험군): 통관 전 서류검사
- 녹색채널(저위험군): 통관 후 서류검사

(축산물) 할발인증서, 위생증명서 제출

(신선농산물) AAQ 사전신고서, 분석증명서 제출

- 현지유관부처 인도네시아 검역청(AQA)
 - 소속: 인도네시아 농업부
 - 업무: 신선농산물 검역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BPOM)
 - 소속: 인도네시아 보건부
 - 업무: 가공식품 검역

5

반출(합격 시)

- 라벨 제작 표기언어: 인도네시아어

표기사항: ①제품명 ②성분목록 ③제품 수량/중량/용량 ④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명칭과 주소 ⑤생산일자 및 코드 ⑥유통기한

⑦유통하기번호(신규추가) ⑧특정 원재료 원산지 ⑨할발인증(취득 시)

※ 2021년 6월, 가공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 발표(G/TB1/NDN/124/Rev.1/Add.1)

2021년 12월 기준



對필리핀 농식품 수출 절차



1

수입 가능 여부 확인 및 수입면허 취득

품목 수입 가능 여부 사전 파악

- 현자유관부처 필리핀 수입서비스(BIS)

- 소속: 필리핀 통상산업부(DOT)

수입면허(CAS) 취득

- 현자유관부처 필리핀 국제국(BIR)

- 소속: 필리핀 재정부

2

사전등록 및 위생·검역증명서 발급

(가공식품) 필리핀 식품의약품 사전 등록

- 제출서류: ①통상신청서 ②제품라벨 ③제품사진 ④건강송정 ⑤수출국 발행 위생/검역 관련서류

- 현자유관부처 필리핀 식품의약품(FDA)

- 품목: 가공식품, 가공육산물

(농축산식품) 위생·검역증명서(SPSIC) 발급

- 현자유관부처 필리핀 농수산물 표준사무국(BAFFS)

- 품목: 신선 농축산물, 수산물

4

관세납부

필리핀 정부 공인 은행에서만 관세납부 가능

- 현자유관부처 필리핀 관세국

3

수입신고

단일통관창구(NSW)로 온라인 수입신고

- 제출서류: ①상업송장 ②선하증권 ③화물운송장 ④포장명세서 ⑤완전지명세서

- 현자유관부처 필리핀 식품의약품(FDA)

- 품목: 가공식품, 가공육산물

필리핀 농수산물 표준사무국(BAFFS)

- 품목: 신선 농축산물, 수산물

5

통관 및 검역

제품 위험도에 따라 채널 분류/검역 진행

- 그린라인(저위험): 세관 평가
- 옐로우라인(중위험): 세관 평가, 서류검사
- 오렌지라인(중고위험화물)*: 세관 평가, 서류검사, 스캐닝 검사(X-레이, 실물검사 필요 시)

*통관 검역 강화를 위해 2020년 9월 신설

- 레드라인(고위험): 세관 평가, 서류검사, 스캐닝 검사(X-레이), 실물검사

- 현자유관부처 필리핀 식품의약품(FDA)

- 품목: 가공식품, 가공육산물

필리핀 농수산물 표준사무국(BAFFS)

- 품목: 신선 농축산물, 수산물

(동물성 제품) 동물산업국 발행 수의학적역허가증 요구

- 현자유관부처 필리핀 동물산업국(DA)

(식물성 제품) 식물산업국 발행 식물위생검역허가증 요구

- 현자유관부처 필리핀 식물산업국(BPI)

6

반출(합격 시)

라벨 제작 표기언어: 영어 또는 필리핀어
표기사항: ①제품명/상표명 ②성분목록(합량순) ③중량 ④제품 고유번호 ⑤보관조건 ⑥제조/포장/수입/유통업체 명칭과 주소 ⑦유통기한
⑧알레르기 합성 정보 ⑨심취방법 ⑩사용방법 ⑪영양성분표(영양정보)

11. 말레이시아

對말레이시아 농식품 수출 절차



1



수입허가 취득

수입허가 취득

- 대상
 - ① 일교율제품 ② 동물 및 동물제품 ③ 특정 건강식품
 - ④ 육류 및 육가공품 ⑤ 식물 및 식물제품 ⑥ 가금류 및 가금류 가공품 ⑦ 곡물*
- *2021년 4월 1일 신규추가

● 현지유관부처 말레이시아 식품안전 및 품질부(FSQD)
- 소속: 보건부

2



수입식품 사전등록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SIM) 홈페이지 활용

● 현지유관부처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SIM)
- 소속: 보건부

4



통관 및 검역

식물성 제품/동물성 제품으로 분류 후 검역

- 식물성 제품 제출서류
 - ① 수입허가서 ② 식물위생증명서 ③ 해충검역검사 인증서
 - ④ 식물 위생 규제 인증서
- 동물성 제품 제출서류
 - ① 수입허가서 ② 유통 인증서 ③ 수의검역부 허가증
 - ④ 육류 및 가금류 수출증서

● 현지유관부처 말레이시아 수출입식품 검역청(MAQIS)
- 품목: 식물성 제품, 수산물
말레이시아 수입국(DVS)
- 품목: 동물성 제품

3



수입신고

전자통관서비스(Dagang.net) 이용

- 제출서류
 - ① 수입신고서 ② 선하증권 혹은 화물운송장 ③ 상업송장 혹은 견적송장
 - ④ 포장 목록 ⑤ 원산지 증명서

● 현지유관부처 말레이시아 관세청

5



관세납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 구비

● 현지유관부처 말레이시아 관세청

6



반출(합격 시)

● 라벨 제작 표기언어: 말레이시아와 영어(필수), 말레이시아와 수출국 언어(허용)
표기사항: ① 제품명 ② 제조사 ③ 수입업체 ④ 유통정보 ⑤ 원료목록 ⑥ 식품첨가물 ⑦ 원산지 ⑧ 중량 ⑨ 유통기한

對싱가포르 농식품 수출 절차



1



수입업체 등록 및 식품 등록

수입업체 등록 및 수입허가 취득

(육류/달걀) 식품 등록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심사를 거친 생산업체에 인증서 발급

● **제출서류**
수출의함서

● **현지유관부처** 싱가포르 식품청(SFA)
- 소속: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 선적 및 운송 >>>

2



수입신고

전자통관시스템(TradeNet) 이용

● **제출서류**
① 수입승장 ② 선하증권 ③ 포장명세서 ④ 화물통관허가서
⑤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⑥ 검역증명서(필요 시) 등

● **현지유관부처** 싱가포르 식품청(SFA)
- 소속: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5



반출(합격 시)

4



통관 및 검역

싱가포르 식품청*으로 수입식품 검사 신청

- SFA Inspection & Laboratory e-Services

● **제출서류**
① 화물통관허가증 ② 건강증명서 및 관련 서류
③ 검사대상 제품 등

(축산물) SFA 승인 국가 및 시설에서만 수입 허용

(신선농산물) CODEX 잔류물질허용기준 충족

(가공식품) 아래 품목의 경우 증명서류 필요

*포장 미네랄워터 및 식수, 코코넛밀크 및 나시르막, 유아용 시리얼 및 유아용 조제분유, 최소 가공된 과일 및 채소, 저온살균 우유(액상), 절단 사탕수수, 달걀

● **현지유관부처** 싱가포르 수출입식품 검역처
- 품목: 식품성 식품
싱가포르 수의국
- 품목: 동물성 식품

3



관세납부

일반 식품에 무관세 적용(주류 제외)

InterBank GIRO*로 관세납부

*싱가포르의 전자 이체/결제 시스템

● **현지유관부처** 싱가포르 관세청
- 소속: 싱가포르 재정부

● 라벨 제작 표기언어: 영어
표기사항: ① 제품명 ② 제품설명 ③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명칭 및 주소 ④ 순수량 ⑤ 성분목록 ⑥ 원산지 ⑦ 유통기한 등

對러시아 농식품 수출 절차



1



>>> 선적 및 운송 >>>

2



필수인증 (TRCU) 취득

- 대상
곡물류, 채소 및 과일류 등. 관련 규정(TP TC 021/2011) 명시 품목
- 제출서류
①인증신청서 ②제품 사진 ③제품설명서
④공정성사 신청서 등
- 현지유관부처
러시아 경제 위관외(EEC)

사전신고

(육상운송) 도착 2시간 전 사전신고

(해상운송) 도착 6시간 전 사전신고

- 신고내용
①발송인 정보 ②수입/수출업자 정보
③원산지 및 수입국 ④운송인 정보
⑤적재 화물 정보 ⑥제품 라벨 및 포장 유형
⑦제품 총 중량 및 부피 ⑧제품가치
⑨유라시아경제연합 상품 코드 등

● 현지유관부처
러시아 연방세관

5



<<<

통관 및 검역

(동물성 식품) 수의검역 진행

(식물성 식품) 식물위생검역 진행

(필요 시) 위생 전염병 검역 진행

- 대상
미세할 워터, 어린이용 식품(임산부 및 수유부 대상 식품 포함), 식이요법 제품, 유제품, 육류 및 육가공품, 식용첨가물, 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물, 유전자 변형물 제조된 식품 등
- 현지유관부처
러시아 동식물위생관리청 (FSVPS)
- 조류: 농업부
- 물류: 동물성 및 식물성 제품
러시아 보건부
- 물류: 가공식품

3



수입신고

- 제출서류
①상업 문서 ②원산지증명서 ③통관세율 증명서류
④해당 법인 세금 관련 문서 ⑤수입/수출업자 신분 증명 서류
⑥러시아 법인 서류(개인사업, 법인 등록증)
⑦제품명 증명서, 적합성 선언서, 위생증명서 등서류 위생검역 증명서

● 현지유관부처
러시아 연방세관

5



>>>

관세납부

육안검사와 샘플검사 진행

- 식품류 관세율은 10~15% 내외(CIF 기준)
- 부가가치세 20%

● 현지유관부처
러시아 연방세관

6



반출(합격 시)

● 라벨 제작 표기언어: 러시아어

표기사항: ①제품명 ②제조업체 명칭/국적/주소 ③제조업체 상표 ④순중량 또는 수량 ⑤성분정보 ⑥영양성분표 ⑦용도 및 사용법

⑧축산성위식용 조리법 ⑨유통기한 ⑩보관지침 및 보관기간 ⑪제조일과 포장일 ⑫적합성 인증 정보 등

※ 2021년부터 유제품은 디지털 라벨 부착 의무화

對카자흐스탄 농식품 수출 절차



1



필수인증(TRCU) 취득

- 대상
곡물류, 채소 및 과일음료 등, 관련 규정(TP TC 021/2011) 명시 품목
- 제출서류
①인증신청서 ②제품 사진 ③제품설명서 ④공정상사 성적서 등
- 한자유관부처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EC)

>>> 선적 및 운송 >>>

2



수입신고

- 제출서류
①계약서 ②상업송장 ③제품 사진포함 설명서 ④포장명세서
⑤원산지증명서 ⑥Non-GMO 증명서 ⑦보통중서 ⑧수출신고필증
⑨운송장(B/L, RWB, AWB) ⑩통관계약서, 위양명, TR-CU/EAC 인증 등
- 한자유관부처 재무부 기술개발위원회

5



반출(합격 시)

<<<

4



관세납부

- 평균 수입관세 약 9%
- 소비세 및 통관비용은 품목에 따라 상이

- 한자유관부처 국제위원회
-소속: 재무부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EC)

3



통관 및 검역

(동물성 식품) 수의검역 진행

(식물성 식품) 식물위생검역 진행

- 수출국 검역증명서 필요

(필요 시) 위생 전염병 검역 진행

- 대상
미네랄 워터, 어린이용 식품(임신부 및 유아부 대상 식품 포함), 식이요법 제품, 유제품, 육류 및 육가공품, 식품첨가물, 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물, 유전자 변형물 제조된 식품 등

- 한자유관부처 농업검역위원회
- 품목: 식물성 제품(신선과일 및 채소)
수의 통제 및 검사위원회
- 품목: 동물성 제품(육류, 가축 등)

라벨 제작 표기언어: 카자흐스탄어, 러시아어

표기사항: ①제품명 ②식물성분 ③제조일자 ④유통기한 ⑤보관방법 ⑥제조업체/수입업체 ⑦권고사항/제한사항 ⑧중량정보 ⑨EAC 마크 등

2021년 12월 기준



對몽골 농식품 수출 절차



1



수입허가증 발급

(진작물자 취급목록) 수입허가 취득

- 대상
우유 및 분유, 육류, 밀가루, 육가공식품(소·말·낙타·염소·양), 생수

몽골 등록 법인인 식품 수출 기능

- 몽골 수출 식품은 자체 식품검사, 품질관리체계(HACCP, GMP, GHP, ISO 등) 도입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 현지유관부처 몽골 통상산업부

2



세관 신고

- 제출서류
①세관신고서(CDF) ②외국거래 계약서 ③송장 ④운송관련 문서
⑤포장내역 ⑥원산지 증명서 ⑦하가 증명서

사전수입신고시 관세청에 구비서류 사본 제출

- 현지유관부처 몽골 관세청

3



통관 및 검역

통관 시 서류검사 진행

- 제출서류
①무역계약서 ②선입출장 ③선취증권 ④환어음 내역서 ⑤원산지 증명서
⑥(필요시)화가서 ⑦관세납부 증명서 ⑧인증서 및 무관세 증명서
⑨과세표준 증명서 ⑩법적 필요 서류

- 현지유관부처 몽골 관세청

몽골 기술 감독청(GASI)

(농식품 제품) 가축병원 검역, 식물검역 실시

- 대상
고기, 우유, 부속 고기, 달걀, 열 및 열정, 사냥한 동물, 곡물, 감자, 채소, 임, 뿌리채소, 열매채소, 묘목 등
- 전염병 위험이 없는 국가/지역만 수입 허용

- 제출서류
①매매계약서-중여계약서 ②운송수단-차종-경로 ③해당 국경 지역
④원자재-제품 수량-가공상태-포장-상표-품질-안전성 정보

4



관세납부

관세, 특별소비세, 소비세 부과

- 현지유관부처 몽골 관세청

5



반출(합격 시)

● 라벨 제작 표기언어: 몽골어(러시아어, 영어 병기 가능)

표기사항: ①제품명 ②성분목록 ③순중량 ④제조업자/수출업자/유통업자/판매자 명칭과 주소 ⑤원산지 ⑥제조일자/포장일자
⑦유통기한 및 보관조건 ⑧사용설명 ⑨관련 기준 및 문서표시 등

2021년 12월 기준



對아랍에미리트 농식품 수출 절차



1



>>> 선적 및 운송 >>>

2



식품등록 및 사전준비

FIRS*에 수입업체/수입식품 사전등록

*Food Import&Re-export System

● 제출서류

- ①식품등록신청서 ②식품라벨 ③제품 패키지 사진
- ④식품 가능 관련 인증 ⑤추가서류(위생 증명서, 할랄 인증서)

- 현지유관부처 아랍에미리트 연방 식품 포털
-소속: 아랍에미리트 기후경제 환경부

(관장) 수입식품 소비적합성 성적서 취득

- 미취득 시 생물 시험결과 도출 전까지 반출 보류

- 현지유관부처 두바이중앙식품시험소
국제 인증 시험소

수입신고

● 제출서류

- ①수입신고서 ②상업송장 ③포장명세서 ④선하증권/항공운송장
- ⑤화물인도지서서 ⑥원산지증명서(이스라엘 원료 미포함 문구 기재)

- 현지유관부처 아랍에미리트 연방 관세청
긴 트루국 관세청
-소속: 트루국 행정부

5



<<<

4



<<<

3



반출(합격 시)

통관 및 검역

관세납부

관능검사 후 위험도에 따라 검역 진행

- 농약잔여(저위험): 서류검사
- 황색질서(중위험): 서류검사 및 화물검사
- 적색질서(고위험): 서류검사 및 화물검사, 정밀검사

위험도에 따른 식품 분류

- 저위험: 커피, 차, 설탕 포함 20개 품목
- 중위험: 생수, 탄산음료, 신선과일 포함 26개 품목
- 고위험: 육류, 수산물, 우유 포함 18개 품목

(육류) 검역증명서, 할랄증명서 필요

- 현지유관부처 긴 트루국 관세청
-소속: 트루국 행정부

수입식품에 평균 5% 관세 부과

- (예외) 담배류 관세율: 100%

- 현지유관부처 아랍에미리트 연방 관세청

● 라벨 제작 표기언어: 아랍어

표기사항: ①제품명 ②식품성분 ③영양성분표 ④유통 ⑤제조자 명칭과 주소 ⑥원산지 ⑦제조일자/유통기한 ⑧로트(Lo) 번호
⑨원산지 ⑩보관 및 사용지침 등

2021년 12월 기준



2022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인쇄일 | 2023년 7월

발행일 | 2023년 7월

발행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기획·편집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빛가람동 347)

전화 | 044-201-2175, 061-931-0871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빛가람동 347)